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일 반 회 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2021. 1.

고용노동부

- 순 서 -

I . 일반회계	1
1. 세 입	3
(1) 기타재산수입	3
(2) 과태료	4
(3) 징계부가금	5
(4) 과징금	6
(5) 위약금	7
(6) 가산금	8
(7) 기타경상이전수입	9
(8) 면허료 및 수수료	10
(9) 기타잡수입	11
2. 세 출	12
(1) 고용센터인력지원(1031-300)	12
(2) 직업안정기관운영(1032-301)	17
(3)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1032-302)	20
(4) 청년센터 운영(1032-303)	23
(5) 고용노동통계조사(1033-470)	27
(6) 사회적기업 육성(1037-301)	32
(7)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1037-311)	36
(8)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1039-321)	38
(9)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1039-323)	41
(10) 고용동향조사분석(1040-300)	47
(11)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54
(12) 청년내일채움공제(1044-301)	56
(13) 고용영향평가사업(1045-301)	59
(14) 한국잡월드운영(1049-301)	62
(15) 해외취업지원 (1051-304)	65

(16)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	68
(17)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1051-306)	71
(18) 내일배움카드(일반)(1065-300)	76
(19)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1065-315)	79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1066-307)	82
(21)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1066-316)	86
(22) 숙련기술장려사업(1066-317)	92
(23)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1066-500)	96
(24)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1067-308)	99
(25)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1067-750)	102
(26)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1068-300)	105
(27)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1068-309)	109
(28)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1068-750)	113
(29)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1069-301)	117
(30) 취약계층취업촉진(1070-300)	119
(31)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072-300)	123
(32)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1075-302)	129
(33)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1075-303)	133
(3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231-300)	136
(35) 실업크레딧지원(일반회계)(1232-351)	139
(36) 일자리안정자금지원 (1233-300)	141
(37)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234-300)	144
(38) 청년구직활동지원금(1234-301)	147
(39) 취업성공패키지지원(1234-302)	149
(40)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1234-303)	152
(41)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331-300)	155
(4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1336-301)	160
(4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339-301)	163
(44) 중장년층취업지원 (1340-300)	165
(45)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2031-300)	168
(46)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 (2031-305)	172
(47)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2032-305)	175
(48) 노사발전재단지원(2036-311)	179

(49) 근로조건개선지원(3031-302)	182
(50) 고용상차별개선지원(3031-304)	190
(51)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 (3031-320)	193
(52) 근로감독역량강화(3032-306)	196
(53)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3034-313)	200
(54) 최저임금위원회전문성강화(3036-301)	203
(55) ILO 분담금(ODA)(3050-300)	205
(56)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3050-301)	207
(57)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ODA)(3050-302)	210
(58)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	215
(59) 본부인건비 (7001-100)	219
(60) 노동위원회 인건비(7002-104)	221
(6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7002-150)	223
(62)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7007-107)	226
(63)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총액)(7011-211)	228
(64)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총액)(7011-212)	230
(65)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7011-213)	232
(66) 기본경비(노동정책실, 총액)(7011-214)	234
(67) 기본경비(산재예방보상정책국, 총액)(7011-216)	236
(68)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7011-257)	238
(69)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7011-218)	240
(70)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비총액)(7011-251)	242
(71)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7011-252)	244
(72)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7011-253)	246
(73) 기본경비(노동정책실, 비총액)(7011-254)	248
(74) 기본경비(산재예방보상정책국, 비총액)(7011-256)	250
(75)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7011-217)	252
(76)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7011-258)	254
(77) 사회복무요원운용(노동위원회, 총액)(7018-219)	256
(78)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0)	258
(79)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1)	260
(80)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2)	262
(81) 사회복무요원운영(노동위, 비총액)(7018-261)	264
(82)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2)	266

(83)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3)	268
(84)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4)	270
(85)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7018-265)	272
(86)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5)	274
(87)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6)	276
(88)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7)	278
(89)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8)	280
(90)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9)	282
(91)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30)	284
(92)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7)	286
(93)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8)	288
(94)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9)	290
(95)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0)	292
(96)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1)	294
(97)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2)	296
(98) 정책연구개발(R&D)(7031-300)	298
(99)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지원(7032-300)	300
(100)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7032-310)	303
(101) 고용노동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305
(102) 노동위원회청사관리(7036-306)	308
(103)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7036-440)	310
(104)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7039-309)	312
(105) 무료법률서비스지원(7039-310)	314
(106)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7039-502)	317
(10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7040-307)	320
(108) 일자리위원회운영(7045-301)	323
(109) 공무직위원회 운영(7050-301)	325
(110) 고객상담센터인건비(7902-101)	327
(111) 고객상담센터운영(7931-301)	330
(112)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고용보험운영 (8420-880)	333
(113)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8421-881)	335
(114) 고용보험기금 전출(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8422-882)	337

(11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보험운영)(8422-882)·····	339
(11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예방지원)(8422-883)·····	341
(117)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8425 - 885)·····	343
II.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345
1. 세 입·····	347
(1) 기타경상이전수입·····	347
2. 세 출·····	348
(1) 진폐위로금지급(4131-300)·····	348
(2) 건강진단(4131-301)·····	352
(3) 건강진단지원금(4131-304)·····	355
I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61
1. 세 출·····	363
(1) 사회적기업육성(균특)(1037-312)·····	363
(2) 사회적기업육성(제주)(1037-313)·····	367
(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1056-317)·····	370
(4) 직업안정기관운영(7041-301)·····	373
(5)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균특)(7041-306)·····	375
(6)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균특)(7041-310)·····	378
(7) 청년구직활동지원금(균특)(7041-315)·····	380
(8)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7041-316)·····	382
(9) 제주노동위원회지원(7041-401)·····	385
(10)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7041-402)·····	387
IV. 고용보험기금 ·····	389
1. 수 입·····	391

(1) 고용주부담금	391
(2) 피고용자분담금	394
(3) 건물대여료	396
(4) 기타민간이자수입	397
(5) 기타재산수입	399
(6) 가산금	401
(7) 기타경상이전수입	402
(8) 잡수입	405
(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06
(10) 한국은행예치금회수	408
(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09
(12) 일반회계전입금	411
(13) 기금예수금	412
2. 지출	413
(1) 고용유지지원금(1045-350)	413
(2) 고용유지자금융자(융자)(1045-356)	416
(3)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418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1046-351)	423
(5) 고용장려금(융자)(1047-351)	425
(6)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1049-354)	429
(7) 고용서비스모니터링(1051-351)	433
(8)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1054-510)	441
(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1055-350)	447
(10) 고객상담센터지원(1055-352)	450
(11) 지역고용촉진지원금(1056-353)	454
(12) 세대간상생고용지원(1060-350)	457
(13)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1061-350)	459
(14)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062-350)	462
(15) 내일배움카드(고보)(1063-352)	464
(1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064-350)	467
(17)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1066-350)	470
(18) 외국인력고용지원(1066-355)	473

(1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1066-356)	476
(20)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1067-350)	478
(21)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1083-350)	481
(22)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1083-351)	484
(23)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083-355)	491
(24)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1092-352)	493
(25) 구직급여(1280-350)	495
(26)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499
(27) 자영업자 실업급여(1292-350)	502
(28) 실업크레딧지원(고보)(1293-350)	504
(29) 고용안정장려금(1345-350)	506
(30) 직장어린이집지원(1345-351)	513
(31) 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	518
(32)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1345-359)	523
(33) 장년고용안정지원금(1347-350)	525
(34) 일터혁신 지원(1348-350)	530
(35)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76-115)	534
(36) 고용보험운영 인건비(7076-119)	536
(37) 기금관리비 기타경비(7076-201)	538
(38)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7076-210)	540
(39)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 (7076-213)	542
(40) 고용안정사업운영(7076-220)	544
(41)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7076-222)	546
(42)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7076-223)	548
(43) 실업급여 심사·재심사운영 기타경비(7076-225)	550
(44)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7076-226)	553
(45)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7076-228)	555
(46)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7076-230)	558
(47) 지역고용정책협의회운영지원(7076-234)	561
(48)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7076-240)	563
(49)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7076-241)	565
(50) 모성보호사업운영(7076-250)	568
(51) 여성고용촉진시설지원운영(7076-251)	570
(52)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7076-252)	572

(53)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운영(7076-253)	574
(54)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7077-270)	576
(55) 고용보험연구용역(7077-271)	579
(5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조사연구지원(7077-272)	581
(57)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7078-280)	583
(58)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7078-281)	585
(59) 고보기금에서 공자기금(총괄계정)으로 예수이자상환 (9201-840)	587
(60) 한국은행예치(9710-970)	589
(61)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0-972)	591

V.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93

1. 수 입 595

(1) 고용주부담금	595
(2) 피고용자분담금	596
(3) 토지대여료	597
(4) 건물대여료	598
(5) 기타민간이자수입	599
(6) 기타재산수입	600
(7) 벌금및과료(과징금)	601
(8) 가산금(가산금)	602
(9) 기타경상이전수입	603
(10) 기타잡수입	605
(11) 건물매각대	606
(12) 토지매각대	607
(13)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608
(14) 한국은행예치금회수	609
(1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10
(16) 일반회계전입금	611
(17) 기금예탁원금회수	612
(18) 기금예탁이자수입	613

2. 지 출 614

(1) 산재보험급여(4051-350)	614
(2)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4052-350)	617
(3)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4052-356)	622
(4) 산재근로자 요양관리(4053-351)	626
(5) 산재병원지원(4054-350)	635
(6) 산재보험시설건립(4055-350)	638
(7)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4057-350)	641
(8)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4058-350)	644
(9)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4058-351)	647
(1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4060-350)	652
(1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4151-350)	657
(12) 산재예방시설 융자(4151-351)	661
(13) 업종별 재해예방(4152-350)	664
(1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4152-351)	672
(15) 유해작업환경개선(4152-352)	677
(16) 근로자 건강보호(4152-353)	686
(17)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4152-355)	697
(18) 안전보건문화 정착(4154-350)	700
(19) 산재예방시설 건립(4154-351)	704
(20)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4154-352)	707
(21)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4155-350)	710
(22) 기금관리비 인건비(7084-101)	713
(23) 산재보험운영 인건비(7084-102)	715
(24) 산재예방운영 인건비(7084-103)	717
(25)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84-104)	720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7084-105)	722
(27) 기금운영관리(7084-106)	725
(28) 기금관리비 기타경비(7084-201)	727
(29)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7084-202)	729
(30)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7084-203)	731
(31)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4)	734

(3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5)	736
(33)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7084-206)	739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7084-207)	741
(35)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7084-208)	744
(36) 유해화학물질 체계적관리(7084-212)	746
(37)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7085-200)	749
(38) 산재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9005-840)	751
(39)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5-972)	753

V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755

1. 수 입 757

(1) 기타재산수입	757
(2) 가산금	758
(3) 법정부담금	759
(4) 기타경상이전수입	761
(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62
(6) 한국은행예치금회수	764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65
(8) 기금예탁원금회수	766
(9) 기금예탁이자수입	767

2. 지 출 768

(1) 장애인고용장려금(1452-303)	768
(2) 장애인고용관리지원(1452-306)	771
(3) 장애인취업지원(1452-311)	774
(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1452-315)	778
(5)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1452-316)	781
(6)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1452-317)	784
(7) 중증장애인가로자 출·퇴근비용 지원(1452-318)	787
(8)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1453-304)	790
(9) 보조공학기기지원(1453-305)	793

(10) 장애인직업능력개발(1457-314)	796
(11) 장애인기능경기대회(1457-319)	800
(12) 장애인고용연구(1459-324)	804
(13) 장애인인식개선지원(1459-327)	807
(14)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1462-330)	810
(15) 장애인고용정보화(1466-240)	812
(16) 기금관리비(인건비)(7079-110)	815
(17)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7079-120)	817
(18)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79-210)	819
(19)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7079-220)	821
(20)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7079-230)	823
(21)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7079-250)	825
(2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6-840)	828
(23) 한국은행예치(9702-971)	830
(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2-973)	832

VII. 임금채권보장기금 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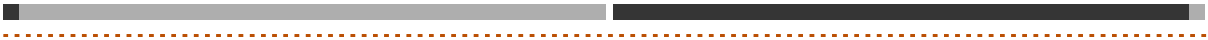
1. 수 입 837

(1) 기타민간이자수입	837
(2) 기타재산수입	838
(3) 징계부과금	839
(4) 가산금	840
(5) 법정부담금	841
(6) 기타경상이전수입	842
(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844
(8)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45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46
(10) 일반회계전입금	847
(11) 기금예탁원금회수	848
(12) 기금예탁이자수입	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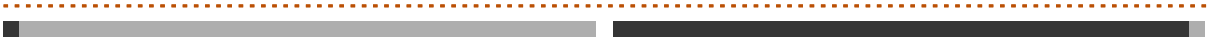
2. 지 출	850
(1) 해당금 지급(3051-300)	850
(2) 무료법률구조지원(3052-302)	854
(3) 해당금 조력지원(3052-303)	857
(4)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3054-304)	860
(5) 기금관리비(인건비)(7082-101)	863
(6)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7082-102)	865
(7)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7082-103)	867
(8)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82-201)	869
(9)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7082-202)	871
(10)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7082-203)	873
(11)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7082-204)	875
(1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4-840)	877
(13) 한국은행예치(9704-971)	879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4-973)	881
 Ⅷ. 근로복지진흥기금	 883
1. 수 입	885
(1) 기타민간이자수입	885
(2) 기타재산수입	886
(3) 기타잡수입	887
(4)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888
(5)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89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90
(7) 기금전입금	891
(8) 기금예탁원금회수	892
(12) 면허료및수수료	896
(1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00
(1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01
(18) 기금예탁원금회수	902
(19) 기금예탁 이자수입	903

2. 지 출 904

(1) 근로자복지지원(3061-301)	904
(2)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	908
(3) 근로복지기금지원(3061-322)	911
(4)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3061-500)	913
(5) 생활안정자금(융자)(3062-306)	916
(6) 기금관리비(인건비)(7081-101)	920
(7)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81-201)	922
(8) 기금관리비(법인세)(7081-202)	924
(9) 사업운영비(근로자생활안정대부)(7081-204)	926
(10)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7081-205)	929
(11) 근로복지기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7081-207)	931
(1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0)	933
(13)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9301-860)	935
(14) 통화금융기관예치(중소복지)(9713-970)	937
(15) 비통화금융기관예치(중소복지)(9713-977)	939
(16) 신용보증대위변제(3064-308)	941
(17) 사업운영비(신용보증인건비)(7081-102)	944
(18) 사업운영비(신용보증기타경비)(7081-209)	946
(19) 근로복지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7081-211)	948
(20)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3068-324)	950
(2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1)	952
(22) 통화금융기관예치(점포지원)(9713-971)	954
(23) 비통화금융기관예치(점포지원)(9713-979)	956



I . 일반회계



I. 일반회계

1. 세입

(1) 기타재산수입	
54-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기타재산수입	731	776	776	776	776	0	0.0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2항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입 개요

- 교부한 국고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355	248	731	1,077

(2) 과태료
56-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과태료	42,596	42,900	42,900	42,900	42,900	0	0.0

1. 법적 근거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용보험법 제118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등 33개 노동관계법령

<이행강제금>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세입 개요

<과태료>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

<이행강제금>

- 부당해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수입
 - 부과금액 : 1회 2천만원 한도로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2년까지 부과 가능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40,110	46,600	42,596	38,271

(3) 징계부가금
56-564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징계부가금	8	20	20	20	20	0	0.0

1.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에 따른 세입(2010.3월 신설)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	7	8	28

(4) 과징금
56-56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과징금	319	78	78	78	78	0	0.0

1.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및 제15조의3(과징금) 등
제 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15조의3(과징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입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등에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른 세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3	92	319	368

(5) 위약금
57-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위약금	0	10	10	10	10	0	0.0

1.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법 제26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세입 개요

- 연구용역 등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4	281	0	1

(6) 가산금
58-58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가산금	194	264	264	264	264	0	0.0

1.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세입 개요

-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5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60개월 한도로 부과 ('08.6.22.부터 시행)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64	214	194	215

(7)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97,192	41,900	41,900	41,900	41,900	0	0.0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7조(수입금의 직접 사용 금지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및 제14조(반환명령에 따른 징수절차)
 -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
 -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포함

2. 세입 개요

-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출연금,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반환금, 고용센터 및 청사 전세보증금 반납금, 급여·수당 등 과지급금 회수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31,858	20,473	92,763	85,667

(8)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10	8	8	8	8	0	0.0

1.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입 개요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입
 - ※ 과거 접수입 등으로 세입처리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2012년부터 면허료및수수료 과목으로 통일하여 세입처리함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8	8	10	10

(9) 기타잡수입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기타잡수입	108	5	5	5	5	0	0.0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 4.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세입 개요

-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예: 폐휴지 매각대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7	18	108	19

2. 세출

사 업 명						
(1) 고용센터인력지원(10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고용정책	고용센터인력지원	고용센터인력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고용센터인력지원	75,124	79,065	91,898	78,898	88,531	△3,367	△3.7

4. 사업목적

- (고용센터인력지원)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원 등 공무원 근로자 1,845명 및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직업상담원 600명(6개월)의 인건비 지급
-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공공·민간 고용담당인력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비용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직업안정법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 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 ①법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 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①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제6조(담당직원 전문성 확보 등)

- ①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1996년

- '96년 전문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인력은행을 설치하고 직업상담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직업상담원 42명 채용
- '98년 고용지원센터 설치, 외환위기로 급증한 업무에 대응하여 공무원 소요를 민간 직업상담원으로 대체('06년 1,574명)
- * ('9.3월, 실업문제종합대책) 민간직업상담원을 확충하여 실업급여·직업훈련과 연계된 실업대책 서비스 체계 확대
- '07년, '08년에 걸쳐 직업상담원 1,446명 상담직공무원으로 전환
- '10년~'11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해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 297명 충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했던 구인상담원 100명을 '12년 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 '12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실업급여 미수급 청·장년까지 확대, 취성패상담원 400명 채용, '13년에 추경으로 400명 추가 채용
-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시군구에 배치한 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8명을 '15년부터 고용센터 인력으로 편입
- '15. 4월, 인력운영 효율성을 위해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5개(직업·구인·훈련·패키지상담원, 사무원) 직종 1,319명을 일반직업상담원으로 통합
- '15년, '16년 취업성공패키지 물량 증가(취성패Ⅰ, 15→18만, 취성패Ⅱ, 15→17만) 및 결원 발생 등으로 일반직업상담원(패키지) 230명 추가 채용
- '15년부터 채용 시의 육아 등 단시간 근무 사유가 해소된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 통상근로 전환(15~18년, 177명)
- '19.1월 직급 및 직종 간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일반직업상담원 및 자립지원상담사를 전임직업상담원으로 통합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6~ 계속
- 사업규모
 - (고용센터인력지원) 직업상담원 등 공무원 1,845명, 기간제 직업상담원 600명
 - * (공무직) 직업상담원 1828명, 취업지원관 17명, (기간제) 600명, 6개월
 - (고용서비스종사자 전문성 강화)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종사자 3,026명, 취업지원분야 민간위탁종사자 794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센터인력지원

본부 (예산 재배정)	○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 상담원 등 운용 관련 규정 제·개정
↓	
48개 지방관서 (예산집행)	○ 직업상담원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지급

□ 고용서비스종사자 전문성 강화

- (고용센터 직원) 교육계획 수립(본부) ⇒ 교육생 차출(고용센터) ⇒ 교육생 확정(본부) ⇒ 교육위탁 계약체결(본부·교육운영기관) ⇒ 교육실시·운영(교육운영기관) ⇒ 교육대금 지급(본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본부
↓	
교육생 차출	고용센터
↓	
교육생 확정 및 교육위탁계약	본부/본부-교육운영기관
↓	
교육실시·운영	위탁기관
↓	
교육비용 정산	본부

-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교육계획 수립(본부) ⇒ 교육위탁 계약체결(본부·교육운영기관) ⇒ 교육생 선발 및 교육실시 운영(민간위탁기관·교육운영기관) ⇒ 교육대금 지급(본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본부
↓	
교육위탁계약 체결	본부-교육운영기관
↓	
교육생 선발 및 교육실시 운영	민간위탁기관-교육운영기관
↓	
교육대금 지급	본부

사 업 명						
(2) 직업안정기관운영(10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지원인프라운영	직업안정기관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직업안정기관운영	30,319	40,728	48,638	43,553	36,590	△12,048	△25

4. 사업목적

- 취업지원,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용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

*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비, 각종 신청 서식 인쇄비, 업무·교육 등 출장 여비, 청사 시설 유지 보수, 관리비,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인건비(청소·경비, 보안요원)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직업안정법 제1조(목적) 이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 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98년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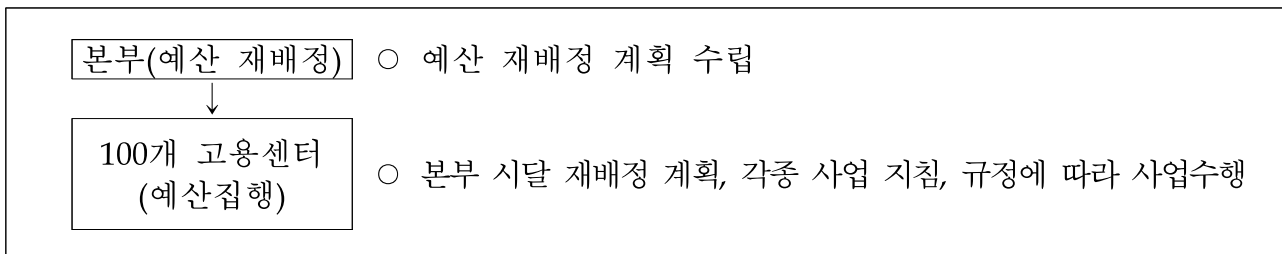
- 고용(복지)센터 운영 : '98년 7월에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통합,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제공

- 이후, 급증한 실업과 고용보험 확대 및 자활사업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고용센터 기능 및 조직을 지속적 개편('18. 12월 현재 100곳)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신설 및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18.12월 현재 98곳)
- 일일취업센터 운영 : 일용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생활안정을 지원코자 일일취업센터를 설치('03년 16개소→'19년 2개소) 운영
-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 인력 충원을 지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장기실직자 등을 계층별로 분류하여, 근로의욕 및 취업 자신감 증진과 구직기술을 배양하여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업규모 : 고용(복지+)센터 100곳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 구인·구직자 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10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2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지원인프라운영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764	734	734	697	692	△42	△5.7

4. 사업목적

-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정책을 원활하게 지원 및 업무추진·지원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협의 조정 및 효율화 추진, 관련 연구 실시
- 일자리사업 전면 개편에 따른 연구개발, 고용서비스·직업능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단위 고용실천 전략 수립 지원 및 효율적 정책 추진, 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지역고용대책을 공식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그 추진성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일자리대책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대책의 수립 등),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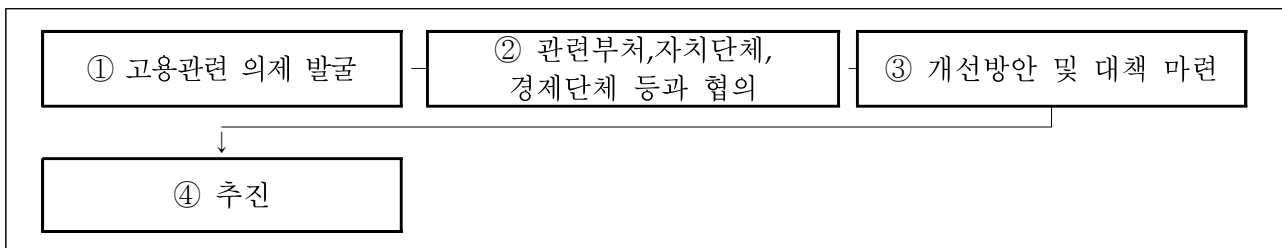
- (일자리대책지원) 2001년부터 노동시장 급변에 따라 주요 고용정책 현안에 대한 공유 및 공감대 형성과 유관기관과의 고용·인적자원 정책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 추진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10년도 노동부 업무보고('09.12) 및 제1·3차 국가고용전략회의('10.1,3월)에서 지역일자리공시제 도입 계획 대통령 보고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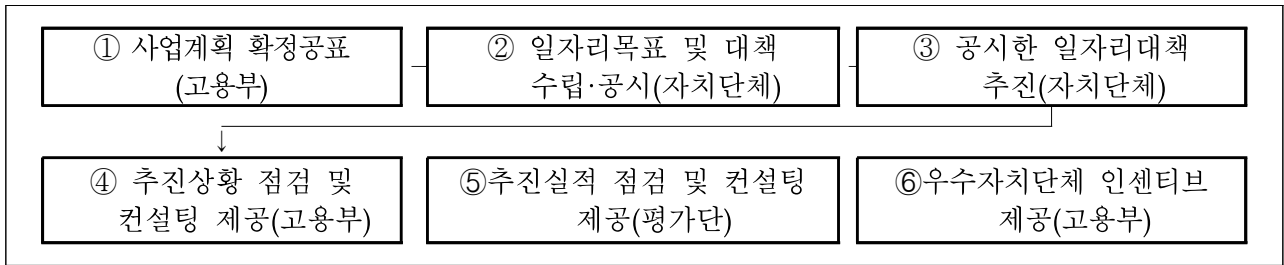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실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자리대책지원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사 업 명						
(4) 청년센터 운영(10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3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지원인프라운영	청년센터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8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청년센터 운영	5,243	4,912	4,912	4,273	4,273	△639	△13.0

4. 사업목적

- (온라인) 청년들의 청년정책 접근성·인지도를 향상시켜 청년정책 참여 제고
- (오프라인) 지역별 청년친화 공간을 활용해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체감도 및 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온라인청년센터)

- '18. 03 :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18.3.15.)에 따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온라인 청년센터 서비스 제공 및 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 추진

<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 발표 내용 >

-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구축 ('18.下)
 - 온라인 및 SNS를 활용한 채팅 상담 제공(일자리·금융·주거 등)
 -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전국 청년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

- '18. 05 : 2,425백만원 추경예산 통과('18.5.21.)로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사업 시작 (홈페이지 구축, 정책정보 수집, 상담시스템 구축 및 인력지원 등)
- '18. 06~09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세부 서비스 내용 설계, 청년워크넷 개편을 통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반영
- '18. 08 : 온라인 청년센터 시범사업 오픈('18.08.29)

- '19. 03 : 온라인 청년센터 독립 홈페이지 오픈('19.03.18)
- '19. 04~07 : 육군장병 카카오톡 상담 시범사업 운영
- '19. 08 : 육·해·공·해병대 카카오톡 상담 확대 및 국방전직교육원 상담관 연계
- '19. 08 : 온라인 실시간 게시판 상담 오픈
- '20. 01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신규 메뉴 오픈(쉬운정책폴이, 청년꿀팁, 청년핫뉴스)

(오프라인청년센터)

- '18.03 :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18.3.15.)에 따라 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 추진
- '18. 06/08 : 군산, 통영 자치단체 보조금(경상·자본보조) 교부(52억원)
- '19. 03. : 지원 지자체 청년센터 16개 선정
- '20. 02 : 지원 지자체 청년센터 12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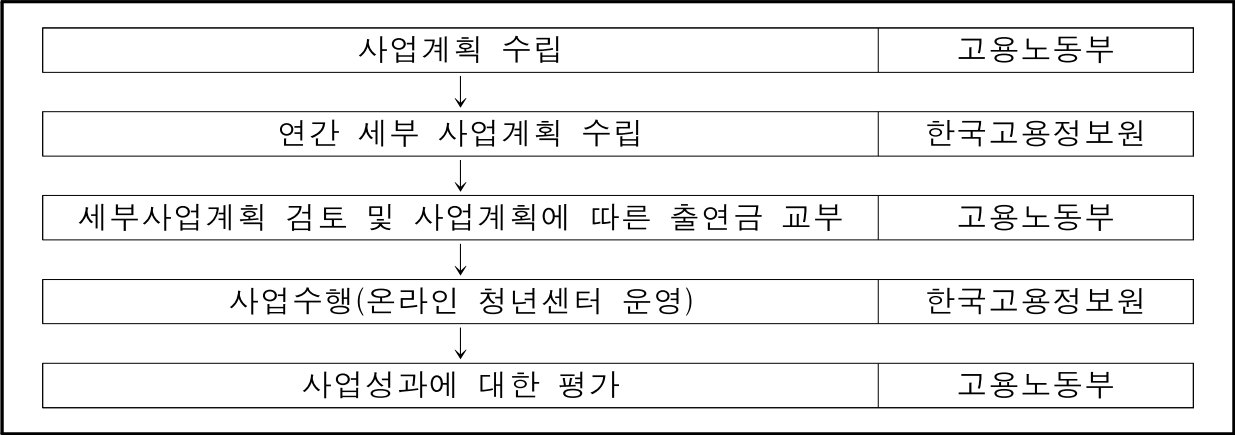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사업규모 : (온라인) 24억, (오프라인) 19억
- 사업시행방법 : (온라인) 출연, (오프라인)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온라인) 한국고용정보원, (오프라인)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청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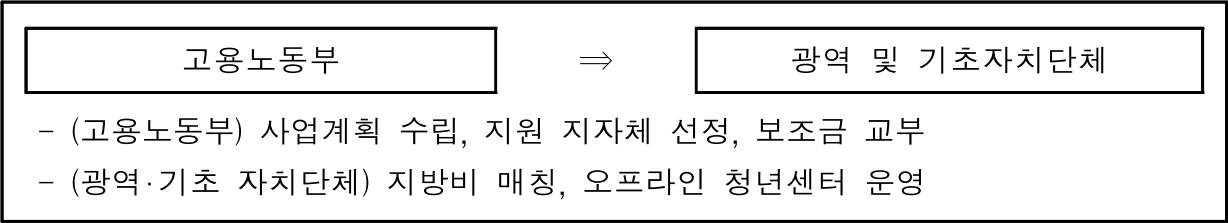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고용정보원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지자체 보조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7. 사업 집행절차

○ (온라인 청년센터)



○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 업 명						
(5) 고용노동통계조사(1033-4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47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노동통계조사	고용노동통계조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고용노동통계조사	15,840	22,742	22,442	28,469	24,422	1,980	8.8

4. 사업목적

- 노동시장 구조 및 고용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 수립 시행·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통계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통계조사 작성 승인
- ILO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제160호) '88. 4. 24. 효력발생

-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07. 12. 21.): 정부는 비정규직 통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68년부터 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고용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제공

○ 사업체 노동력조사: '68년 ~ 계속

- 매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사업체의 근로자수·노동이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 '68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상용근로자 현황 최초 조사
- '99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상용근로자 현황 확대 조사
- '08년, 조사대상을 상용근로자→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확대
- '09년, 노동수요측을 대상으로 일자리변동 상황을 매월 조사하는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신설
- '11년,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통합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11년 ~ 계속

- 자치단체별 지역의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지역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11년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신설(연 2회 조사)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76년 ~ 계속

- 사업체의 현재인원과 부족인원 등 노동력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인력양성정책 및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기초자료로 제공
- '76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상용근로자 현황 최초 조사
- '04년, 조사대상을 임시·일용 및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
- '07년, 6개 권역 지역통계 생산
- '08년, 16개 시·도 지역통계 생산 및 연간 조사에서 반기별 조사로 조사회수 확대
- '11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로 명칭 변경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83년 ~ 계속

- 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파악하여 복지노동행정 구현을 위한 노동정책 입안 자료로 사용하고 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83년,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체 대상 최초 조사
- '99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대상 확대 조사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02년 ~ 계속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를 인적 속성과 사업체 속성별로 실태를 조사하여 고용정책,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 개선·개발에 기초자료 제공
- '02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03년,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실태를 상호비교하기 위해 정규직까지 조사를 확대하면서 명칭을 「사업체근로실태조사」로 변경
- '06년, 조사항목, 조사내용 등이 유사한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조사 실시
- '08년, 조사항목, 조사내용 등이 유사한 「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통합하여 조사 실시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10년~계속

-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조치사항(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기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용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10년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신설(매월조사)
- '14. 1월 조사주기 및 조사항목 변경(월→분기)
- '17. 8월 조사주기 변경(분기→반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정부, 학교, 연구기관,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내용	세 부 업 무
1.조사기획 (본부 노동 시장조사과)	조사표 개선	• 부서 내·외부 의견 수렴 • 통계청의 조사표 변경 승인 요청
	표본설계 (모집단 분석 및 표본추출)	• 모집단 분석(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보험DB 분석) • 양적, 질적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근로자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3년 단위) • 공표수준 감안한 표본 크기 산출 • 층별 분산 등을 고려한 표본배정
	조사대상 여부 판단	• 준비조사 실시 및 조사대상 여부 판단 <지방관서↔본부(공동수행)>
	조사요령서 보완 및 업데이트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사업체의 정의 및 범위 • 주요 용어 해설 • 조사 관련 유의사항 • 조사표 작성 방법 • 조사표 검토 방법, 조사표 입력 방법 및 입력시스템 사용법
	조사요령 교육	• 지방관서 집합교육용 교육자료 작성 * (대상) 지방관서 공무원 및 통계조사관
	입력시스템 보완 및 개선	• 오류검토 조건 추가 및 입력시스템 탑재

2. 조사실시 (18개 거점 관서)	조사관 채용	• 채용 공고, 서류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및 조사관 채용 * 조사관의 잦은 이직에 따른 추가채용 수시 발생
	조사방법 교육	• 조사 기본 교육 및 조사내용, 보안교육 등 실시 * 추가 채용 조사관에 대하여 일대일교육 수시 발생
	조사실시	• 실시안내 및 공문 발송 • 조사표 회수, 불응사업체 특별관리 및 방문 조사 실시
	조사결과 오류검토	• 조사표 오류 검토 (조사표 검토 아이체크, 전산프로그램 활용한 검토) • 사업체조사표 항목 및 개인조사표 항목 로직 검토
	조사결과 입력	• 입력시스템 상 전산오류 검토 및 확인
↓↑		
3. 자료정제 (본부 노동 시장조사과) 5 7. 반복실시 * 오류검토 실시	본부 오류 및 검토리스트 확인	• 본부에서 검토한 오류 점검사항 확인, 검토 리스트에 대한 오류 수정 및 사유 기재
	입력자료 검토	• 지방청 입력 자료에 대한 검토 후 검토 리스트 송부
	오류추출	• 오류·검토 조건 등에 따라 오류·검토 리스트 추출
	오류내용 재검토 요청	• 지방청에 오류 리스트 송부 후 수정 여부 재확인 (각 차수별 각각 확인)
↓↑		
4. 재 조사 (18개 거점관서) 6 8 반복실시	오류내용 재조사	• 오류내용 재조사 사항 재검토
	조사결과 입력	• 수정입력 시 착오사항 없는지 재확인
9. 추정 및 공표 (본부 노동 시장조사과)	결과 추정 및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	• 사업체 가중치 및 근로자 가중치 산정 • 각 분류별 각종 통계치(총량, 평균 등)의 추정 • 데이터 클리닝(이상치 식별 등) • 최종 가중치 산정 후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
	보도자료 작성	• 주요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 조사개요 • 조사결과 요약 • 통계표 수록
	정책부서 전달	• 주요 정책부서에 활용토록 주요 지표 전달
	OECD 등 국제 통계 제공	• 평균임금, 중위임금, 최저임금, 분위별 임금, 성별 임금, 연령별 임금, 시간당 임금 등
	홈페이지 게시	• 보도자료, 보고서, 결과표 DB로 홈페이지 게시
	원시자료 제공	• 원시자료 요청 시 무상 제공
	각종 분석자료 제공 및 외부대응	• 공표 결과 외에 각 과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자료 분석 요청 시 제공 • 법원사실조회,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 등 외부대응

사 업 명						
(6) 사회적기업 육성(1037-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7	301
명칭	고용정책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사회적기업 육성	22,298	21,245	21,245	22,245	22,245	1,000	4.7

4. 사업목적

-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 개발 등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업무담당자 교육) 지방고용노동관서·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및 업무능력 향상
- (성과공유대회)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를 공유 및 포상을 통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2003년
- 사업 추진경위
 - ('03년)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필요성이 높아져 '03년 추경편성시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포함하여 시행(시범사업 '03~'04년)

- ('06년) 민·관·기업이 연계한 프로젝트형 사업실시, 경영컨설팅·워크숍 등 참여 단체 경영능력을 지원하여 수익모델로 전환 추진
- ('07년) 수익창출로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한 기업연계형 사업을 확대하고, '07.7.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경영·재정 등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08년)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사회적일자리를 지속가능하고 보다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유도
'08.9월에는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충돌이 적은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전략분야 모델발굴을 위하여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 국정과제 선정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09년)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확대
- ('10년) '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개소 육성을 목표('10년 고용부 업무계획)로 설정하고 지자체, 대기업 등과의 연계 강화
- ('1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중 신규사업을 자치단체로 이관
- ('12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중 신규사업을 자치단체로 이관
- ('13년) 국정과제(2-4-61):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 ('14년) '17년까지 사회적기업 3천개, 10만명 고용을 목표(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로 설정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의 유사사업간 지원체계 연계 및 부처 협력 강화
※ 지자체보조 국고보조율 하향조정(일자리창출(80→75%), 사업개발비(80→70%))
- ('1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17년) 사회보험료 예산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대통령 공약사항
 -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정과제 선정: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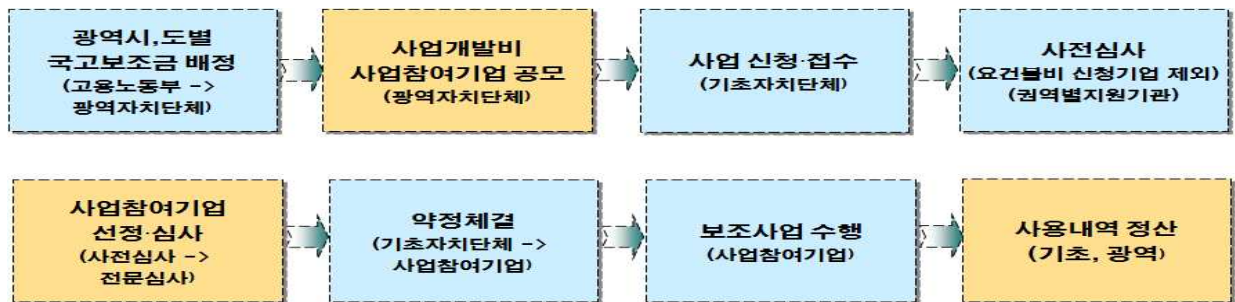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212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개발비



사 업 명						
(7)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1037-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7	31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사회적기업 진흥원운영지원	54,306	60,528	71,690	61,674	59,924	△11,766	△16.4

4.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 판로·성장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시스템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 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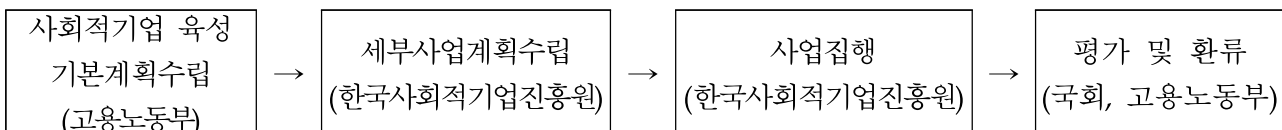
- 사업시작년도 : 2011년
- 사업 추진경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10.6.8)·시행('10.12.9)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법인 설립등기('10.12.3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 시작('11.1.17.)
-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정과제 선정 :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717억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및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0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제5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8)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1039-3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9	32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한국고용정보원출연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27,609	31,657	31,157	32,819	32,819	1,662	5.3

4. 사업목적

- 한국고용정보원이 우수한 전문인력 유치 및 직원의 지속적 역량강화를 통해 고용 서비스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인건비 지원
-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의 원활한 지원으로 대국민 고용서비스 강화
- 고용서비스 관련 국제기구의 협력 수요(WAPES 등)를 수용하고, 급변하는 고용·노동 분야의 국제환경 변화 추이에 대응하여, 공공고용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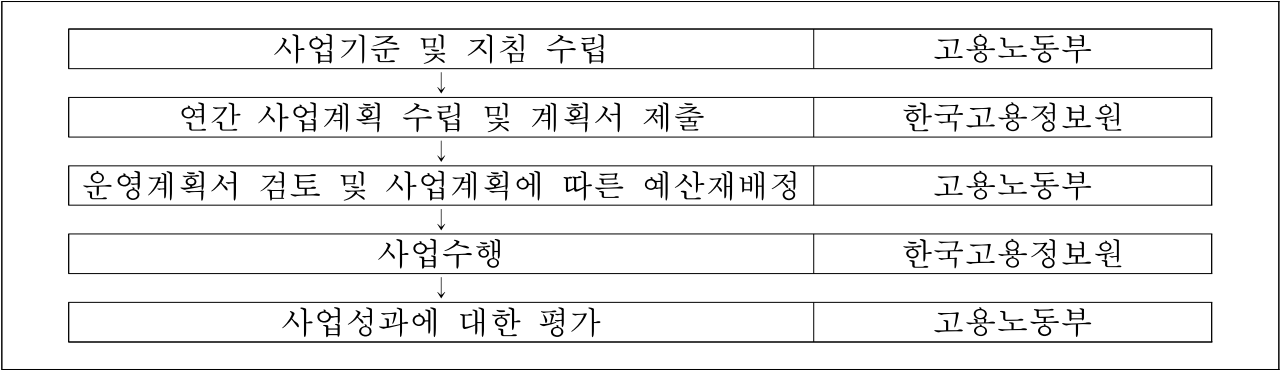
- '79.7월 : 노동청 국립중앙직업안정소 개소
- '95.5월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직제 개정
- '01.1월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개원
- '06.3월 : 한국고용정보원 설립
- '14.9월 : 한국고용정보원 충북혁신도시 이전
- '15년 :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로 이관
- '17년 : 직급보조비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로 이관
- '19년 :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일반회계)”와 “한국고용정보원운영(고보기금)”을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일반회계)”사업으로 통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사업규모 : 2본부 5실 3센터 35팀, 임직원 정원 394명 및 '20년 증원 8명 인건비 및 운영비
- 사업시행방법: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고용정보원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9)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1039-32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9	323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한국고용정보원출연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국가고용정보화 개발센터 구축	4,117	1,766	311	4,797	4,797	4,486	1,442.4

4. 사업목적

- 고용보험 전산망 등 국가기반시설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 국가고용전산시스템은 국가기반시설 및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전산망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청사 내·외부의 물리적 보안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34호) 제5조(고용안정정보망의 관리)

- ① 고용정보원은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해 접속기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에게 고용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 및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정보망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22조(시설보안)

- ① 고용정보원은 주전산기가 위치한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중출입문 및 잠금장치 설치
 2. 출입인가자 명부 비치 및 비인가자 출입 통제
 3. 보조기억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용기 비치
 4.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자료·장비 취급자의 지정·운용
 5. 전산자료의 안전지출계획의 수립
 6.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대책
- ② 고용정보원은 제1항제3호의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을 업무상의 이유로 출입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제한구역 출입자 기록대장에 따라 기재 후 출입토록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및 보안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08호) 제29조(시설보안)

-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대책
 2. 이중 출입문 및 각각 시건장치 설치
 3. 출입인가자 명부비치 및 비인가자 출입 통제
 4. 보조기억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용기 비치
 5. 전산자료의 안전지출계획 수립
 6.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①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권고의 이행
-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수자원 시설
 3.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
 4. 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1.17.>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본조신설 2017.1.17.]

② 추진경위

-
- ▶ '07.02월 : 고용보험 전산망 국가기반시설 지정
 - ▶ '07.12월 : 고용보험 전산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 ▶ '11.12월 : 고용안정 전산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 ▶ '11.12월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
- '18.12.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총사업비대상) 사업 결정
 - '19.01. 건립추진단(TFT) 및 건립추진위원회 구성(발족)
 - '19.01. 직원의견수렴 창구 개설 및 청사건립 서포터즈 구성
 - '19.02. 입주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충청북도)
 - '19.02. 충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입주승인(충청북도)
 - '19.04. 부지매입 계약체결(L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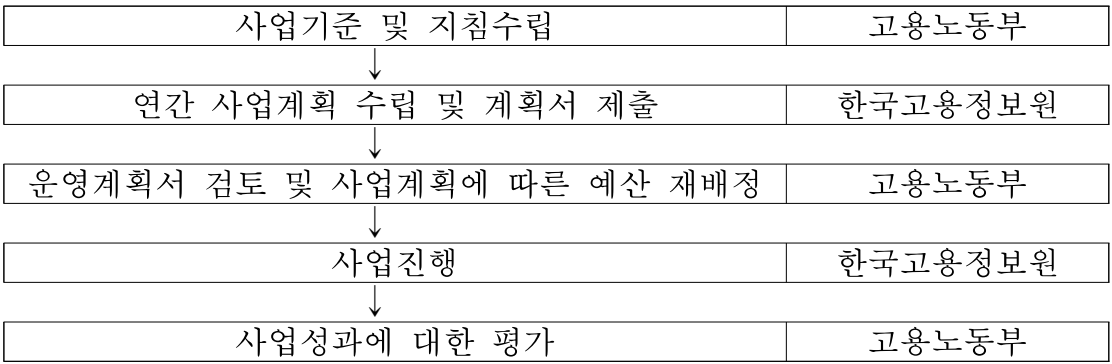
- '19.05. 총사업비 1차 조정 요구(기획재정부)
- '19.07.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공공보행통로 폐지)
- '19.07. 총사업비 1차 조정 결과 (간접보상비 159백만원 증, '19~'21년 +1년 연장)
- '19.09.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체결
- '19.09.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19.1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통보(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19.11.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고용노동부)
- '19.12. 총사업비 2차 조정 결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506백만원, 설계비 부족분 및 설계보상금 205백만원, 시설
부대비(조달수수료) 69백만원 총 780백만원 증)
- '20.01.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설계(제안) 공모(조달청)
- '20.03. 설계사 계약 체결
- '20.04. 설계 착수
- '20.05. 총사업비 3차 조정 신청 (사업기간: (당초) '19~'21년 ⇒ (조정) '19~'23년(+2년 연장))
- '20.06.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신청(조달청)
- '20.08.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통보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24억
- 사업기간 : '19년 ~ '23년
- 사업규모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신축(토지 13,826㎡, 건물연면적 8,145㎡)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고용정보원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 고용동향조사분석(1040-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0	30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동향조사분석	고용동향조사분석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고용동향조사분석	4,672	5,046	5,046	6,632	6,632	1,586	31.4

4. 사업목적

- (고용동향조사) 청년, 고학력자,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구조, 직업이동경로와 같은 고용동향 전반에 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고용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노동시장 내의 인력수급 불균형 및 직무불일치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인력수급전망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배분에 기여
- (고용동향분석) 고용보험 전산망,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 및 직업훈련 전산망(HRD-Net) 등의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하여 고용동향을 분석·모니터링하고 고용노동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및 정책제안 제공
- (빅데이터센터 구축)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생산·분석하여 대국민 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정부 노동정책 지원

- (고령자고용정책연구) 초고령사회 대비 고용관련 통계분석, 초고령사회 관련 해외사례 분석 및 연구개발, 초고령사회 정책 지원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고용동향조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고용동향 분석>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 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 직업안정법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⑥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빅데이터센터 구축>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② 추진경위

■ 고용동향조사

- 청년패널조사

- '01년: 인적자원개발회의('00.9월)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채택된 『인력수급 전망 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 세부사업의 하나로 청년패널조사 시작
- '07년: 새로운 청년패널(YP2007) 약 1만여 명 구축 및 조사(1차) 시작
- '15년: 청년패널(YP2007) 추가표본(3,515명) 구축 및 조사(9차) 실시
- '17~'20년: 청년패널(YP2007) 원표본 11~14차 조사, 추가표본 3~6차 조사 완료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04년: 국무조정실의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 기획단」에서 인력수급체제 개선을 위한 과제로 제시('04.11월)되어 논의
- '05년: 국무조정실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5)」과 노동부의 「인력수급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채택, 10월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한 국무총리 보고 중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추진 보고
- '0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시작
- '0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차패널 추적조사(3차년도) 완료
- '14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횡단면 조사로 개편
- '16~'20년: ('16년)'15년 대졸자 18,082명, ('17년)'16년 대졸자 18,201명, ('18년)'17년 대졸자 18,098명, ('19년)'18년 대졸자 18,178명, ('20년)'19년 대졸자 18,000명 조사 완료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06년: 고령화사회('10년)→고령사회('17년)→초고령사회('26년) 진입 전망을 토대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은퇴, 소득변화 등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위하여 신설
- '14년: 고령화연구패널 '62~'63년생 1,005명 신규패널 구축
- '15년: 고령화연구패널 제5차 특별조사 완료
- '16~'17년: 고령화연구패널 제6차 기본/특별조사 완료
- '18~'19년: 고령화연구패널 제7차 기본/특별조사 완료
- '20년: 고령화연구패널 제8차 기본조사 완료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07.3~11월: 고용정보원(인력수요)과 직업능력개발원(인력공급)이 공동으로 인력수급전망 실시
- '07.12월: 제3회 국가인력자원위원회 제1호 안건, 「2006~ 201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분석」 대통령 최종보고
- '12.4월: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국무회의 보고
- '14.12월: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국무회의 보고
- * 세부 산업·직업 전망 실시(산업 소분류 206개, 직업 세분류 270개 선정)
- '15.12월: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국무회의 보고

「2014-2024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광역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및 「섬유산업 인력수요 전망」, 「철강산업 인력수요 전망」 등 인력수요 전망 보고서, 「고령자 인력수급 분석」, 「서비스업 인력 수요 변동 분석」, 「제조업 고용변동 분석」, 「충북 북부권 인력수급 변동 분석」,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모형 방법론」 보고서 발간

- '16.1월: 주요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 발표
- '17.1~12월: 4차 산업혁명 기술 포럼 3회 개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수행·전망 모형 개선,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수행, 주요 산업별 인력수급 테마 전망 분석(소프트웨어, 의료, 물류, 제조업 등), 광역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분석(충남)

* 인력수급전망포럼 5회 실시 및 인력수급전망 자문위원회 1회 개최

- '17.12월: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국무회의 보고
- '18.3월: 「2016-2030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 국무회의 보고
- '18.1~12월: 2017~2027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 전망 수행·전망 모형 개선,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수행, 주요 산업별-직업별 인력수급 테마 전망 분석(최저임금, 도시형소공인, 화학 산업, ICT 산업 등), 광역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분석

* 인력수급전망포럼 5회 실시 및 인력수급전망 자문위원회 1회 개최

- '19.1~12월: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수행·전망 모형 개선,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수행, 주요 산업별-직업별 인력수급 테마 전망 분석(유통업, 자영업, 전문기술인적자원 등)

* 인력수급전망 포럼 5회 실시 및 인력수급전망 자문위원회 1회 개최, 4차 산업혁명 기술/고용 포럼 2회 실시 및 자문회의 1회 개최

- '19.1월, 7월: 주요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 발표
- '19.1~12월: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기획총괄협의회 보고 및 장관 보고
- '20.1~12월: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신재생 에너지 인력수요 전망 실시

■ 고용동향분석

- '09~11년: 고용이슈, 고용과 직업연구, 3대 행정DB(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통계연보 발간
- '12~'16년: 고용통계 자료집 발간(고용보험, 워크넷, 직업능력개발), 정기 분석 보고서 발간(고용이슈, 고용동향 브리프,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고용동향 포럼 개최
- '17년: 고용통계 자료집 발간(고용보험, 워크넷, 직업능력개발), 정기 분석 보고서 발간(고용이슈, 고용동향 브리프,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고용동향 포럼 개최(고용동향 포럼, 산업고용 포럼), 심층 분석* 보고서 발간
 - * 심층 분석 : 여성 노동시장 취약계층 분석,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의 노동시장 성과, 재직자 직업훈련 성과분석; 근로자 개인의 성과를 중심으로, 2017 KEIS 노동시장 분석, 2017 통계로 본 노동동향
- '18년: 고용통계 자료집 발간(고용보험, 워크넷, 직업능력개발), 정기 분석 보고서 발간(고용동향 브리프,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고용동향 포럼 개최(고용동향

포럼, 산업고용 세미나), 심층 분석* 보고서 발간

* 심층 분석 : 행정 DB를 활용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 모니터링,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산업별 임금근로자의 연령 구성 유형 및 특성 분석,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산업별 고용지속성 분석, 2018 KEIS 노동시장 분석)

- '19년: 고용통계 자료집 발간(고용보험, 워크넷, 직업능력개발), 정기 분석 보고서 발간(고용동향 브리프,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고용동향 포럼 개최(산업고용 세미나, 지역고용 세미나), 심층 분석* 보고서 발간

* 심층 분석 : 고용동향 이슈분석,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일용직 노동시장 분석, 고용행정 DB를 활용한 신규 고용지표 개발 및 적용 가능성 검토, 지역 노동시장 분석: 최근 고용동향 이슈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통계를 이용한 노동이동 분석, 행정통계를 활용한 고용동향 모니터링)

- '20년: 고용통계 자료집 발간(고용보험, 워크넷, 직업능력개발), 정기 분석 보고서 발간(고용동향 브리프,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고용동향 포럼 개최(지역산업고용 세미나), 심층 분석* 보고서 발간

* 심층 분석 : 2019~2020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고용동향 분석,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임금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사업체 노동수요 변화 분석, 디지털 노동과 노동시장 이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년 ~ 계속

- 사업규모

< 고용동향조사 >

· 청년패널 13,722명 조사('07년 원표본 10,206명, '15년 추가표본 3,516명)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년 신규 대졸자 18,178명 조사

· 고령화연구패널 10,319명 조사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 중장기인력수급 총량전망, 광역 지역별 전망, 테마·직업 산업 전망, 단기일자리전망

< 고용동향분석 >

· 고용동향브리프(연10회), 지역산업고용세미나(연5회), 지역고용동향브리프(연4회), 고용보험통계/구인구직통계연보(연1회) 및 월보(연12회), HRD-net 통계연보(연1회), 고용동향 심층분석 보고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정책입안자, 구직자 등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고용정보원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 위탁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동향조사>

연간 사업계획 수립	고 용 노 동 부 한국고용정보원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재배정	고 용 노 동 부
↓	
조사표 설계(고용노동부 정책 수요 반영)	한국고용정보원
↓	
조사 실사업체 선정	한국고용정보원
↓	
조사지침 수립 및 면접원 교육	한국고용정보원
↓	
조사 실시	조사 실사업체
↓	
조사 결과 확인 및 클리닝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 용 노 동 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고용동향분석>

연간 사업계획 수립	고 용 노 동 부 한국고용정보원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재배정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

<빅데이터센터 구축 및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연간 사업계획 수립	고 용 노 동 부 한국고용정보원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재배정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

사 업 명						
(11)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	796,338	467,600	467,600	△328,738	△42.3

4. 사업목적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 위축으로 인해 기업이 신규채용을 지연·중단하고 있어, 일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할 우려
- 이에, 청년층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설하여 경제위기 시에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추진경위) 제5차 비상경제회의(4.22),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5.20)를 통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추진 결정·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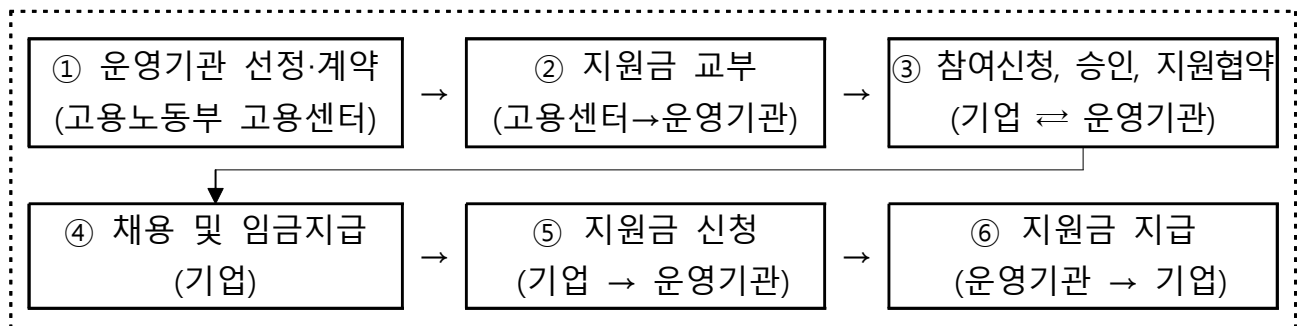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12월(한시)
- 사업규모 : 청년층 5만명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민간위탁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위탁운영기관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사업 집행절차

- 민간운영기관을 활용한 기업 참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사 업 명
(12) 청년내일채움공제(104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4	301
명칭	고용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청년내일채움공제	598,726	778,704	778,704	908,102	908,102	129,398	16.6

4. 사업목적

-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여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공동으로 적립**
-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는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적자원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우수 청년인재 채용과 장기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 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등

② 추진경위

- ('16.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정부합동)**」의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를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결정
- ('16.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 시행
 - * 청년취업인턴제 예산·물량 활용하여 총 1만명 지원(인턴제 수료자 1만명)
- ('17.1월) 「**청년내일채움공제**」 본 사업 시행(참여경로 다양화 및 물량확대)
 - * 총 지원인원 5만명(취업인턴 경로 3만+취성패 경로 1.7만+일학습훈련 경로 0.3만)
- ('18.3.15.) 「**청년일자리대책 (정부합동)**」의 주요 내용으로 '**3년형**' 신설 결정
 - * (2년형) 청년 300 + 정부 900(일반회계) + 기업 400(고보기금) = 2년 1,600만원
 - (3년형) 청년 600 + 정부 1,800(일반회계) + 기업 600(고보기금) = 3년 3,000만원
- ('18.6.1.)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규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 ~ 계속
- 사업규모 : '21년 신규 10만명(2년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사업 추진방향 마련 및 시행 공고
↓		
② 운영기관 선정	고용센터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③ 청년 및 기업 선발	운영기관	청년 및 기업의 청년공제 참여신청 및 자격요건 심사 후 선발
↓		
④ 청약 신청 및 승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청년 및 기업의 청약 신청, 승인
↓		
⑤ 공제부금 적립, 지원	고용센터	청년 및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의 가상계좌 적립, 기업 지원)
↓		
⑥ 공제부금 운용 및 만기공제금 지급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공제부금 관리, 운용 만기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급

사 업 명						
(13) 고용영향평가사업(104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5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영향평가사업	고용영향평가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고용영향평가사업	4,622	4,157	4,157	4,157	4,157	-	-

4. 사업목적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2.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1년~
- 추진배경
 - 성장의 낙수효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한 지원 정책 필요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 주요 정부 정책을 고용의 시각에서 분석·평가할 필요성 증대(국정과제 16-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대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영향평가센터(공모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책 고용영향평가
 - 대상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실시(평가센터 주관, 6개월 내외) → 평가결과 협의(고용부-부처) → 개선권고 → 개선현황 점검(고용부)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 가이드라인 마련(고용부) →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평가센터→각 부처) → 예산 편성시 활용(기재부 등)

사 업 명						
(14) 한국잡월드운영(1049-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9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청년직업정보제공	한국잡월드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한국잡월드운영	21,180	25,449	25,449	26,962	26,962	1,513	5.9

4. 사업목적

- 청소년 등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근로의식을 정립하고,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합한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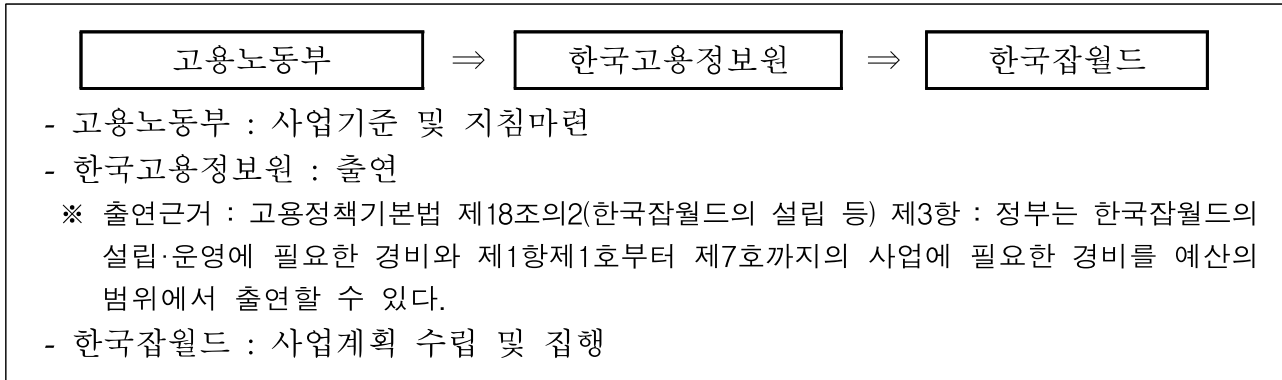
- '03. 9. 2. 대통령 지시(제38회 국무회의)
 -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 뿐 아니라 청소년의 직업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지시
- '03. 9.22. 「청년실업현황과 대책」 대통령 보고
 - * 건전한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능력배양을 위한 종합프로그램 완성과 이를 위한 Job World(종합직업체험관) 설립 검토
- '04. 1. 7. Job World(종합직업체험관) 설립계획 수립
- '04. 2.~7.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설립타당성 인정
- '05.11.29. 대통령 지시(대학특성화 추진방안 보고회의)
 - * 상설 직업체험관을 만들어 어린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세계를 구체적으로 체험토록 하여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 '10. 2. 2. “제3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간합동협의회”에서 교과부·고용부·복지부 공동 “진로교육종합계획” 보고
 - * 5월을 ‘진로의 달’로 지정하여 체험위주로 운영하고, 교사용 진로교육 매뉴얼에 한국잡월드 이용법 등을 포함
- '11. 7.25. 한국잡월드 설립 근거가 포함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 '11.11. 3. 한국잡월드 법인 설립
- '12. 5.15. 한국잡월드 개관(시범운영 5.1.~5.13.)
- '12.10.29. 기타공공기관 지정
- '18. 6. 7. 누적 방문객 500만명 돌파
- '19.12.31. 누적 방문객 611만명 돌파(공연 등 부대시설 이용객 포함)
- '20. 5.31. 숙련기술체험관 증축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간 약 70만명의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진로프로그램 및 직업정보 등 제공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잡월드
- 사업 수혜자 : 어린이(만 4세이상) 및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잡월드	수지차보전 (‘20년 예산기준 64.2%)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5) 해외취업지원 (105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1	304
명칭	고용창출 및 훈련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해외취업지원	57,601	59,574	52,582	52,625	52,625	43	0.08

4. 사업목적

-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수, 알선,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을 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촉진사업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② 추진경위

- '98. 3 “실업문제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공공해외 취업업무 재개 추진
- '99.10 공공해외 취업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담당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 시달(국조실)
- '06.3.22 해외취업촉진을 위하여 해외취업연수사업 확대기로 결정
(제4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
- '08.3월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사업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
- '08.4.29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종합계획 확정
- '10.6.8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실무협의회)
- '11.1.11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해외취업활성화 정부·민간 합동회의)
- '12.2.24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방안(제11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13.3.29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추진(국정과제)
- '13.10.24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4.7.23. 교육부와 '세계로 프로젝트' 통합 MOU 체결('15년~)
- '14.11.21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5.11.27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6.12.14 '청년 해외취업 성과 및 계획'(경제관계장관회의)
- '18.3.15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발표(청년일자리대책)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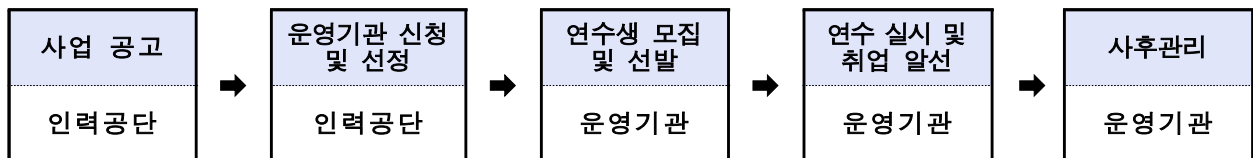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 ~ 계속
- 사업규모 : '21년 K-Move스쿨 3,032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3,960명, 민간해외취업
알선지원 690명 등 7,682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18세~34세 미만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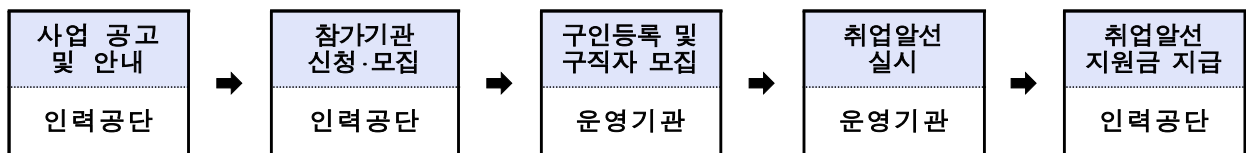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인력공단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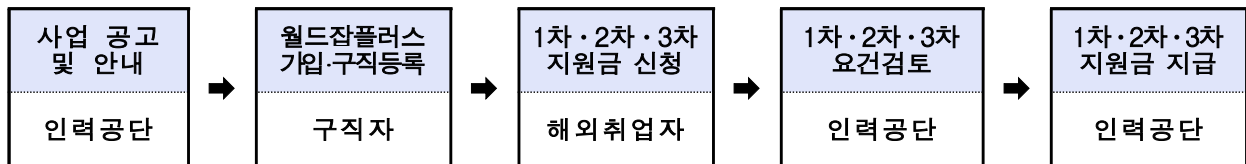
○ K-Move스쿨



○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 업 명						
(16)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1	305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청년진로및취업지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25,978	26,041	26,041	27,517	21,931	△4,110	△15.8

4. 사업목적

-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중소기업탐방)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청년이 실제 궁금해 하는 기업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입직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①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대학 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6년부터 추진된 대학 취업·진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탐방·청년친화강소기업 등 청년층 일경험 사업 등이 '17년부터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에 포함되어 추진

- '15.10월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15.7월)」 일환으로 대학일자리센터 도입(상명대 등 21개교)
- '17년 '강소기업탐방',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을 통합하여 '중소기업탐방' 도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대학일자리센터 100개교, 중소기업탐방 1만명,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위탁
- 사업시행주체 : 대학,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만 15~ 34세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일자리센터 지원대학	50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
중소기업탐방 운영기관	100	중소기업탐방 시행지침

7. 사업 집행 절차

- **대학일자리센터:** 참여기관 선정(고용부) → 약정체결(대학·고용센터) → 사업시행(대학) → 성과평가(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 ※ 고용센터의 지도·점검(연 2회), 지원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컨설팅·모니터링(연 2~3회)
- **중소기업탐방:** 운영기관 선정(고용부) → 약정체결(운영기관·고용센터) → 사업시행(운영기관) → 성과평가(고용부)
 - ※ 사업시행 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의 정기(연 2회) 및 수시 지도·점검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확충(고용부) → 위탁기관 선정(고용부) → 대상기업 조사·심사(위탁기관)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홍보 및 모니터링(고용부·위탁기관)

사 업 명						
(17)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105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1	306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청년진로및취업지원(일반)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직업정보제공 및직업지도	4,311	4,234	4,234	3,811	3,811	△423	△10.0

4.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신직업 발굴 및 육성지원, 창직 등에 관한 연구 수행
- 청소년 및 성인들의 진로 및 경력설계, 진로상담, 구인.구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직업정보(한국직업정보시스템,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등) 개발.보급
- 찾아가는 진로직업박람회, 신직업 동영상 확대 등 대국민 직업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이해를 도모하고, 일자리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진로와 직업선택을 지원
- 청년들의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및 내실화 지원

- 청년, 40대, 신중년 등 국민의 전 생애적 진로 설계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 심리 검사, 진로상담 매뉴얼,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기반을 구축
- VR·신직업 동영상 확대 등 대국민 직업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이해를 도모하고, 일자리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진로와 직업선택을 지원
- 청년들의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및 내실화 지원
- 현장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기능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 실행 지원 기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항 제1호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 시장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능력·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적합한 근로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정보의 제공, 상담·조언, 그 밖에 구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 검사 등 직업지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법 제14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 직업안정법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7조(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 등을 표준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3(직업지도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기관에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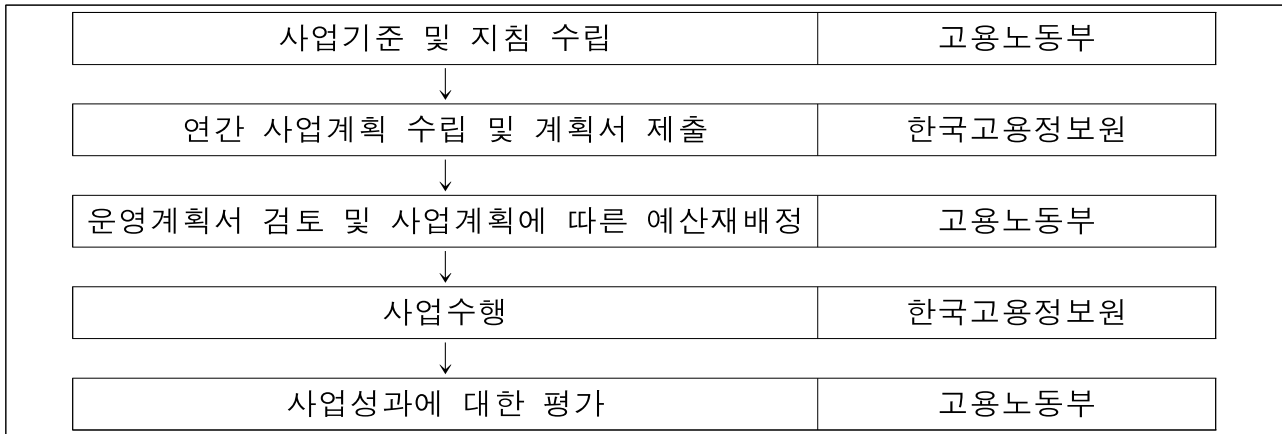
- '79 : 효율적인 취업알선, 직업지도 및 직업연구를 위해 국립중앙직업안정소 설립
- '95 : 고용보험전산망관리 등 기능변화에 따라 중앙고용정보관리소로 개편
- '00 : 인적자원개발회의('00.9월)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채택된 『인력수급 전망 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세부사업의 하나
- '01 : '99.5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여 고용정보 운영사업 지정
- '05 : '05년까지 일반회계였으나, '06년도부터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
- '06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독립·출연기관화→한국고용정보원으로 출범
- '13 : VIP 지시('13.3월) 및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중 1-2 “新직업, 新산업 발굴 육성”으로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발굴 및 확산 지원 사업 추진
- '14 : 제1차 신직업 44개(3개 중장기검토과제)선정 및 국무회의 상정(3.18)
- '15 : 신직업 발굴 연구결과('14, '15) 및 창조경제추진단 제안 직업 토대 제2차 정부육성신직업 발표(12.14)
- '16 : 제2차 신직업 발표 결과 VIP 서면보고, 제3차 정부육성신직업 발표(12.28), 청년고용지원팀 신설('16.4월)하여 정부 청년고용대책('16.4) 수립 및 실행 지원
- '17 : 41개 대학일자리센터 평가 실시('17.4월), ‘청년고용정책참여단’ 3, 4기 운영
- '18 : 신서비스 분야 중심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 발표, 경제활력 대책회의(기재부, 12.26), 진로취업지원 선도대학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집 제작('18.12)
- '19 : 서울시 청년허브와 MOU체결 및 청년정책포럼 개최('19.12)
- '20 : 청년기본법 제정('20.2), 105개 대학일자리센터 평가('20.2) 및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참여 대학 5개교 추가 선정, 지자체 청년센터 12개소 컨설팅·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직업·미래직업 연구 강화, 직업연구 강화 및 직업정보 제공 활성화, 직업심리검사 개발·보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청소년, 실업자, 구인업체, 진로지도담당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고용정보원	100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8) 내일배움카드(일반)(106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5	30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내일배움카드(일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내일배움카드 (일반)	74,500	97,404	106,069	214,504	214,504	108,435	102.2

4. 사업목적

-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비 등 지원
- ☐ (일반고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 (일반직종 훈련)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LMS 임대지원)** 집체훈련의 원격방식 전환 유도를 위해 훈련기관에 LMS 임대지원

* LMS: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 **(생계비 지원)** 가족 부양에 따른 생계부담이 큰 40대 실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및 제18조

② 추진경위

- '98년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취·창업훈련 및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취업유망분야 훈련 실시
- '08.9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도입

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공급자(정부, 훈련기관) 중심 • 고용센터 훈련상담 미실시 • 배정물량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모집·실시		• 수요자(실업자, 기업) 중심 • 고용센터 훈련상담 실시 •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 스스로 적합훈련과정 선택·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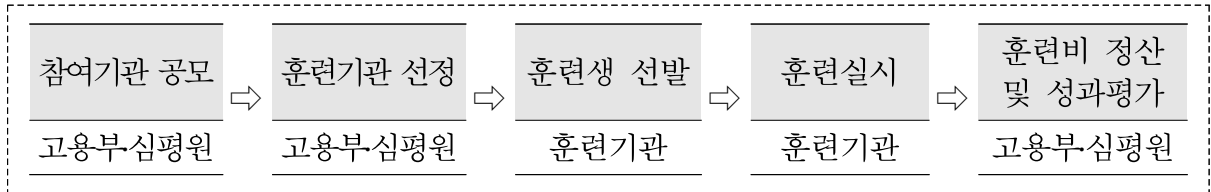
- '11년 계좌제 훈련 전면 실시(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폐지)
-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사업 간 통·폐합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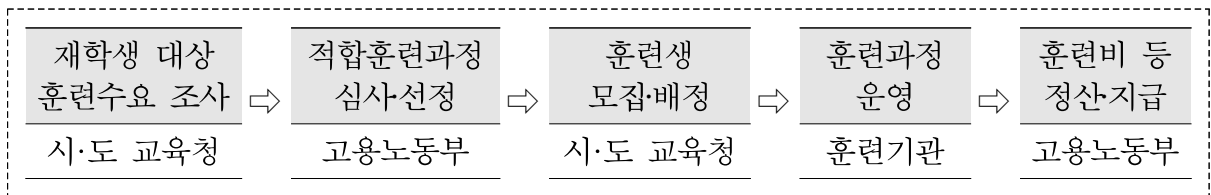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 수혜자 : 15세 이상의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인 고3재학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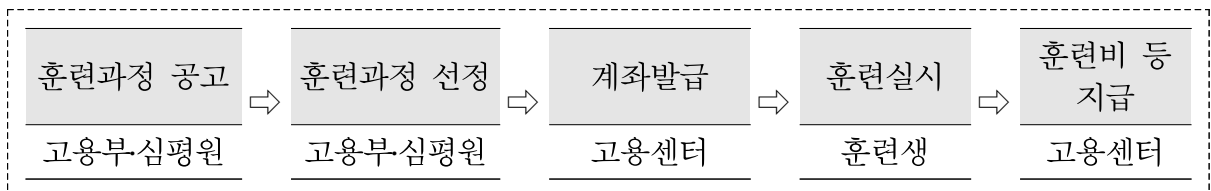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비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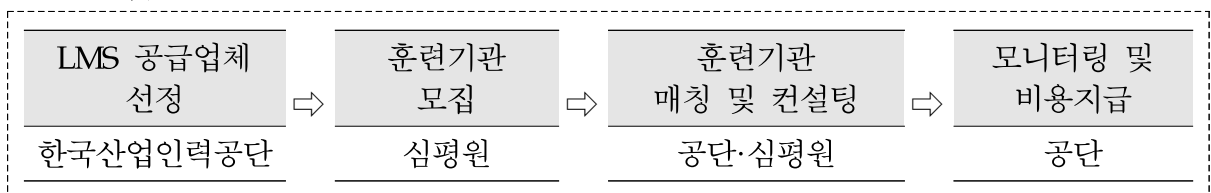
- **(일반고 특화훈련)**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비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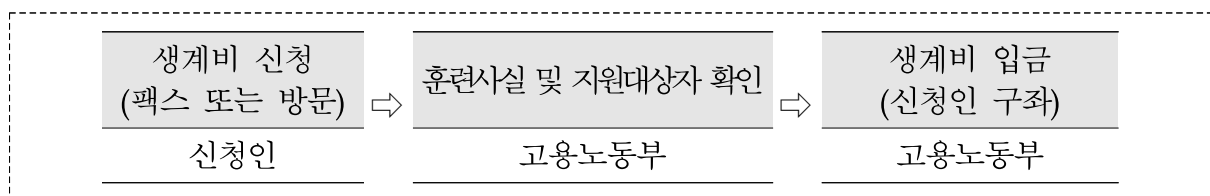
- **(일반직종 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직무능력개발 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등 지원



- **(LMS 임대지원)** LMS 공급업체와 훈련기관(스마트융합훈련 또는 디지털 신기술 훈련 운영 희망기관)을 모집하고, 공급업체와 기관 간 매칭·컨설팅을 실시한 후 비용 지급



- **(생계비 지원)** 40대 이상 실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생계비 지원



사 업 명						
(19)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1065-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5	315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1,280	840	840	840	840	-	-

4. 사업목적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졸인력양성을 위해 선정된 특성화고 8개 학과를 대상으로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 컨설팅, 교원연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계의 변화로 미래유망분야에서의 고졸인력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등직업교육단계에서부터 이를 대비할 필요
 - 그럼에도 미래유망분야에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에 '18년부터 고용부-교육부 합동으로 특성화고-훈련기관의 고졸인력 육성체계 구축 지원
 - * 18~'19년: 학과 개편 지원, '20~'22년: 학과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국정과제 19-4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대통령 공약 4-20(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특성화고 6개교 8개 학과 학생 약 160여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특성화고 8개 학과	100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서 심사 ↓	고용노동부	○ 당해연도 보조사업자 사업심사 및 보완
② 보조금 교부(1차) ↓	고용노동부	○ 교부신청 예산 1차 지원
③ 학과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	특성화고	○ 미래유망분야 학과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④ 지도점검 및 2차 보조금 교부 ↓	고용노동부	○ 지도점검 및 2차 예산교부
⑤ 운영지원 및 모니 터링	한국기술 교육대	○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⑥ 정산 등	고용노동부	○ 보조금 정산 등

사 업 명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1066-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6	307
명칭	고용창출 및 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26,772	132,567	136,310	131,506	134,142	△2,168	△1.6

4. 사업목적

- 지식기반사회의 기술발달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협력, 국가자격
검정 시행, 외국인고용관리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배분을 도모함
으로써 국가경제발전 및 고용안정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설립목적) 및 제6조(사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 4(국제협력증진) 및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 세무사법 등 30개 관계법령(권한의 위임·위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및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추진경위

- '81년 국가기간산업분야의 기능인력양성 및 직업안정 활성화 방안 실천 계획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설립('82년 3월 설립)
- '95년부터 한·독 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한 이래 '00년 한·중, '04년 한·베, '09년 한·UAE, '11년 한·몽골 교류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 '03.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입·출국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실시
- '05년부터 ILO(국제노동기구)와 매년 협력사업(Skills Network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회의(APEC Working Group 회의)등에 참석
- '06. 3월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에 따라 기능대학으로 19개 직업전문학교 이관 및 한국고용정보원 별도 법인 설립
- '08. 1월 국가자격통합관리 및 외국인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른 신규 및 추가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직 재설계
- '10. 12월 제1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협의
- '11. 6월 외국인고용허가제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
- '11. 11월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마련, 베트남 및 태국의 귀국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11.12월)
- '12. 7월 성실근로자 재입국취업 특례제도 시행(취업활동 기간 만료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숙련인력의 계속 사용 지원)
- '12. 9월 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13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의결
- '12. 12월 제3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13~'17) 확정
- '14. 5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2년 ~ 계속
- 사업규모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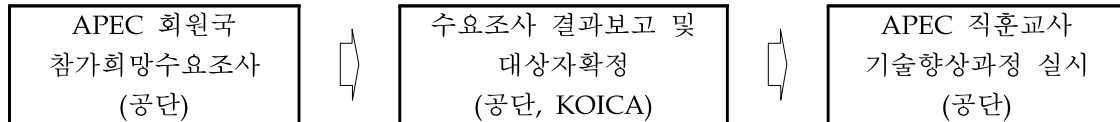
- (자격검정사업) 기술자격 494종목 3,412천명, 전문자격 37종목 595천명
- (외국인고용관리) 입국지원 60.2천명, 취업교육 92천명, EPS센터 16개국 운영, 한국어 능력시험 375천명, 기능수준평가 60천명, 자발적 귀환프로그램 운영
- (HRD확산 및 역량강화) 일자리, 능력중심채용 등 정부정책, 공단 사업 정보서비스 제공, HRD직무·미래지향 역량 향상, HRD교육센터 건립
- (국제교류협력) 기술교류 3개국 43명, 국제행사 3회 95명, World-skills 홍보관 운영, 개발도상국 기능경기대회 관리자 초청연수 2개국 10명
- (경상운영비) 직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통 경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기업과 근로자, 입직자, 학생 등 전 국민 및 외국인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인력공단	52.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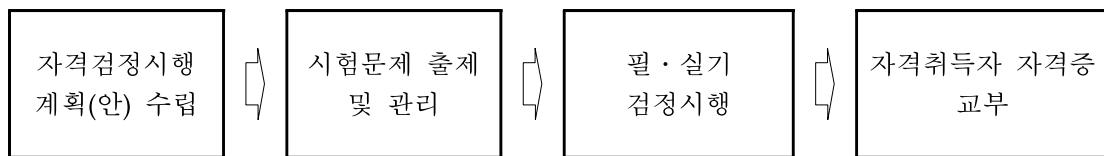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 사업기준 및 지침 마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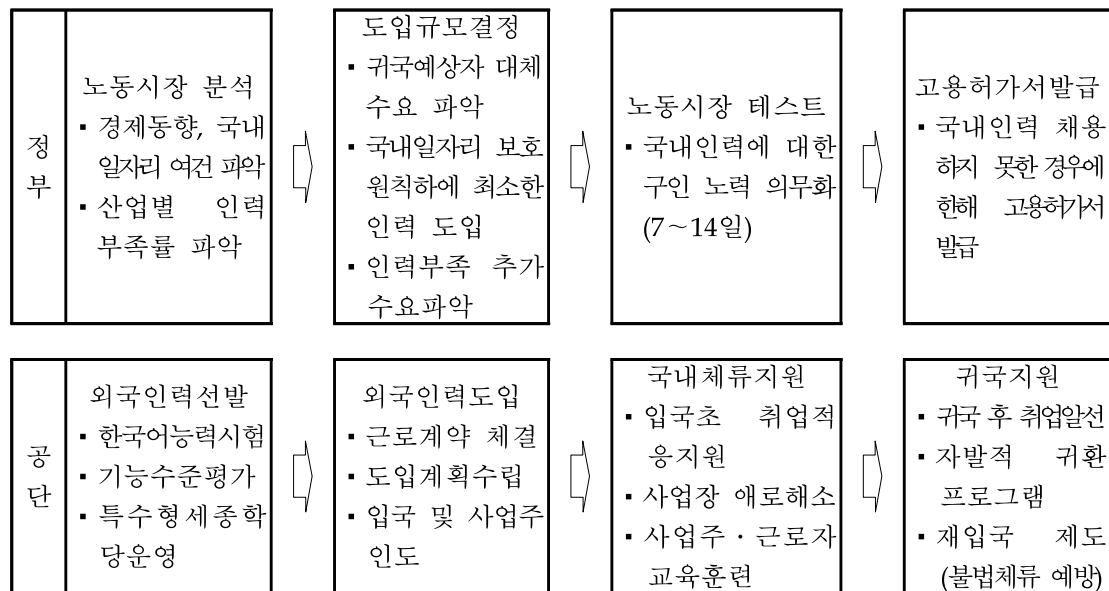
- 국제교류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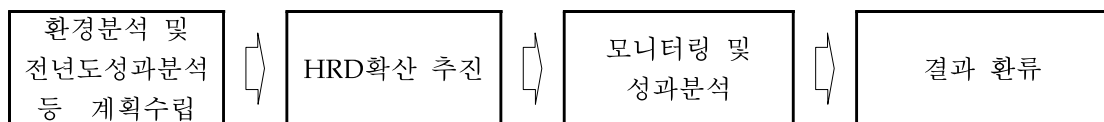
- 자격검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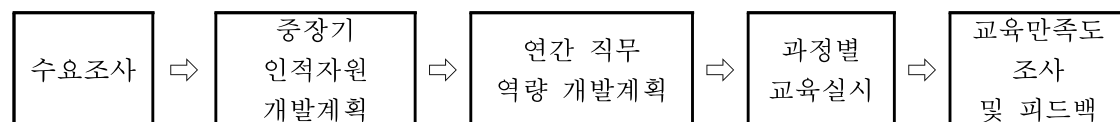
- 외국인고용관리사업



- HRD확산



- HRD역량강화



사 업 명						
(21)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1066-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6	316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	37,988	27,014	26,911	22,201	22,201	△4,710	△17.5

4. 사업목적

- 능력개발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HRD 콘텐츠 제공을 통하여 취약계층(청년구직자·여성·장애인·준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전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시장수요에 적합한 국가 HRD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

능력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편찬과 보급사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7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인정·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자원·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교육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보급 사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의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자격기본법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개선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직업방송 제작 및 운영
 - EBS 용역 방송('02.2월~'05.8월)
 - job TV 송출('05.9월~'06.2월)

- 직업방송연구용역 및 콘텐츠 개발('06.2월~12월)
- '한국경제TV'에 직업프로그램 제작 송출('07.8월~'09.6월)
- 직업방송 전문채널 사업자 등록('09.9월)
- 한국직업방송 개국 및 24시간 송출 시작('10.1월)
- 한국직업방송 위탁방송사업자로 한국경제TV와 계약('09.7~'16.02) 체결
- 한국직업방송 위탁방송사업자로 연합뉴스TV와 계약('16.3~'18.12) 체결
- 한국직업방송 위탁방송사업자로 연합뉴스TV와 계약('19.4~'21.12) 체결
- 한국직업방송 '11년, '13~'20년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 선정
- 한국직업방송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14, 방송통신위원회)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 '01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직무능력표준 개발에 착수,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 국가정책조정회의('10.5.7)에서 NCS 효율화 관련 조정결과, 공단이 NCS 개발 전담기관으로 결정→ NCS 개발 및 활용·확산 수행
 - 산업현장 전문가 참여로 만든 1001개 NCS 확정·고시('19.7)
-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및 확산**
 -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에 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계획 발표('11.9.2)
 - 「핵심직무역량 평가기법 개발」 추진계획 수립('12.3.14)
 -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열린고용 강화방안」에 평가모델 개발·보급계획 발표('12.7.13)
 -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13년)
- **국제성인능력측정프로젝트참여**
 - 제107차 OECD/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 정례회의시 노동부의 국제 성인 능력프로젝트(PIAAC) 참여를 요청받음('05.11월)
 - PIAAC 1주기 사업 수행('08~'17) :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PIAAC 자료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내 확산 활동 및 2주기 연구 개발 작업 진행 등
 - PIAAC 2주기 사업 수행('18~'27) : 예비조사('20)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18~'19), 예비조사 실시 및 본조사('22) 준비('20~'21)
- **HRD네트워크 운영**
 - 직업능력지식포털(portal.hrd.go.kr) 공식 개통, 서비스 개시('10.9월)
 - 기업학습지원시스템(학습조직화 시스템)(bizhrd.net) 개통('12.1월)
 - 기업학습네트워크 운영, 일학습병행제 대표포털 구축, 사이트 통칭을 『기업일학습』으로 명명('14.9월)
 -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기업학습네트워크』 개편('15.1월)
 - HRD콘텐츠네트워크 운영(www.hrdbank.net)으로 사업 명칭 변경('18.1월)
 - 능력개발 전문가 인력풀 시스템 도입 및 청년취업아카데미 통합 등 직업능력

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19.12월)

- 직업능력의 달 및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홈페이지 통합 구축('20.7월)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 '03년 원격훈련 모니터링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 '04~현재 고용노동부 및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사업 수행
- '11년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정, 모니터링 업무 실시 근거 확립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집체·원격훈련 모니터링 수행기관으로 결정
- '12년 집체·원격훈련 모니터링 전담 조직으로 “훈련품질향상센터” 설립하여 정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분석 및 연구, 원격훈련 부정·부실 관리 수행
- '13~'19년 원격훈련 부정감시 캡차(CAPTCHA) 인증 시스템, 훈련생 본인인증 시스템(OTP) 및 이상훈련 감지 시스템(FDS) 도입하여 부정훈련 예방 기능 강화

- HRD 기업전문가포럼

- '06년부터 『정부의 평생능력개발정책』 등 지속적인 HRD포럼 개최를 통해 국내외 직업능력개발·고용·취업 등 HRD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관계 전문가가 심층토론을 함으로써 HRD 저변확산 및 나아갈 방향 제시

- HRD 컨퍼런스 개최

-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전략 및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부주관의 정보교류 행사가 부족함에 따라 '07년 시범실시 이후 매년 참관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최대 행사로 발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참관인원	3,633명	4,920명	3,927명	3,973명	5,031명	5,347명	5,828명	6,280명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 우수교육훈련프로그램('08년 개최), 일학습병행제('14년 개최), 블라인드 채용('18년 개최) 등 3개 사업의 경진대회를 직업능력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통합 개최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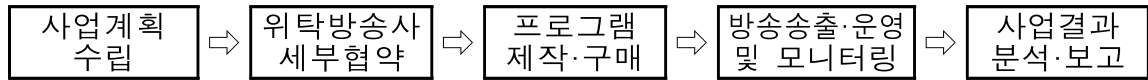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HRD담당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인력공단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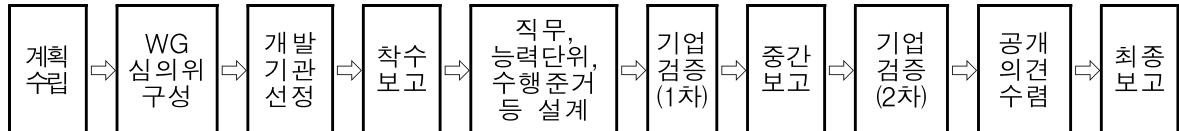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직업방송 제작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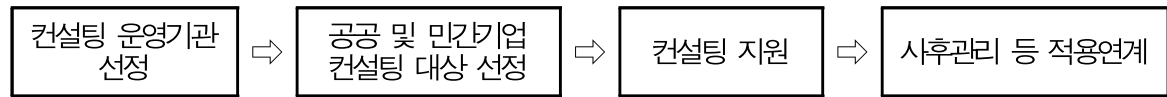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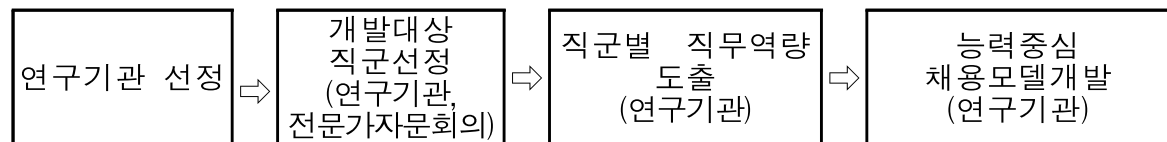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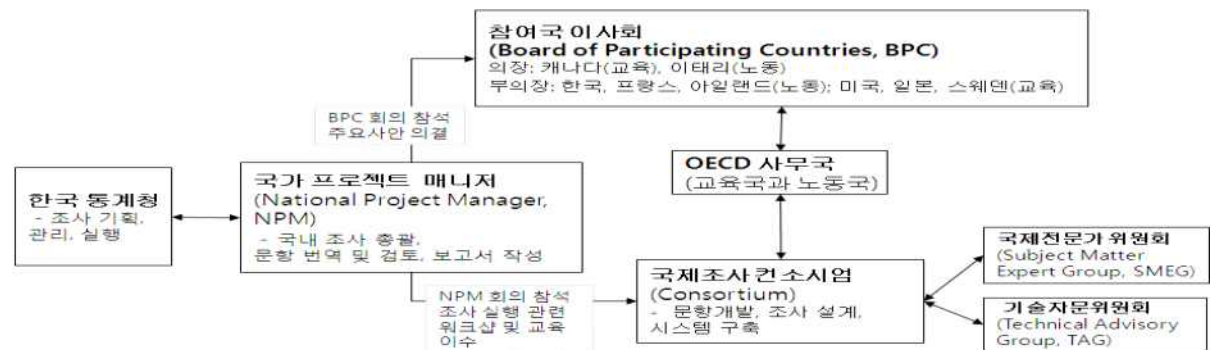
- NCS기업활용 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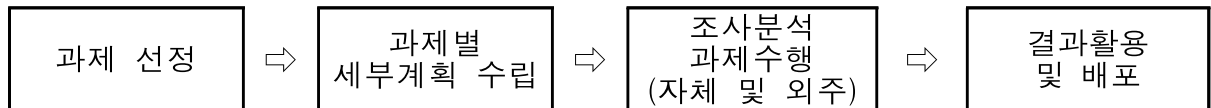
○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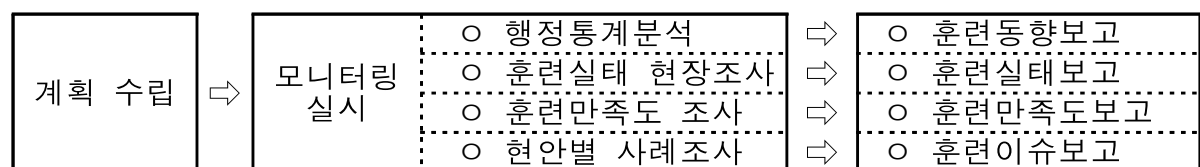
○ 국제성인능력측정프로젝트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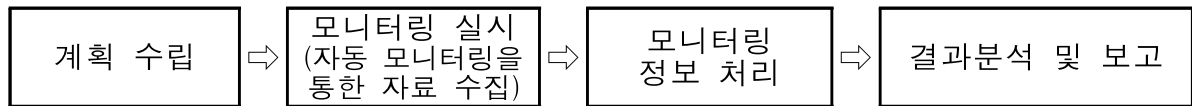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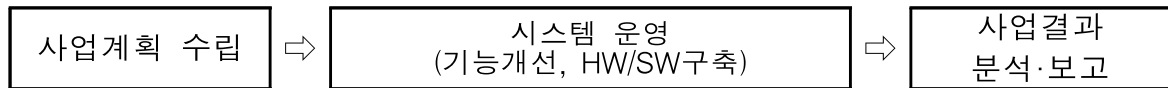
○ 집체훈련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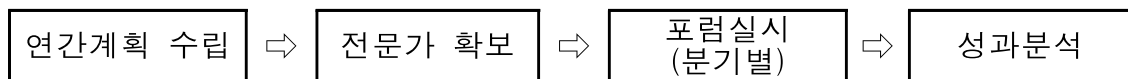
○ 원격훈련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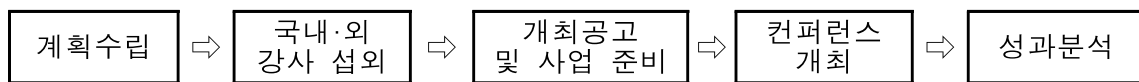
○ HRD네트워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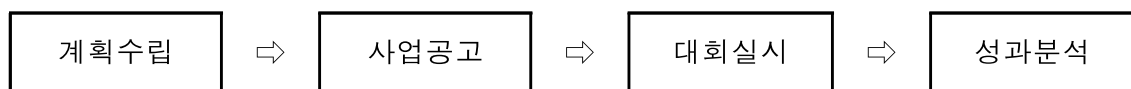
○ HRD 기업 전문가 포럼



○ HRD 컨퍼런스 개최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사 업 명						
(22) 숙련기술장려사업(1066-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6	317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숙련기술장려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숙련기술 장려사업	29,156	24,381	21,881	27,951	24,289	2,408	11.0

4. 사업목적

- (숙련기술장려)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숙련기술자가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 조성
- (기능경기대회)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숙련기술자 발굴, 육성으로 기능인 및 청소년들에게 기능습득을 장려하여 제조업분야 청소년 기능인력 유입 유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숙련기술장려 사업 및 자격검정 사업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③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숙련기술장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82년
- 추진배경

- '82년 정부의 “기능인력양성 및 직업안정활성화방안”에 의해 인력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기능경기를 통한 기능의 저변확대와 기능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
- '91년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시작
- '95년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동법에 의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99년 기능장려기금 폐지로 동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10년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개정함('11.1.1 시행)
- '12년 정부의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발표
- '18년 정부의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발표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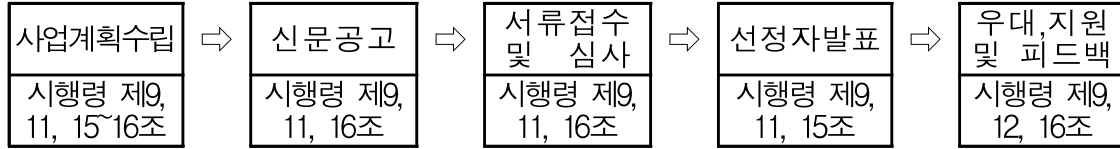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전문계고교생, 산업체 근로자 등 일반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인력공단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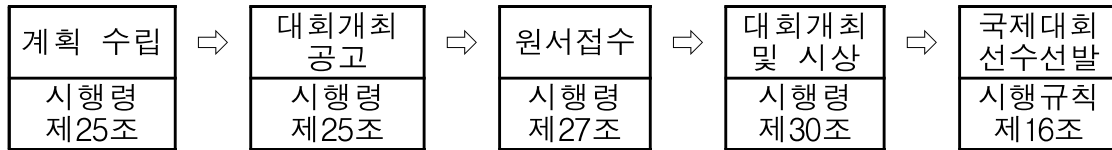
○ 숙련기술장려(우수숙련기술인 선정·우대사업)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9 ~ 16조



○ 기능경기대회 개최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5, 27, 30조, 시행규칙 제16조



사 업 명						
(23)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1066-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6	50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4,058	5,172	5,172	6,474	6,474	1,302	25.2

4. 사업목적

- 능력개발·능력평가·외국인고용지원·해외취업지원·국제교류협력·숙련기술진흥 등 기관사업의 적시적기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목적) 및 제6조(사업)

-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② 추진경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국가정보화기본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13~'17년과 '18~'2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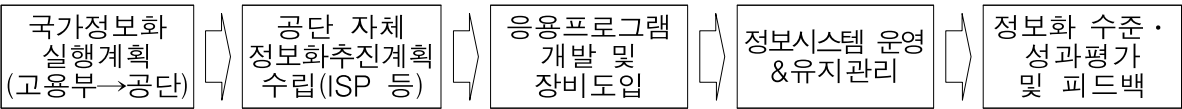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계속
- 사업규모
 - Q-Net(국가자격·전문자격·과정평가형 등), 국가직무능력표준, 월드잡+(해외취업·연수·인턴·봉사), 마이스터넷(숙련기술·기능경기, 고용허가제통합서비스(한국어 능력시험·취업교육·귀국지원), 한국직업방송·HRD콘텐츠(기업·일학습) 등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및 핵심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연간 방문자수 65백만명(모바일 포함), 개인정보 56백만건 이상을 취급하는 14개 대국민 웹사이트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수험자(근로자, 학생, 주부 등), 해외취업 희망자 등 전국민 및 외국인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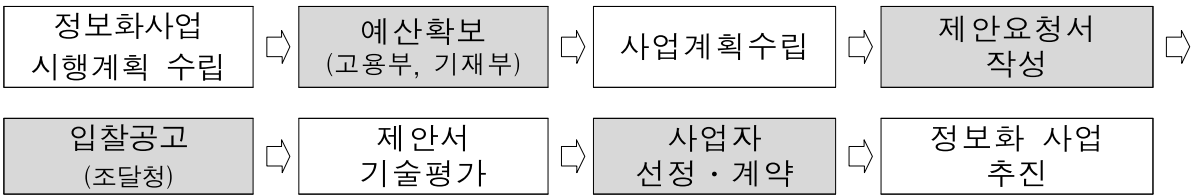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인력공단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 : 정보화사업 기준 및 지침 마련(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집행



- 공단 정보화사업 구축 추진절차



사 업 명						
(24)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1067-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7	308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한국폴리텍대학출연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171,431	198,362	194,348	219,447	220,270	25,922	13.3

4. 사업목적

-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필요한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훈련인프라 구축과 경상경비 지원
- (인력개발사업) 교직원 직무교육을 위한 능력개발사업 및 대학 안내, 다기능기술자, 전공심화과정 및 학과개편 장비비 등 훈련사업비
- (시설확충사업) 학생회관 건립(2개소), 노후창호교체, 오수처리, 노후시설보강, 석면 천장재 교체사업 등
- (정보전산화사업) 41개소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각종 업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 관리, IDC 위탁 운영비 등

- (지방세소급분 지원) 비학위훈련시설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 (경상경비) 청사관리비 등 기관운영비, 41개 캠퍼스의 공과금 등 운영비, 기술계 대안 학교인 다솜고등학교 훈련운영비 및 교직원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98년 2.5.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분리하여 학교법인 기능대학 설립·운영
- 2006년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계획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훈련기관(19개 직업전문학교) 통합,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1개 대학, 40개 캠퍼스로 운영
- 2012년 3월 다문화가정의 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다솜학교를 설립·운영
- 2016년 고학력 청년실업자 훈련을 위한 도심형 직업훈련시설인 분당융합기술교육원 개원
- 2020년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개원, 로봇캠퍼스(영천) 설립인가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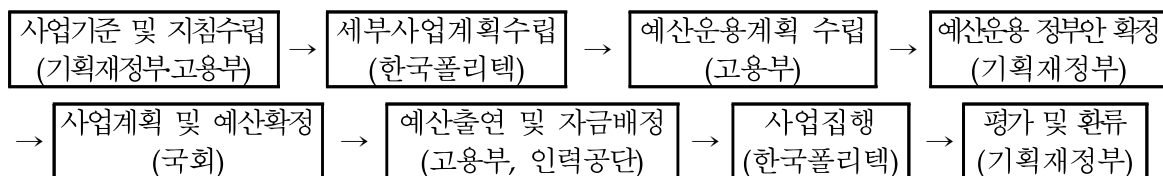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사업규모 : 8개 한국폴리텍대학(35개 캠퍼스), 4교육원, 1인재원, 1고교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사업 수혜자 :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 재직근로자, 미취업자, 중소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83.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제48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 실시하고, 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사 업 명						
(25)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1067-7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7	75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한국폴리텍대학출연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19,969	23,538	21,497	26,821	26,821	5,324	24.8

4. 사업목적

- 국가기간산업·기술발전에 필요한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에 필요한 공학관과 기숙사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충하고 건물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70년대 직업훈련시설로 설립된 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승격, 학과·정원 증가 등으로 교육훈련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05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설확보 추진
 - 2005·2006·2007·2016년도 사업의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지급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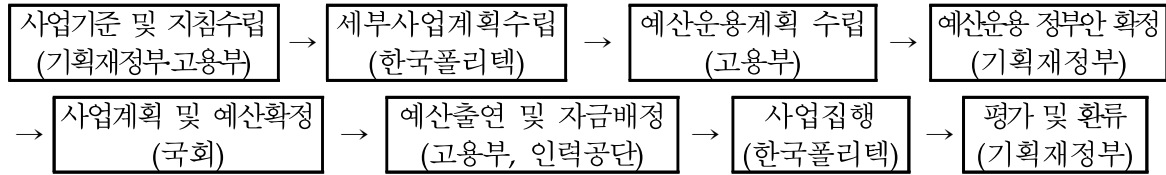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08년~계속
- 사업규모 : 2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사업 수혜자 : 한국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전문기술과정 재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4조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 실시하고, 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사 업 명						
(26)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1068-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8	30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55,007	53,358	54,814	79,783	79,783	24,969	45.6

4. 사업목적

-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 실습 운영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담당자(훈련교사, 실천공학기술자, 인력개발담당자) 양성
-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직업훈련교사 및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신기술개발 연수,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 등 훈련교원 양성 및 재교육 과정
-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 근로자, 구직자 등 전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온라인훈련콘텐츠 개발 및 보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제52조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9조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 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 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2(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 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 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실천공학기술자·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 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시행령)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 교법인을 포함한다)

(시행령)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 3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사업
2. 훈련매체,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3.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4. 조사·연구사업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26조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2. 3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훈련교사 양성 대학교 설립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촉진시책) 및 제11조 (훈련교사 양성시설 및 훈련과정)
- '95. 7월 고용보험법 제정 동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도 폐지
- '98년 직업훈련기본법 폐지하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사업을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하고 지원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 '99년 직업훈련촉진기금 폐지로 피보험자 등의 위탁·훈련사업비와 교육지원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기관운영비와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등
- '19년부터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개발(한기대) 사업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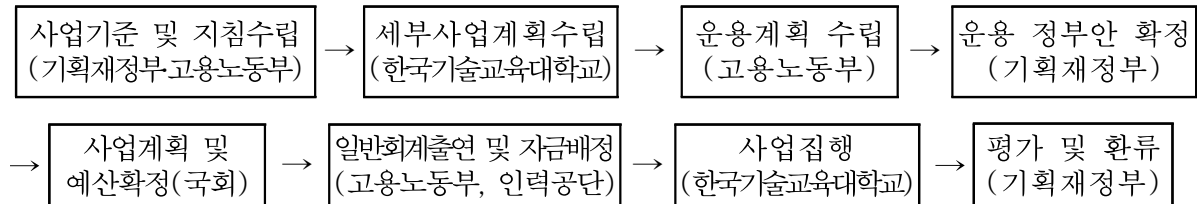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2년 ~ 계속
- 사업규모
 - ①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4,106명
 - ②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 62,681명
 - ③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 145,000명(순인원), 콘텐츠 320과정 개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부생(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대학원생(직업능력개발전문가),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기관, 재직 근로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학습지도능력을 갖춘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력개발담당자 양성사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실시하고, 재원은 정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사 업 명						
(27)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1068-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8	309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46,517	54,326	54,326	35,010	35,010	△19,316	△35.6

4. 사업목적

- (노후건축설비개수) 노후화된 건물 및 설비를 연차적으로 개·보수하여 건물 안전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사업
- (학생기숙사 건축) 학생생활관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이공계로 진학한 학생의 면학을 지원하기 위해 240명 수용규모의 학생 기숙사 신축
- (인문경영관 증축 및 리모델링) 개교 시 건설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단열성능 저하·외벽균열·석면천장·잦은 정전 발생. 건물 내구성·화재·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 (미래학습관 건립)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교원양성 인프라 구축

- (대학정보화사업) 학부·대학원생 교육·연구지원을 위한 전산사업비
- (연구학생지원비) 학부모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생장학금 지원
- (기관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 (자체수입) 학생 등록금, 이자수입 등의 자체수입과 전(전)년도 이월금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제52조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9조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 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 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2(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 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 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실천공학기술자·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 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시행령)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 법인을 포함한다)

(시행령)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 3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사업
2. 훈련매체,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3.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4. 조사·연구사업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26조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2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훈련교사 양성대학 설립
- '95년 고용보험법 제정 동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주의 직업훈련 의무제도 폐지
- '98년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훈련 촉진사업을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고 지원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 '99년 직업훈련촉진기금 폐지로 피보험자 등의 위탁 훈련사업비와 교육지원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기관운영비와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 '08년 한국노동교육원법 폐지 및 관련 직무교육 한기대로 이관
- '14년 온라인평생교육원 개원
- '15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설치
- '20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에 따른 기관분리('20.10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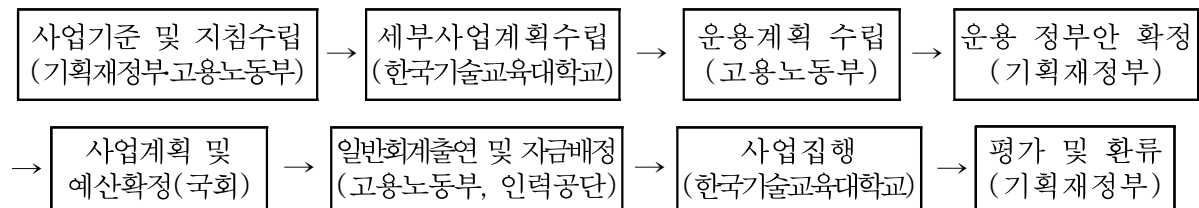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9년 이후 계속
- 사업규모 :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4,106명,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62,681명,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 145,000명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출연(수지차보전)
- 사업시행주체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부생(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대학원생(직업능력개발전문가),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기관, 재직 근로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수지차보전 (61.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학습지도능력을 갖춘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력개발담당자 양성사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실시하고, 재원은 정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사 업 명						
(28)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1068-7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8	75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3,335	3,995	3,995	3,336	3,336	△659	△16.5

4. 사업목적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공학관 및 기숙사)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충하고 건물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제52조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9조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2(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실천공학기술자·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시행령)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 법인을 포함한다)

(시행령)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 3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사업
2. 훈련매체,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3.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4. 조사·연구사업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26조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추진경위

- 실험실습 교과비중이 일반대학의 2배에 달하여 공학관 및 기숙사 시설이 상당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원 한계로 시설확충 지연
- 정부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노후된 교육훈련시설 조기 개선을 위하여 민간 투자사업 방식을 도입·부처별 사업시행
 - '08. 1~2: 실무위원회 구성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준비
 - '08. 6.10: 타당성 용역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검토
 - '08. 7.23: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08. 8.29: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P·Q심사서류 접수
 - '09. 1.2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0. 5.24: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 '10. 7.23: 실시계획승인신청
 - '10. 8.13: 건축허가 승인
 - '10.12.13: 실시계획 승인(고시)
 - '10.12.15: 공사착공
 - '12. 8월: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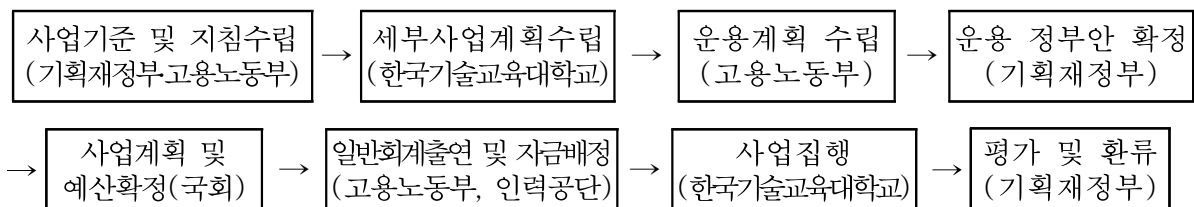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2032년
- 사업규모 : 공학관, 기숙사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사업 수혜자 :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직업능력개발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학습지도능력을 갖춘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력개발담당자 양성사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실시하고, 재원은 정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사 업 명						
(29)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1069-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9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655	786	786	747	366	420	△53.4

4. 사업목적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인력양성사업을 '11년부터 고용노동부로 통합·운영하면서 이전 교육대상이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통합 후 훈련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인력양성사업이 중단
- 감사원의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감사('17.2월) 지적사항*에 따라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18년~)

* **지적사항:**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훈련사업을 고용보험기금이 운영하는 훈련사업으로 통·폐합할 때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훈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으로 훈련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에 각 부처에서 실시한 인력양성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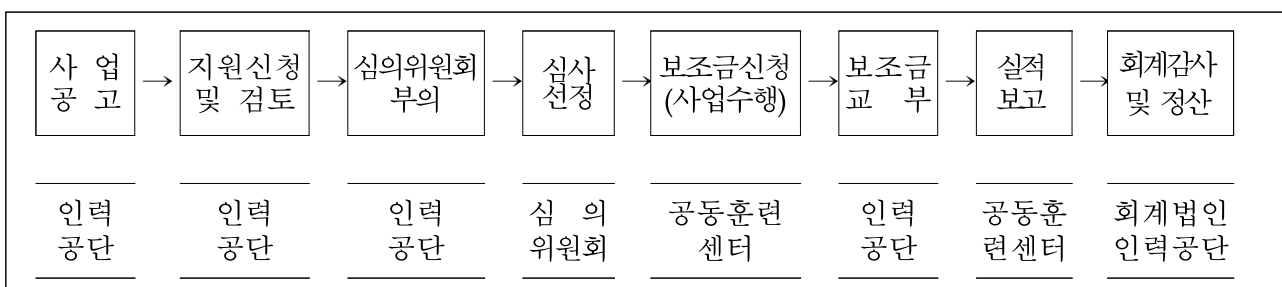
- ① 법령상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 ② 추진경위
 - 감사원의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감사('17.2월) 지적사항에 따라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8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1개 기관	10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고시) 제19조제4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0) 취약계층취업촉진(1070-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0	30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취약계층취업촉진	취약계층취업촉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취약계층취업촉진	8,401	12,425	12,425	11,804	11,654	△771	△6.2

4. 사업목적

- 민간기관을 활용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민간 고용 서비스 간 상호 연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지원 등)

-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의 지원)

-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의 지원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채용박람회 등의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7) '07년 노숙인을 시작으로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고령자, 가사·간병인, 건설인력, 유휴간호인력, 산업단지인력 등 민간취업알선사업 추진
- ('0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및 제17대 대통령 공약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국정과제로 운영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지정·운영: ('09년)72개→('12년)110개→('15년)147개→('16년)150개→('17년)155개(계획)
- ('13) 중장년·고령자 관련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중견센터를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로, 가사·간병인 지원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통합운영

* 고령자 지원사업은 '15년부터 별도사업(고령사회인력정책과 소관)들로 분리

- ('15) 건설공제회 사업 신설, 유휴간호 및 산업단지인력 지원 폐지

* 건설공제회사업 '15년 신설(17개)로 인해 고용센터 건설사업 축소('13년 20개→'17년 7개)

- ('16)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흡수·통합, '민간고용 서비스활성화(자율시정, 신고포상금 등)' 사업이 동 사업에 편입*

* 일반회계인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사업은 고용서비스우수인증기관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 문제로 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15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세부내역이 변경되어 '16년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

- ('18) 경력단절여성,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은 별도사업으로 분리

- ('19) 고용보험기금(~18년)에서 일반회계로 사업 이관

- ('20) 노숙인 취업지원은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사업'과 중복으로 폐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사업규모 : 11,654백만원('21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100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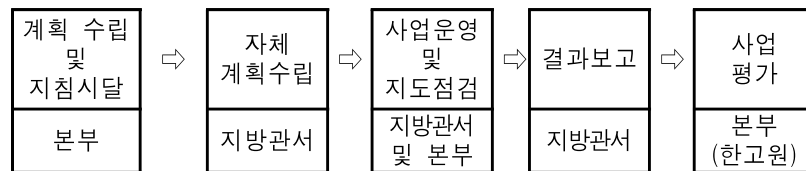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지침: 연도별 '취약계층취업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업 집행
- 사업 추진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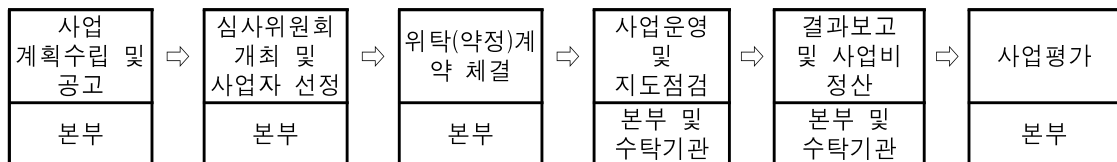
-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심리안정지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채용박람회 등 위탁운영)



-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직접운영)



-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자율시정, 실태조사 등 본부 추진 위탁사업)



-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사 업 명						
(31)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07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2	30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18,542	17,965	17,965	22,005	22,005	4,040	22.5

4. 사업목적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과정 심사, 훈련과정 및 훈련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훈련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정부지원훈련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기관건전성, 훈련성과 및 훈련실시 능력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훈련의 품질 및 성과 제고,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차단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심사)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기반 훈련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훈련의 내용, 훈련시설 장비, 훈련 교·강사의 적정성 등)를 통해 양질의 훈련서비스 제공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평가) 훈련기관이 훈련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훈련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훈련의 성과를 검증
- (중앙부처사업 평가)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의 유사·중복 및 타당성 검증을 통한 사업 효율화, 중앙부처 국기직종훈련 심사평가 등을 실시
- (스마트훈련 전환 지원)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훈련기관의 스마트융합훈련 인프라 구축과 훈련과정 개발 및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부정훈련 관리) 상습적·고의적 부정훈련기관의 훈련시장 퇴출을 위한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훈련품질 관리를 위해 직종별 전문가를 활용한 합동 지도·감독 실시
-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 통합 전산개발) 훈련과정 역량이 부족한 훈련기관의 훈련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기관 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 단계를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심사평가 절차 및 DB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편('21년 한시)

⇒ 평가위원 심사수당, 평가지원인력 인건비, 각종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소요비용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훈련과정 심사 및 평가, 스마트훈련 전환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9조
- 중앙부처사업 평가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9조
- 부정훈련 관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6조의2, 제58조

② 추진경위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99~) 및 훈련과정 심사('0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연구기관에 훈련기관·과정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 의뢰('99)
 - * 연구용역수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경제연구원, 한얼경제사회연구원('99)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얼경제사회연구원('0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01~'03)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04~'06) → 한국직업능력개발원('07~'14)
 - * 훈련과정 심사(내일배움카드제) 추진현황 : 계획수립('08. 7월) → 대구·광주지역 시범운영('08. 9월)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거규정 마련('08. 12월) → 전국단위 시범실시 및 적합훈련과정 공고('09. 3월) → '10년 이후 매년 적합훈련과정 공고('10~)
- 중앙부처사업 평가
 -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국경위)에서 중앙부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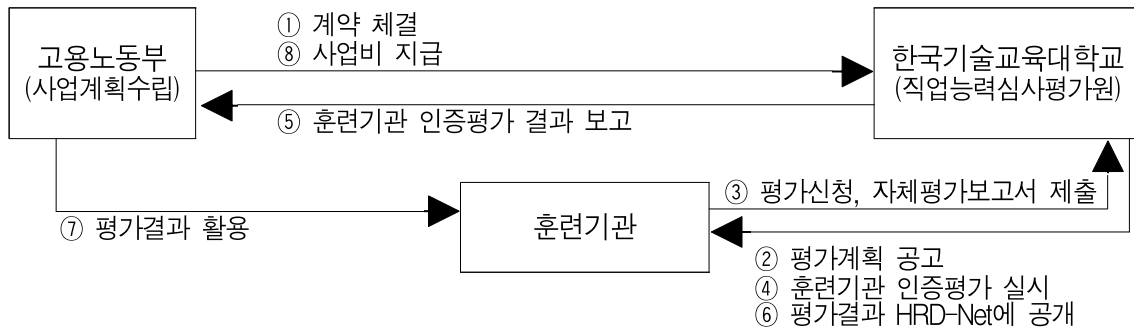
- 역량성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보고('09. 5. 27)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가('10~'14)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 통합
 -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14. 12월, 기획재정부) 결과에 따라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로 통합('15~)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평가<훈련이수자평가> 실시('15~)
- 스마트융합훈련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 맞춤형 컨설팅 실시('21~)
-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직종별 전문가를 활용한 합동 지도·감독 실시('21~)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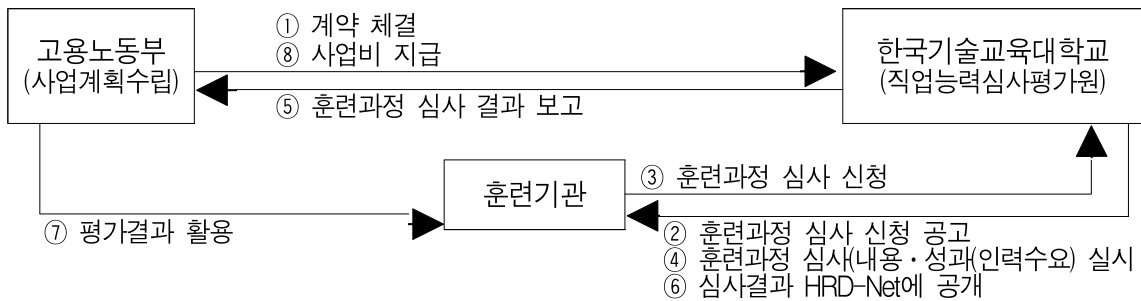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계속
- 사업규모 : '20년 기준 훈련기관 평가(3,850개소), 훈련과정 심사(74,135개), 훈련과정 평가(3,320개), 중앙부처사업 평가(210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훈련참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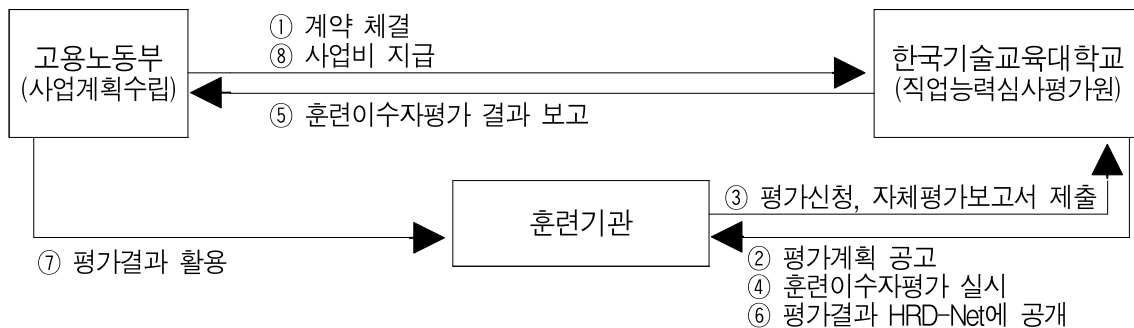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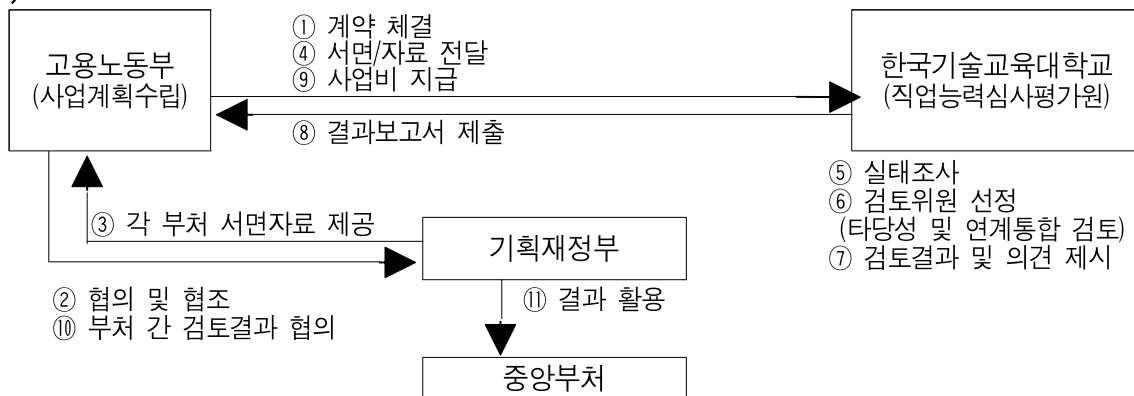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평가(훈련이수자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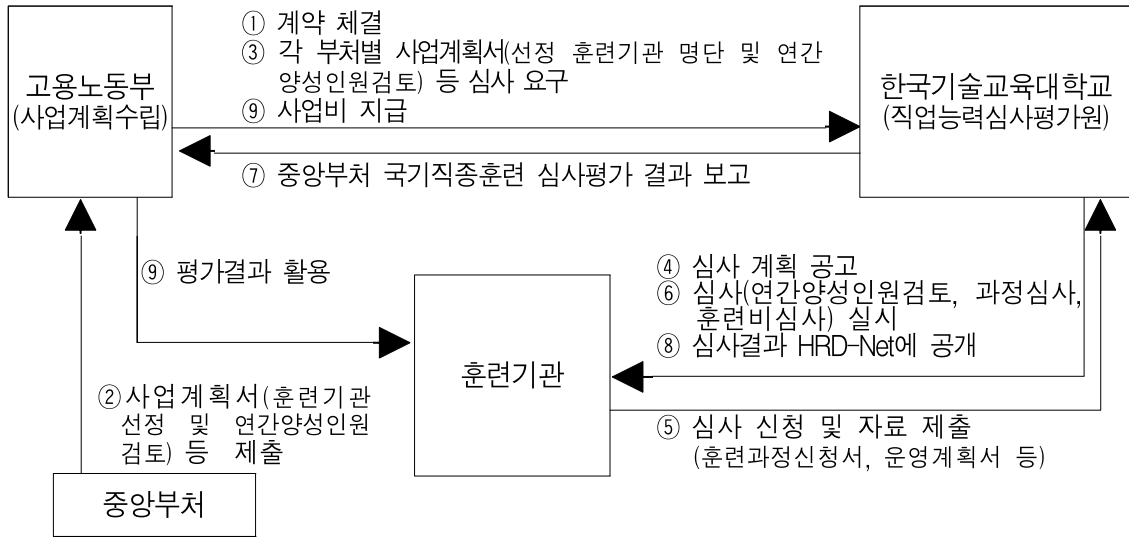


<중앙부처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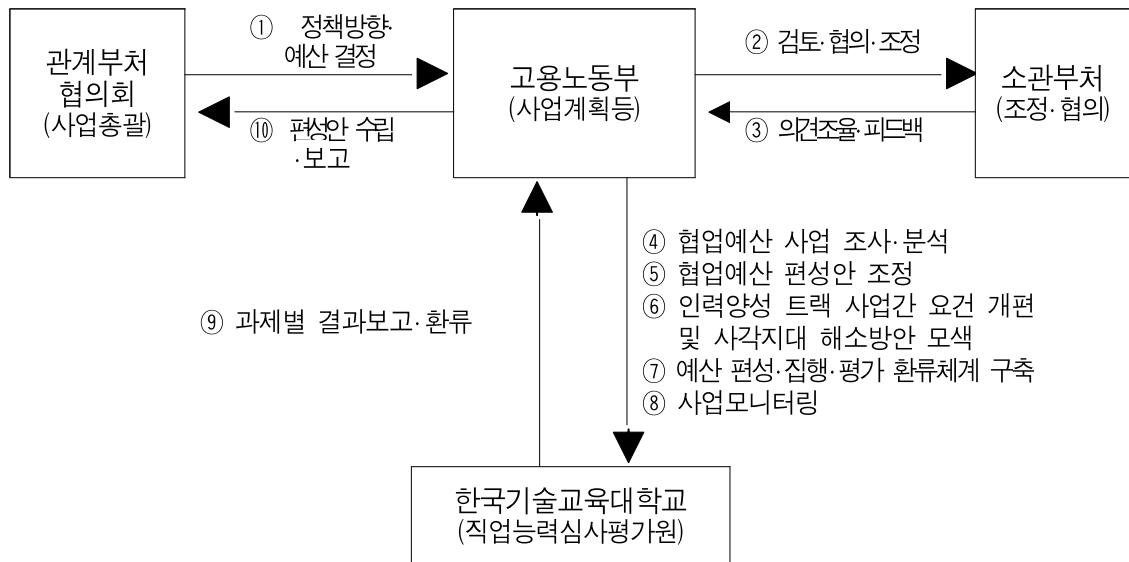
1) 중앙부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태조사 및 연계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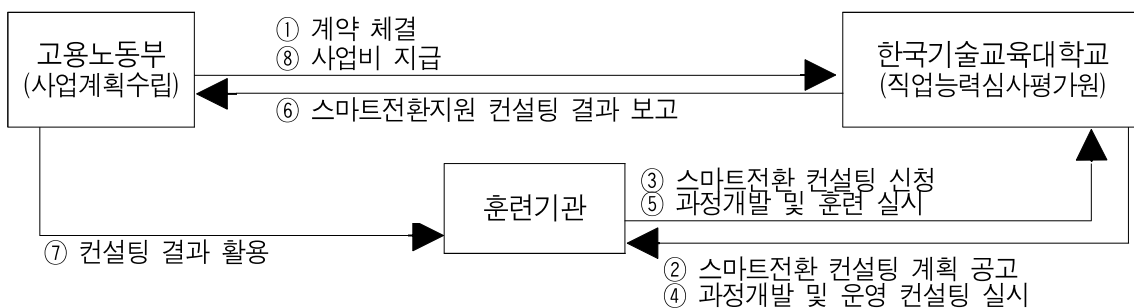
2)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3)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업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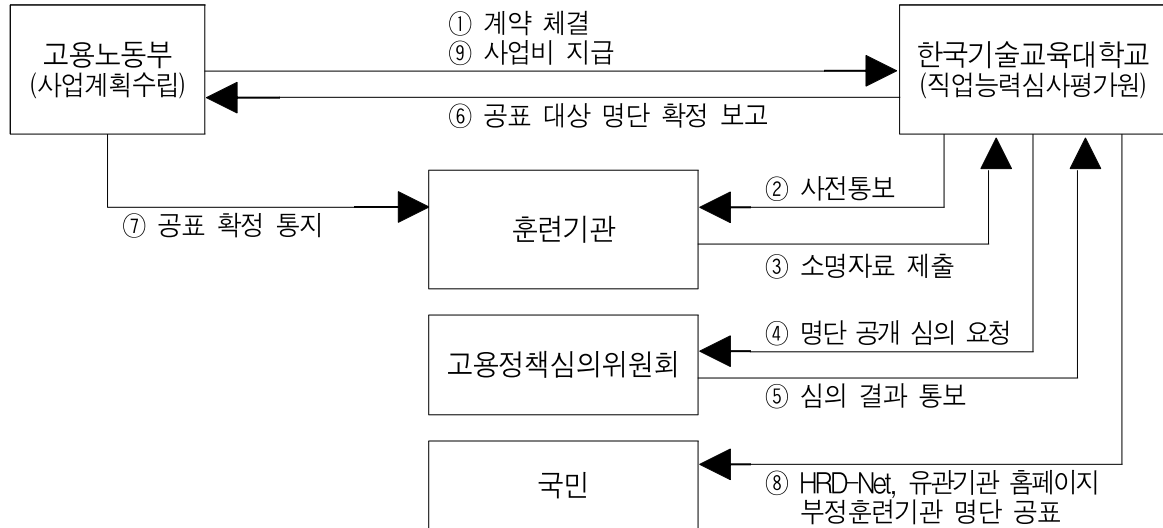


<스마트훈련 전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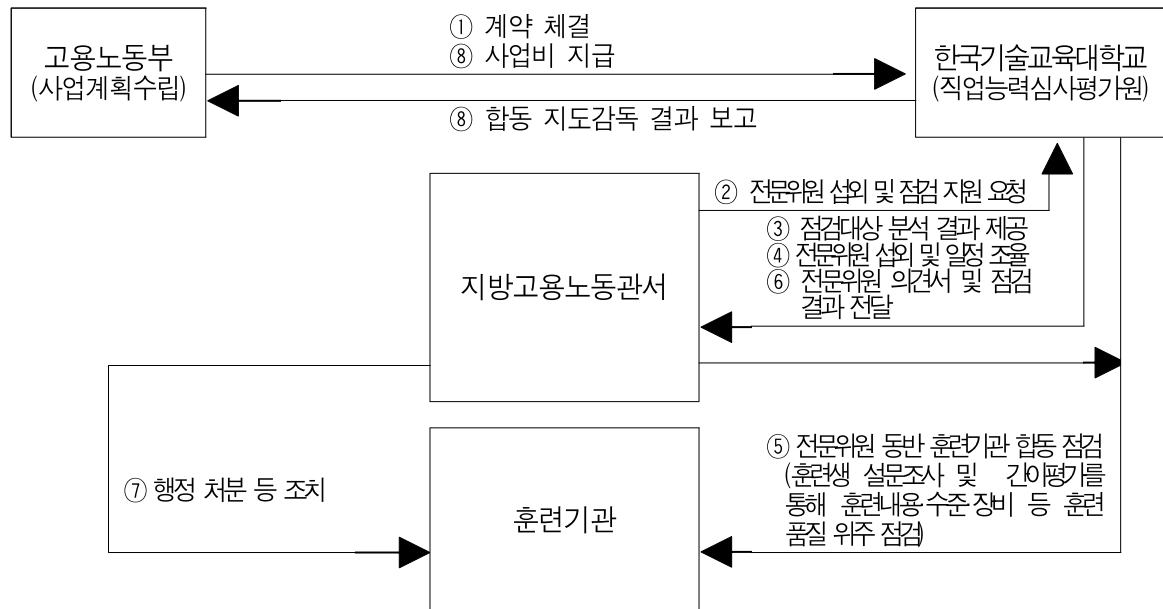


<부정훈련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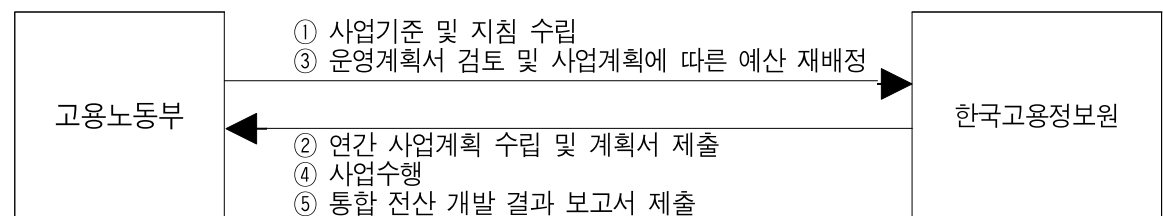
1)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2) 훈련기관 합동 지도·감독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 통합 전산개발>



사 업 명
(32)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107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5	302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5,549	9,177	9,177	11,184	11,184	2,007	21.9

4. 사업목적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은 일자리관련 핵심정보를 통합하는 정보플랫폼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산업지역별 고용전략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및 관리함
-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직무역량 중심의 지능화된 맞춤형 매칭 서비스 제공

- (온톨로지(데이터센터)센터 운영)구직자의 직무역량과 구인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방식(온톨로지)으로 구축된 직무 데이터 사전이 필요**. 이를 위해 직무데이터 사전 분석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 온톨로지센터」 운영
- (고용행정통합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종합적·맞춤형 원스톱 고용노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원화된 통합행정시스템 필요성 증대, 이에 시스템 운영체계의 표준화 및 One-ID 기반의 통합 권한관리 및 행정업무 프로세스 및 사용자 역할에 따른 개인화(맞춤 행정정보, 맞춤 메뉴) 서비스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일자리플랫폼을 구축,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쳐 상황별·고용형태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국민참여예산 149번)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관리)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구인·구직 정보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산업별·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위탁)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5조 6항

고용보험법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등)

⑥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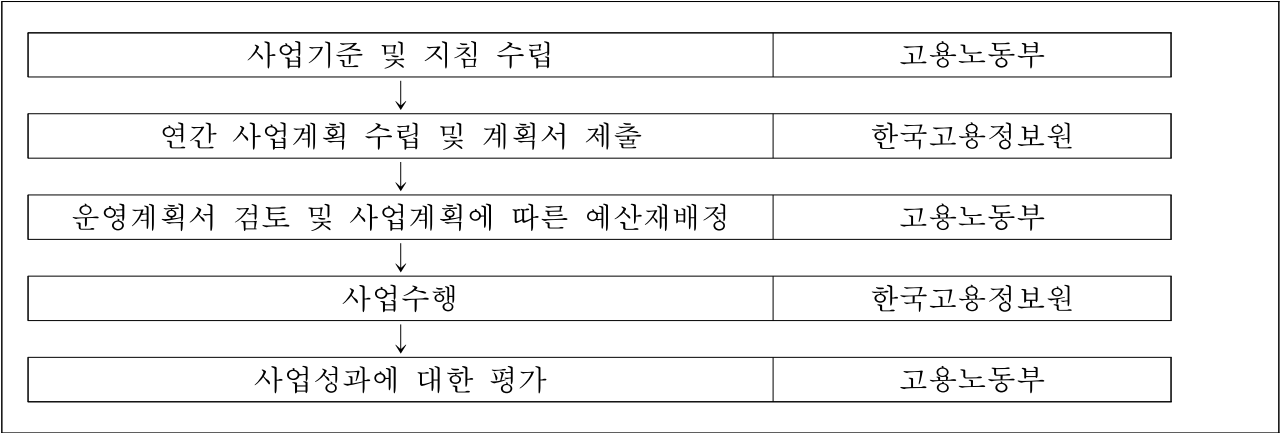
- '18.1 ~ : 머신러닝기반의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ISP 추
- 국가일자리플랫폼을 구축하여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쳐 상황별·고용형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국민참여예산 149번)
- '18.12: 기업사업장, 개인, 서비스에 대한 마스터 DB 구축 및 서비스 개시
- '19.3: 행정안전부 사전업무 협의
- '19.3: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ISP 완료
- '19.4: 구축사업자 선정을 한 조달청 계약의뢰
 - * 나라장터 사전가격 공개(4.23.~5.3.), 입찰 공고 게시(5.20.~7.2.), 제안서평가(7.5.)
- '19.7: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자 선정 및 본 사업 추진(7.29~)
 - * 계약체결(7.29.), 착수보고(8.27.), 사업기간('19.7.~'20.7.)
- '20.7: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고용·노동 통합 DW, 데이터공동 이용 시스템 구축 및 MDM 연계 확대)('20.7 ~ '21.7)
- '20.7: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매칭 시스템 구축('20.8~'2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 머신러닝 기반의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온톨로지(데이터사전) 센터 운영, 고용행정 통합 포털 시스템 구축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청소년, 실업자, 구인업체, 진로지도담당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고용정보원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7. 사업 집행 절차



사 업 명
(33)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1075-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5	303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	-	-	650	650	순증	

4. 사업목적

- (지원금 관리시스템 구축) 이용자(업무담당자 포함)들이 고용센터 또는 여러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 번의 접속으로 상담·훈련·알선 및 지원금 등 모든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일자리플랫폼을 구축,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쳐 상황별·고용형태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국민참여예산 149번)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구인·구직 정보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산업별·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위탁)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5조 6항

고용보험법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등)

⑥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② 추진경위

- '20년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직접알자리, 일모아시스템, 훈련사업 HRDNet) 통합 검색 시스템 기능 구현
- 코로나19 계기로 기존 고용서비스의 비대면 방식 전환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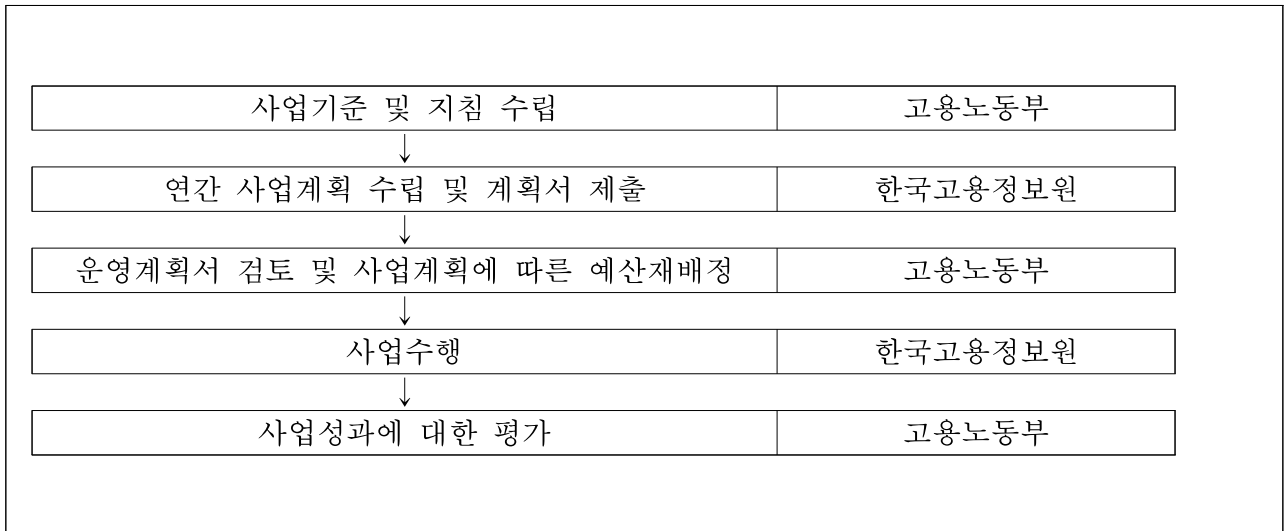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 사업규모 : 통합고용 민원 시스템 '고용24' 구축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청소년, 실업자, 구인업체, 진로지도담당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고용정보원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2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080	80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고용안전망 확충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1,341,880	1,149,011	1,208,611	810,347	810,347	△ 398,264	△ 32.9

4. 사업목적

- 소규모사업 저임금근로자 및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해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48조의2제8항 제2호(예술인의 고용보험 특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12. 7월~ 계속

- 추진배경

-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생
- 특히, 소규모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이들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시행('12.7월~)

- 추진경과

- 「2020 국가고용전략」에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검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논의 확산
- 제2차 서민대책점검회의(8.26)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기획단」 운영하기로 결정
- 비정규직 종합대책(9.9)에 포함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발표
-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가입확대추진기획단」 운영
 - * 총리실, 고용부, 복지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당정협의를 거쳐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 국민연금) 지원 대책 발표 ('11.9.9)
-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가입확대추진기획단」, 고용부내 「사회보험가입확대추진단회의」 운영 및 전담TF 구성 운영, 사회보험료 지원 세부계획과 가입확대방안 논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 국민연금법령 개정, 지원근거 마련('11.12월, '12.6월)
- 일부 자치단체 시범사업('12.2~6월)을 거쳐 7.1부터 본사업 시행
-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17년	'18년	'19년
지원 보수	월평균보수 35만원~125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130만원미만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140만원미만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지원 수준	▲ 35~105만원 미만: 1/2지원 ▲ 105~125만원 미만: 1/3지원	1~3월 ▲ 110만원 미만: 1/2 지원 ▲ 110~130만원 미만: 1/3 지원	4월~ ▲ 130만원 미만: 1/2 지원	1/2 지원		가가입자40% 신규:60%	가가입자40% 신규80~90%	

-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체계 구축 운영(전국48개 지역), 가입서비스요원 채용·배치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가입서비스」 지원 등 가입촉진활동 전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 개정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근거 마련(20.5월),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근거 마련 예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2.7월~계속
- 사업규모(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본예산)	579,265	520,227	520,200	893,179	1,34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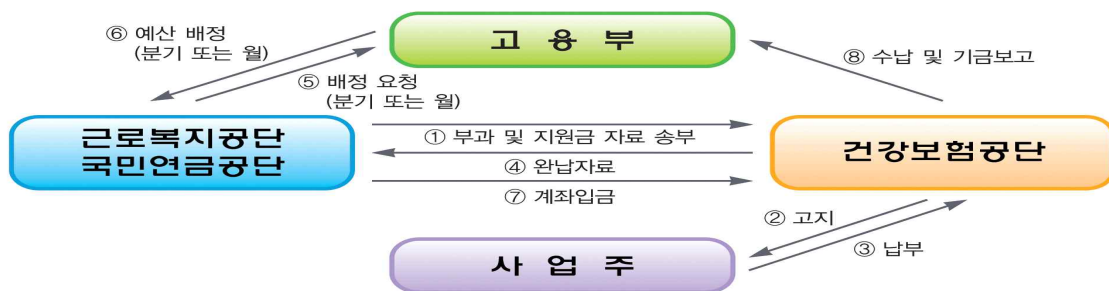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공단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수혜자 :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보수 220만원 미만, '21년 기준) 및 사업주

※ '21년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의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신규가입자위주로 사업내용 개선

7. 사업 집행절차

【 보험료 지원 절차(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보험료지원금 신청	공단 지원여부 확인/결정	공단 보험료 부과 고지 (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단, 지원금 표시)	사용자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공단 보험료 납부 확인	공단 국고보조금 지원



사 업 명						
(35) 실업크레딧지원(일반회계)(1232-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51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크레딧지원	실업크레딧지원(일반회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실업크레딧지원	21,560	27,712	27,712	32,292	32,292	4,580	16.5

4. 사업목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혜자 중 구직급여 수혜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려는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의 국민연금보험료 75%*를 지원,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각 지원, 자부담 25%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실업크레딧 도입 여·야·정 합의 ('14. 4월 ~ 5월)
- 「국민연금법」 개정('14. 12. 29.), '15. 7. 1. 시행
- 「고용보험법」 개정('16. 5. 29.), '16. 8. 1.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 8. 1. ~ 계속
- 사업규모 : ('20) 46.5만명, 277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중 실업크레딧 신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용센터>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및 신청 접수
 → <신청자> 실업크레딧 신청
 → <연금공단> 지원 여부 확인 및 결정, 보험료 부과
 → <신청자>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고용노동부> 보험료 지원 → <연금공단> 보험료 정산

사 업 명						
(36) 일자리안정자금지원 (12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0
명칭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916,500	2,164,716	2,661,087	1,296,564	1,296,564	△1,364,523	△51.3

4. 사업목적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보조금 관리법 제5조

- *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보조금 관리법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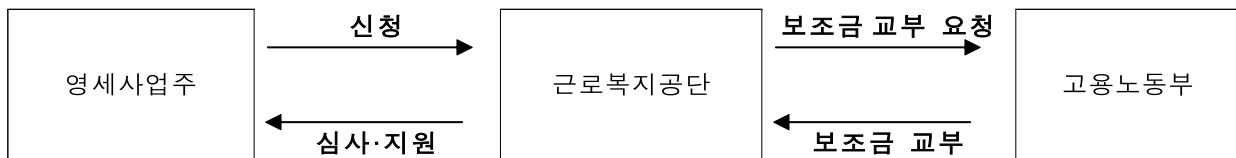
- '17.7.15.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의결
 - * '17년 최저임금(6,470원) 보다 16.4%(1,060원) 인상
- '17.7.16.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발표
- '17.8.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 * 사업수행기관(근로복지공단), 시행시기('18.1월부터 시행) 등
- '17.1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계획(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18.8.2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 사업주 부담경감을 위해 '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발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없음
- 사업기간: 2018년~(한시)
- 사업규모: '21년 지원인원 185만명
* '20년 지원인원 230만명
- 사업시행방법: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및 저임금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최저임금법 제24조, 보조금 관리법 제5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7)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23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0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	277,128	277,128	828,647	828,647	551,519	199

4. 사업목적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5.20.제정)

-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법 제6조·제7조)
-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법 제8조~제10조)
-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법 제12조~제15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법 제18조~제20조)
- 구직촉진수당등의 수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법 제27조·제28조)

② 추진경위: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17.5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도입 및 제도 기본 골격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18.8월, '19.3월)
-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마련, 제11차 일자리위원회 의결·발표('19.6.4)
-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19.9.16) →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 법률 부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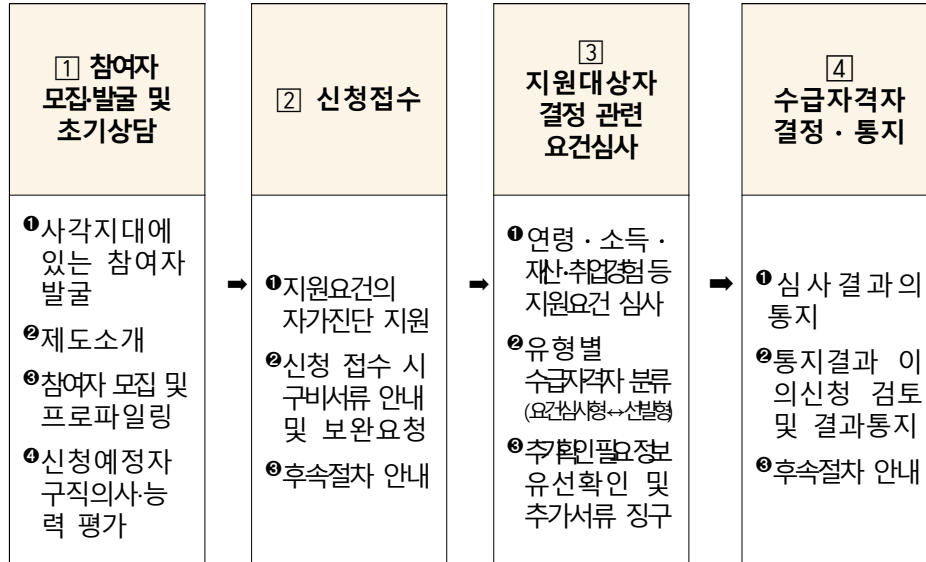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사업규모 : 40만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 사업 수혜자 :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 배제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이하인 사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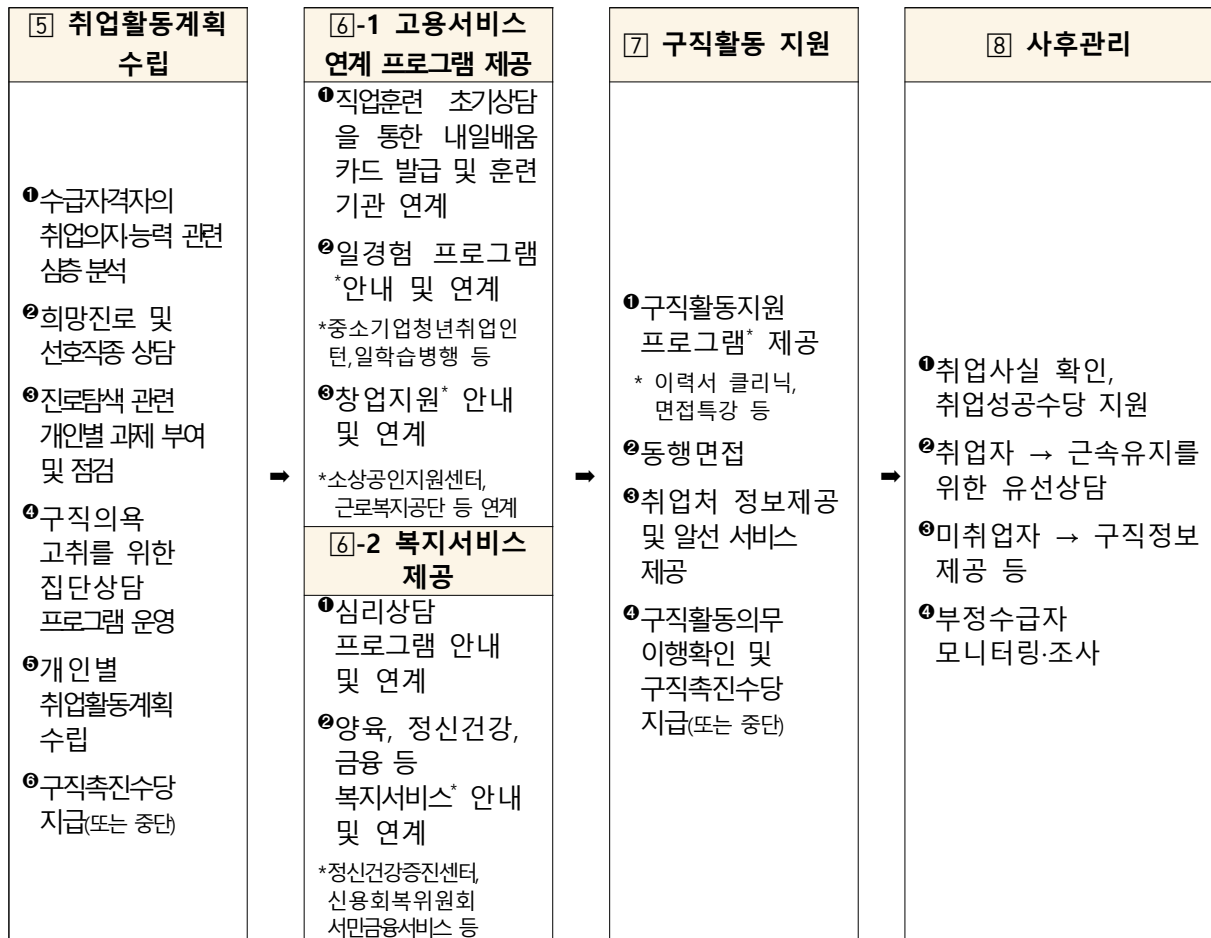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①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②취업지원서비스 단계로 구분

① (지원대상자 선정) 참여자 모집·발굴 및 신청자 초기상담 → 신청접수 → 수급자격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 수급자격자 선발·통지



②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복지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사후관리



사 업 명						
(38) 청년구직활동지원금(123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1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31,940	164,198	164,198	33,537	33,537	△130,661	△79.6

4. 사업목적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② 추진경위

- 1) 국정기획자문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확정·발표('17.7월)
- 2) 관계부처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19년 청년구직촉진수당 사업 확대 및 명칭 변경* 발표('18.3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정책 참여단 설문결과 반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
- 사업규모 : '20년 10만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지방관서(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 소득 120%이하, 생애 1회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① 지원금 신청 및 대상 선정(온라인)

- 구직활동계획서 등 온라인 서류 접수 → 고용센터 심사 후 졸업 후 이행 기간 등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② 지원 대상자 대상 예비 교육(오프라인-고용센터)

- (내용) 지원금의 목적,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청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방법,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 '20년 2월부터 코로나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

③ (최초 1개월) 지원금 지급(온라인)

-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예비교육 참여 여부 확인 후 지급 결정(고용센터) → 포인트 지급(카드사)

④ (2개월부터)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온라인)

- 월 1회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청년) → 내용 확인 후 지급 결정(고용센터) → 포인트 지급(카드사)

사 업 명						
(39) 취업성공패키지지원(1234-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2
명칭	고용안전망 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47,194	231,665	282,493	366,654	327,231	44,738	15.8

4. 사업목적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모
- * (1단계)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IAP 수립) → (2단계) 직업능력 향상 → (3단계) 취업 알선 및 취업성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③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연도 : 2009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국정과제에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포함

- '08.11.3.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난극복종합대책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예산 (93억원) 반영

- '08.12.13. 국회는 10.87억원 증액하여 최종 의결(1만명, 103.87억원)

- '09년 기존 자활사업을 개편하여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사업 추진

- '12.3.2부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추진

* '12년 국회예산과정에서 청년, 중장년층 미취업자(청년 5.1만명, 중장년 10.5만명)에 대한 예산 증액

-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으로 통합·개편되어 운영 예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계속
- 사업규모 : 19만명('21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 사업 수혜자 : 중위소득 50~60%이하 저소득층 및 노숙인,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중위소득 120% 초과 미취업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60~100%이하
중장년(35~69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 참여요건 확인 → 참여 확정 통보 →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 취업 → 취업성공수당 지급

○ 단계별 지원내용('20년 기준)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참여수당 25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500만원(자부담 최대 20%) 훈련수당: 월 4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II 유형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세)	참여수당 2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300만원(자부담 10~35%) 훈련수당: 월 40만원	-

사 업 명						
(40)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1234-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3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	-	-	120,386	54,181	54,181	순증

4. 사업목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 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2가지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취업지원의 내용(제5조)

-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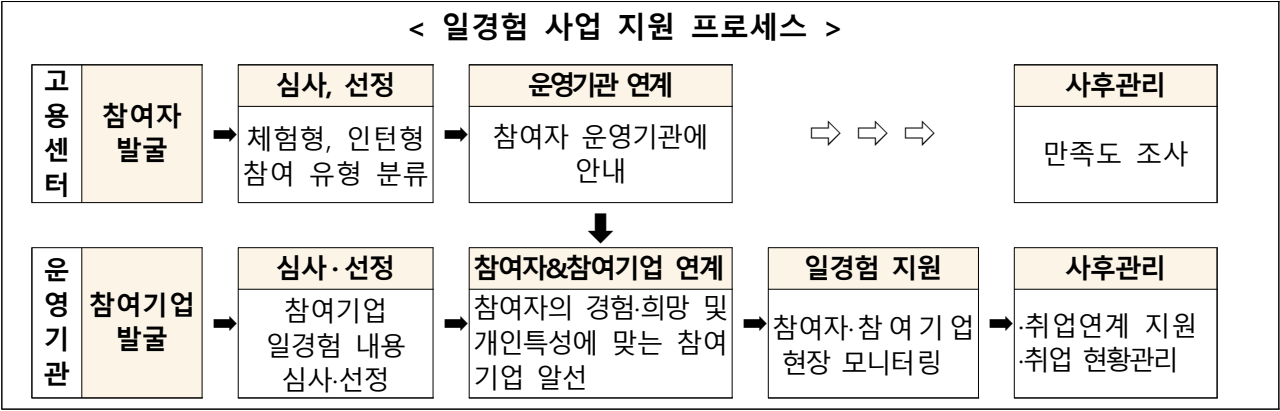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20년)을 국정과제로 채택('17.5월)
- '19년 업무 보고 및 경제정책방향, 포용국가 추진계획('19.2월) 등 통해 내용 구체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대한 노·사·정 3 합의 도출*
 - *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 합의('18.8.21.) → 제도 기본 골격, 인프라 확대 등 합의('19.3.5.)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19.6.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1.1.1.)
-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 의욕 및 능력 고취를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사업규모 : 29천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취업의욕 제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 체험형과 인턴형으로 구성
 - (체험형) 참여자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실비수당(1일 21,000원) 지급,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담당자 멘토링비(10만원) 지급
 - (인턴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조기 종료 후 최저임금 수준 지급,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멘토링비(월 10만원) 지급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사 업 명						
(41)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3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 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0
명칭	고용평등실현	고용평등환경개선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고용평등환경개선	2,203	2,076	2,076	2,257	1,929	△147	△7.1

※ 실제 예산은 작년대비 181백만원(8.7%) 증가하였으나 내역사업중 일부 금액(328백만원)이 신설된 신규사업(노사발전재단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으로 표기됨

4. 사업목적

-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 및 사업장 내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등 고용상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고용안정 및 촉진기반 구축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선발, 포상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및 성차별적 제도·관행을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하

여 국민 및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고용평등상담실운영>

-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지원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고용평등의식 확산을 통해 분쟁의 사전예방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홍보활동 전개,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사지원 및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여성고용률 제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 기업의 여성고용 수준에 대한 평가, 개선지도 및 고용평등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여성고용의 양적, 질적 확대에 기여

<고용평등업무지원>

- 지방관서 고용평등업무 지원(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점검, 홍보사업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정책의 수립 등), 동법 시행규칙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고용평등상담실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상담지원)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② 추진경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95년부터 정무제2장관실과 고용노동부 공동 주관으로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를 개최, '98년부터 고용노동부 단독 주관
- '01년부터 남녀고를 위해 4월 첫째 주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으로 정하여 기념식, 토론회 개최 및 언론사 특집기사 게재 등 홍보
- '13년부터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5.25~5.31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으로 변경(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2.8월)하여 시행

<고용평등상담실운영>

- '00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시범 실시(10개소)
 - * '01.4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확대설치 추진·결정
- '01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지원(10→15개소, 증 5개소)
- '18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지원(15→21개소, 증 6개소),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및 사업장 교육 실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 '99.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등 부여
- '00년부터 사업장에 교육교재 등을 지원하고 TV·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 실시
- '05년부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실시
- '19.8.26.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로 지원
 -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 '03.10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방안 국정과제 회의 시 대통령에게 보고
- '04.10.21. 참여정부 차별시정정책 추진방향 확정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05.12.30.공포), '06.3.1. 시행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성차별적 인사관행 해소 등을 통해 '06.3.1.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시행
- '19.7.16. 불합리한 성별 임금격차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 전체에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시행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1,462	1,382	1,869	2,222	2,076

- 기타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및 고용평등업무지원: 본부 및 47개 지방관서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민간단체 21개소
 - * ('19년 운영기관)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노동희망,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부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부산여성회,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회, (사)대구여성노동자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충북본부, (사)대전여민회, 한국노총충천영서지역지부, 한국노총울산지역본부, (사)경주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광양지역지부, (사)제주여민회,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전체 공공기관 및 전체 지방공사·공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및 고용평등업무지원: 직접수행
- 고용평등상담실운영: 민간보조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직접수행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직접 및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및 고용평등업무지원: 고용노동부(청 및 관내 지청 등)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21개 민간단체(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고용노동부(청 및 관내 지청 등)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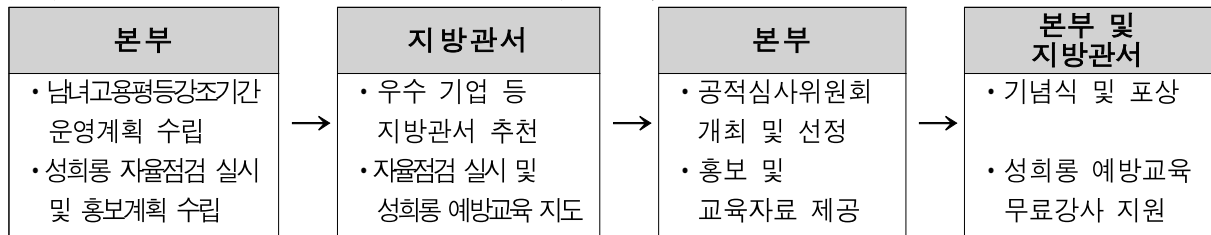
- 사업수혜자 : 사업주, 근로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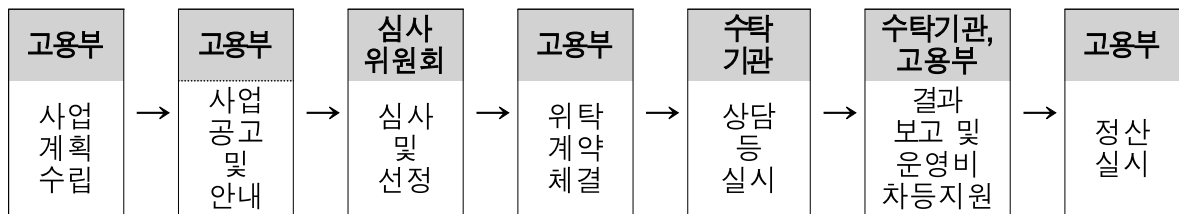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21개)	예산범위 내	-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상담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민간단체의 선정 등)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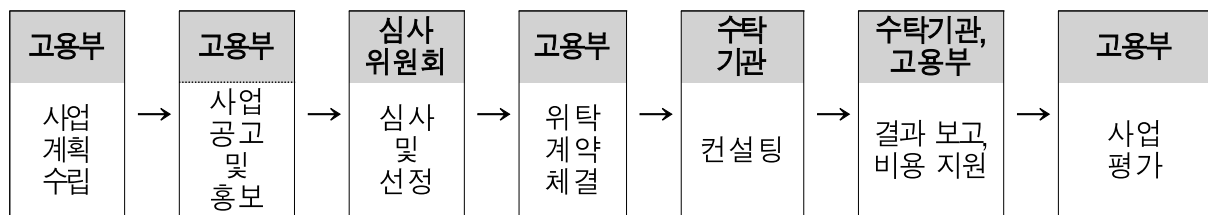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고용평등상담실운영>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사 업 명						
(4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1336-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6	301
명칭	고용평등실현	장년희망찾기지원	사회공헌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0~9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23,803	48,592	34,675	47,349	43,826	9,151	26.4

4. 사업목적

- (신중년 사회공헌) 베이비붐 세대 대량은퇴에 따른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들에게 사회공헌활동 기회 제공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년의 사회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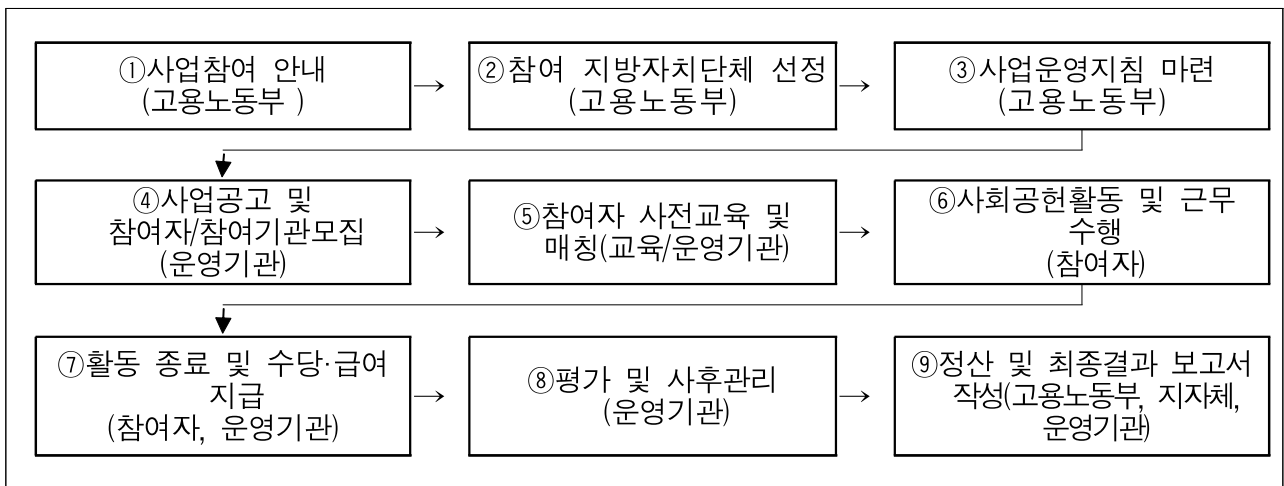
- '11.1월 사업시행
- '12.6~7월 베이비부머 나눔 활성화 방안('12.6.5), 사회자본 확충 방안('12.7.2), 베이비붐세대 은퇴 대책('12.7.5) 등에 「사회공헌일자리사업」 확대방안 포함
- '13년 대통령 공약사항(32.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및 국정과제(5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에 「사회공헌일자리사업」 확대방안 포함
- '14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 '15년 중앙-지방자치단체 사업 공동 수행('14년 시범사업 실시)
- '18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으로 사업명칭 변경
- '19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내역사업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규모 : '21년 16,700명(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5,000명, 신중년 사회공헌 11,700명)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15년 ~)
- 사업 수혜자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신중년 사회공헌)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따라 60~9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서울 30% 기타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339-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9	301
명칭	고용평등증진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6,524	47,208	47,208	36,365	24,899	△22,259	△47.3

4. 사업목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50만원*3월분)
-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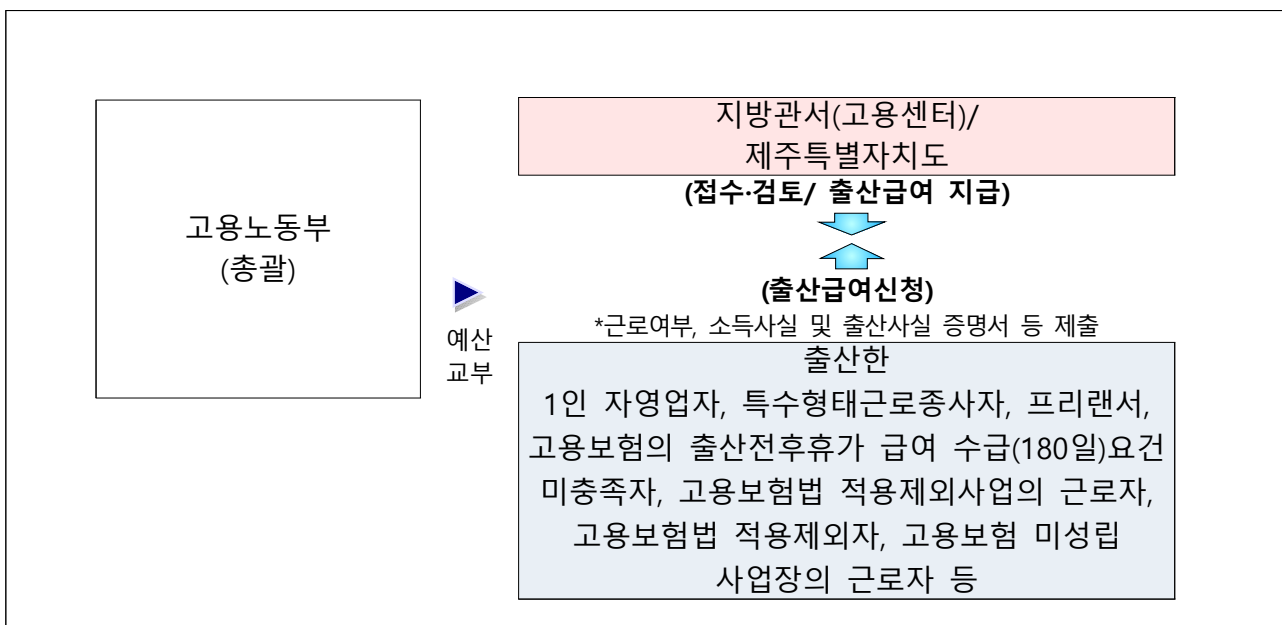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17.7월 국정과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18.7.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책」의 핵심추진 과제로 발표
 - * (기초연구)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저출산위·보건사회연구원, '18.1~11월)
- '18.8월 예비타당성 심사 ⇨ 심사결과 : 면제
 - * (면제사유)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예타면제
- '18.8~9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협의
 - * (협의결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
- '19.7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시행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7.1.(신규) ~ 계속(단년도)
- 사업규모 : '20년 기준 47,208백만원(지원인원 31,405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4) 중장년층취업지원 (1340-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0	300
명칭	고용평등증진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층취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중장년취업지원	22,880	25,640	24,411	31,113	22,252	2,159	△8.84

4. 사업목적

- (고령자인재은행)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40세 이상 중장년(재직자 및 구직자)이 체계적인 인생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직단계부터 생애경력설계, 재취업·창업 등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업무 담당자가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장년고용연구지원) 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활동 지원
-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라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기업 등 사업주가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 컨설팅, 진로설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하여 제도 안착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동법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동법 제11조의4(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3.7.1.부터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 '96.7.29부터 퇴직한 고급·중견경력인력의 취업알선과 상담·자문 활동 지원을 위해 고급인력정보센터 설치·운영
-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 : 고령자인재은행 확대, 경력인력에 대한 종합 취업서비스기관으로 확대개편 등 고령자 취업 지원서비스 확대방안 포함
- '09년 국정과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해 '훈련-고용-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확대 개편
- '13년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등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합·개편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 '15년 장년의 제2인생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생애설계서비스 사업 시행
- 공약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 中 “13.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 '17.8월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계획, '17.12월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17~'21): 5060세대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 의미로 신중년 개념 정의 및 인생 3모작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추진하고 전직준비 기반 확충
- '19.4월 및 '20.5월 고령자고용법령을 개정하여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의무 부여하고, '20.5.1.부터는 근로자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의무화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가 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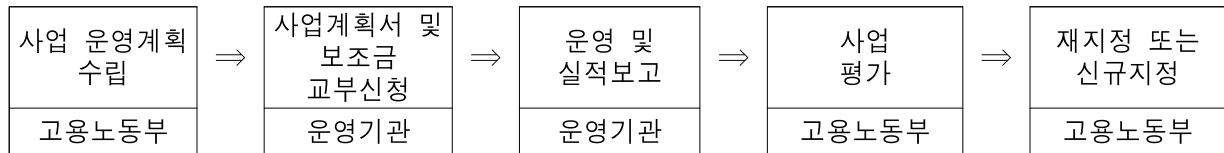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기준) 고령자인재은행 44개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32개소, 생애설계서비스 35천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노사발전재단 등
- 사업 수혜자 : 40세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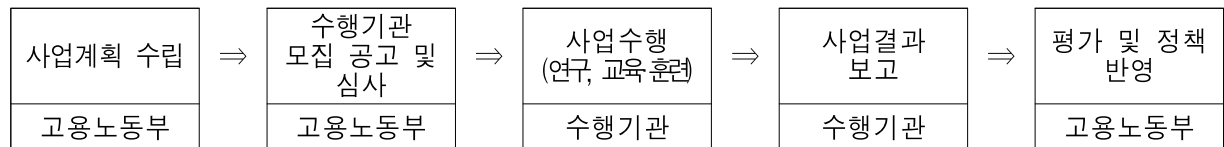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노사발전재단(민간경상보조), 제주특별자치도(지자체 보조) 등	100%	-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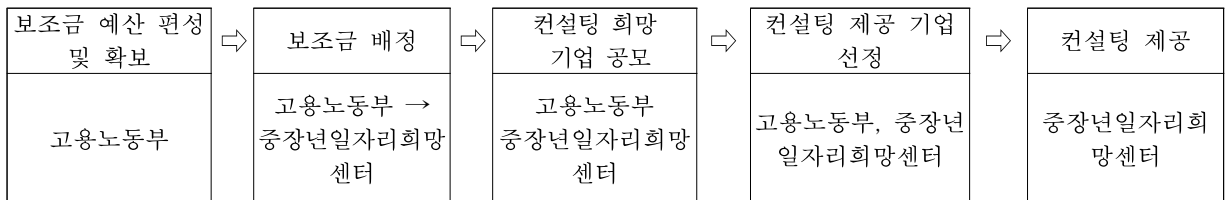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장년고용연구지원,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 업 명
(45)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20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0
명칭	노사정책	노사협력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12,695	19,987	10,187	16,980	16,966	6,779	66.5

4. 사업목적

- (노동단체지원 /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 사업평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 (임금격차완화 지원) 정규·비정규직, 대·중소기업 등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 하고 직무·능력에 따른 공정한 임금이 구축되도록 지원
-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노사갈등관리, 노동조합 운영지도, 사업장의 노사상생 협력 등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
-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지원) 노동인권·노사관계 등 전문적인 교육, 전시 공간 조성을 통해 노사간의 소통·상생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

-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지원)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 시행 지원, 사업주 경영·창업 지원, 노사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의 거점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 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국가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75년부터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실시)

② 추진경위

<노동단체 지원 사업 등>

- 한국노총('76년~) 등 노동단체의 교육, 지역상담소 운영, 정책개발, 국제교류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06년부터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중심 지원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 '98.8.15 경축사에서 「신노사문화 창출」을 국민의 정부 7대 국정과제로 발표
- '99년 신노사문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6대 정책과제 확정
 - * ①열린경영의 확대 ②지식근로자 육성 ③작업장 혁신 지원 ④성과보상 확대 ⑤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⑥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09년 사업의 효율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국정과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노사분규예방, 노동조합운영지도 등 3개 사업 통합
- '10.9.30. 노사정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합의문」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의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이의 실행을 추진'하기로 합의
- '11.6.10. 노사정은 「베이비붐 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에서 '정부는 희망 기업에게 임금·직무체계 개선 진단 서비스 제공, 우수기업의 발굴·확산,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 '13.5.30. 노사정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서 '임금직무센터 설치, 임금체계 실태조사,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제공을 강화'하기로 합의
- '16년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으로 통합
- '17년 새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확충 등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공정임금 구축 등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76 ~ 계속
- 사업규모 : 19,987백만원('20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수탁기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사업주, 노동조합,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90% 이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 계획수립(고용노동부) → 집행(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관서)
- 위탁사업 : 기본 사업계획 수립(고용노동부) → 위탁기관 선정 → 사업집행(위탁기관)
→ 평가(고용노동부)
- 보조사업 : 사업공고(고용노동부) → 지원신청(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자체) → 심사
위원회 구성(고용노동부) → 사업심사·선정(심사위원회) → 보조금 신청 및
사업수행(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자체) → 보조금 교부(고용노동부)
→ 중간점검 →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평가(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자체, 고용노동부)

사 업 명						
(46)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 (20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5
명칭	노사정책	노사협력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한국고용노동 교육원운영지원	-	-	-	14,122	14,122	-	순증

4. 사업목적

- 노사관계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노동관계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노동교육) 공공부문 및 고용노동분야 종사자를 위한 노사관계 및 고용교육,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실시와 프로그램 보급 및 전문가양성을 통한 고용노동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 (노사관계전문가육성)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선도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를 양성하여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인프라 조성 도모

- (노후건축보수) 노후화된 건물 및 설비를 연차적으로 개·보수하여 건물 안전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사업
- (정보시스템구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중인 한기대 행정정보시스템 사용불가로 별도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
- (기관운영비) 직원 인건비 및 경상비
- (자체수입) 교육수입, 이자수입 및 잡수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7189호)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8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문노동교육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08년 근거법률 폐지로 한국기술교육대 부속기관으로 운영('09.3월~)

- ▶ '89. 8월 **노사정대표 간담회, 노사정 공동출연의 전문 노동교육기관 설립 합의**
- ▶ '89.10월 (재)한국노사교육본부 설립(경기도 과천시)
- ▶ '90. 8월 「**한국노동교육원법**」 제정·공포, 한국노동교육원 설립
- ▶ '08. 8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시행
 - * (근거) 민간부문 노동교육의 중복수행, 공무원·교원 등 공공부문노동교육은 교육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에서 통합 수행 가능
- ▶ '08.12월 「**한국노동교육원법**」폐지, 한기대로 공공부분교육 이관
- ▶ '09. 3월 한기대 부속 **노동행정연수원** 개원 ('11.3월, 고용노동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 연수원의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연수원 독립기관화 추진('18.3~) 및 의원입법으로 법안 제정('20.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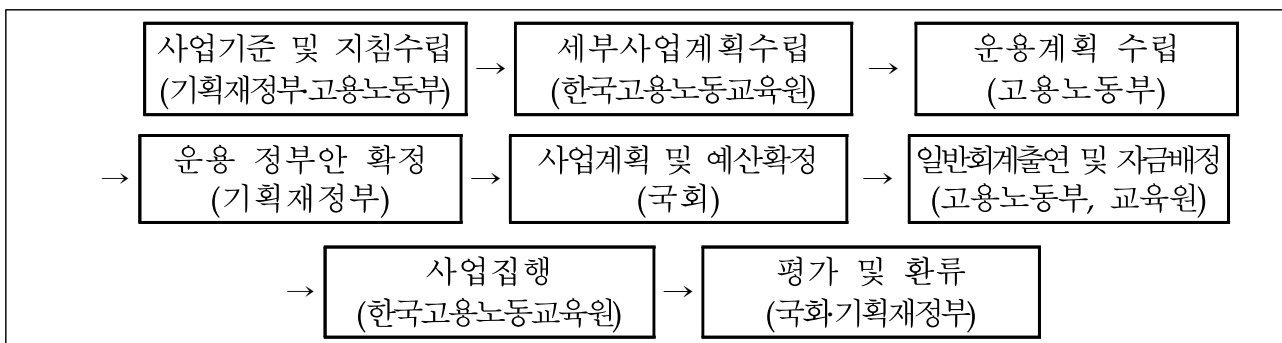
- ▶ '18.11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발의**(11/22,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 '19. 4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4/5) * 국회의원 한정애/김동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동 주최
- ▶ '20. 2월 제376회 국회(임시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2/17), 전체회의(2/19) 가결
- ▶ '20. 3월 제376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전체회의(3/4), 본회의(3/6)가결, **법안 공포(3/31)**
- ▶ '20. 10월 **법안 시행(10/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 '20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내의 내역사업에서 '21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분리
- 사업규모 : 공공부문종사자, 청소년 및 영세사업주 등 111,170명 대상으로 교육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노동분야종사자, 청소년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0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7189호) 제14조 출연금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7)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2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5
명칭	노사정책	노사문화구축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1,934	1,860	1,860	1,726	1,676	△184	△9.9

4. 사업목적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의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등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에 보조하여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노·사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 (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공모·선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
- (인프라 구축 및 인식확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저변을 확대하고 인식 확산을

- 위해 사업 설명회, 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 등 추진
- (우수지자체 포상)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성과 창출 확산 및 협의회 활성화 지원
- (정책연구용역) 운영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등 연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원 활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규모·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추진경위

- '05~'07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 실시(노사정위원회)
- '08.2.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역노사정 협의회」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개편하고 사업 이관(노동부)
- '08~'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재정지원 및 정부포상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예: 광주, 밀양 등) 전국적 확산(국정과제 16-3 세부이행과제)(‘17년)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추진
- * 지역·산업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모델 발굴 지원
- 자치단체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 등 개최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 논의 및 지역 사회 내 공론화,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등 전 과정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역할 및 심의·의결 요구됨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업종 단위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고용유지 상생협력 사례 발굴·확산 지원(‘20년 하반기 경정과제)

❖ 코로나19 극복 및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대화 및 협력 필요성 강조 (‘20.3.18. 대통령 주재 경제주체 원탁회의 등)

❖ 중앙의 사회적대화* 지지·확산을 뒷받침할 지역 단위 대화체계 활성화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문 발표(‘20.3.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20.5.20.), 경사노위 노사정 협약식(‘20.7.28., VIP 격려 방문)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기준 65개 지자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광역시, 기초)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노사민정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광역시, 기초)	광역시자체 45~55%, 기초지자체 75~85%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 차등 매칭)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제122호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 연초 사업추진계획 수립 - 전국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사업 공모	고용노동부	■ 지원사업 개요, 사업추진 및 정산 등 안내
↓		
지원사업 대상(지자체) 선정·심사 교부결정 및 통보	고용노동부	■ 선정심사위, 지원사업 대상 및 교부금액 심사·결정 - 고용노동부 결과 통보
↓		
국고보조금 지급	고용노동부	■ 국고보조금 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 - 지자체 매칭비율 등 상세내용 검토 및 재확인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추진	고용노동부 지자체	■ 지자체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진행 - 고용노동부 사업운영 성과향상 지원 등
↓		
신규 담당자 교육 및 권역별 워크숍 등	고용노동부	■ 노사민정 의제 발굴 및 성과향상 ■ 노사민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성과향상 및 미활성화 지원 등 중간점검	고용노동부	■ 지원사업 지자체 중간점검 및 미활성화 지역 홍보 등 지원
↓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지자체	■ 지자체 당해연도 노사민정 운영 등 실적 제출
↓		
사업평가 및 우수지자체 등 포상	고용노동부	■ 노사상생협력 등 사회적 대화 및 지원사업 추진,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포상금) 부여
↓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및 사업 정산	지자체 고용노동부	■ 지자체, 당해연도 노사민정 운영 등 정산자료 제출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확인 및 정산

사 업 명						
(48) 노사발전재단지원(2036-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6	311
명칭	노사정책	노사발전재단지원	노사발전재단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노사발전재단지원	9,248	9,529	9,529	8,291	21,190	11,661	122.3

4. 사업목적

- 노사발전재단이 노사상생협력, 노동분야 국제교류, 고용차별 개선, 일·생활 균형 확산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편성
- (노사상생협력교육) 고용·노동현안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노사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중립적 노사관계 교육* 실시
 - * 상생협력프로그램, 갈등해결프로그램, 지역·업종 맞춤형 프로그램, 리더십프로그램
- (노동분야 국제교류 협력) 주요국(중국, 베트남 등) 및 ILO 등과 초청 교류 및 관련 자료 발간, 해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인 노무관리체계 구축 및 노사관계 안정 지원
-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협력 증진,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등 노·사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지원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 전국 6개 지역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개선 이행을 위한 진단, 상담, 교육 등 지원
- (일·생활균형 확산지원)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업의 CEO 및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3.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보조하는 사업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06년 노사정 합의(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총)에 의해 노사공동의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
 - (노사상생협력교육) 2010년 「노사파트너십 확산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노사관계교육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2014년 「노사상생협력교육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현재까지 사업 추진
 -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한국국제노동재단 설립에 따라 199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재단 통합 이후 국제교류협력사업 계속 추진
 -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2009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서 2014년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되어 계속 사업 추진
 -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지원) 2009년 고용노동부 직접 수행사업을 2014년부터 재단으로 이관하여 사업 추진, 2021년부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사업 이관
 -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 2010년 신설된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년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계속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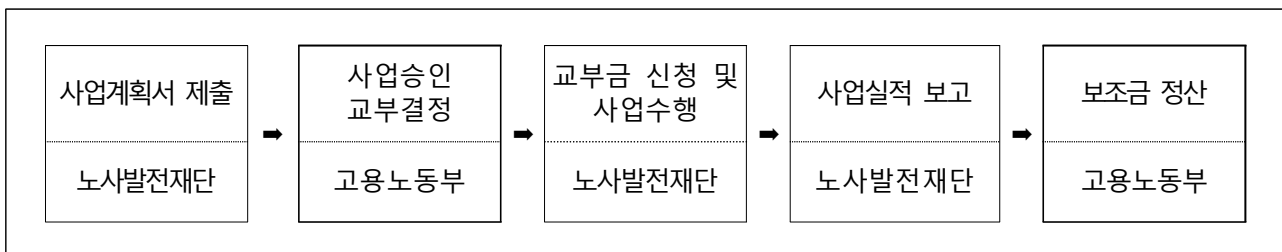
- (일·생활균형 확산지원) 2015년 「일가양득 확산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8년 「일·생활균형 확산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 추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7~ 계속
- 사업규모 : 9,529백만원('20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노사발전재단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사용자, 노사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노사발전재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9) 근로조건개선지원(30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기준정책관		808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2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조건보호	근로조건개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근로조건개선지원	12,633	15,819	15,306	15,043	15,043	△263	△1.7

4. 사업목적

- (권리구제지원팀운영)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조정관을 통해 임금채불 등 노동분쟁에 대한 신속한 상담·조정서비스 제공
-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장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
- (장시간근로개선지원)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 문제를 기업과 근로자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최저임금 안내,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운영 등을 통한 최저임금 준수를 제고

-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근로자 권리보호의 기본이 되는 서면근로계약서의 현장 확산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제작·배포 및 안내 추진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청소년(연소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안내 등 실시
- (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9.7.16.)으로 법제화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대한 안내 및 상담센터 운영 등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27조의2(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취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청산 등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관서에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권리구제 지원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25조(근로조건 자율개선) ①이 훈령에서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란 법정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근로감독정책단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장시간근로개선지원>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시간 제한) 등
- 노동자의 휴식 있는 삶, 일·생활 균형,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

<최저임금준수 지도·홍보>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중략> 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시행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임금체불, 근로자성 문제, 비정규직 차별시정, 불법파견 등 노동분쟁의 다양화·복잡화 추세에 따라 노동관계법률 전문인력 필요성 증대
- '04~'11년까지 임금체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퇴직 공무원·기업체 직원 등으로 체불근로자 상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체불제로 서비스팀 운영
- 체불제로서비스팀을 변호사·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분쟁해결지원팀으로 개편('12년)
- '16.1월 권리구제지원팀 전체 관서로 확대(기존 40개 → 47개 관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08.3.13. 노동분야 국정과제 세부실천계획 보고(연두업무보고)
 - * 취약계층 근로조건보호를 위해 기업이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법정근로조건 준수 기업에 대한 정기감독 면제(2년)를 하여 자율인 개선분위기 확산
- 현장점검 중심의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지시*(고용부장관, '08.3.31)
 - * 사업장 근로감독은 그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기업의 부담완화와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것
- 사업장의 근로조건 보호방식을 기존 근로감독관의 현장방문 감독방식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 변경 시달('08.4.23)
 - * 근로조건자율개선 세부시행지침 시달('08.5.15), '09년부터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시행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실시(개소)	6,581	7,293	7,346	8,900	8,887	8,081	9,902	9,697	6,921	5,940	7,558

- '15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내 기초고용질서 점검 및 관서별 자율점검 실시 등 대상을 세분화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전산화 등 사업체계 효율화 추진
- '16년부터 노사단체·전문가의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노무관리 매뉴얼 제공 및 교육을 위해 '업종별 자율준수 지원사업' 진행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지원업종	방송, 프랜차이즈	병의원, 방송	대형병원,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노선버스, 드라마 제작현장, 도소매·음식·숙박업

- '18년부터 노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교육 및 노무관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주 노동법교육' 진행

* '18년 9,000개, '19년 10,000개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으로 노동법교육 등 지원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장시간근로개선분과위원회」 등 운영·논의→ 실태조사, 기업사례 파악, 개선방안 추진('09.7~) 등 결정
- '10.6.8,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에 대해 노사정합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 장시간 근로 관행의 해소와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10.6.8, 노사정위원회)
 - '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대 단축
- '10.10.14, 근로시간줄이기 대책 수립 대통령 지시(고용전략회의)
- '15.1월~4월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구조개선 특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견 조율
-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 * '15년 253개 → '16년 495개 → '17년 495개 → '18년 604개 → '19년 303개 → '20년 150개
- '18.2.28 근로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국회 통과, '18.3.20 공포
 - * '18.7월부터 단계적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5개)
- (부칙 및 부대의견) 실태조사, 노동시간 제도개선 방안 준비 등 명시
 - ① 5개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② '22.12.31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준비
 - ③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후 '18.12.31까지 국회 보고

<최저임금준수 지도·홍보>

- 상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안내하되 특히 연말연시에 집중,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충분한 사전제도 및 지도(매년)
- 최저임금 인식 개선과 준수 유도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안내 활성화 추진
- 최저임금 보장 및 산업범위 개편 안내활동 강화 및 현장안착 노력
(2019.1.1.부터 최저임금 산업범위 개편 개정법령 시행)

* 설명자료 및 소책자 제작·배포, 카드뉴스 배포, 리플릿·전단지 작성·배포 등

- '18.1월부터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전국 48개 관서) 설치·운영

* 최저임금 상담 및 안내, 간담회 및 설명회, 현장지도 등 현장안착 지원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 근로기준법 제17조 개정으로 '12.1.1.부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11년 하반기부터 서면 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 안내 실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03.2월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 (청소년보호위원회, 국무회의보고)

- '06.3월 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 침해 부조리 근절 대책

* 청소년아르바이트 관련 다각적인 교육·안내 및 지도·점검 추진 포함

- '08.6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

- '12.11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 '14.5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수립·발표

*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포함

- '15.9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개소

*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피해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16.2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시행

- '18년부터는 권역별 거점센터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통합 운영

* '17.8월 예결위 및 환노위 지적

(‘거점센터’ 권리구제 실적 미흡 → 권리침해 사건 해결에 집중 필요)

- '19.1월부터 청소년 근로조건 현장 안내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 추진 (근로조건 지킴이→ 근로조건 알리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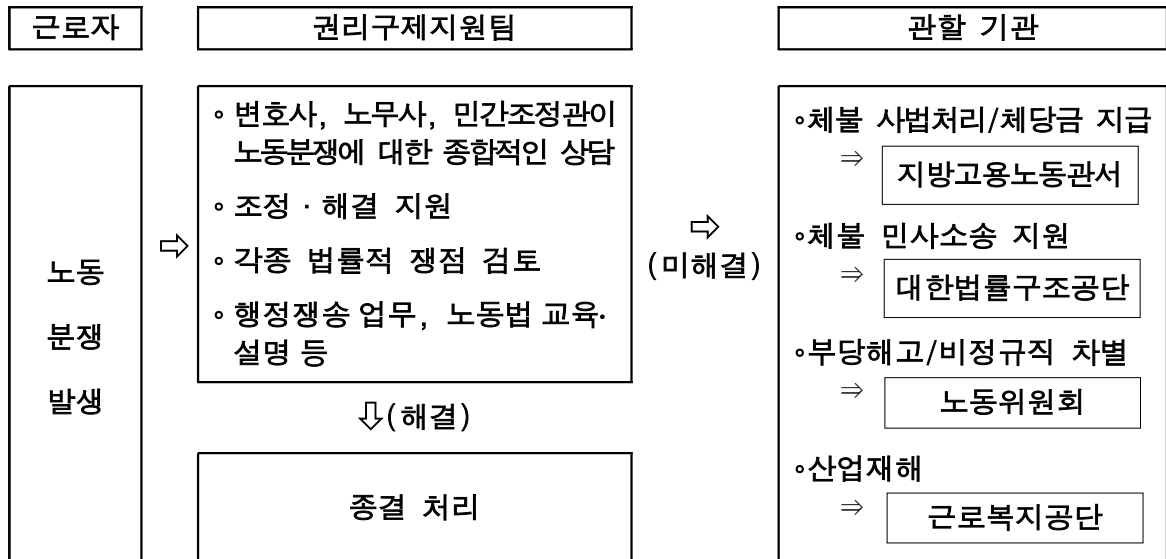
- 국제과제(63-6)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18.7.18.)」을 수립·시행
-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발생 시 조치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포함 등 제도 법제화 및 시행
- 근절대책 및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안내, 상담 및 컨설팅, 사업장 지도·감독 등 실시

6.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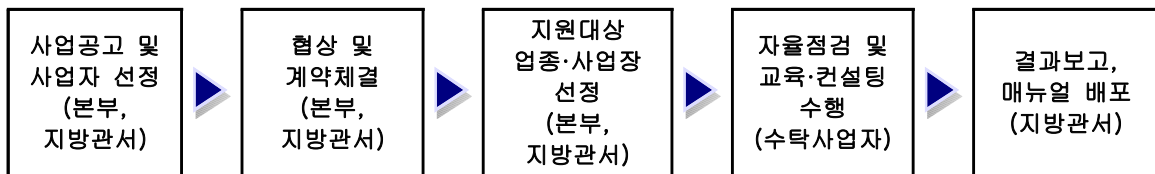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취약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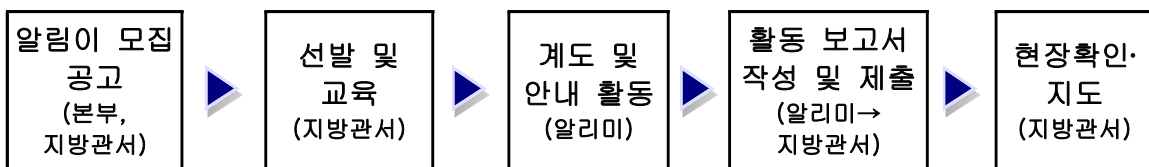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 청소년근로조건 알리기



사 업 명						
(50) 고용상차별개선지원(30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4
명칭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근로조건보호	고용상차별개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1,064	1,040	1,040	1,768	1,768	728	70

4. 사업목적

- (기간제근로자 등 보호)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차별예방 교육, 정책연구 등을 통한 법·제도 개선 추진
- (근로자파견제도 운영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정책연구 등을 통한 법·제도개선 추진
-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지원)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新고용형태 종사자,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정책연구 등을 통한 법·제도개선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6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6조(지도·조언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자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 또는 적절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1.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관련 논의
- '04.11.8 비정규직보호법(안) 국회제출
- '06.11.30 비정규직보호법률 국회 통과
- '07.6.18 비정규직보호법률 하위법령 공포, '07.7.1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 '07.7.2 비정규직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07.12.21 노사정위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관련 합의문 채택
- '09.4.1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원회 「비정규직 입법 효과 평가체계 구축 관련 합의문」 채택
- '09.4.1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9.4.20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 제출
- '10.2.4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사용기간 제한 예외 확대)
- '11.12.29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 국회 통과(차별신청기간 연장, 근로감독관 차별시정권한 부여 등)
- '13.2.26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 국회 통과(차별금지 영역을 구체화·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

- '14.2.28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 국회 통과(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초과근로에 가산수당 지급,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 도입,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시정명령 내용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도개선 명령 포함)
- '17.10.18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로드맵 발표
- '17.12.1 비정규직 TF 운영
- '18.10 비정규직 TF(안) 마련

<국정과제 등 주요추진 과제>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으로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 마련

□ 비정규직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 외주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 강화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근로조건 승계 관련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도급·파견 기준 마련 등으로 불법파견 근절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기간제근로자 등 보호('05~), 근로자파견제도 운영 등('07~)
- 사업규모: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등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51)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 (3031-3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4	공공노사정책관		080	08E
명칭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20
명칭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근로조건 보호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공공부문 고용개선지원	1,102	1,720	1,720	1,489	1,489	△231	△13.4

4. 사업목적

- (공공부문 고용개선 컨설팅 지원) 기관별 정규직 전환모델 설계 및 이해관계·갈등 조정, 자회사·민간위탁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공공부문 노사관계 현장지원단)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 노사, 노노 갈등 조정·중재 등을 담당하는 현장지원단(지방고용노동관서) 운영
-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 포럼 등 용역) ①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평가·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고용개선 방안 연구, ②공공기관,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방안 마련

- (우수사례집 발간) 공공부문 정규직화 우수사례집 및 정책 추진과정, 주요 성과, 향후 과제 등을 정리한 백서발간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 미래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로의 개편을 지원하고,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 예방·조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공공부문 고용개선 컨설팅 및 노사관계 현장지원단 운영>

- 현 정부 핵심공약인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20)을 마련하여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7년도 추경예산으로 사업 편성
- 원활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을 예방하고,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 하여 정규직 전환과정 및 전환이후의 현장 애로사항 대응 및 갈등관리 지원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 포럼 등 용역>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 및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 공공기관·공무원·교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포럼으로 확대

<우수 사례집 발간>

- 기관별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노사 협력, 갈등 조정 사례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성과 등 전파하기 위한 우수 사례집 발간(3회, ‘18~‘20년) → 향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의 추진과정, 주요 성과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백서 발간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17년부터 추진,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지원 및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 조정 등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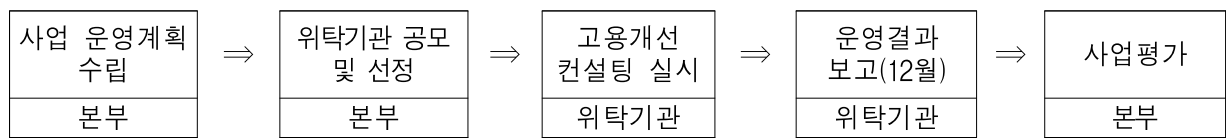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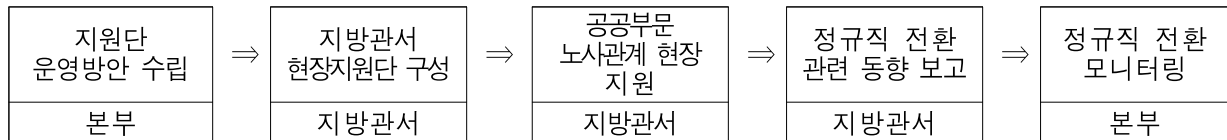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부문 고용개선 컨설팅



- 공공부문 노사관계 현장 지원단 구성·운영



사 업 명						
(52) 근로감독역량강화(3032-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306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감독행정	근로감독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근로감독역량강화	10,985	9,919	9,919	11,033	11,033	1,114	11.2

4. 사업목적

- (근로감독역량강화) 집체교육 실시,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수사역량 등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근로기준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근로기준의 현실적합성 향상
- (근로감독활동지원) 체불임금 청산·예방, 임·단협 교섭 등 지도, 노동관계법 위반혐의 수사, 사업장 감독 및 노동정책의 교육·안내 등 근로감독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근로감독역량강화>

- '53.5.10 근로기준법 제정·시행
- '06년 업무계획, '07년 성과계획에 반영
- '06.7 고용정책심의회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방안 의결
- '06.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방안 포함

<근로감독활동지원>

-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제6조(활동비 지급)
 -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률

② 추진경위

<근로감독역량강화>

- 근로감독 역량강화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속 추진
- '03.5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발족
- '03.9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마련
- '03.11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노사정위원회 상정
- '05.5 근로기준선진화연구회 구성·운영(회장 임종률 교수)
 - * '07. 12월말까지 29회, '08년 11회 운영
- '08~'09년 고용·임금·근로시간제도 선진화 국정과제 추진
- '10년 VIP 노동부 연두업무보고('09.12.14):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추진
(국가고용전략과제로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포함)
- '10.6.8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노사정합의(노사정위원회)
- '10.10.14 근로시간줄이기 대책수립 대통령 지시(고용전략회의)

- '12.1.25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지시(근로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적극 검토·추진)
- '15.6~12 근로감독업무개선 TF를 통한 업무 효율화·역량 강화 과제 마련 및 개선 추진
- '16.7.1 디지털 증거분석팀 신설(서울청 1개소)
- '18년 디지털증거분석팀 5개소 추가
- '19.9.10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 마련 시행
 - * 근로감독관 직무분석('19.5~10월 연구용역 시행) 을 통해 전 재직기간 동안 담당 업무와 연계하여 경력을 개발하는 경로 마련
- 직무(수사, 집단노사관계, 사업장감독)와 경력별(기본 1~3년차, 심화 3~5년차, 전문 5년차 이상) 심화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체계 및 교육과정 설계·운영
- '20.1.22 근로감독관 교육 개선방향 및 2020년도 교육계획 시달
 - * 현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습 사례형 신규 감독관 교육, 경력경로별 필요한 직무역량 중심의 재직자 교육, 지방관서 현장교육 강화, 자발적인 학습조직 활성화 등

<근로감독활동지원>

- '73년부터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급
- '00년부터 1인당 20만원 지급
- '07년부터 25만원 지급

※ 연도별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급현황 (1인당, 월기준)

연도	'73	'74~'84	'85~'88	'89~'95	'96~'99	'00~'06	'07~현재
금액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13만원	20만원	25만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근로감독역량강화) '76년~계속, (근로감독활동지원) '73년~계속
- 사업규모: (최근 5년 간 예산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5,652	6,102	5,961	9,806	11,488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및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연수원(근로감독관 위탁교육)
- 사업수혜자: 근로감독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53)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3034-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4	313
명칭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	902	759	759	916	757	△2	△0.3

4. 사업목적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축소되는 국민연금**에 대응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위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 확산 지원
 -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7%)에 진입한 이후, 2017년 8월고령사회(14%)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20%) 진입 예상('15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 주요 국가들은 국가 재정부담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 우리나라도 기금소진 연도 연장(2047년→2060년)을 위해 급여수준 축소(소득대체율 60%→40%, '07년)
- 퇴직연금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및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체계적 연구용역 등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제1항(정부의 책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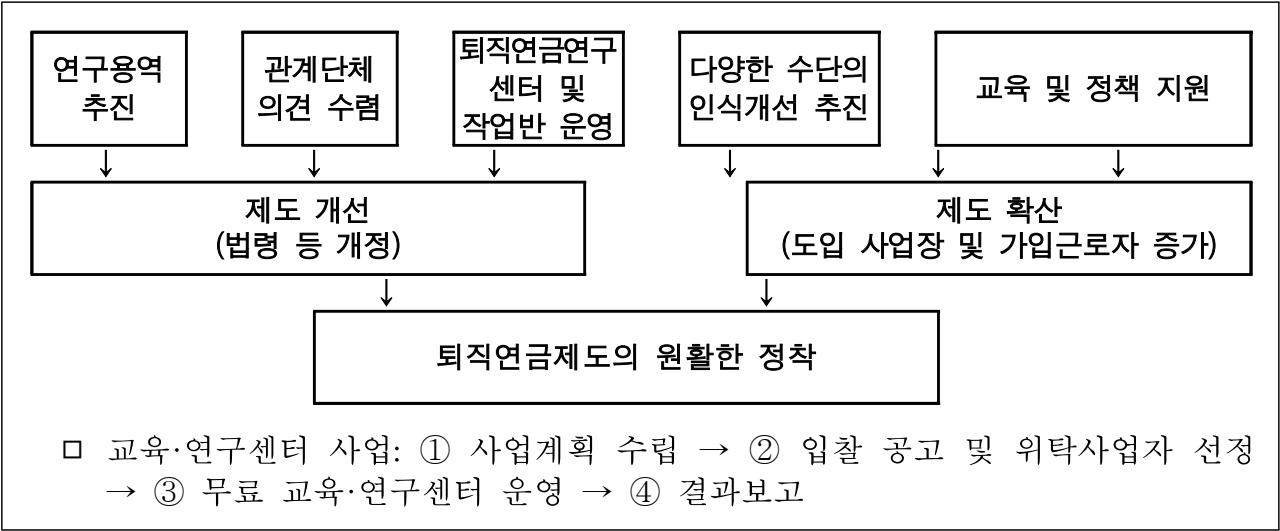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퇴직금 체불 위험으로 수급권 보장기능이 미흡하고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고,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확산 필요
- '05.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시행
- '11. 7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 '14. 8월: 퇴직연금 역할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16. 8월: 퇴직연금 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추진('16.8월 한정애 의원, '17.6월 임이자 의원 발의)
- '18. 4월 : 기금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추진
 - * 퇴직연금 자산 운용의 전문성 제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 신탁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법(기금형)을 새롭게 도입(정부 개정안 발의)
- '18. 6월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 * 근로시간 감축으로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 신설 등
- 대통령 공약사항: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공적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 국정과제(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해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제공, 일부 재정 지원을 통한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모든 사업장 및 퇴직급여 적용 대상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4) 최저임금위원회전문성강화(3036-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301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최저임금제도지원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강화	-	644	644	614	614	△30	△4.7

4. 사업목적

-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및 현장의견청취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사무국)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 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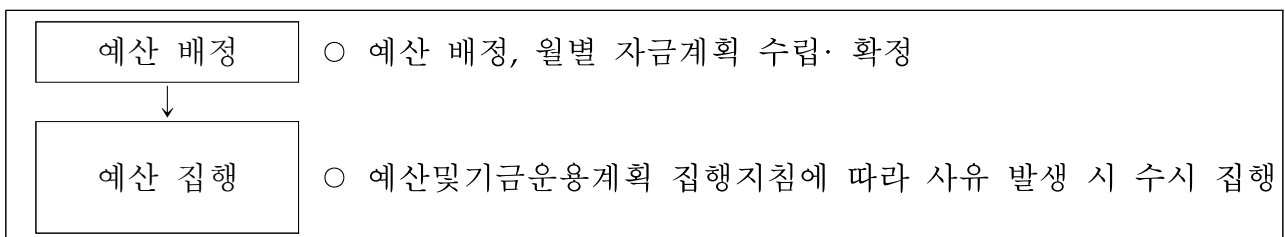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86년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최저임금제 본격 도입
- '86년 최저임금법 제정·공포, '88년 최저임금제 실시
- '87년 최저임금위원회 신설
- '19년 부처별 업무보고 시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견수렴 및 과정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5) ILO 분담금(ODA)(3050-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	-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0	300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ILO 분담금(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예산(B)		
ILO 분담금(ODA)	8,431	9,986	9,986	11,567	11,567	1,581	

4. 사업목적

- ILO 회원국으로서 원활한 ILO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분담금을 성실히 납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ILO 헌장 제13조* 상의 분담금 납부의무(ILO 헌장 수락동의안 국회의결, '91.11월)

* (제3항) 국제노동기구의 경비는 회원국이 부담

(제4항) 연체액이 지난 만 2년 동안 그 나라가 지불하여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동액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총회, 이사회 등에서 투표권 상실

② 추진경위

- '05년 외교부로부터 ILO 분담금을 이관*받아 이후 매년 당해연도 분담금 납부 중
- * '05년까지는 외교부가 국제기구 분담금을 총괄 관리·납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2년부터 계속('05년 외교부에서 이관)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제부담금)
- 사업시행주체 : 국제노동기구(ILO)
- 사업 수혜자 : ILO 회원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ILO 총회에서 ILO 총예산 규모, 국가별 분담률*을 기반으로 국가별 분담금 규모 결정(2년 단위) → 회원국은 매년 분담금 납부
- * UN 분담률, 회원국 국민소득(GNI), 회원국 수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국가별 분담률 결정

사 업 명						
(56)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3050-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0	301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607	487	487	763	763	276	56.6

4. 사업목적

-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협력 강화) 선진국의 고용노동정책경험 공유, 한국 고용노동정책의 대외안내,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을 강화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FTA 고용노동분야 협상 및 협정 이행에 적극 대응하여 국익을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교류 강화]

- (한-OECD 공동연구 사업) '04년 한-OECD간 노동시장 공동연구사업 수락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
-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 교류)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07.5.16 대통령령 제20053호) 등에 의거 사업추진

* 관련규정: 제1조(목적),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제10조(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 확정('05.4.6)
- 4차 WTO 각료회의('01.11.14)에서 '02년 DDA 출범에 합의함에 따라 WTO/DDA 범정부 대응체계 구성(노동분야는 인력알선 등 노동서비스 시장개방 포함)
- 「FTA추진에 대한 정부 로드맵」 확정('03.8.30) 및 VIP의 적극적 협상 지시('05.4.6)에 따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
 - 노동분야는 노동 Chapter(한미, 한-캐나다, 한-EU FTA 등)에서 국제노동 기준 준수관련 내용을, 서비스 Chapter(모든 FTA)에서 노동서비스 시장개방을 다루고 있음
- '08.6월 신정부 FTA 추진계획 수립(외교부)
 -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FTA 추진기로 함

② 추진경위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교류 강화]

- (한-OECD 공동연구 사업) '04년 공동연구사업 수락 이후 매년 연구 프로젝트 참여
 - (고용노동 분야 국제정보 교류) '09년 OECD 모니터링 종료를 계기로 한국 고용노동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시작
- * '16년부터 우리나라 고용노동 정책의 대외안내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쌍방향적인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명칭 등을 개편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05.9월 국제협상팀 신설(FTA, WTO/DDA협상 전담부서)
- '06년 한·미, 한·캐, 한·ASEAN FTA협상 등 수행
- '07년 협상대상국·협상수 증가에 따라 신규 사업예산 6억원 반영

- '20년 8월 현재, 16개국 FTA 협정 발효*

* 한·칠레('04.4), 한·싱가포르('06.3), 한·EFTA('06.9), 한·ASEAN('09.9), 한·인도('10.1), 한·미국('12.3), 한·EU('11.7), 한·페루('11.8), 한·터키('13.5), 한·호주('14.12), 한·캐나다('15.1), 한·콜롬비아('15.12), 한·뉴질랜드('15.12), 한·중국('15.12), 한·베트남 FTA('15.12), 한·중미 FTA 발효('19.10월)

- 한·영 FTA 서명('19.8), 한·이스라엘 FTA 타결('19.8), 한·인니 CEPA 타결('19.1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고용노동 국제협력('04년~계속), 고용노동 통상협상('07년~ 계속)
- 사업규모: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교류 강화 사업 중 한-OECD 공동연구는 해외이전)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OECD
- 사업 수혜자: 대한민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한-OECD 공동연구 사업) OECD 사업제안서 송부→ 고용노동부 검토·채택→ OECD에 참여의사 통보→ 사업비 송금→ 연구결과보고서 발간(세미나 개최 포함)·배포, 국내정책 활용 등
- (고용노동 분야 국제정보 교류) 국내외 노사관계 법·제도 및 주요 고용노동정책 동향 파악→ 전문가 및 관계자 검토→ 주요 노동정책 영문자료 작성·배포, 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기관 등 논의 대응→ 주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에 활용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FTA 자문단·이해관계자 간담회,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협상인프라 구축 및 대책 수립→ 노동분야 통상협상 참여→ FTA 협정 발효→ 협정(노동 장)에 명시된 노동장 이행기구 운영 및 당사국간 노동분야 협력사업 수행

사 업 명						
(57)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ODA)(3050-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0	302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6,480	7,089	7,089	7,276	7,276	187	2.6

4. 사업목적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분야(직업훈련, 산업 안전, 고용서비스 등) 정책발전경험 공유·전수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한국의 정책 모델 확산
- (다자금융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 ASEAN, WB(세계은행) 등 지역 협의체 및 다자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고용노동정책·교류 증진 및 협력기반 강화
- (한-ILO 협력사업) 개도국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분야 협력사업 지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및 위상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10.10.25,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 국제개발협력(ODA) 직업훈련 사업모델개발 추진계획, 국가협력전략('11.8.25, 제10차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의결)
- 한-ILO 특별기술협력사업 양해각서('03.10.1) 체결 이후 국제부담금 송부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 '12.02. 「'12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 '13.01. 「'13 개도국 고용노동 제도구축 지원(ODA)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4.01. 정책자문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수립한 '운영지침' 마련
- '14년부터 매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사업계획 수립·추진

연도	사업대상국(자문분야)
2020	라오스(직업능력개발),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2019	라오스(직업능력개발),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2018	라오스(직업능력개발),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2017	라오스(직업능력개발),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2016	베트남(훈련교사 역량강화), 캄보디아(훈련교사 역량 강화), TVET 국제포럼
2015	베트남(고용서비스 정책), 몽골(산안법 하위규정 개정), 캄보디아(근로기준 개선)
2014	베트남(고용법 하위법령 제정), 몽골(산안법 개정), 우즈베크(직훈분야 마스터플랜)
2013	베트남(고용법 제정), 몽골(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 미얀마(산안법 제정)
2012	베트남(고용법 제정), 필리핀(산업안전보건분야), 스리랑카(직업능력개발분야)

- '17년부터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사업 등 상생형·연계형 ODA사업 추진
 - 베트남('17~'19년), 캄보디아('18~'20년), 몽골('19~'21년)을 대상으로 한국형 고용서비스 전산망(워크넷) 구축 사업 추진(1개국 당 34억원, 3년 단위사업)
 - ①개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 실시('18년~'20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몽골 등 5개국 대상, 3년 25억원), ②ASEAN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역량강화(연수과정) ('19년, 2억원)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사업>

- '12.10. WB 사회보호 및 노동분야 경험공유 포럼 공동 개최
- '13.03. 제1차 ASEAN+3 HRD 포럼 개최
- '13년~현재 ASEAN+3 HRD 포럼 연례 개최, 직업능력개발분야 정책경험과 지식 교류 활성화, 역내 협력기반 강화 도모
- * '15년부터 세계은행(WB) 신탁기금사업과 연계하여 공동 개최 추진

<한-ILO 협력사업>

- '00년 한·일 노동장관 『공동사업』 실시 합의
- '02년 ILO/한·일 『아동노동』 공동세미나 개최
- '03년 정의용 대사, ILO 집행이사회 의장 선출을 계기로 한-ILO 협력사업 양해각서 체결 (양 기관간 지원규모 및 범위 확대 합의)
- '04년 ~ '14년 매년 한-ILO 협력사업 관련 약정(LoA) 체결 및 사업 점검·평가를 위한 집행위원회 및 사업점검회의 개최
- '15년부터 3년 단위로 한-ILO 협력사업(중기) 협력 약정(LoA) 체결 및 사업점검회의 개최
- '18년~'20년 한-ILO 협력사업(중기) 협력 약정(LoA) 체결
- '19년 ILO 본부의 사회적 경제 분야 사업 수요에 따라,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

* 사업 기간 : 2년('19.4.~'21.3) / 사업 예산 : 60만불(연간 30만불)

6. 주요내용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12년~계속
 - 고용노동분야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사업: '17년~계속
 - * 베트남('17~'19년), 캄보디아('18~'20년), 몽골('19~'21년)
 - 개도국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지원: '18년~계속
 - * 기능경기 시스템 구축지원('18~'20년), ASEAN직업기술교육훈련 역량강화(연수과정)('19년~'20년), ASEAN직업기술교육훈련 역량강화(학위과정)('20년), 개도국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베트남)('21~'24년)
 - 호치민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센터 건립 : '20~'22년
- 사업규모: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직접수행
- 고용노동분야 전산망 구축 지원 사업: 직접수행
- 개도국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지원*: 출연
 - * ASEAN 직업기술교육훈련 역량강화(학위과정), ASEAN 직업기술교육훈련 역량강화(연수과정), 개도국 기능경기 시스템 구축지원, 개도국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 구축지원(베트남)
- 호치민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센터 건립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분야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사업: 고용노동부
- 개도국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호치민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센터 건립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개도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해당 없음
- 고용노동분야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사업: 해당 없음
- 개도국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인력공단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 14조(공단의 수입·지출)

- 호치민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센터 건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 (공단의 수입)

○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 없음
- 사업기간: '12년~계속
- 사업규모: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개도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한-ILO 협력사업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없음

- 사업기간: '02년~계속
- 사업규모: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해외경상이전
- 사업시행주체: ILO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개도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 수원국 요청을 토대로 지원대상 국가 발굴 → 무상원조 시행계획 외교부 제출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외교부) → 기재부 예산 심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리 주관) 및 국회 최종 의결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

- 수원국의 고용노동정책분야 협력수요 발굴(고위급회의 등) 및 조사 → 협력사업
수행(워크숍 및 포럼 등) → 사업평가 및 후속 사업 수요조사

<한-ILO 협력사업>

- ILO와 사업 수요 발굴·협약(정례협의회 등) → ILO에 사업제안서 제출 가이드라인 송부 →
ILO의 사업제안서 제출 → 제안서 검토 및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약정서(LoA)체결)
→ 기여금 송금 → 협력사업 수행 → 사업 점검 및 평가(사업점검회의 개최, 보고서 제출 등)

사 업 명						
(58)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1	308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외국인력관리지원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외국인근로자고용 관리	2,671	5,273	4,337	4,714	4,714	377	8.7

4. 사업목적

- (외국인취업자관리)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력수급을 조절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
- (외국인력상담센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상담(콜센터)을 통해 신속히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를 효과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7조, 제21조, 제28조 및 시행령 제31조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

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② 추진경위

<외국인취업자관리>

- '02. 7월: 외국인력 제도개선 방안 마련 후, 국무조정실 기획단 설치·운영
- '03.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제6967호)
- '04. 8월: 고용허가제 시행(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 '07. 1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외국인력제도 고용허가제로 단일화
- '07. 3월: 외국국적 동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 시행
- '08. 9월: 비전문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
 - * 국내 일자리를 보완하도록 외국인력 도입, 동포 관리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도입 및 고용 절차 간소화, 외국인고용비용 합리화, 고용채류지원 강화 등
- '09. 5월: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시행
- '10.12월: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고
 - * 사업장변경 최소화, 기능우수자 선발, 외국인력콜센터 설치, 성실한 재고용만료자 우대,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부담금제 도입 검토 등
- '11.12월: 성실·숙련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우대 관련 외국인고용법 개정
 - * 영세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히 근무한 자의 재입국기간 단축(6→3개월), 한국어시험 면제, 종전 사업주와 지정알선 허용 등
- '12. 4월: 외국인근로자 배정방식 '점수제' 도입
- '12. 7월: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 시행
- '13.12월: 자진귀국 유인 등 관련 외국인고용법 개정
 - *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 단축(신청 후 3영업일 이내→출국 후 14일 이내), 출국만기·귀국비용 보험금 소멸시효 확대(2년→3년),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 '17.7월: 외국인력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 추진
 - * (신규) 4만 → 6만, (재입국) 9.9만 → 11.9만
- '17.12월: 외국인력 총 체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
- '19.1월: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도 고용보험(고안·직능)을 당연가입하도록 개정
- '19.12월: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E-9 56천명, H-2 총 체류규모 303천명)

<외국인력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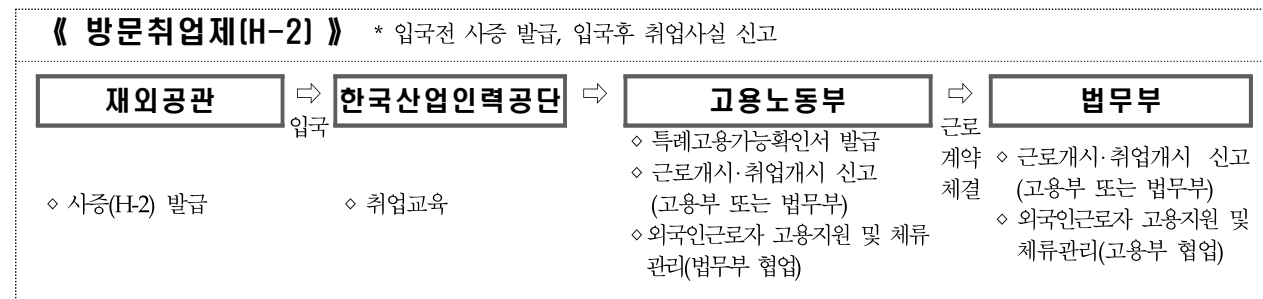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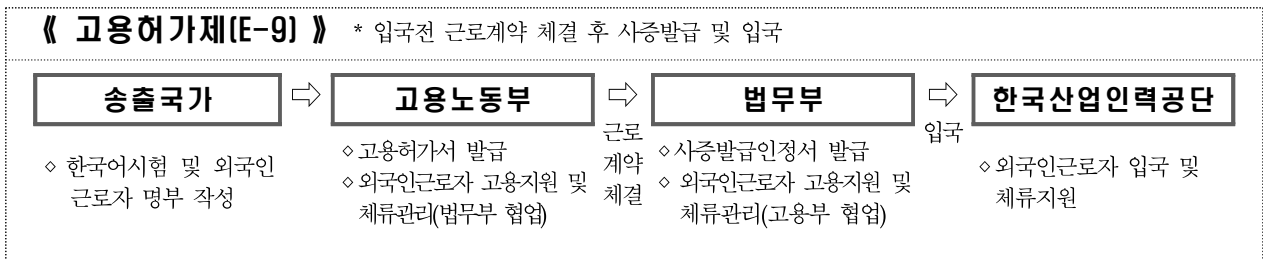
- '10.10월, 국정감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시스템 부재 지적(환노위 신영수·홍영표·주호영 의원)
- '10.12월, 외국인력 콜센터 설치 등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고
- '11.7월, 경기 안산시에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외국인취업자관리) '04년~계속, (외국인력상담센터) '11.7월~계속
- 사업규모 : 비전문외국인력 43만명(E-9 25만명, H-2 18만명)
- 사업시행방법 : (외국인취업자관리) 직접수행·보조, (외국인력상담센터) 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민간 비영리법인·단체
- 사업 수혜자 : 외국인근로자(E-9, H-2) 및 고용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외국인취업자관리



○ 외국인력상담센터



사 업 명						
(59) 본부인건비 (70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4	운영지원과		분야코드(3자리)	부문코드(3자리)
명칭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080	086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노동행정지원	본부인건비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본부인건비	72,319	58,867	58,177	61,151	61,151	2,974	5.1

4. 사업목적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봉급(연봉) 및 제수당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본부 인건비)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가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59,899	62,760	66,049	72,841	58,17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 사업수혜자 : 공무원, 일반회계 전문위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③ 2021년도 예산내역

세사업 명	예산
보수	58,544백만원(본부, 최임위, 산재심사위 직제상 정원기준)
기타직보수	1,971백만원(본부, 최임위, 산재심사위 직제상 정원기준)
연가보상비	636백만원(본부, 최임위, 산재심사위 직제상 정원기준)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집행

사 업 명						
(60) 노동위원회 인건비(7002-1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노동위원회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노동위원회인건비	22,592	25,239	24,707	26,206	26,206	1,499	6.1

4. 사업목적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수당 등의 노동위원회 인력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지침

② 추진경위: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이사항 없음 |
|---|

사 업 명						
(6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7002-1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5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995	1,136	1,136	1,162	1,162	26	2.3

4. 사업목적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회의체의 논의사항과 관련된 전문적 조사·연구 및 회의체 운영을 위해 고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제 15663호, '18.6.12.)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9150호, '18.9.11.)

② 추진경위

- '97년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지원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98.1.15 노사정 3자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출범
- '98년에는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99년에는 법률에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체제를 제도화(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 '06.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합의
- '07.1.2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07.4.27 시행)
- '09.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전문 및 64개 항목) 체결
- '11.6.10.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중소기업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3.7.17. 「청년고용증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4.12.23.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5.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7.9.13.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권고문」 채택
- '17.11.6. 「노동시장 외주화와 격차 해소방안」 채택
- '18.6.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면개정('18.9.13. 시행)
- '18.8.21.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9.2.19.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9.3.5.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9.5.3.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 '19.6.3. 「사람중심 스마트공장 협약식」 노사정 업무협약 체결
- '19.8.30.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발표
- '20.2.20.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 발표
- '20.3.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발표
- '20.3.19.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 발표
- '20.4.27.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0.5.13. 「플랫폼 경제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방안에 관한 합의문」 발표
- '20.7.2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합의문」 발표
- '20.8.18.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9.8.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10.8.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10.16.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사업규모 : 회의체 및 사무처 운영을 위한 인건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62)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7007-1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7	10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인건비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281,537	345,921	331,095	355,610	355,610	24,515	7.4

4. 사업목적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수당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② 추진경위
 - 법령에 의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수당 등 지급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
|------------------------------------|

사 업 명						
(63) 사회복지무요원운용(본부, 총액)(7011-2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사회복지무요원운용(본부,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사회복지무요원 운용 (본부, 총액)	501	621	621	696	696	75	12.1

4. 사업목적

- 고용노동행정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무요원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병역법 제31조 및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 ② 추진경위: 사회복지무요원을 우리 부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64)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총액)(7011-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총액)	5,610	5,688	5,688	5,801	5,801	113	2.0

4. 사업목적

-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복리후생비, 본부 지원부서 특근매식비, 과운영비, 일·숙직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고용부 지원부서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
|------------------------------------|

사 업 명						
(65)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7011-2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3
명칭	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기본경비 (고용정책실, 총액)	104	66	66	69	69	3	4

4. 사업목적

- 고용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사업무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고용정책실 기본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정책실 소속 직원 및 관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경상업무 추진 및 경상경비 사용 요청 → 타당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검토 → 지급결의 및 지급

사 업 명						
(66) 기본경비(노동정책실, 총액)(7011-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080	08F
명칭					고용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4
명칭	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노동정책실, 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기본경비 (노동정책실, 총액)	101	108	108	108	108	0	0

4. 사업목적

- 노동정책실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경상업무 추진 및 경상경비 사용 요청 → 타당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검토
→ 지급결의 및 지급

사 업 명						
(67) 기본경비(산재예방보상정책국, 총액)(7011-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산재예방보상정책국, 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기본경비(산재예방 보상정책국, 총액)	39	42	42	42	42	-	-

4. 사업목적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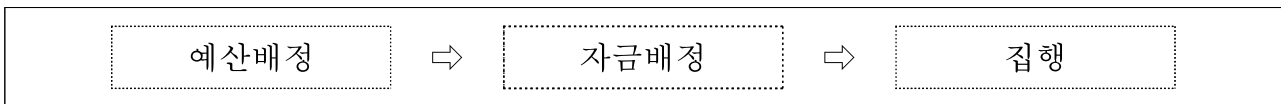
- 사업 시작 연도 : 2014년

- 추진 배경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운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8)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7011-25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기본경비(직업능력 정책국, 총액)	112	165	165	170	162	△3	△1.8

4. 사업목적

- 직업능력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직업능력정책국 기본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
|--|

사 업 명						
(69)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7011-2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	-	45	45	45	45	0	0

4. 사업목적

- 통합고용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통합고용정책국 기본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
|--|

사 업 명						
(70) 사회복지무요원운용(본부, 비총액)(7011-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사회복지무요원운용(본부,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사회복지무요원 운용 (본부, 총액)	223	297	297	315	315	18	6.1

4. 사업목적

- 고용노동행정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무요원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병역법 제31조 및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 ② 추진경위: 사회복지무요원을 우리 부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71)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7011-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비총액)	7,273	8,734	8,171	8,946	8,946	775	9.5

4. 사업목적

- 고용노동부 본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 감사관실, 대변인실 등 지원 부서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고용부 지원부서의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
|------------------------------------|

사 업 명						
(72)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7011-2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3
명칭	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기본경비 (고용정책실, 비총액)	784	638	638	657	636	△2	△0.03

4. 사업목적

- 고용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사업무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고용정책실 기본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정책실 소속 직원 및 관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경상업무 추진 및 경상경비 사용 요청 → 타당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검토 → 지급결의 및 지급
--

사 업 명						
(73) 기본경비(노동정책실, 비총액)(7011-2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노사협력정책관		080	08F
명칭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4
명칭	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노동정책실, 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기본경비 (노동정책실, 비총액)	1,784	2,080	2,080	2,026	2,026	0	0

4. 사업목적

- 노동정책실 운영을 위한 경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노동정책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운영비, 여비 등)로 편성·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경사업무 추진 및 경상경비 사용 요청 → 타당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검토
→ 지급결의 및 지급

사 업 명						
(74) 기본경비(산재예방보상정책국, 비총액)(7011-2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산재예방보상정책국, 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기본경비(산재예방보상정책국, 비총액)	505	648	648	601	601	△47	△7.3

4. 사업목적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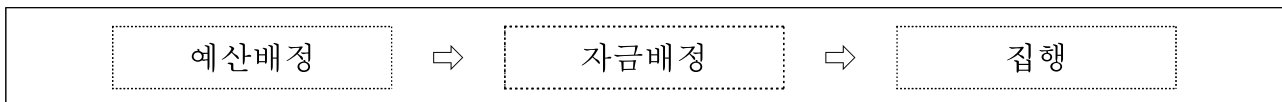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2014년
 - 추진 배경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운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75)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7011-2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기본경비(직업능력 정책국, 총액)	31	36	36	37	36	0	0

4. 사업목적

- 직업능력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직업능력정책국 기본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
|--|

사 업 명						
(76)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7011-2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기본경비(통합고용 정책국, 비총액)	-	257	257	257	257	0	0

4. 사업목적

- 통합고용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통합고용정책국 기본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
|--|

사 업 명						
(77) 사회복지무요원운용(노동위원회, 총액)(7018-2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1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사회복지무요원운용(노동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사회복지무요원운영 (노동위,총액)	45	57	57	64	64	7	12.3

4. 사업목적

- 노동위원회 소속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규정

② 추진경위 - 병역자원관리 개선을 위해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서의 활용방침에 의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 사업규모 : 5개 노동위원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근무 사회복지요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특이사항 없음 |
|-----------|

사 업 명						
(78)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20
명칭	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34	38	38	39	39	1	2.6

4. 사업목적

- 산재재심사위원회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 없음

사 업 명						
(79)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2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총액)	152	140	140	145	145	5	3.6

4. 사업목적

- 최저임금위원회 기관운영경비(공무직근로자 인건비, 특근매식비, 직책수행경비 등) 및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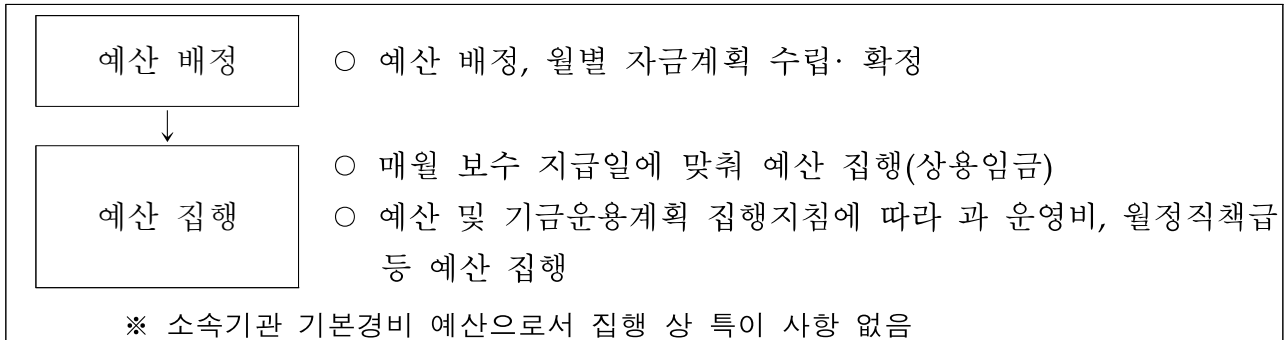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최저임금법」, 기획재정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인건비 등) 확보 및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80)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2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노동위원회기본경비 (총액)	765	814	814	825	825	11	1.4

4. 사업목적

- 노동위원회 기관운영(총액 인건비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문위원·기타직보수요원 및 사무보조원 규정, 세출예산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확보 및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53년~계속
- 사업규모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중노위, 12개 지노위)
 - * 제주지노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2006.7.1.)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공무원직 근로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특이사항 없음 |
|-----------|

사 업 명						
(81) 사회복지무요원운영(노동위, 비총액)(7018-26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사회복지무요원운영 (노동위,비총액)	20	23	23	25	25	2	8.7

4. 사업목적

- 노동위원회 소속 사회복지무요원 운영(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② 추진경위 : 병역자원관리 개선을 위해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의 활용방침에 의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5개 노동위원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82)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2
명칭	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87	92	92	95	93	1	1.1

4. 사업목적

- 산재재심사위원회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83)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총액)	260	254	254	262	257	3	1.2

4. 사업목적

-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각종 자료 발간, 최저임금 심의 운영지원(회의수당 지급 등)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 운영 경비 지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및 현장의견청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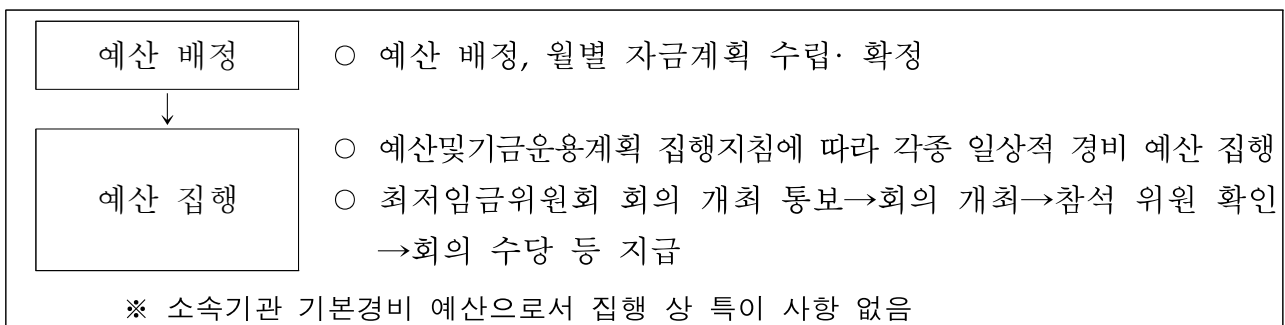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최저임금법」, 기획재정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확보 및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84)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노동위원회기본경비 (비총액)	1,763	1,859	1,859	1,870	1,870	11	0.6

4. 사업목적

- 노동위원회 기관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문위원·기타직보수요원 및 사무보조원 규정, 세출예산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확보 및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53년~계속
- 사업규모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중노위, 12개 지노위)
※ 제주지노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2006. 7. 1.)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특이사항 없음 |
|-----------|

사 업 명						
(85)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7018-26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최저임금위원회 전산경비(비총액)	94	118	118	122	118	0	-

4. 사업목적

- 최저임금위원회 기관운영경비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능(연구용역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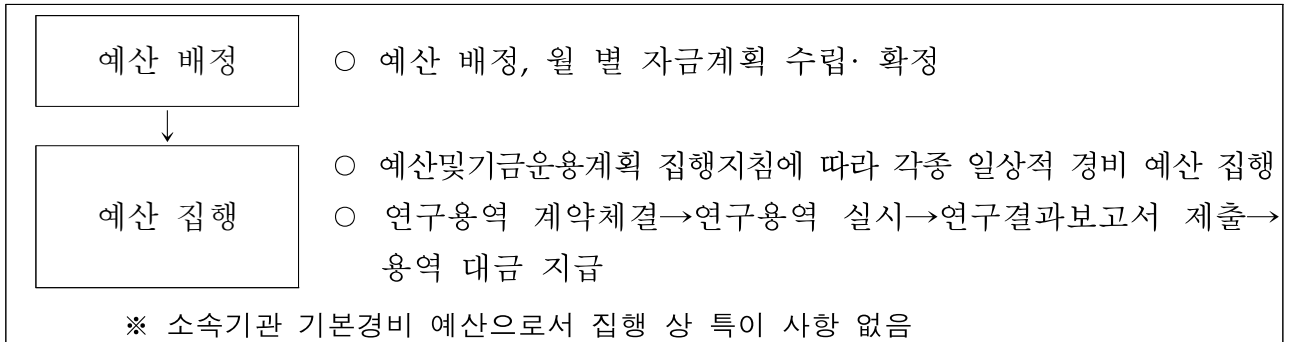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최저임금법」, 기획재정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연구용역비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86)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2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서울지방관서기본 경비(총액)	1,091	1,120	1,120	1,143	1,143	23	2.0

4. 사업목적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서울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7개 지방노동관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7. 사업 집행절차

- | |
|---------------------------------------|
|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
|---------------------------------------|

사 업 명						
(87)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2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부산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943	919	919	960	960	41	4.5

4. 사업목적

- 부산청 및 관내 7개 지청의 기본적 경상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세출예산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부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8개 지방노동관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외 7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외 7개 지청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
|--|

사 업 명						
(88)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2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대구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669	679	679	699	689	10	1.4

4. 사업목적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의 기본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6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
- 사업 수혜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예산 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사 업 명						
(89)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2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중부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1,778	1,774	1,774	1,821	1,821	47	2.6

4. 사업목적

- 중부청 및 관내 14개 지청 등 지방노동관서의 기본적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세출예산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중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15개 지방노동관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14개 관서
- 사업 수혜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14개 관서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집행

사 업 명						
(90)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2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광주지방관서기본 경비(총액)	726	726	726	751	751	25	3.4

4. 사업목적

-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 비총액) 광주청 및 관내 소속 5개 지청의 기본적 경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세출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 운영 경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6개 지방노동관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소속지청
- 사업 수혜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소속지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사 업 명						
(91)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3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3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대전지방관서기본 경비(총액)	640	740	740	752	752	12	1.6

4. 사업목적

- 청 및 관내 소속지청·출장소(5개소)의 기본적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세출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대전지방노동관서 경상경비 지원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6개 지방노동관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
- 사업 수혜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재배정 → 예산 집행 |
|--|

사 업 명						
(92)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서울지방관서기본 경비(비총액)	1,653	1,618	1,618	1,667	1,650	32	2.0

4. 사업목적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서울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7개 지방노동관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사 업 명						
(93)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부산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1,414	1,430	1,430	1,473	1,416	-14	-1

4. 사업목적

- 부산청 및 관내 7개 지청의 기본적 경상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세출예산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부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8개 지방노동관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외 7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외 7개 지청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
|--|

사 업 명						
(94)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대구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960	947	947	979	979	32	3.3

4. 사업목적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의 기본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6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
- 사업 수혜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예산 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재배정
→ 예산 집행

사 업 명						
(95)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7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중부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2,646	2,330	2,330	2,408	2,408	78	3.3

4. 사업목적

- 중부청 및 관내 14개 지청 등 지방노동관서의 기본적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세출예산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중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15개 지방노동관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14개 관서
- 사업 수혜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14개 관서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집행

사 업 명						
(96)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7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광주지방관서기본 경비(비총액)	1,028	861	861	870	870	9	1.0

4. 사업목적

-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 비총액) 광주청 및 관내 소속 5개 지청의 기본적 경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세출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광주지방노동관서 경상경비 지원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6개 지방노동관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소속지청
- 사업 수혜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소속지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사 업 명						
(97)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7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대전지방관서기본 경비(비총액)	909	944	944	926	926	△18	△1.9

4. 사업목적

- 청 및 관내 소속지청·출장소(5개소)의 기본적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세출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대전지방노동관서 경상경비 지원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6개 지방노동관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
- 사업 수혜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재배정 → 예산 집행 |
|--|

사 업 명						
(98) 정책연구개발(R&D)(70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정책연구개발(R&D)	852	776	776	815	815	39	5.0

4. 사업목적

-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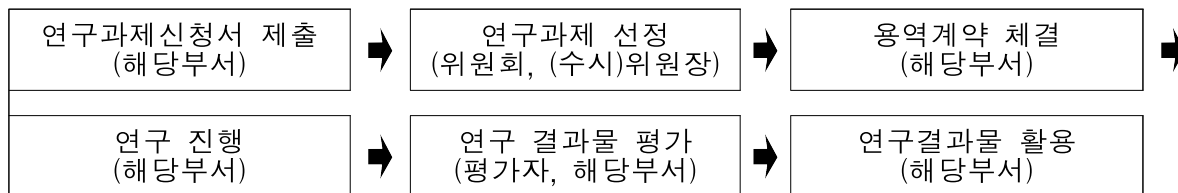
- 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 ② '99년부터 고용노동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 중장기 고용노동비전 마련 관련 연구용역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 없음
- 사업기간: '99~계속
- 사업규모: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대학교, 연구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실·국 별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연구과제 신청 → 위원회 의결을 통한 연구 과제 선정 → 용역계약 체결 → 연구 진행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사 업 명						
(99)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지원(70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행정혁신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지원	-	-	-	152	152	152	순증

4. 사업목적

-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발굴) 정책 전 단계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노동정책이 양성평등적으로 수립·집행·평가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양성평등 정책과제를 발굴할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주류화 조치)

- 국가는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함

- *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 입안, 추진 및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해당 정책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달성하는 것

② 추진경위

- 각 분야 미투(#me too)운동('18년) 이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 내 전담조직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검찰개혁위원회('18.4.23), 문화체육계 대책위원회('18.5.31),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협의회('18.4.17, 6.15) 등에서도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을 권고함
 - 이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로서 우리부에도 '19.5.7.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①소관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②정책의 양성평등 관점 반영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양성평등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및 포럼 등 추진
- (국정과제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과제목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
 - (주요 내용)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교육 강화 및 성인지 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연구과제 발주	고용노동부	정책 연구과제 발주, 포럼 구성
↓		
② 정책과제 연구	연구자	과제연구, 포럼 및 세미나 진행, 자문 등
↓		
③ 발굴과제 반영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과제 정책반영

사 업 명						
(100)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7032-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1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행정혁신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1,138	1,094	1,094	2,481	2,481	1,387	126.8

4. 사업목적

-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 내·외부 고객 소통 활성화, 행정·민원제도 개선 및 제안 활동 지원,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국민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추진
- (행정쇄신·생활공감정책추진) 국민중심 고용노동행정 추진을 위해 내부 정부혁신, 제도개선 등을 위한 지원
-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 추진
- (정책고객 소통강화) '21년 한국판 뉴딜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대국민 소통 강화
- (혁신행정 유공자 등 포상) 고용노동행정에 기여한 직원, 기관 등에 포상금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정부혁신계획(행정안전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일하는 방식개선 등 행정혁신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노동행정서비스 정착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행정·민원업무 개선 사업 추진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소통채널 운영 및 다양한 소통콘텐츠 제작·확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내부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통보(연초, 국무총리실) → 자체 성과관리 및 지방노동관서 기관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연중)
-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연초, 행정안전부) →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연중)
- 교육훈련계획(고용노동부) → 교육생 모집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연중)
- 종합 정책소통 계획 수립(연초) → 정책소통 콘텐츠 제작·송출(연중)

사 업 명						
(101) 고용노동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080	07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50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행정정보화	고용노동행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고용노동행정(정보화)	17,174	19,697	19,697	22,664	22,664	2,967	15.1

4. 사업목적

- 홈페이지, 전자민원, 다우리(내부업무 포털), 노사누리(근로감독행정지원) 등 15개 고용노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48개), 위원회(15개), 고객상담센터,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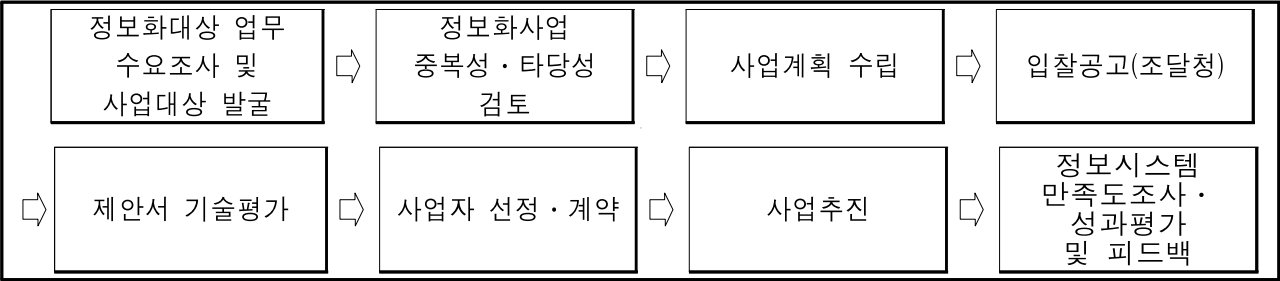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86~'00 : 고용보험·취업알선 등 정보시스템 구축, 고용보험정보통신망 및 노동부 행정정보통신망 통합
- '01~'05 : 전자문서 및 전자민원시스템 등 구축, 노동부 및 산하단체 정보통신망 통합, 지식관리시스템(KMS),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 노동부 및 산하단체 지식관리센터(KMC),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운영
- '06~'10 : PKMS시스템 구축, 전자민원시스템의 개선사업 추진, 산하단체 정보화수준 평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 및 노동부 홈페이지 개편 등 추진
- '11~'15 :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하고, 감사정보관리, 모바일 다우리,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고용부 전 기관 인터넷 전화기 보급
- '16~'18 : 노사누리 전면 개편, 고용노동관련 민원 웹사이트 ONE-ID 서비스, 네트워크 이중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제고, 모바일 중심의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과태료관리시스템 압류·채권추심 기능 구현, 전자민원시스템 서버 내·외부분리, 다우리포털 웹표준 기술 적용, 소속기관(서울·중부청권) 망분리, 사이버안전센터 지능형 위협 탐지 기능 구축
- '19 : 노사누리과 형사사법공통시스템(KICS) 연계, 전자민원 데이터 표준화, 반복 민원 해소 및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과태료관리시스템과 중앙노동위원회 노사마루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능 연계 및 납부대상자 과태료 조회 기능 강화, 소속기관(부산·대구청권) 망분리 사업 실시, 사이버안전센터 지능형 위협 대응 체계 구축, 개인정보 관리 통제체계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5년 ~ 계속
- 사업규모 :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48개 지방노동관서, 중앙노동위원회 등 14개 위원회)의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화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2) 노동위원회청사관리(7036-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청·관사유지	노동위원회청사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노동위원회청사관리	1,579	1,844	1,844	1,603	1,603	△241	△13.1

4. 사업목적

- 노동위원회 청사 숙소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통한 사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 만족도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노동위원회법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 소속 등)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제4조(청사수급 관리계획), 제8조(청사의 합동화)

② 추진경위

- '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97년 노동위원회법 제정
- '99년 노동위원회법 개정
- '06년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신설
- 비정규직보호법(차별시정) 및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필수유지업무 등) 제도 시행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06.12.21.)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06.12.21.)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06.12.30.)
 - ▶ 「노동위원회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07.1.26.)
 - ▶ 노동부훈령 개정('07.4.6. 및 '07.8.21. 노동부국가공무원정원배정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위원, 조사관 등 근무자 및 방문 민원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이사항 없음 |
|---|

사 업 명						
(103)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7036-4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440
명칭	노동행정지원	청관사유지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10,307	9,342	9,342	9,325	9,325	△17	△0.2

4. 사업목적

- 지방관서 청사(48개소)·관사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청소 및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 무인경비 용역비 및 관리비,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 승강기·전기·소방 등의 안전점검 등 청·관사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청사수급관리계획)

② 추진경위

- 지방관서 청사(48개소)·관사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청소 및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

무인경비 용역비 및 관리비,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 승강기·전기·소방 등의 안전점검 등 운영경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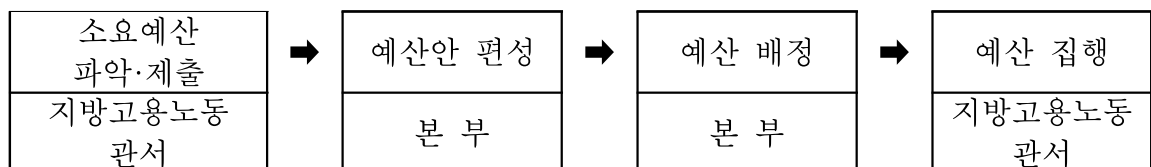
- 청·관사 임차료·보증금 등의 재원확보로 노동행정 서비스 질 향상 도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9,342백만원('20년)
 - 청소·시설관리근로자 임금 : 919백만원
 - 수용비 : 120백만원(청사 이전비 등)
 - 임차료 : 2,253백만원(임차 청관사 사용료)
 - 시설장비유지비 : 2,206백만원(청사 유지보수 및 청사 전기·소방대행 등 관리비)
 - 청소·시설관리근로자 복리후생비 : 21백만원
 - 위탁사업비 : 197백만원(무인경비 용역)
 - 청소·시설관리근로자 법적부담금 : 173백만원
 - 시설비 : 1,814백만원(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비)
 - 자산취득비 : 582백만원(시설개보수에 따른 자산취득 및 OA구입)
 - 임차보증금 : 1,057백만원(임차 청관사 보증금인상분 및 신규관사 임차보증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소)
- 사업 수혜자 : 내방민원인 및 지방관서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48개 지방관서의 청·관사유지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지방관서로부터 관리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 소요예산을 파악 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관서에 배정·집행



사 업 명						
(104)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7039-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0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노동위원회운영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노동위원회전문성 강화	5,928	5,911	5,911	6,666	6,666	755	12.8

4. 사업목적

-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및 분쟁조정 기능강화 등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 도모
- 조정, 심판, 차별시정 등 부문별위원회의 차질 없는 운영 지원
- 적극적인 행정소송 수행 및 이행강제금의 신속 반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및 인프라 확충계획 보고(대통령 업무보고, '0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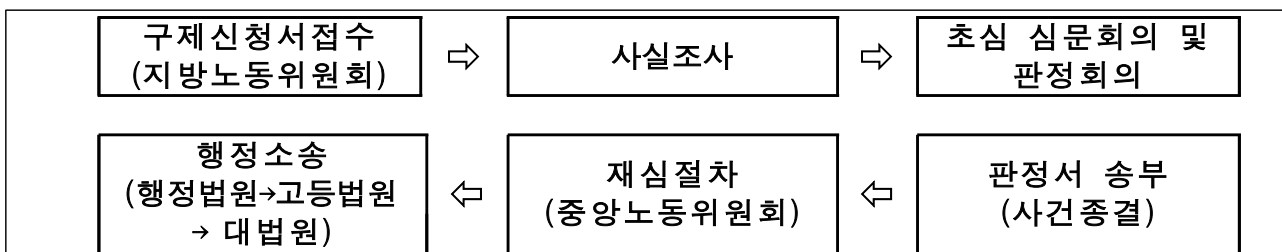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노사정위원회 합의('02.11.21.)등으로 '05년부터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이 본격 추진
 - * 노사정위원회 합의('02.11.21.) : 조정기법 개발, 조정전문가 육성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 비정규직보호법(차별시정) 및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필수유지업무 등) 시행에 따른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지원을 위해 인력충원, 상임위원 보강 등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 추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06.12.21.)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06.12.2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06.12.30.)
 - 「노동위원회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07.1.26.)
 - 노동부훈령 개정('07.4.6. 및 '07.8.21. 노동부국가공무원정원배정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10.1.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5년도 ~
- 사업규모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및 사업주,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5) 무료법률서비스지원(7039-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1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노동위원회운영	무료법률서비스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792	900	900	989	989	89	9.9

4.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권리구제 대리인(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무료 지원하여 권익보호 및 사회안정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20.]

-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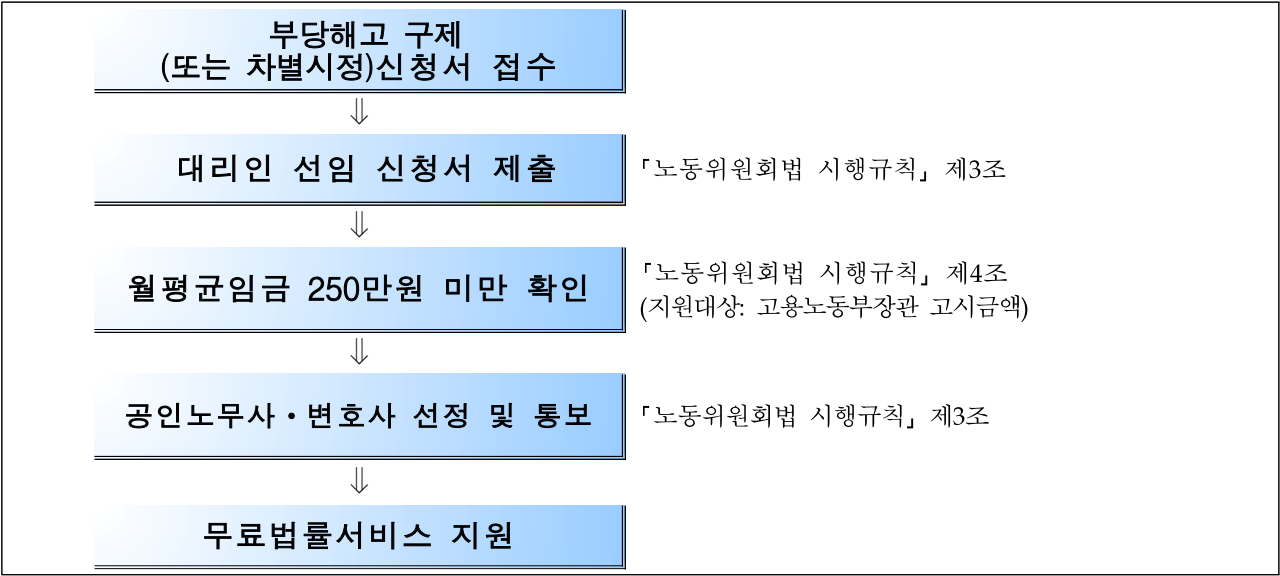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06.10.12.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
- '07.05.17. 노동위원회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 '15.01.20. 노동위원회법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취약계층 근로자(월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사 업 명						
(106)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7039-5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5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노동위원회운영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노동위원회 정보화운영(정보화)	1,029	781	781	723	723	△58	△7.4

4. 사업목적

- 조정·심판업무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 각 행정기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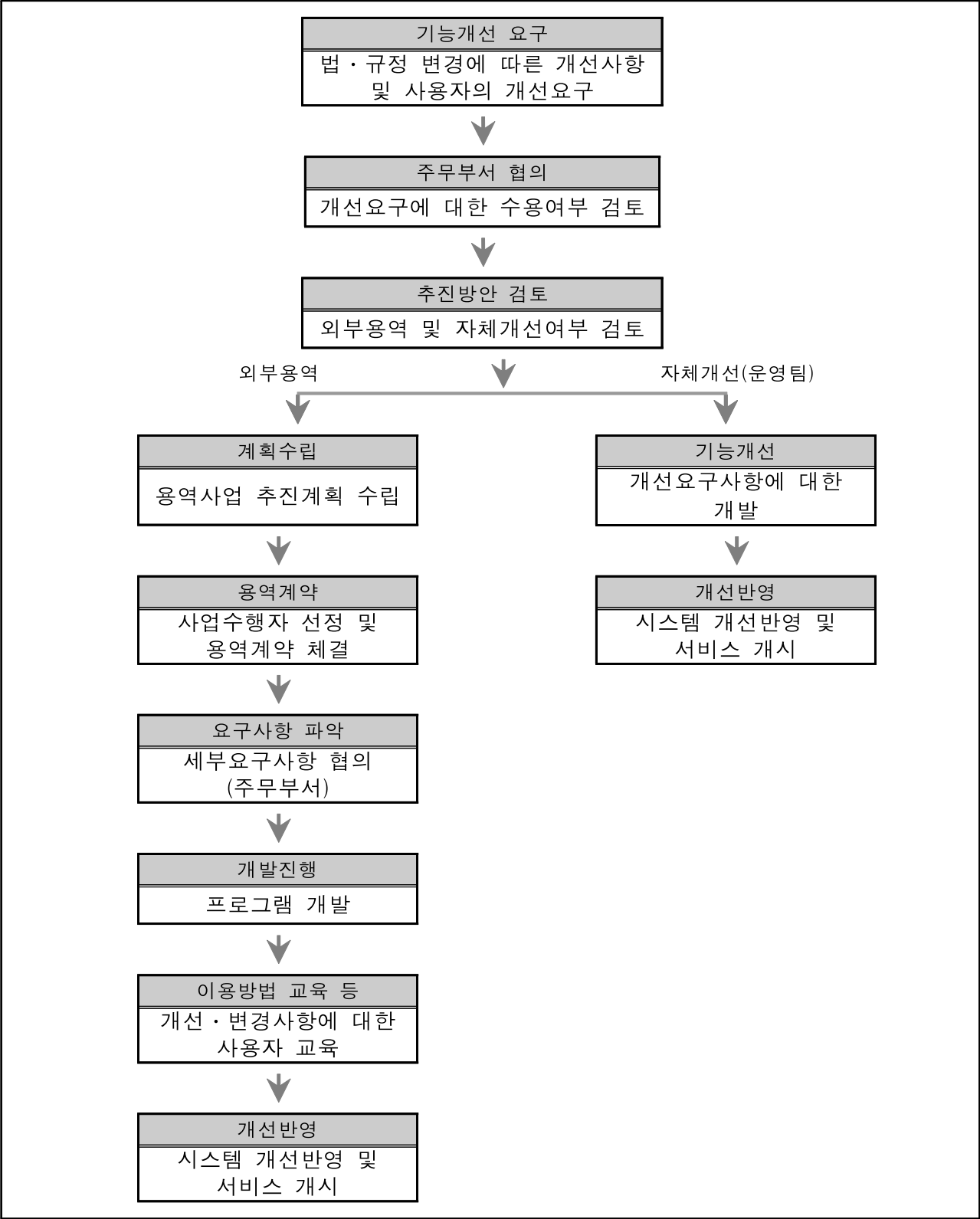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노사마루시스템 등 구축('02년)
- 노사마루시스템 재구축('05년)
 - 기존 조정·심판DB시스템을 개편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정·심판사건을 처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재구축
- 전자심판위원회 시스템 등 구축('06년)
 - 부의 안을 전자화하여 전자심판위원회 운영,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개발
- 노사마루시스템 추가업무 개발('07년)
 - 차별시정, 이행강제금 및 금전보상제, 조정전 지원 등 신규업무 처리프로그램 개발
 - 노동판례 및 판정·판결DB구축을 통한 정보검색기능 제공
- 디지털회의녹음 및 전자사건철관리시스템 구축('08년)
 - 조정·심판 회의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회의녹음시스템 구축
- 복수노조업무 전산처리 프로그램 개발('11년)
- 정보시스템 보강 및 보안솔루션 도입('12년)
 - 노후 서버 교체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암호화솔루션 도입 등 보안강화
- 검색서버 이전 구축 및 조직도 연계체계 등 기능 개선('13년)
 - 검색서버 이전 구축 및 검색프로그램 수정 개발, 조직도 연계체계 개선 등
- 판정서 품질 향상을 위한 확정절차 개선('15년)
 - 판정서 작성 및 사건처리결과 알림 프로그램 변경
 - 공익위원 판정서 검토 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재구축('16년)
- 도로명주소 연계 및 위원노사마루 등 개선('17년)
- 관리자용 업무처리현황 및 질적 분석 자료 입력 등 개선('18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 ~ 계속
- 사업규모 : 중앙노동위원회 및 13개 지방노동위원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업주,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7040-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0	30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3,772	3,584	3,584	3,414	3,414	△170	△4.7

4. 사업목적

-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요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현안 논의 및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 등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제 15663호, '18.6.12.)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9150호, '18.9.11.)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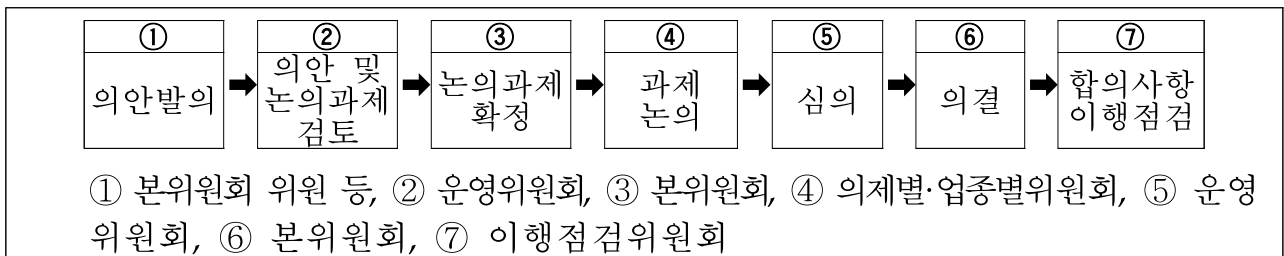
- '97년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지원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98.1.15 노사정 3자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출범
- '98년에는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99년에는 법률에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체제를 제도화(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 '06.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합의
- '07.1.2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07.4.27 시행)
- '09.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전문 및 64개 항목) 체결
- '11.6.10.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중소기업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3.7.17. 「청년고용증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4.12.23.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5.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7.9.13.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권고문」 채택
- '17.11.6. 「노동시장 외주화와 격차 해소방안」 채택
- '18.6.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면개정('18.9.13. 시행)
- '18.8.21.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9.2.19.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9.3.5.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9.5.3.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 '19.6.3. 「사람중심 스마트공장 협약식」 노사정 업무협약 체결
- '19.8.30.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발표
- '20.2.20.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 발표
- '20.3.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발표
- '20.3.19.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 발표
- '20.4.27.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0.5.13. 「플랫폼 경제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방안에 관한 합의문」 발표
- '20.7.2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합의문」 발표
- '20.8.18.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9.8.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10.8.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10.16.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사업규모 : 회의체 및 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8) 일자리위원회운영(704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4	일자리위원회		080	08F
명칭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5	3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일자리위원회운영	일자리위원회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일자리위원회운영	4,620	5,661	5,661	7,735	7,054	1,393	24.6

4. 사업목적

-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회의체 운영 지원, 일자리 정책의 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050호, '17.5.16.)

② 추진경위

- '17.4.28.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약 발표
- '17.5.16.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22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일자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일자리위원회 회의체 지원 및 일자리기획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집행

사 업 명						
(109) 공무직위원회 운영(7050-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4	공무직기획단		080	08D
명칭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50	3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공무직위원회 운영	공무직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공무직위원회 운영	-	-	1,250	959	959	-291	-23.3

* '20년 신설조직('20.3.27)으로 '20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20.5~12월, 8개월분)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①공무직등근로자에 적합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노사관계의 기준 정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공무직 정책 추진 ② 정부·노동계·전문가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노사 또는 노·노 간 갈등을 사전 완화
- (사업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또는 기간제에 대한 일관된 인사노무관리 및 처우의 기준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공무직위원회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56호, '20. 3. 27.발령)

② 추진경위

- ('20.3월) 공무직위원회 출범(3.27), 총리 훈령 발령
- ('20.4월) 공무직위원회 1차회의 개최
- ('20.5월) 공무직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신규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사업 수혜자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직기획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직접집행 |
|--|

사 업 명						
(110) 고객상담센터인건비(7902-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900	7902	101
명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고객상담센터인건비	고객상담센터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고객상담센터인건비	2,966	3,462	3,423	4,037	4,037	614	17.9

4. 사업목적

- 전국에서 들어오는 고용·노동 분야 전화상담 및 인터넷(서면) 질의민원을 집중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지방관서 본연 업무 집중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법률 제13041호)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006호)

제2조(소속기관)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61호)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 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1과 같고, ... 후략

[별표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구분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전략 ...		
기타 유형의 기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특허청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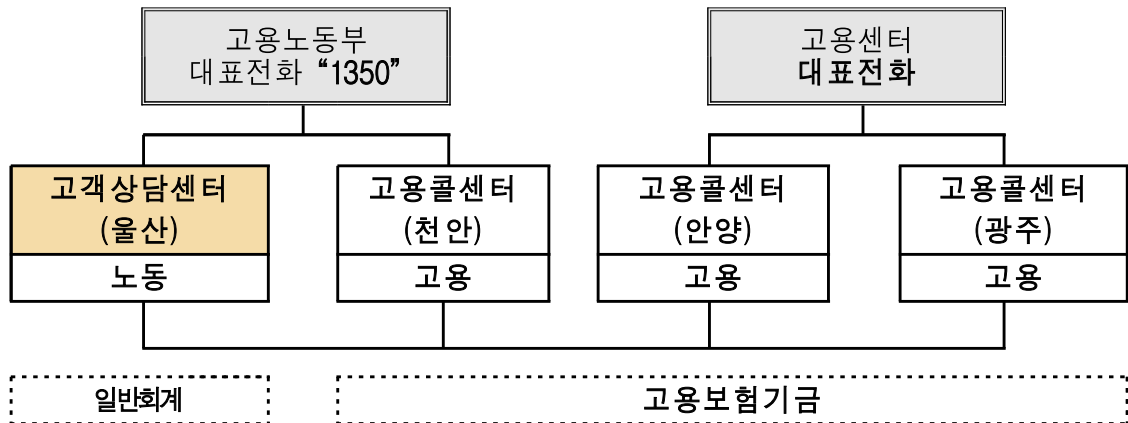
- '03.11.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계획 확정
- '03.12.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단』 발족
- '04.08. 종합상담센터 개소
- '04.12. 종합상담센터 직제 마련
- '10.07. 직제 개편 (종합상담센터 → 고객상담센터)
- '12.12. 고객상담센터 이전 (경기도 안양 → 울산)
- '16.03.01.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지정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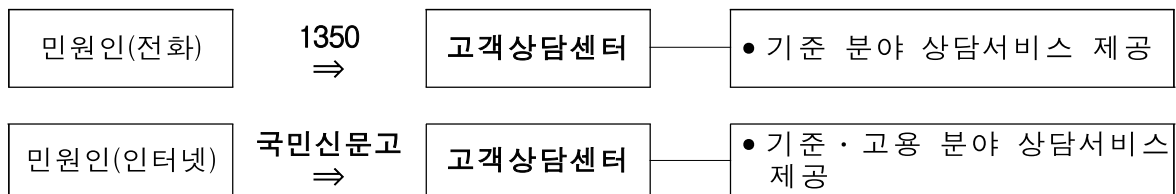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8월 ~ 계속
- 사업규모 : 연간 전화상담 155만건 및 인터넷 상담 15만건 처리('19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국민(주로 사업주, 근로자 등)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 관련 민원상담센터는 **고객상담센터(울산, 직영)**와 3개 민간위탁 콜센터(천안, 안양, 광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 고객상담센터는 노동(1350) 분야 전화상담,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서면 질의 민원을 처리, 천안 등 위탁콜센터는 **고용(1350) 분야 전화상담 및 고용센터 대표전화 인입 전화상담 민원**을 처리



- 고객상담센터 업무처리 흐름도



사 업 명						
(111) 고객상담센터운영(79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900	7931	301
명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고객상담센터운영	고객상담센터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고객상담센터운영	3,237	3,660	3,660	6,469	6,469	2,809	76.7

4. 사업목적

- 전국에서 들어오는 노동 분야 전화상담 및 고용·노동 분야 인터넷(서면) 질의민원을 집중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방관서 본연 업무 집중에 기여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운영(공무원 55명, 전화상담원 114명, 사무원 1명, 청소원 2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법률 제13041호)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006호)

제2조(소속기관)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61호)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 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1과 같고, ... 후략

[별표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구분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전략 ...		
기타 유형의 기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특허청

② 추진경위

- '03.11.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계획 확정
- '03.12.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단』 발족
- '04.08. 종합상담센터 개소
- '04.12. 종합상담센터 직제 마련
- '10.07. 직제 개편 (종합상담센터 → 고객상담센터)
- '12.12. 고객상담센터 이전 (경기도 안양 → 울산)
- '16.03.01.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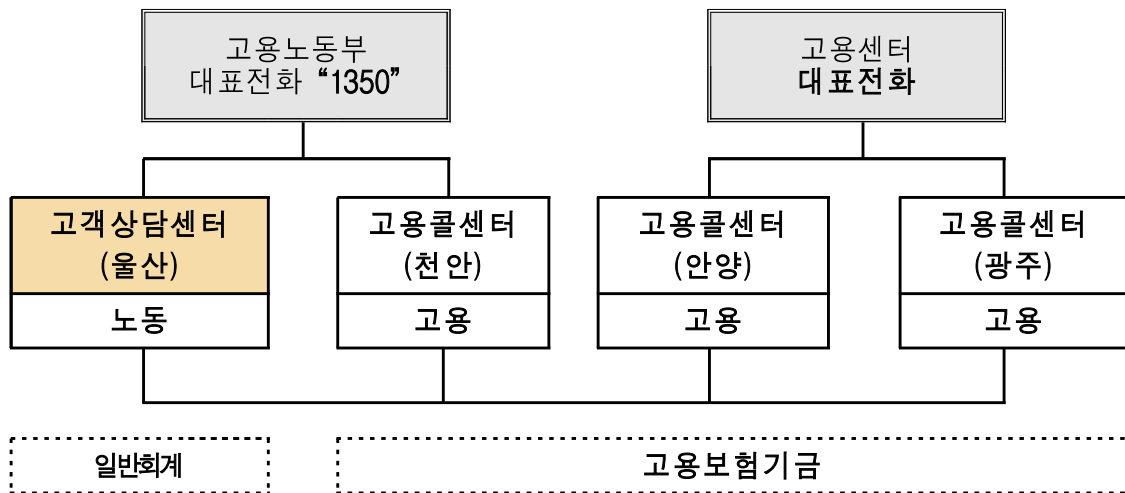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8월 ~ 계속
- 사업규모 : 연간 전화상담 155만건 및 인터넷 상담 15만건 처리('19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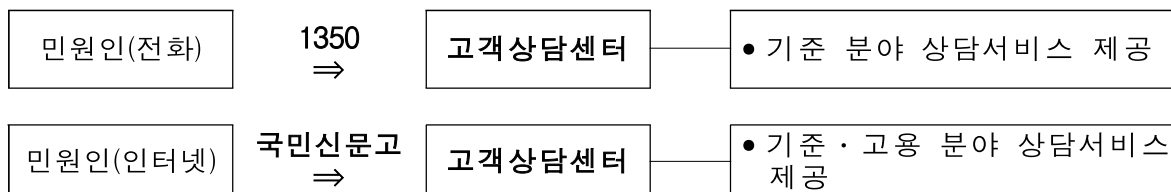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국민(주로 사업주, 근로자 등)
-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 관련 민원상담센터는 **고객상담센터(울산, 직영)**와 3개 민간위탁 콜센터(천안, 안양, 광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 고객상담센터는 노동(1350) 분야 전화상담,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서면 질의 민원을 처리, 천안 등 위탁콜센터는 **고용(1350) 분야 전화상담 및 고용센터 대표전화 인입 전화상담** 민원을 처리



- 고객상담센터 업무처리 흐름도



사 업 명						
(112)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고용보험운영 등(8420-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0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고용보험운영 등	고용보험운영 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고용보험운영 등	200	200	200	200	200	0	-

4. 사업목적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에 따라 사회보험으로서 고용보험 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 기금재정의 안정성 유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 ② 추진경위 : '99년부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
- 사업시행방법 : 기금전출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회계 지출(전출) → 고용보험기금 수입(전입) →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복지공단 운영비로 출연

사 업 명						
(113)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8421-88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	통합고용정책국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1	881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모성보호지원)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모성보호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모성보호 지원)	140,000	180,000	180,000	1,000,000	220,000	40,000	22.2

4. 사업목적

-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과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 육아 지원 사업의 사회분담화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 급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제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의거 산전후휴가기간 확대 계획 추진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결정('00. 4. 10.)
 - 산전후휴가기간을 연장(60→90일)하되, 사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대책 마련
- '01.6월 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 시 관련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분담토록 국회 부대 결의(※붙임: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
- '05. 5. 31.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 수준 확대 3법 개정('06.1월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년 ~
- 사업규모 : '16(700억) → '17(900억) → '18(900억) → '19(1,400억) → '20(1,800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출산·육아기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출산휴가)을 사용하는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14) 고용보험기금 전출(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8422-88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2	882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청년등 지원)	고용보험기금 전출(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고용보험기금 전출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	400,000	970,000	580,000	580,000	△390,000	△40.2

4. 사업목적

-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재정건전성 등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 ② 추진경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재정건전성 도모 등을 위해 '20년부터 편성·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회계 지출(전출) → 고용보험기금 수입(전입)

사 업 명						
(11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보험운영)(8422-88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2	882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 (산재보험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B-A)	(B-A)/A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 (산재보험운영)	6,300	6,300	6,300	6,300	6,300	0	0.0

4. 사업목적

- 산재보험의 사무집행 및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재기금의 설치) 제3항 정부는 산업 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1997년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무이행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에 출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회계 지출(전출) → 산재보험기금 수입(전입) → 산재보험기금에서 고용노동부 사무 집행 및 근로복지공단 운영비로 출연

사 업 명						
(11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예방지원)(8422-88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2	883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산재예방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전출 (산재예방지원)	9,200	9,200	9,200	10,000	10,000	0	0.0

4. 사업목적

-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재기금의 설치) 제3항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

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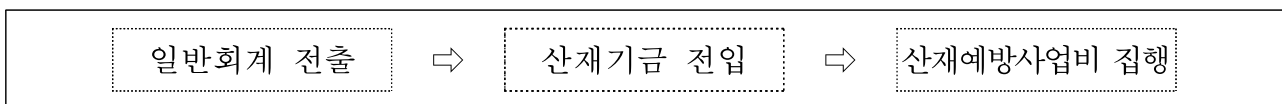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7년
- 추진 배경 : 정부의 산재예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7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17)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8425 - 88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5	885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임채기금으로의 전출금(임채기금운영)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	82	82	82	82	82	0	0.0

4. 사업목적

-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써 임채기금 비용부담 경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99년~계속
- 추진배경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기금전출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 지출(전출) →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전입)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고용노동부 사무집행 및 근로복지공단 운영비로 출연 |
|--|

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II.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155	361	361	361	361	0	0

1. 법적 근거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진폐위로금, 건강진단비 등에 대한 부정·착오 지급시 부당이득 회수
 - ※ '89.4.1.부터 광산업 경영악화에 따라 사업주부담금 폐지 후 '00.1월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전액 출연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361	203	157	1,139

2. 세출

사 업 명						
(1) 진폐위로금지급(4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4 투자계정	080	08E
명칭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00
명칭	산업재해예방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위로금지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본예산(B)	(B-A)	(B-A)/A
진폐위로금지급	107,371	88,224	88,224	89,349	89,349	1,125	1.3

4. 사업목적

- (재해위로금)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결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
- (장해위로금)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결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10년 개정법 시행전 판정자)
- (유족위로금)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진폐예방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10년 개정법 시행전 판정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5조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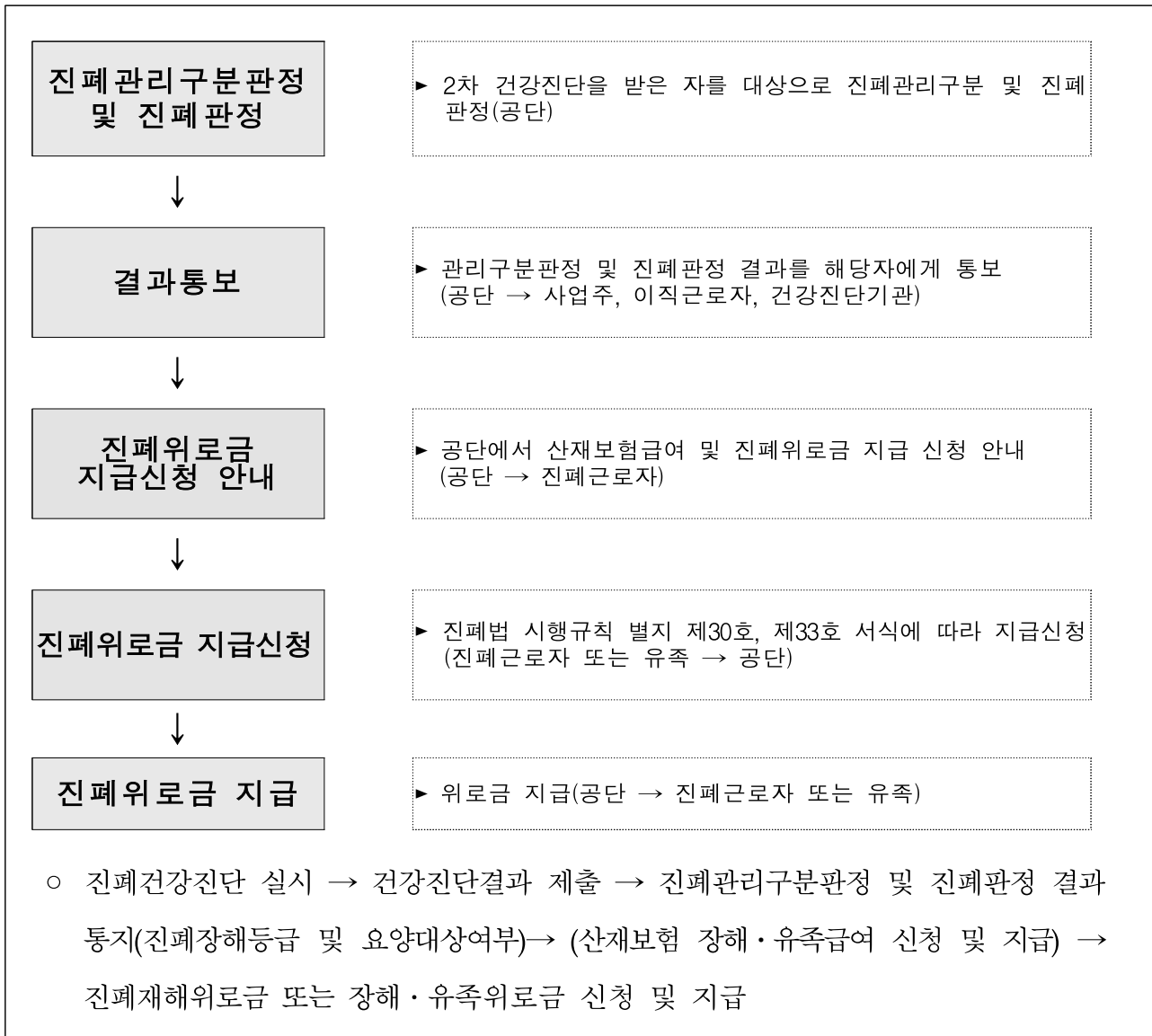
- 사업 시작년도 : '85년 ~

- 추진경위
 - '84.12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진폐기금을 설치하여 '85년부터 진폐위로금지급 사업 개시
 - '00. 1월 정부기금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진폐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 수행
 - 업무처리의 중복을 예방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08. 1. 1.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08. 1. 1.부터 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 중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및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 건강진단(4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4 투자계정	080	08E
명칭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01
명칭	산업재해예방	진폐근로자보호	건강진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본예산(B)	(B-A)	(B-A)/A
건강진단	1,666	1,569	1,569	1,628	1,628	59	3.8

4. 사업목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직자건강진단 및 2차건강진단(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 (이직자 건강진단)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신 건강진단을 받아 제18조에 따라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7조

제14조(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①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관리수첩의 기재 내용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85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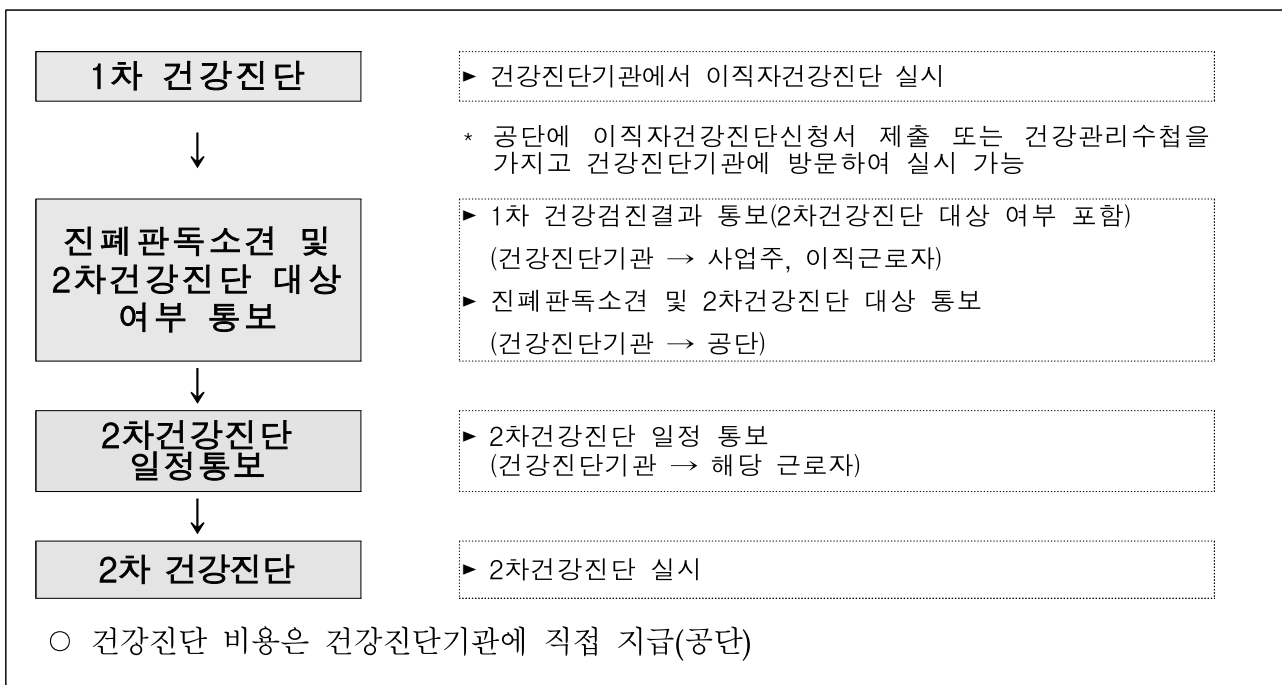
- 추진경위

- '84.12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진폐기금을 설치하여 건강진단사업 시행
- '00. 1월 정부기금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진폐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 수행
- 업무처리의 중복을 예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08. 1. 1.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85년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08.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 사업수혜자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 건강진단지원금(41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4 투자계정	080	08E
명칭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04
명칭	산업재해예방	진폐근로자보호	건강진단지원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본예산(B)	(B-A)	(B-A)/A
건강진단지원금	1,155	1,113	1,113	1,234	1,234	121	10.9

4. 사업목적

- 광업에 종사 중인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비용, 2차 건강진단(정밀진단) 기간 동안 진단수당 및 이송료(교통비)를 지급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진폐근로자의 중·고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진폐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
- 진폐근로자보호사업을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23조, 제32조

제11조(정기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연도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시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수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1의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 (이하 생략)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

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가. 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그 결과의 통지

4.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6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6의3. 법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업무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진단수당과 및 이송료의 지급

8.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전에 근로자나 유족에게 과오지급된 진폐위로금의 정산

9.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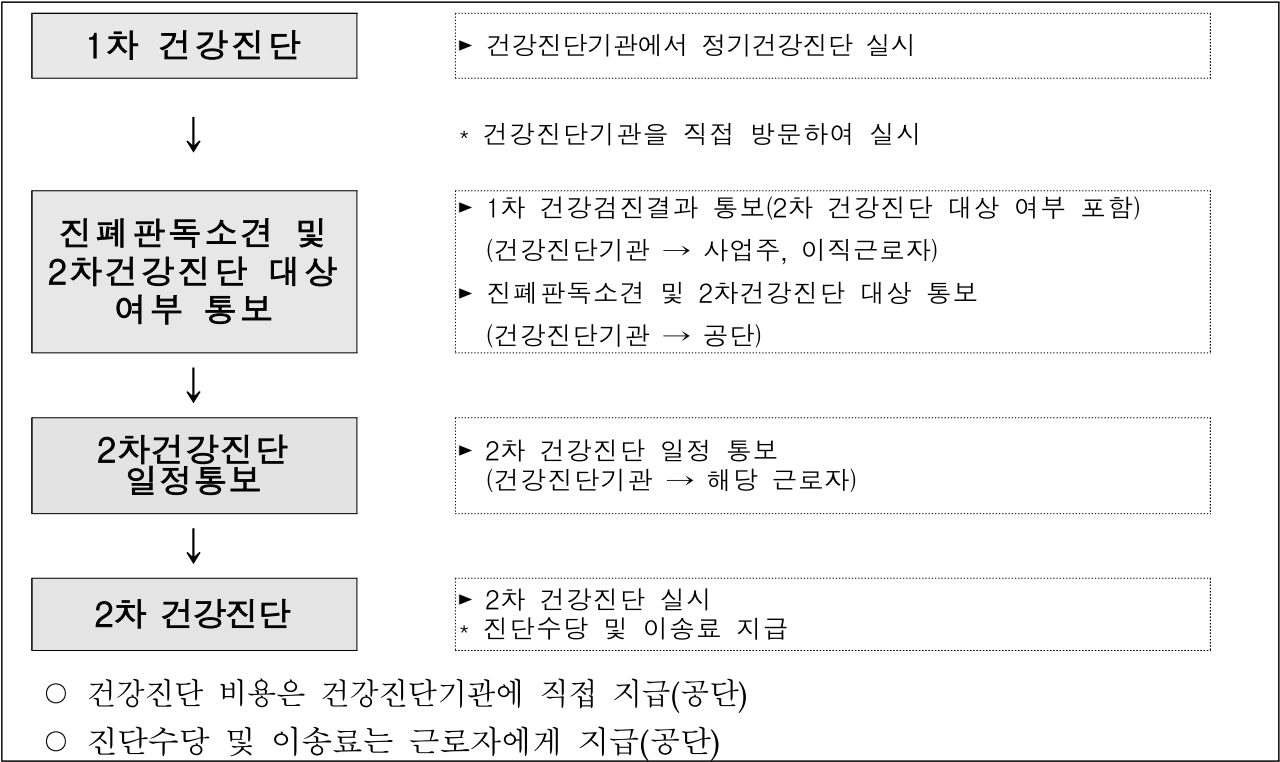
- 사업 시작년도 : '85년 ~
- 추진경위
 - '84.12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진폐기금을 설치하여 사업 시행
 - '00. 1월 정부기금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진폐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 수행
 - 업무처리의 중복을 예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08. 1. 1.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5년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08.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 사업 수혜자 : 진폐근로자 및 진폐근로자의 중·고생 자녀

7. 사업 집행절차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출

사 업 명						
(1) 사회적기업육성(균특)(1037-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지역지원	080	08D
명칭	특별회계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7	312
명칭	고용정책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육성(균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5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사회적기업육성 (균특)	88,082	101,291	95,229	97,405	97,405	2,176	2.3

4. 사업목적

-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03년)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필요성이 높아져 '03년 추경편성시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포함하여 시행(시범사업 '03~'04년)
-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 ('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자치단체 이관
- ('15년) 일자리창출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편성
- ('17년)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편성
- ('19년) 지역자율(생활)·세종·제주계정 예산 지역지원계정으로 통합·이관
- ('20년) 사회보험료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70→75%)
- 대통령 공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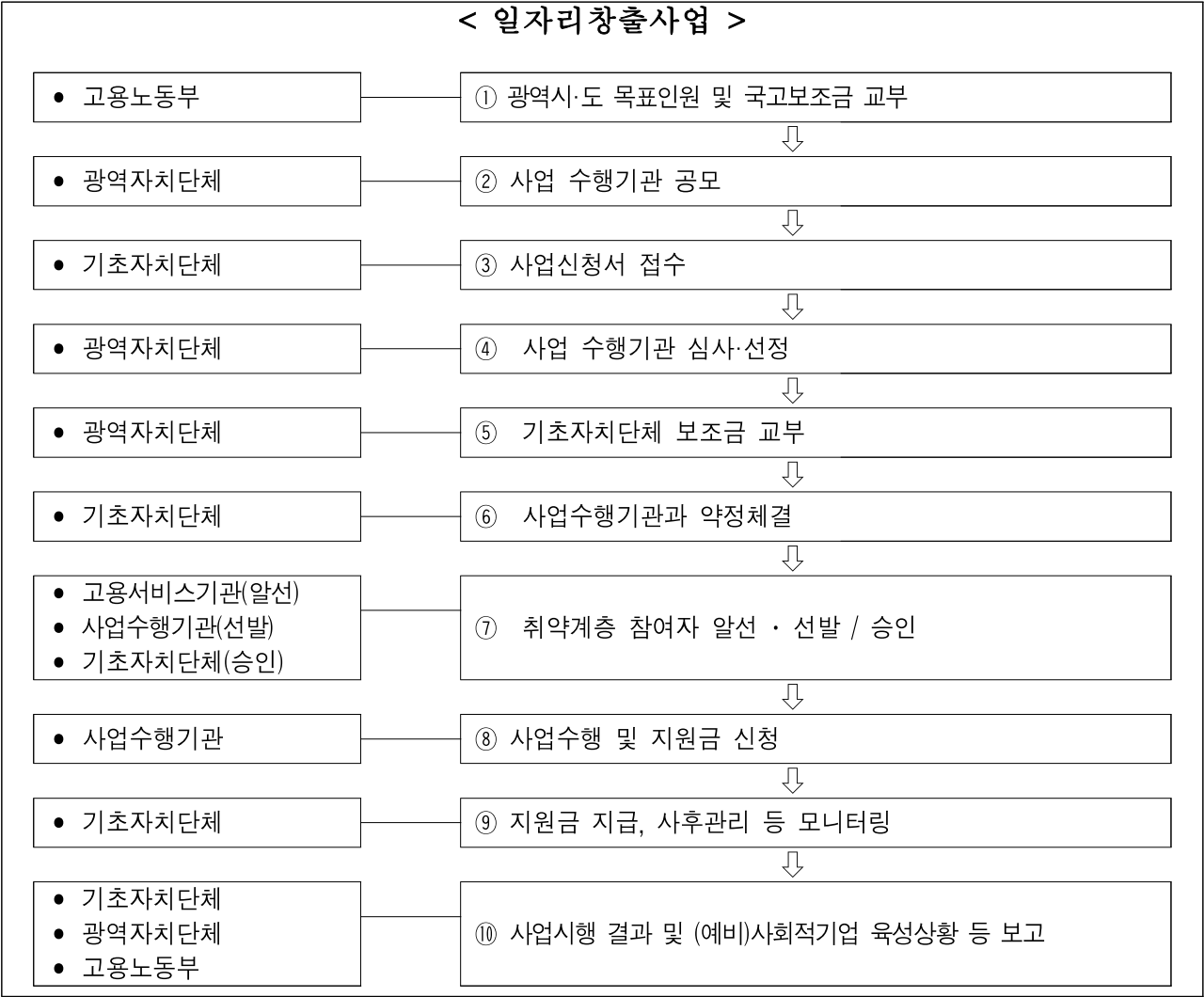
-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정과제 선정: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1,013억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예비)사회적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 사회적기업육성(제주)(1037-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제주	080	08D
명칭	특별회계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7	313
명칭	고용정책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육성(제주)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산(B)		
사회적기업육성 (제주)	-	818	818	1,206	1,206	388	47.4

4. 사업목적

- (사업개발비(제주))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사업운영비(제주))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화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2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03년)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필요성이 높아져 '03년 추경 편성 시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포함하여 시행 (시범사업 '03~'04년)
- ('07년) 제주도가 특별자치구로 지정되어 기존 노동부 소관 부서가 지자체로 이양.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이루고자 사회적일자리 창출관련 예산 지원
- ('08년) 제주지역 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

-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정과제 선정 :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81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예비)사회적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제주특별자치도) → 교부결정 및 자금 배정(고용노동부)
→ 사업수행 및 집행(제주특별자치도)

사 업 명						
(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1056-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지원	080	08D
명칭	특별회계			계정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6	317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지역고용촉진지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60~9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6,147	153,022	151,522	148,029	148,029	△3,493	△2.3

4. 사업목적

-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및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② 추진경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필요성 제기되어 200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수행

-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06.12.13) 발표

※ “지역차원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한다”

- 노사정위원회 『지역고용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권고문』 의결(‘08.5.8)

※ 노사정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고용사정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08.5.8)

- ‘20년 예산 회계 변경 편성(고용보험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사업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130,032	131,347	126,423	108,300	151,522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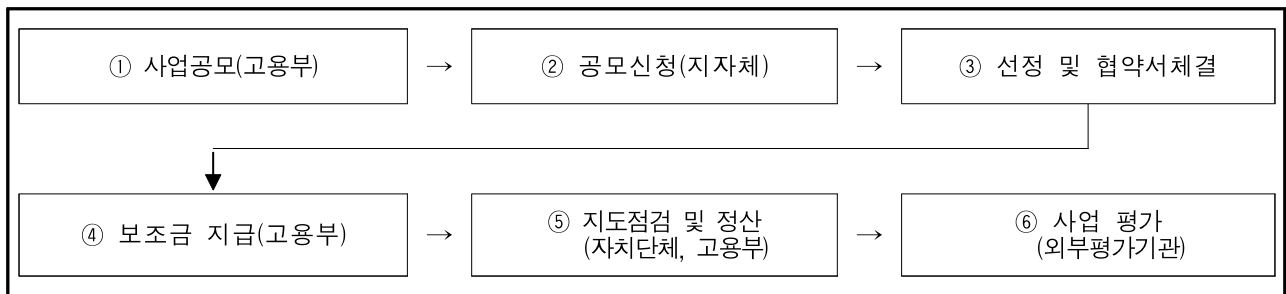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역의 미취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광역자치단체 보조	80~60%	시행지침에 근거
기초자치단체 보조	90~70%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 직업안정기관운영(704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9	24	고용서비스정책관	3	080	08D
명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제주특별자치 도계정	사회복지	부문명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301
명칭	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직업안정기관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직업안정기관운영	721	952	952	952	952	-	-

4. 사업목적

- '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제주고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비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 ① 「고용정책기본법」 제 11조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3.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 제12조 제4항 및 제25조 ⑤~⑥ 생략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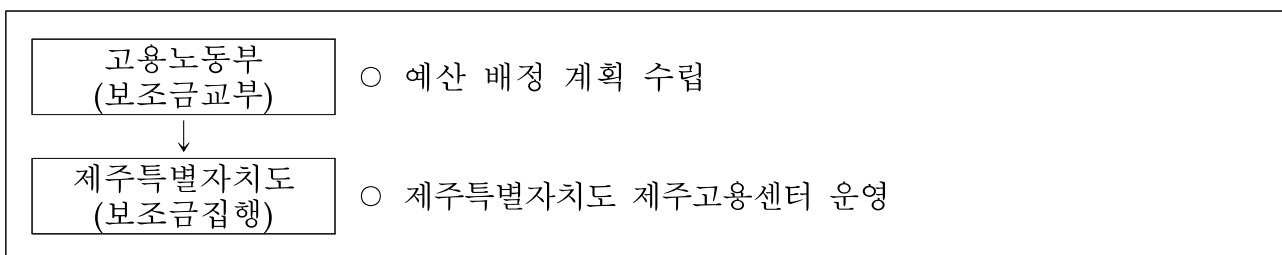
- 사업 시작년도 : 2007년
- '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고용센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 '07년부터 이관된 제주고용센터의 기본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보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사업규모 : 제주고용복지+센터 1곳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고용복지+센터)
- 사업 수혜자 : 제주도민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고 1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균특)(704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3	080	08D
명칭	특별회계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30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균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균특)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1,105	1,101	1,101	1,476	1,476	375	34.1

4. 사업목적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모

* (1단계)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IAP 수립) → (2단계) 직업능력 향상 → (3단계) 취업
알선 및 취업성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사무·권한 이양에 의거 '06.7월부터 지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보고를 통해 국정과제에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 포함
- 고용노동부에서 '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실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07년부터 직업적응훈련으로 실시해 오던 사업을 '10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
-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으로 통합·개편되어 운영 예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 직업적응훈련을 '10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로 전환 운영
- 사업규모 : '21년 598명(본예산 기준)
- 사업시행방법 : 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중위소득 50~60%이하 저소득층 및 노숙인,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 계층, 중위소득 120% 초과 미취업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60~100%이하 중장년(35~69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7. 사업 집행절차

○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 참여요건 확인 → 참여 확정 통보 →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 취업 → 취업성공수당 지급

○ 단계별 지원내용('20년)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참여수당 25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500만원(자부담 최대 20%) 훈련수당: 월 4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II 유형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세)	참여수당 2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300만원(자부담 10~35%) 훈련수당: 월 40만원	-

사 업 명						
(6)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균특)(7041-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제주특별 자치도	080	08D
명칭	특별회계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31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균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내일배움카드 운영지원(균특)	288	96	96	96	96	-	-

4. 사업목적

- 제주지역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8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98년부터 실업자 재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 및 창업훈련 실시
- '98. 8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유망분야훈련 실시
- '06.7.1부터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제주특별자치도로 분리
- 실업자·재직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내일배움카드 사업체계를 '20년부터 하나로 통합·운영함에 따라 사업비는 고보기금으로 이관하고, 운영비만 편성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사업비 미편성)

사 업 명						
(7) 청년구직활동지원금(균특)(7041-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제주특별	080	08D
명칭	특별회계			자치도계정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31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균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508	1,877	1,877	341	341	-1,536	-81.8

4. 사업목적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95조(직업안정에관한특례)
- ② 추진경위
 - 1) 국정기획자문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확정·발표('17.7월)

- 2) 관계부처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19년 청년구직촉진수당 사업 확대 및 명칭 변경* 발표('18.3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정책 참여단 설문결과 반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
- 사업규모 : '20년 980명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 소득 120%이하, 생애 1회 지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10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 사업 집행절차

- ① 지원금 신청 및 대상 선정(온라인)
 - 구직활동계획서 등 온라인 서류 접수 → 고용센터 심사 후 졸업 후 이행 기간 등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② 지원 대상자 대상 예비 교육(오프라인-고용센터)
 - (내용) 지원금의 목적,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청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방법,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 '20년 2월부터 코로나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
- ③ (최초 1개월) 지원금 지급(온라인)
 -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예비교육 참여 여부 확인 후 지급 결정(고용센터) → 포인트 지급(카드사)
- ④ (2개월부터)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온라인)
 - 월 1회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청년) → 내용 확인 후 지급 결정(고용센터) → 포인트 지급(카드사)

사 업 명						
(8)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7041-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9	24	고용서비스정책관	3	080	08D
명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31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균특)		3,114	3,114	8,039	8,039	4,925	254

4. 사업목적

-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법 제6조·제7조)
-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법 제8조~제10조)

-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법 제12조~제15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법 제12조~제15조)
- 구직촉진수당등의 수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법 제27조·제28조)

② 추진경위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17.5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도입 및 제도 기본 골격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18.8월, ‘19.3월)
-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마련, 제11차 일자리위원회 의결·발표(‘19.6.4)
-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19.9.16) →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 법률 부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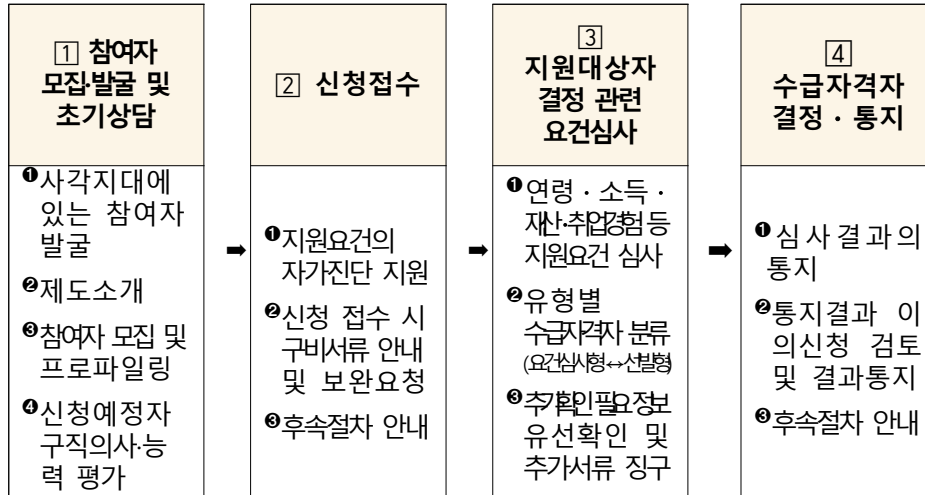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사업규모 : 4000명
- 사업시행방법 : 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 배제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 중 중위 소득 50~120%이하인 사람
ex.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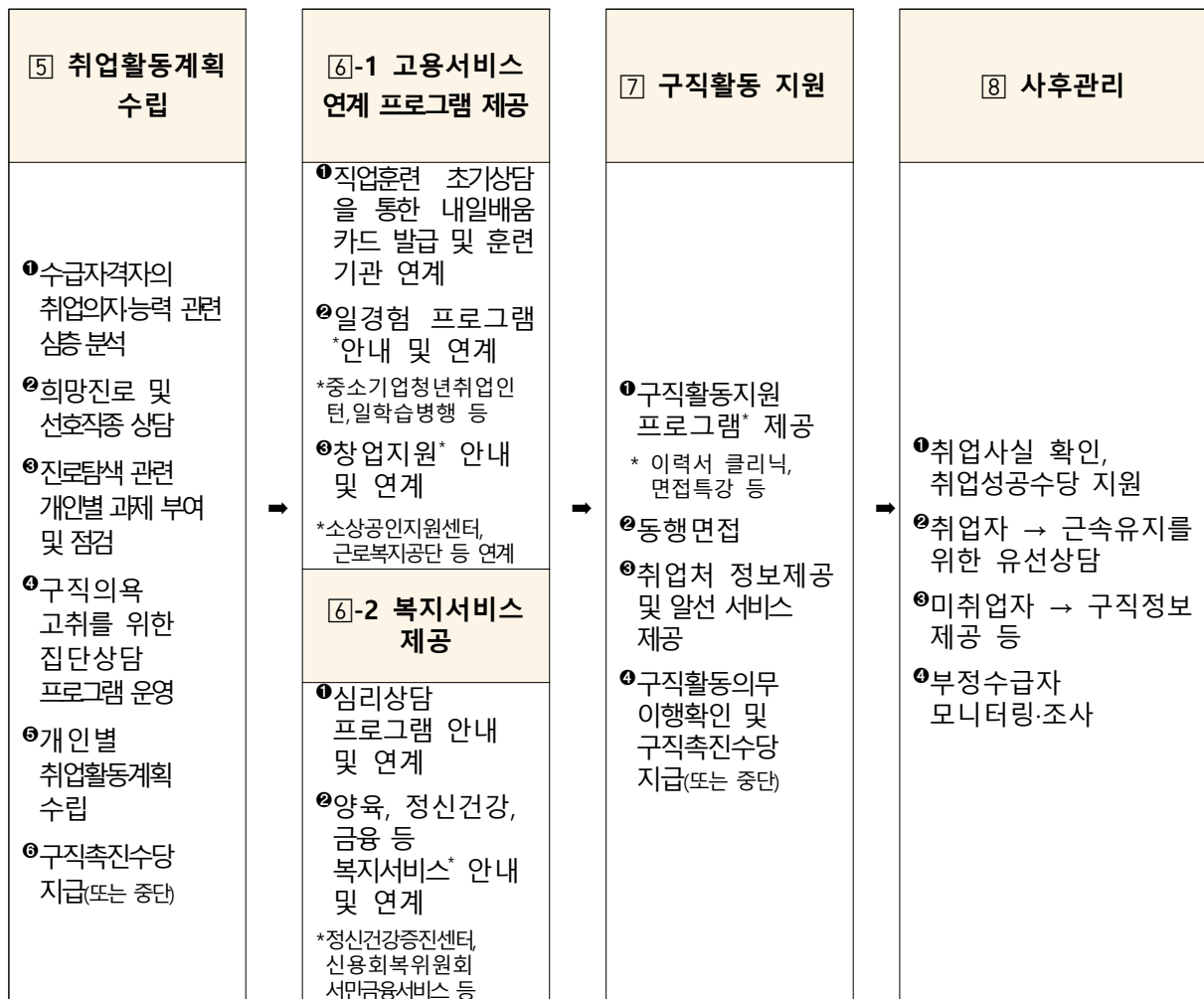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①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②취업지원서비스 단계로 구분

① (지원대상자 선정) 참여자 모집·발굴 및 신청자 초기상담 → 신청접수 → 수급자격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 수급자격자 선발·통지



②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복지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사후관리



사 업 명						
(9) 제주노동위원회지원(7041-4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특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4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제주노동위원회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제주노동위원회지원	1,166	1,188	1,188	1,258	1,258	70	5.9

4. 사업목적

- 제주노동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부문별위원회 운영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

② 추진경위

- 2007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관장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의 및 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국고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제주지역 노동분쟁 관련 근로자 및 제주지노위 소속 위원, 조사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9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해당 없음

사 업 명						
(10)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7041-4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	080	08D
명칭	특별회계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4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	(B-A)/A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1,936	2,535	2,535	2,810	2,810	275	10.8

4. 사업목적

-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제주고용센터 운영 시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② 추진경위 - 제주고용센터 경상경비 지원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제주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 사업 집행절차

- | |
|---------------------------------------|
| - 지자체 보조금 교부 신청 → 분기별 보조금 교부 → 지자체 집행 |
|---------------------------------------|

IV. 고용보험기금

IV. 고용보험기금

1. 수입

(1) 고용주부담금	
38 - 381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용주부담금	7,062,671	8,033,244	8,033,244	8,625,679	8,625,679	592,435	7.4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⑫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1.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독촉 및 체납·결손 처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7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개산보험료, 월별보험료, 확정보험료, 정산보험료, 이월보험료)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6,082,371	6,517,561	7,062,671	7,390,671

(2) 피고용자분담금

38 - 382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피고용자 분담금	4,026,777	4,887,039	4,887,039	5,290,297	5,290,297	403,258	8.3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개산보험료, 월별보험료, 확정보험료, 정산보험료, 이월보험료)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3,418,498	3,666,586	4,026,777	4,511,177

(3) 건물대여료
51 - 512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건물대여료	149	147	147	147	147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외부 기관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유상사용에 따른 대여료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47	147	149	134

(4) 기타민간이자수입

54 - 544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기타민간이자 수입	1,482	1,917	1,917	1,702	1,702	△215	△11.2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고용보험기금 융자 및 대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938	1,687	1,482	986

(5) 기타재산수입
54 - 545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기타재산수입	363,184	307,846	307,846	322,432	322,432	14,586	4.7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통화금융기관(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으로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수입
- 국고보조금, firmbanking, 관서운영경비 자금 예치에 따라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273,956	251,250	363,184	443,172

(6) 가산금
58 - 581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가산금	3,586	4,430	4,430	4,896	4,896	466	10.5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입 개요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10% 징수
 -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정기한 도과하여 확정신고를 했거나 하지 않은 경우 : 그 확정보험료 전액의 10%
 -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그 추가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
-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업장이 이후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는 가산금의 50%경감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3,173	3,708	3,586	2,482

(7)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188,453	210,267	210,267	228,542	228,542	18,275	8.7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연체금: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함)하고,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함)
- 부정이득징수금: 지급당시 허위 사실을 기초로 지급된 실업급여 등 지원금을 회수
- 부당이득징수금: 지급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고용안정지원금의 감원방지 기간 위반 등 사후요건 결함에 따른 회수금
- 반환금 등 회수금: 보조금 반환금 등 회수금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된 금액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86,050	165,046	188,453	162,580

(8) 잡수입
69 - 691/697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잡수입	91	36	36	90	90	54	150.0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체납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입 개요

- 기타잡수입 : 소송비용수수료 및 행정정보공개청구수수료,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비('14년부터 파산채권 수입 포함) 등
- 기타영업외잡수익 : 체납처분비(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체납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하고 있음)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6	81	91	60

(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 - 754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77,051	79,635	79,635	75,915	75,915	△3,720	△4.7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大部,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고용보험기금 융자 및 대부사업에 따른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79,373	71,321	77,051	61,956

(10)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 - 851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한국은행예치 금회수	92,153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 운용 또는 기타 지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전년도말 한국은행 국고계좌 잔액을 당해연도 수입으로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06,502	117,617	92,153	-

(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679,822	3,946,504	3,946,504	3,784,861	3,784,861	△161,643	△4.1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을 만기도래 또는 사업비 지출 등을 위해 환매하여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0,126,649	3,585,158	3,679,822	4,182,829

(12)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일반회계전입금	140,200	580,200	1,150,200	800,200	800,200	△350,000	△30.4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5조 (국고의 부담)

-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2. 수입 개요

-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일반회계) 부담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90,718	90,200	140,200	1,150,200,000

(13) 기금예수금
94 - 943

< 고용보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기금예수금	-	-	4,699,715	3,200,000	3,200,000	△1,499,715	△31.9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기금 운영의 재원 조달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	-	-	4,699,715

2. 지출

사 업 명						
(1) 고용유지지원금(1045-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5	35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고용유지 지원금	66,905	35,089	2,682,618	1,191,384	1,372,832	△1,309,786	△48.8

4. 사업목적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구분	내용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제21조의 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노사합의고용 유지지원금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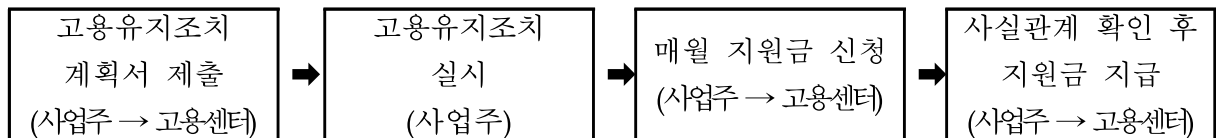
구분	내용
고용유지 지원금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 - 추진경위 · 매출액 ·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등 감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한다.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04.2.10) 제2장 2-4-가 · (일자리 나누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훈련·휴직기간 등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09.2.23) 1-2-(2)-나
노사합의 고용유지 지원금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20년 - 추진경위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실업 급증 등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로 노사가 근로자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를 합의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지원 *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제5차 비상경제회의, '20.4.22) 포함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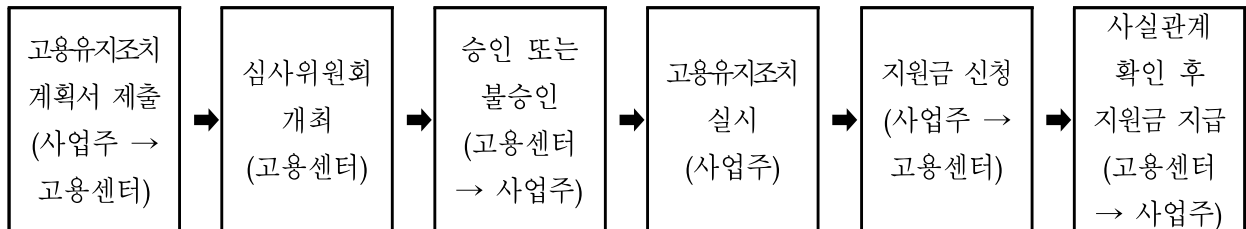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없음
- 사업기간 : 1995 ~ 계속(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20년 한시 사업)
- 사업규모 : 21,982억원('20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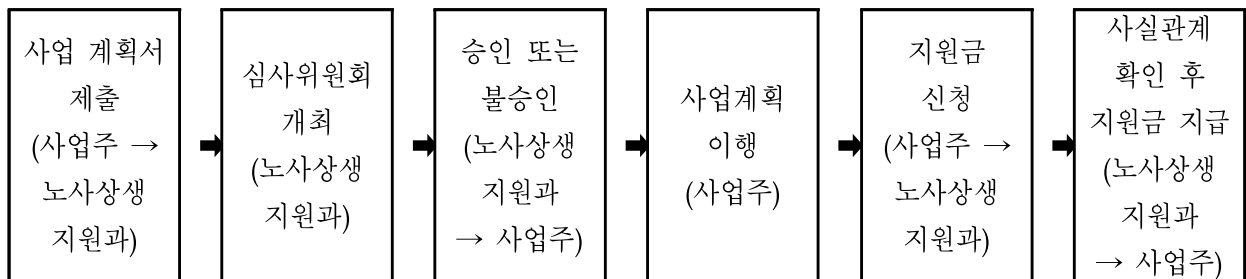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 무급휴업의 경우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훈련의 고용유지조치 필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 노사상생지원과가 없는 지방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팀)에서 수행

사 업 명						
(2) 고용유지자금융자(융자)(1045-3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5	356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용유지자금 융자(융자)	-	-	95,199	15,000	15,000	△80,199	△84.2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 부담완화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과 연계하여 인건비(휴업수당)를 저리로 융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제8호, 제37조의3(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제1항,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제2항제8호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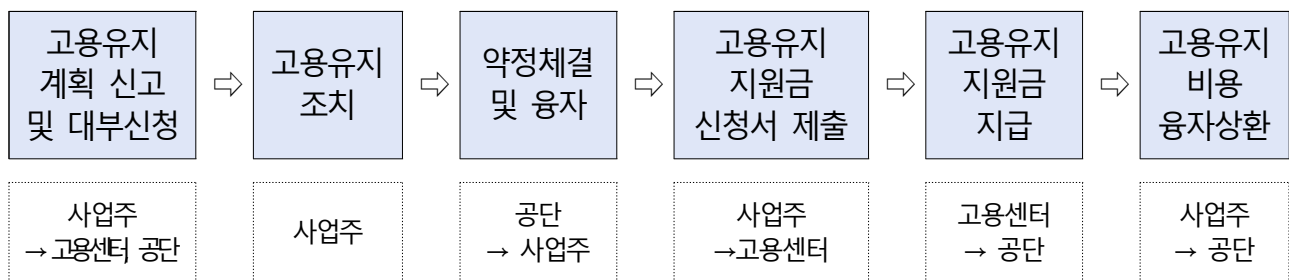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20년 코로나19 재난 관련 대책으로 신설
 - * 4.22. 관계부처 합동 고용안정특별대책(고용유지자금 융자 신설)
- '20.6.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 및 위탁 근거 마련
- '20.7.3. '20년 추경(3차) 예산(안) 95,199백만원 국회 의결
- '20.7.30. 고시 제정* 및 사업 공고
 - *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109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년(추경) ~ '21.6월(한시)
- 사업규모 : '20년 1,300개소, '21년 193개소
- 사업시행방법 : 근로복지공단 위탁 수행
 -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8의3호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고용유지 조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7. 사업 집행절차



* 공단: 근로복지공단

사 업 명						
(3)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6	35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용창출 장려금	994,636	1,143,095	1,779,221	187,021	186,481	△1,592,740	△89.5

* 내역사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1년부터 세부사업으로 분리

→ ('19년 결산액, '20년 계획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집행 및 예산액 포함

('21년 정부안 및 계획)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액 미포함

4.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 고용, 장년 고용,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내역	지원유형	지원내용
고용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인건비 및 임금감소액보전)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480~1,200만원 지원(최대 3년)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3년)
	고용촉진 장려금	○ (인건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지역·성장 산업고용 지원	○ (인건비, 국내복귀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 기업(제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 (인건비,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17년 종료사업>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최대 1년)
	전문인력 고용 지원	○ (인건비) 학력, 경력,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해당 분야에 근무하게 한 사업주<'17년 종료사업>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최대 1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인건비, 간접노무비)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19년 종료사업>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720~840만원 지원(최대 1년)
	장년고용 지원	○ (인건비,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480~960만원 지원(최대 1년) ○ (인건비, 장년인턴) 만 45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17년 종료사업>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9개월간 540만원 지원(최대 9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내역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 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고용 지원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장년고용 지원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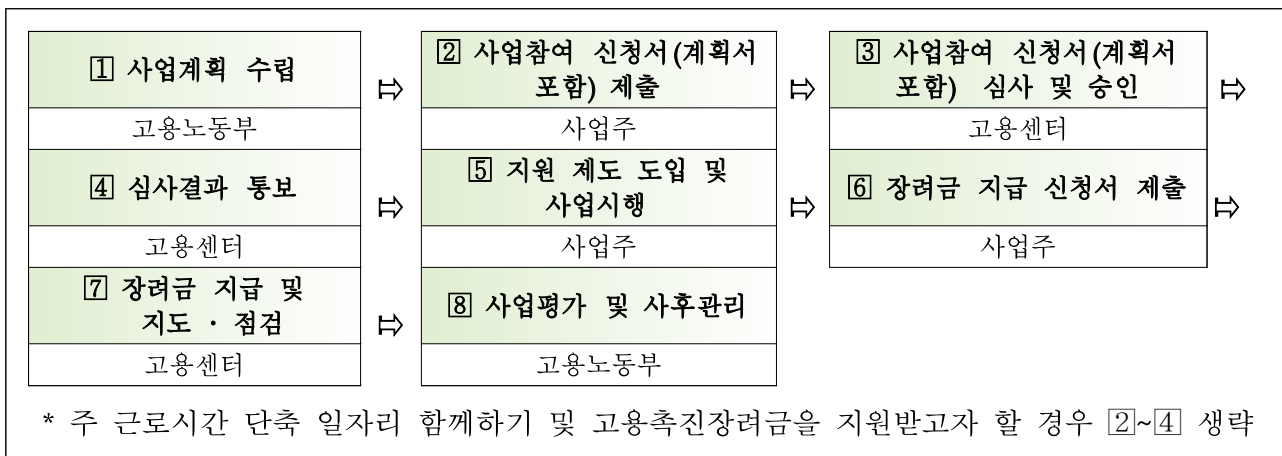
내역명	지원유형	추진경위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 '04년 제도 시행 후 그동안 각각 운영되고 있던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제도들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지원대상을 청년, 장애인까지 확대 ○ '11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17년부터 취약계층 선별 지원 강화(취성패2유형 청·장년층 지원대상 제외 등) 등 제도개선,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20년부터 취업지원 요구 반영하여 지원대상에 취성패2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이수자 추가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한시운영('20.2.1. 이후 퇴사하여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상향, 20년 추경)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 '10.5월부터 사업주가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 '11년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 '14년부터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사업은 고용센터에서 수행 ○ '15년부터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 실시 ○ '17년부터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으로 통합 이관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 ○ '20년부터 신규지원 종료
	일자리함께하기	○ '11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인 교대제,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증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제도 도입. ○ '14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설비투자비를 지원해주는 '설비투자비 지원', 고용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인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임금 보전을 해줄 경우 이를 지원하는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이 추가되었음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유형 추가 * 국정과제 「3-5-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추진
	지역·성장산업 고용	○ '11년 중소기업 및 지역특화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실시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지원 유형 중 성장유망업종 지원, 지역특화사업 지원은 신규지원 종료 ○ 국내복귀기업은 계속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 「2-4-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협업과제로 추진
	전문인력고용	○ '11년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실시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신규지원 종료
	장년고용	○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취업에 특히 애로를 겪는 구직자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연수를 제공하여 재취업촉진 ○ '12년 현장연수사업인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시행 ○ '13년 인턴사업으로 개편·시행, '13년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선정(국정과제(2-9-63)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중장년 대상 인생 이모작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 '16년 사업명칭을 '장년고용지원금'으로 변경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장년고용지원(구 장년인턴)은 종료하고, 지원 유형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통합 ~계속
 - * 고용촉진장려금('04년~'17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11년~'17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11년~'17년),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11년~'17년), 전문인력 고용 지원('11년~'17년) 장년고용지원('12년~'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부터 세부사업 분리)
- 사업규모 : '20년 324,366명 고용창출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실업자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1046-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6	35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890,578	991,900	1,426,960	1,201,802	1,201,802	△225,158	△15.8

※ '21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 세부사업(1046-350)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세부사업(1046-351) 분리,
'19~'20년 결산액과 계획액은 고용창출장려금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

4.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시 1인당 年900만원(월 75만원, 최대 3년 간 2,700만원) 지원으로 청년고용촉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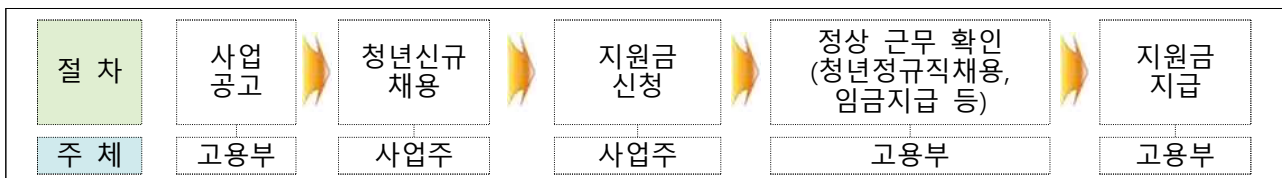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17년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17.7.22, 48억원) → '17.8.17. 사업 시행
 - * 국정과제 : 「2-4-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18.3.15. 「청년대책」을 반영하여 제도개편 및 추경을 통해 물량 확대
 - * '18년 본예산 4.5만명 → '18년 추경 9만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8월(추경) ~ '21년(한시)
- 사업규모 : '21년 380,000명(신규 9만명 + 지속 29만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미만도 가능)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 고용장려금(용자)(1047-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7	35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장려금(용자)	고용장려금(용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고용장려금 (용자)	18,686	21,570	10,070	9,167	9,167	△903	△9.0

4. 사업목적

- 고령인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한 사업주

구분	지원요건 및 지원 수준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용자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써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 사업주 총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 지원 (증가근로자 1명당 1억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 연이율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용자	·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용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준)고령자 1인당 1억원, 사업주당 10억원 한도로 지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 연이율 1%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구분	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용자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 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고령자고용환경 개선용자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 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② 추진경위

구분	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 '04.10월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교대제 전환지원금 등 의무지출방식의 고용창출지원제도 운영 ○ '11년부터 경제·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등 고용창출방식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는 등 지원절차·방식 등을 대폭 개선 ○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내역사업('16년)에서 '17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융자) 사업으로 통합 ○ '18년부터 고용장려금융자로 명칭 변경 ○ '21년부터 사업 폐지하고 잔여 사업비 편성
고령자고용환경 개선융자	○ '06.1월 고령자 고용촉진 시설 및 장비의 설치·개선비용 융자 시행 ○ '06.9월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07~'11)」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의 세부추진과제에 포함 ○ '14.2월 고시 개정을 통해 융자금 1억원 당 1명의 (준)고령자를 고용하여 융자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융자금 지원한도 제한 ○ '14년부터 융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 ○ '17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융자) 사업으로 통합(기존 이차보전방식에서 융자방식으로 변경) ○ '18년부터 고용장려금융자로 명칭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년 ~계속(5개 사업을 '17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융자)'으로 신설·통합→'18년 '고용장려금융자'로 명칭 변경)

<참고: 세부사업별 융자방식 변경 현황>

- ①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지원: '14년(대하) ~
- ②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 '06년(대하) → '14년(이차보전) → '17년(대하)

- 사업규모 : '21년 30개사 융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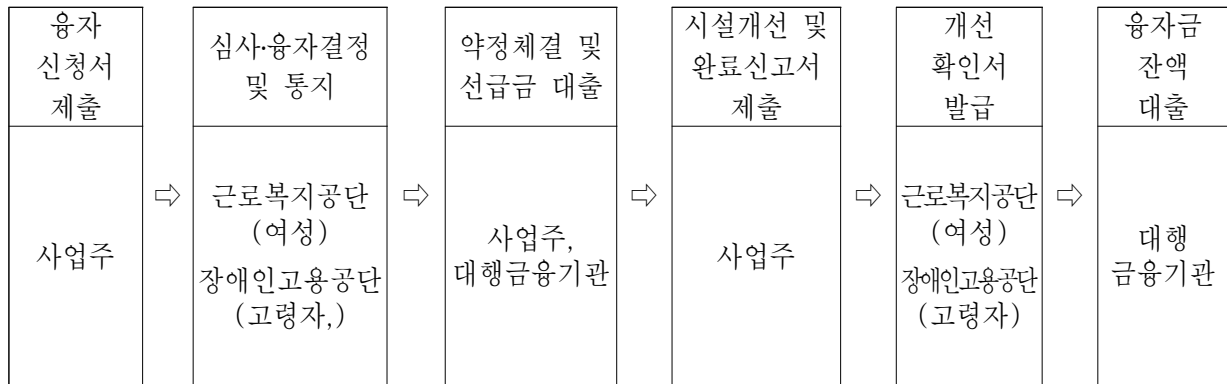
<참고: '21년 세부사업별 사업규모>

- ①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 30개소
- ②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는 '21년 사업 폐지하고 잔여 사업비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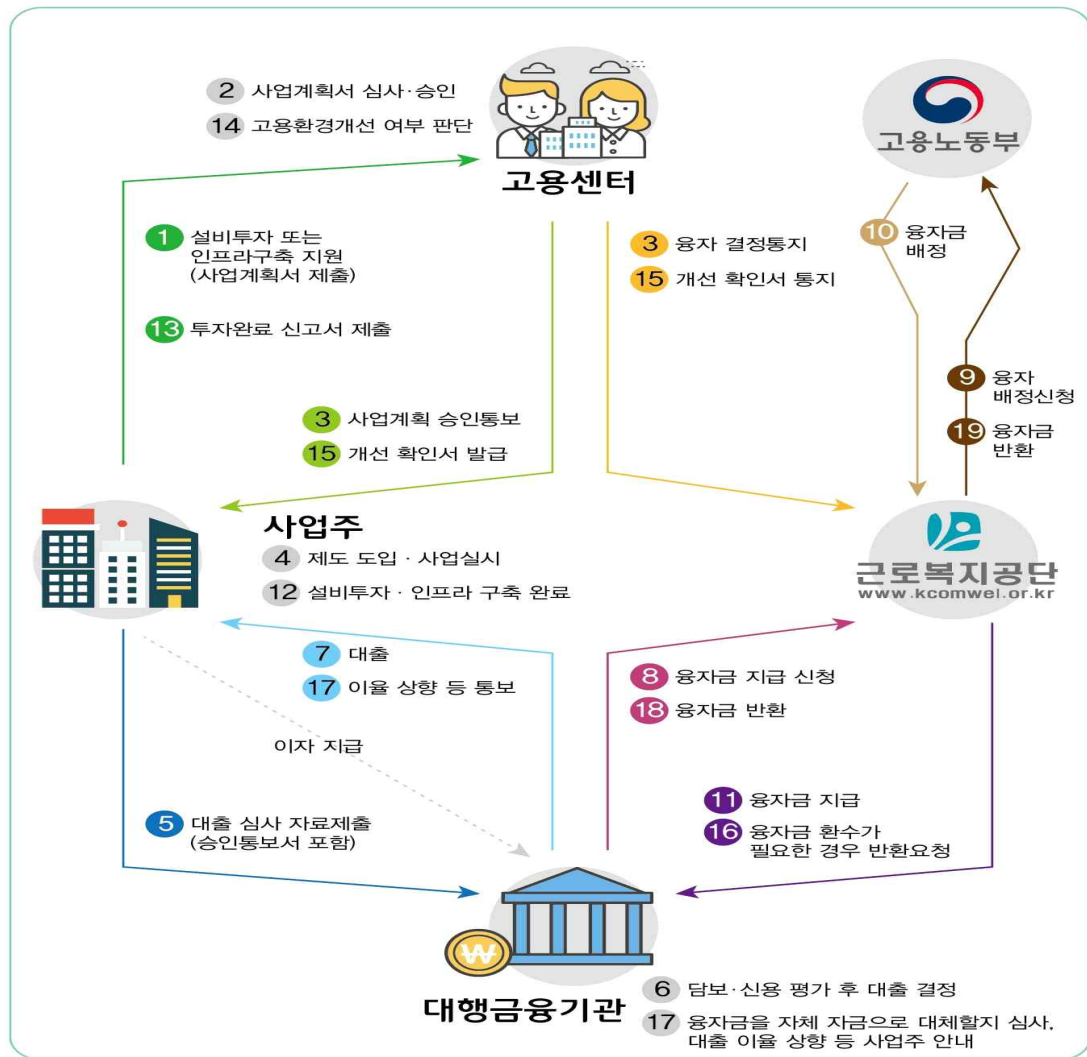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재직 근로자(고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령자고용환경개선용자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용자 지원>



사 업 명						
(6)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1049-3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9	354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10,581	10,649	10,649	10,649	10,649	-	-

4. 사업목적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건설업 특성상 일이 적은 시기(장마철, 동절기 등)에 건설기능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지원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고용보험법」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7조(취업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36조

「고용보험법」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② 추진경위

- 건설일용근로자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별도의 기능향상훈련 실시 필요성 증대로 '13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
- 건설근로자의 소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15년도부터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실시
- 제3차('15~'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포함('15.8.4, 국무회의 보고)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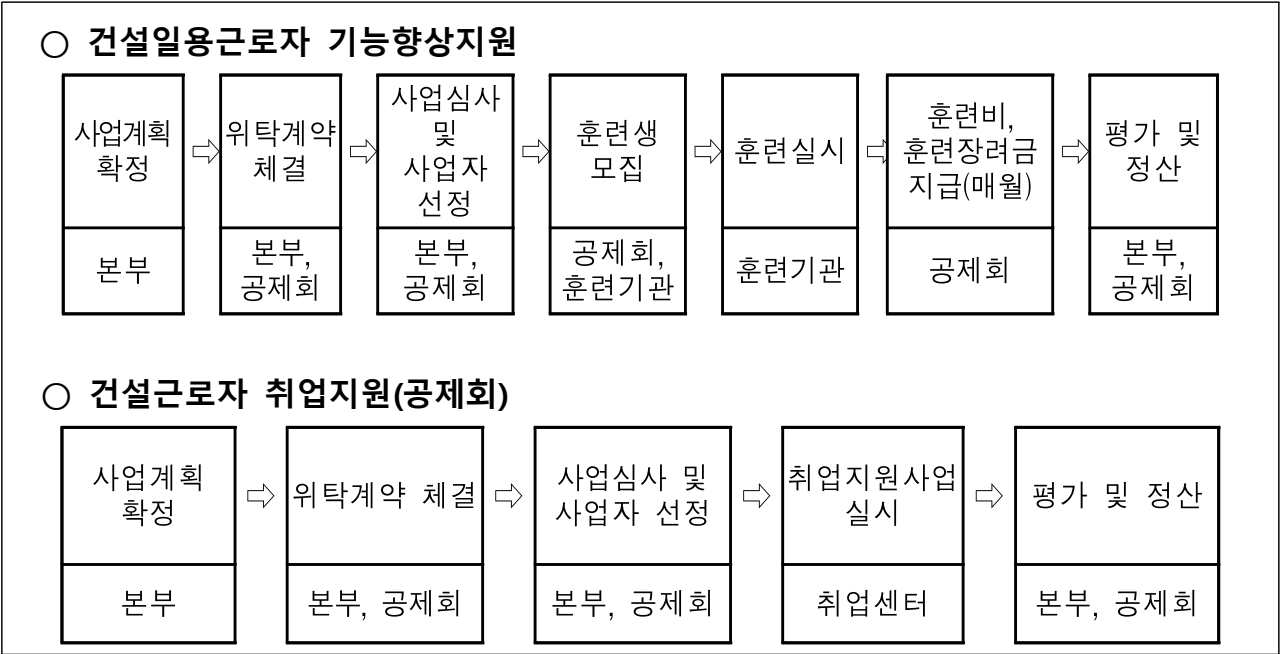
○ 건설일용근로자기능향상

- 사업기간 및 규모 : '13년~, 훈련목표인원 7,320명('21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위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 사업 수혜자 : 건설(일용)근로자
- 지원수준: 훈련비 32천원/일(훈련기관), 훈련장려금 16천원/일(훈련생)

○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

- 사업기간 및 규모 : '15년~, 취업지원센터 17개소 운영('21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위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 사업 수혜자 : 건설(일용)근로자
- 지원수준: 취업지원센터 당 18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7) 고용서비스모니터링(1051-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1	35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직업정보지원	고용서비스모니터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4,349	6,116	6,116	7,041	7,041	925	15.1

4. 사업목적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공공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평가·모니터링하여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앞당김
- 구인효과 및 구인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용서비스 및 기관 역량 강화
- 고용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정책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의 서비스 질적 향상과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검증하고(인증평가), 컨설팅·종사자교육·모니터링·성과 평가하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일자리사업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자리사업의 국민체감도 제고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상시적 모니터링·평가·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 수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용보험사업평가>

-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평가·환류체계 구축

<전문교육기관설립>

- 고용서비스 관련 시장은 양적으로 확산되고 국민적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고용서비스 분야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가 중요 → 고용서비스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들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운영규정(고용부고시 제2012-50호) 제4조(인증운영기관)

- ① 한국고용정보원을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2018.7.12, 고용부 고시 제2018-58호)

- ①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인증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고 위탁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일자리사업평가>

-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원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고용보험사업평가>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79 : 전문적 직업지도기관인 「국립중앙직업안정소」 설립
- '95 : 고용보험사업 시행에 따라 직업지도사업 확대(중앙고용정보관리소)
- '02 : 고용안정센터 평가모델 구축 실시
- '03 : 전국 고용안정센터 본격적 평가 실시
- '05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05. 4. 6) 보고사항
- '06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 신설
- '08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 '11 : 고용서비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실시
- '14 : '고용복지+센터'업무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개선 등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시
- '15 : 고용복지+센터 신규 개소기관 조기안착을 위한 '운영 가이드북'제작
- '16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 방안 제시
- '16 :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 인증기준 설정 및 우수기관 인증·공표
- '16 : 고용복지 관련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고용서비스

포럼(대토론회) 실시

- '17 : 고용복지연계 협업을 위한 워크숍 실시
- '08~'19 :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실시
- '15~'19 : 고용센터, 지차체, 새일센터, 기타 유관기관 등 공공부문 취업알선기관의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실시
- '17~'19 :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고용서비스 포럼(대토론회) 실시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 '17 :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국정과제(19-3) 선정 및 일자리정책로드맵(15-2)

국정과제

<국정과제 19-3>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 고용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 인증체계 및 품질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보강

<일자리정책로드맵 15-2>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기준 마련·인증,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담사 교육 확대 등 통합 관리체계 및 시스템 구축

- '18 : 고용부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시범사업 실시
- '19 : 고용서비스 질적 향상과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인증 컨설팅·모니터링·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20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인증평가 참여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종사자교육 실시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정보망 구축 사업 운영
- '20 : 고용부 지방관서 정성평가 사업 실시

<일자리사업평가>

- '08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해 고용대책 재정집행상황 현장점검 사업 실시
- '09 : 주요 고용대책의 현장 모니터링(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제도, 직능계좌제, 희망근로, 연장급여, 중소기업인턴제 등)
- '10 : 지역일자리사업 실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 실업인정방식 개선 시범센터 운영성과 모니터링
- '11 : 3개 사업영역 14개 과제(직접일자리10개, 직업훈련 2개, 창업인센티브2개)모니터링
- '12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모니터링(일모아시스템 업무절차 개선)
- '13 :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10개) 대상 고용효과성 시범 평가 실시
- '14 : 중앙부처 일자리사업(59개) 대상 고용효과성 시범 평가 실시

- '14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취업역량 강화 전략』 국제워크숍 개최
 - '15 : 중앙부처 일자리사업(66개) 평가와 모니터링 및 효율화 방안 제시
 - '15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439개) 운영성과 평가
 - '15 : 지역고용전략 국제컨퍼런스, 지역고용사업 우수사례 국제워크숍 개최
 - '16 :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63개), 창업지원사업(16개) 대상 성과평가 및 주요 사업군별 심층평가 실시
 - '16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315개), 11개 시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운영성과 평가
 - '17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기초평가-현장모니터링-심층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 실시
 - '17 : 『OECD 국가 노동시장 동향과 고용정책의 과제와 전망』 국제 학술대회 개최
 - '17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361개), 17개 시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운영성과 평가
 - '18 : 중앙부처 전체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현장모니터링,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18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406개), 16개 시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운영성과 평가
 - '18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제워크숍 개최
 - '19 : 중앙부처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대상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및 국무회의 보고
 - '19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401개), 17개 시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운영성과 평가
 - '20 : 중앙부처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대상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및 국무회의 보고
 - '20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7개 시도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운영성과 평가
- <고용보험사업평가>

- '05, '06 : 사업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지적(기금운용평가단)
- '06 : “비용이 들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임시국회 장복심의원)
- '07 :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실시(32개 사업 대상)
- '08 :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실시(25개 사업 대상)

- '08.5.7. :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체계를 갖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 채택 (노사정위원회)
- '09.7 :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09~ : 평가전담기관을 지정코자 하였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연구용역 방식으로 평가
- '11.1월 : 역량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 지정범위를 확대(공공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추가)
- '16~'17년 : 고용보험평가센터 지정(한국고용정보원)
- '18~'20년 : 고용보험평가센터 3년간 지정·운영(한국고용정보원)
- '18~'19년 :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지정·운영(한국노동연구원)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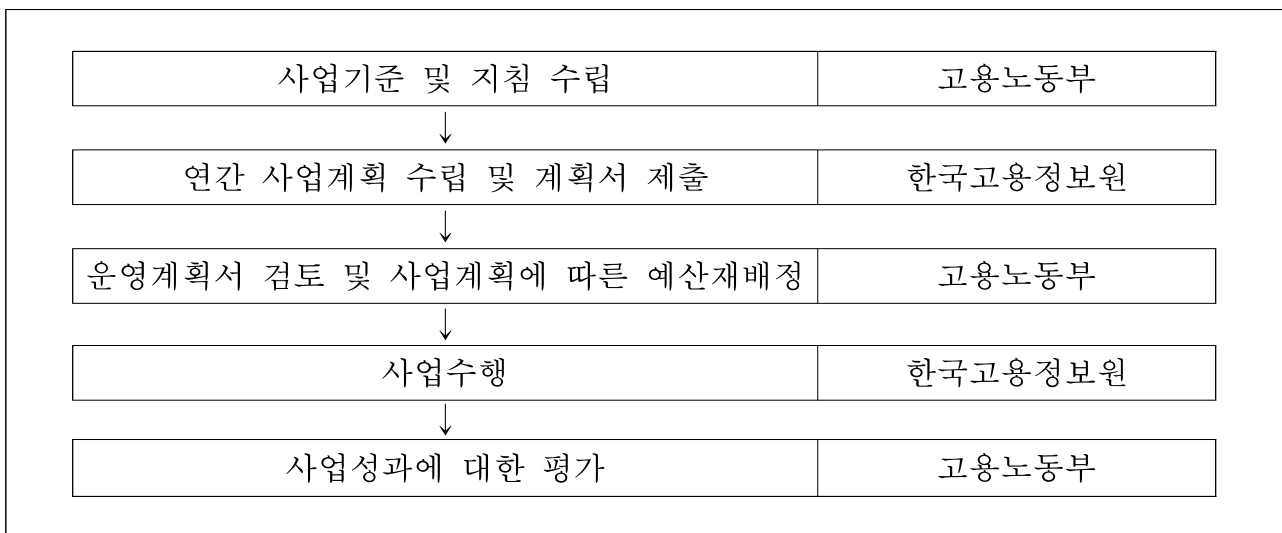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고용서비스모니터링), '07년 ~ 계속(고용보험사업평가), '21년 신규(전문교육기관설립)
- 사업규모 :
 - 고용센터(100개소), 지자체(244개소) 등 공공부문의 취업알선기관의 구인 및 구직 정보 모니터링
 - 고용서비스 기관 역량 강화 및 고용센터 평가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등 7개 민간위탁사업 평가
 -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약10,000개소)을 대상으로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실시(참여대상 기관 수 : 약1,500개)
 -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업무매뉴얼 개발과 수행
 - 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626개)포함 전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모니터링(중앙 170개)
 - 지역고용사업 평가 및 컨설팅(500여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출연(고용서비스모니터링), 직접수행(고용보험사업평가)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고용서비스모니터링), 고용보험 평가센터 위탁 수행(고용보험사업평가)
- 사업 수혜자 : 구인·구직자, 취약계층, 사업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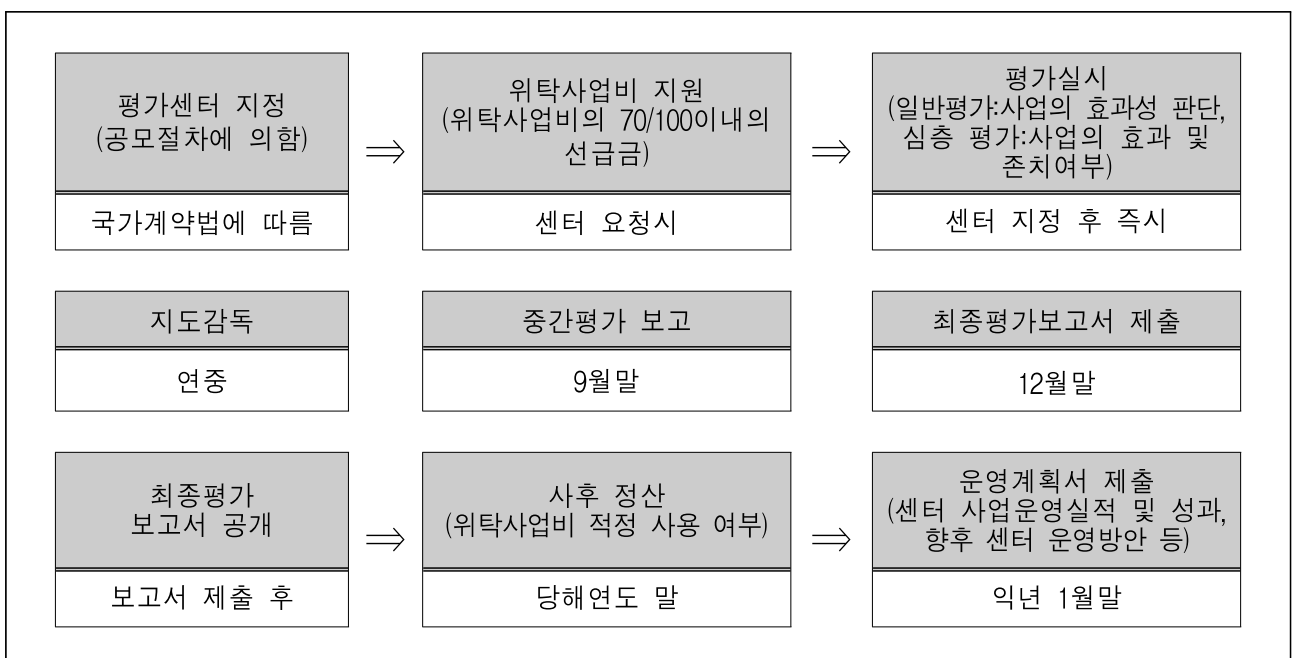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모니터링사업)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7. 사업 집행절차

<고용서비스모니터링>



<고용보험사업평가>



사 업 명						
(8)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1054-5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4	510
명칭	고용창출 및 훈련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용전산망관리 (정보화)	35,592	35,613	35,613	33,405	33,405	△2,208	△6.2

4. 사업목적

- (워크넷 구축 및 운영)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 완료 후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취업지원업무 지침 제·개정, 사용자 요구사항 등 일자리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 (고용보험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고용보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고용보험 법·제도 변경 내용 반영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모바일 서비스 개선
-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구축 및 운영) HRD-Net 훈련정보를 일자리포털로 통합하기 위한 기반 구축, 직업능력개발 법령, 규정 등 개정에 맞춘 훈련정보(훈련생, 훈련 과정, 비용 등)의 체계적인 관리, 법·제도·지침 개정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발 SW 유지 관리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외국인고용관리 정책·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상시 대응, e-GOV 프레임워크 적용 등 외국인고용관리 내외부 시스템 재구축
- (일모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일자리사업 관련 지침 등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 수신 자료에 대한 통합DB 전환, 일자리사업 실적 평가용 통계 등 실적관리 프로그램 유지 관리
-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운영시스템 DB 변경에 따른 DW 개발과 대민 개방용 EIS 통계 홈페이지 개선 추진
- (고용복지 통합 정보망 구축 및 운영)지침개정 사항 반영 및 SSO 확대와 복지부 시스템 연계 관리
- (바로원 및 MDM 구축 및 운영)운영계 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MDM DB 구조 변경, 바로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개선 등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정보망 구축 및 운영)고용서비스 품질인증 관련 신청·접수·평가(서류 및 현장실사)·이의신청·피드백·정보제공 등 업무프로세스 구축
- (고용전산망 일반운영 관리)국가고용전산망 도입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료, 임차료, 회선사용료 및 보험료 등 일반운영 경비
- (고용전산망 위탁운영 관리)워크넷 구인·구직정보 품질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콘텐츠 제작 업무 위탁 용역 비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관리),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40조(위탁)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구인·구직 정보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산업별·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토지·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7.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8. 출입국 정보
9. 장애 정도
10.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2.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3.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0조(위탁)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정부100대 국정과제(6-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확대)(‘98년)
- 고용정보인프라 구축계획(‘98.2월)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03.8월)
- 참여 정부 전자정부 우선추진과제 : 고용·취업종합서비스(‘03.8월)
- 노동부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03.10)
-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방안 보고(‘05.4.6)
-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추진현황 보고(‘05.12.20)
- 청년고용촉진대책 세부실천계획 3-2-3(청년층 종합취업포털 확충, 08.8)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56번,57번(고용지원서비스강화,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시스템 구축)
- 국가고용전략회의(‘10.1.21)
- 제44차 고용 및 사회안정망 대책 TFT회의(‘10.3.23)
- 차세대 종합고용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수립(‘10.11)
- 워크넷 모바일서비스 개시 (‘10.12)
- 차세대 종합고용서비스 시스템 1차 구축 사업 진행(‘11. 5 ~ ‘12. 6)
- 민간취업포털과 지자체의 일자리 정보 통합서비스 개시(‘11.7)
- 취약계층 정보일자리 지원 인터넷 서비스 강화(‘11.10)
- 차세대 종합고용서비스 시스템 1차 서비스 개시(‘12. 1)
- 일모아시스템 개인정보 조회내역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12.5)
- 차세대 종합고용서비스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추진
 - *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정보 연계 확대, 지역/직종별 워크넷 구축, 워크넷 내부망 전면개편, 일자리 정보 이용기관 확대, 워크넷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 장애인고용공단 워크투게더를 워크넷으로 통합(‘12.6)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개편, 스마트폰 서비스 구축, 홈페이지 통합사업 추진(‘12.11)
- EPS 고유식별정보 DB 암호화 및 결제 시스템 구축 (‘12.11)
- 일모아시스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2.12)
- “바로ONE”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3.6)
- 외국인 고용관리 업무 표준화에 따른 행정지원 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 구축(‘13.10)
- “워크넷 여성” 서비스 신규 마련 및 시범 서비스 개시(‘13.11)
- 차세대 일모아시스템 구축 완료(‘14.8)
- HRD-Net 일학습 병행제 관리시스템 구축(1단계)(‘14.10)
- 차세대 HRD-Net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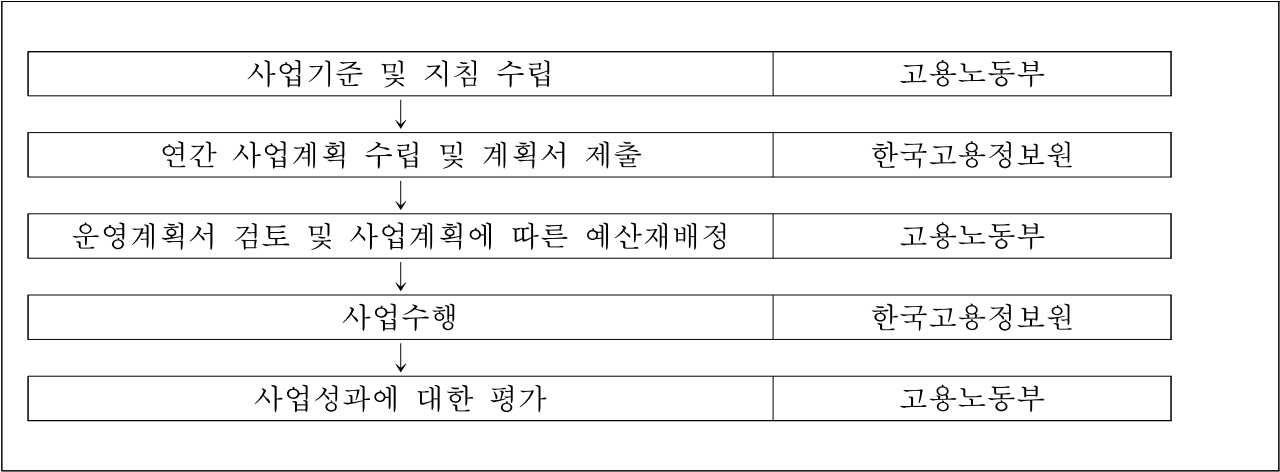
- 맞춤형 고용·복지 실현을 위한 고용·복지 정보연계 방안 수립('14.12)
- 차세대 HRD-Net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15~'17)
- 청년취업지원 통합정보망 구축(1차) ('15.11)
- 대국민 고용·복지 종합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15.12)
-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시설 및 청년 고용지원 통합전산망 1차 구축 ('16.3)
- 고용센터 홈페이지와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통합·운영 ('16.3)
- 외국인고용관리 행정지원시스템 및 홈페이지·모바일 서비스 개선 ('16.11)
- 업무연속성(BCMS)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관련 인증 취득 ('16.11)
- 고용복지+센터 업무시스템 (work plus) 기능 강화 ('16.12)
- 차세대 HRD-Net 시스템 구축('16~'17)
- 피보험자 업무 이관(고용안정센터 → 근로복지공단) ('17.1)
- 산재되어 운영하느 고용부 훈련사업(9개과정)을 HRD-Net으로 통합·연계 구축 ('17.10)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확대(라오스) 추가 구축 ('17.10)
- 부정수급 빅데이터플랫폼 및 수사관리시스템 구축 ('18.5~)
- 일자리포털 서비스 개시 ('18.12~)
- 부정수급 빅데이터플랫폼 및 수사관리시스템 구축 ('19.2~)
- 워크넷 일자리 자동상담(챗봇) 시스템 시범서비스 오픈 ('19.3~)
-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오픈 ('19.8~)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기관 등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고용안정망 구축과 일반 국민에 대한 고용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정보 제공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청소년, 실업자, 구인업체, 진로지도담당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고용정보원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1055-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5	35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서비스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지원	7,025	8,724	8,724	7,045	7,045	△1,679	△19.2

4. 사업목적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교육 등의 종합적인 체류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생활 조기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고용보험법」 제26조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인노동자 관련사업)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 사업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제지원 사업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및 국내생활 지원사업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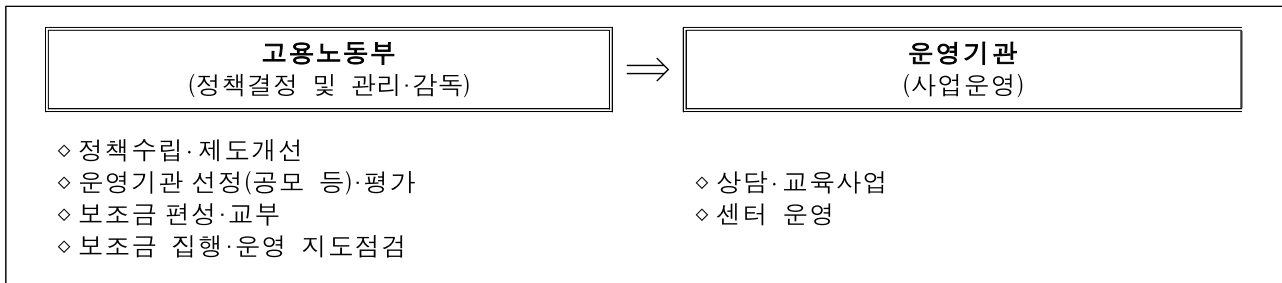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03.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6967호)
- '04.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04.12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정(재원: 복권기금, '07년부터 고용보험기금 전환)
- '06.12월,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 지정
- '07.7월,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 지정
- '08.12월, 김해 및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 지정
- '10.1월, 인천, 대구, 천안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 지정
- '11.1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명칭을 '외국인력지원센터'로 변경, 안산센터 폐지
- '11.3월, 기존 7개의 거점센터 설립지역 외 29개소의 소지역센터 지정·운영 개시
 - *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점센터 설립지역 외 원주, 영암 등 중소도시 29개의 소지역센터를 추가지정
- '14.12월,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 추가 지정
- '18.1월, 양산외국인력지원센터 추가 지정
- '18.5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명칭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
- '21.1월,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6개소 등 총 45개소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계속('07년부터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추진)
- 사업규모 : 거점 9개소, 소지역 36개소 등 45개소
 - * 거점센터 운영기관에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전액 지원, 소지역센터 운영기관에 인건비 및 센터 부식비 일부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업 수혜자 : 외국인근로자(E-9, H-2) 및 고용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 고객상담센터지원(1055-3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5	352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서비스지원	고객상담센터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객상담 센터지원	12,391	12,775	12,775	14,658	14,658	1,883	14.7

4. 사업목적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및 고용센터 대표전화 인입 전화상담을 일부 위탁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지방관서 본연업무 집중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법률 제13041호)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006호)

제2조(소속기관)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61호)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1과 같고, ... 후략

[별표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구분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전략 ...		
기타 유형의 기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특허청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 '04. 8. 1. 종합상담센터 개소(직영)
 - * 경기 안양 개소, '10.7. 직제개편(고객상담센터), '12.12. 울산으로 이전
- '09. 7. 1. 천안고용콜센터 개소(위탁)
 - * 고용분야 전화상담(1350) 위탁사업 개시
- '13. 2. 1. 안양고용콜센터 개소(위탁)
 - * 고용센터 대표전화 이관 상담 개시
- '14. 3. 1. 광주고용콜센터 개소(위탁)
- '14. 8. 2. 천안2고용콜센터 개소(위탁)

* '14. 11. 1.부터 '1350' 고용분야 전화상담(기존 울산 고객상담센터에서 수행)을
천안고용콜센터에서 전담 처리

- '16. 3. 1.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 '21. 1. 1. 민간위탁 콜센터(천안, 안양, 광주) 직영 전환* 예정

○ 국정과제 추진

- 민간위탁 콜센터 직영전환: 100대 국정과제 중 대통령 1호 공약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콜센터 직접 운영 결정('19. 12. 26.)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9년 6월 ~ 계속

- 사업규모 : 고용콜센터 3개소(총원 508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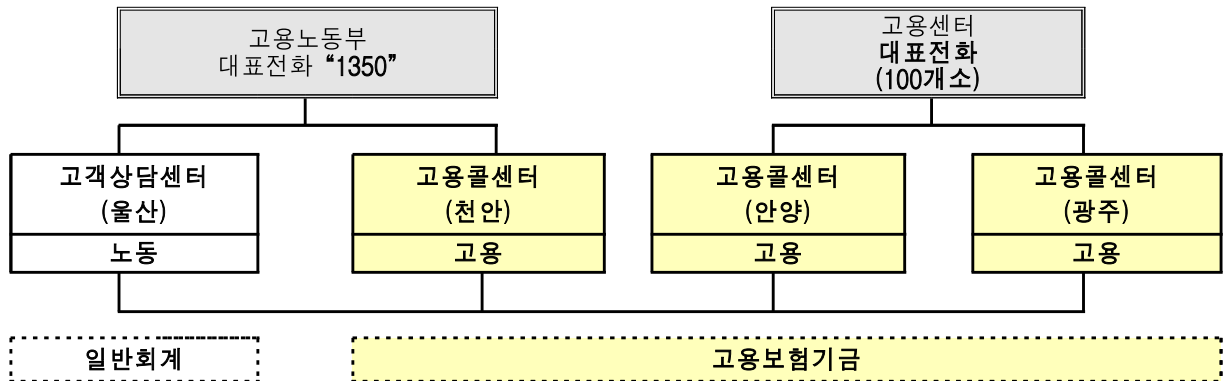
- 사업시행주체 : ('20년) 민간위탁사업자 → ('21년)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국민(주로 사업주, 근로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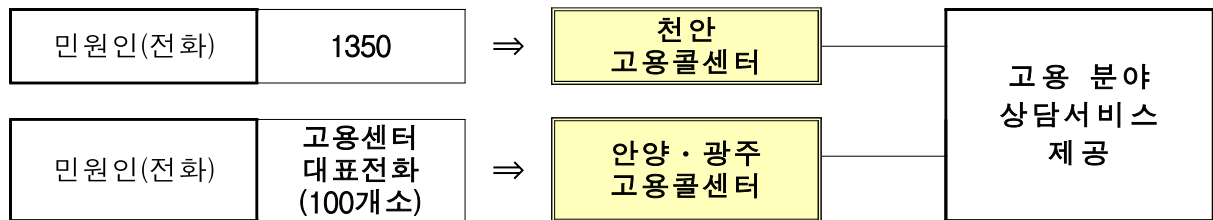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 관련 민원상담센터는 고객상담센터(울산-직영)와 3개 고용콜센터(천안·안양·광주-민간위탁)로 '20년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 고객상담센터는 '1350' 노동분야 전화상담,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서면 질의 민원을 처리하고, 천안 등 고용콜센터는 '1350' 고용분야 전화상담 및 고용센터 100개소 대표전화 인입 전화상담 민원을 처리



○ 고용콜센터 업무처리 흐름도



사 업 명						
(11) 지역고용촉진지원금(1056-3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6	353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지역고용촉진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6,536	8,053	8,036	4,746	4,746	△3,290	△40.9

4. 사업목적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한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한 경우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최대 1년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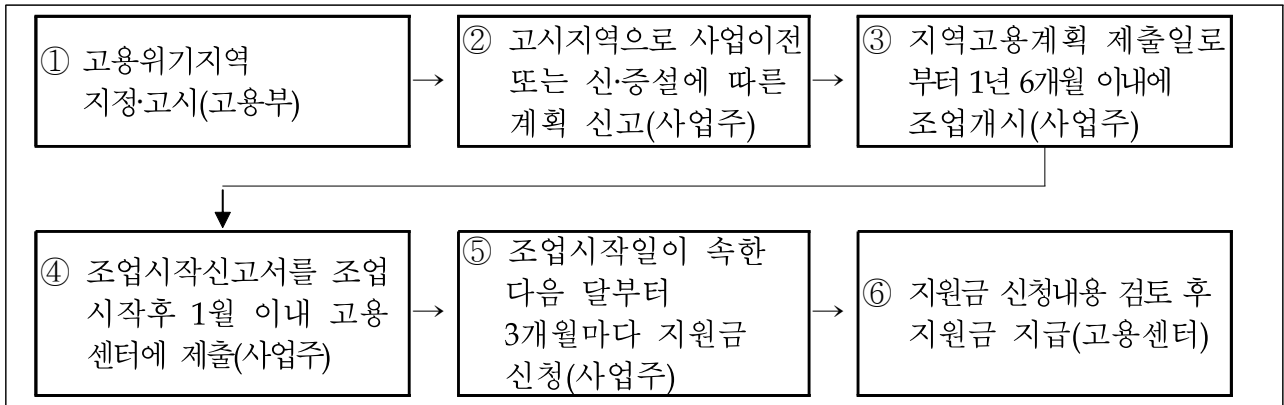
- 대통령 업무보고('08.12.24):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인력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지역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지원
- 노사민정 합의문('09.2): 3-1-라.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촉진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09.8.31.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고시('09.8.13~'10.8.12)
- '13.1.25. 통영시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 고시('13.1.25~'14.1.24)
- '14.1.25. 통영시 지정기간 연장('14.1.25~'15.1.24)
- '14.8.25. 고시개정: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명칭 변경,
- '18.4.5.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18.4.5~'19.4.4)
- '18.5.4. 목포시·영암군을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18.5.4.~'19.5.3)
- '19.4.5.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에 대해 지정기간 1년 연장('19.4.5~'20.4.4)
- '19.5.4. 목포시·영암군에 대해 지정기간 1년 연장('19.5.4.~'20.5.3)
- '20.3.16. 군산시, 목포·영암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20.12.31.까지 연장
- '20.12.29. 군산시, 목포·영암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21.12.31.까지 재연장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소재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2) 세대간상생고용지원(1060-35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0	35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세대간상생고용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세대간상생 고용지원	57,346	13,380	13,380	1,333	1,333	△12,047	△90.0

4. 사업목적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함께, 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으로 청년고용 촉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② 추진경위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5.6.25)'에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계획 반영

- '15년 하반기 추경예산에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반영('15.7.24, 123억원)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27)'을 통해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추진계획 발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하반기 ~ '18년(한시)
- 사업규모 : '21년 440명
 - * '18년 참여자 2년차 지원 '20년 종료, '21년은 소멸시효(3년) 고려, 1년차 소급신청 수요 반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함께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

7. 사업 집행절차

① 참여신청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② 심사 및 승인 (지방관서 심사위원회)
③ 승인결과 통보 (고용센터 → 사업주)	④ 청년 신규채용 및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⑤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사 업 명						
(13)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1061-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1	35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청년내일 채움공제(고보)	420,907	503,268	503,268	493,592	493,592	△9,676	△1.9

4. 사업목적

-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여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공동으로 적립**
-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는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적자원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우수 청년인재 채용과 장기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 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등

② 추진경위

- ('16.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정부합동)**」의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를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결정
- ('16.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 시행
 - * 청년취업인턴제 예산·물량 활용하여 총 1만명 지원(인턴제 수료자 1만명)
- ('17.1월) 「**청년내일채움공제**」 본 사업 시행(참여경로 다양화 및 물량확대)
 - * 총 지원인원 5만명(취업인턴 경로 3만+취성패 경로 1.7만+일학습훈련 경로 0.3만)
- ('18.3.15.) 「**청년일자리대책 (정부합동)**」의 주요 내용으로 '**3년형**' 신설 결정
 - * (2년형) 청년 300 + 정부 900(일반회계) + 기업 400(고보기금) = 2년 1,600만원
 - (3년형) 청년 600 + 정부 1,800(일반회계) + 기업 600(고보기금) = 3년 3,000만원
- ('18.6.1.)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규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 ~ 계속
- 사업규모 : '21년 신규 10만명(2년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중소·중견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사업 추진방향 마련 및 시행 공고
↓		
② 운영기관 선정	고용센터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③ 청년 및 기업 선발	운영기관	청년 및 기업의 청년공제 참여신청 및 자격요건 심사 후 선발
↓		
④ 청약 신청 및 승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청년 및 기업의 청약 신청, 승인
↓		
⑤ 공제부금 적립, 지원	고용센터	청년 및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의 가상계좌 적립, 기업 지원)
↓		
⑥ 공제부금 운용 및 만기공제금 지급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공제부금 관리, 운용 만기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급

사 업 명						
(14)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062-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2	35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사업주직업 훈련지원금	484,817	315,544	291,244	276,304	276,304	△ 14,940	△ 5.1

4. 사업목적

-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직무능력향상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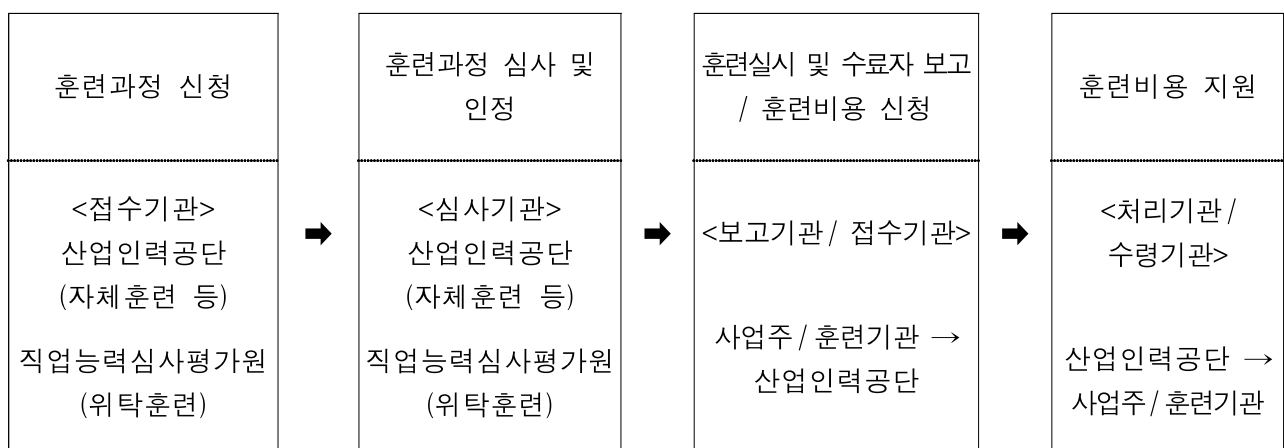
- '95.7.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

- '05.7. 사업주 수요가 많은 단기훈련 지원 확대(3일 20시간 이상→중소기업 1일 8시간 이상, 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 '17.12.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설치, 중소기업 고숙련·신기술훈련(고급훈련) 지원 확대(NCS 100% → 300%),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근거 등 규정 등 신설
- '19.1. 공통법정훈련(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교육 등) 지원 중단, 법정직무훈련 지원을 인하, 과다 공급과정 지원을 인하 등 재정 효율화 시행
- '19.9.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훈련 시 지원금 지급기준(집체훈련 수료인원이 전체 훈련실시 인원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지원) 등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95년 ~ 계속
- 사업규모: 2,304천명('20년 지원 목표 인원)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지역맞춤형훈련) 지역 훈련수요 조사, 계획 수립 후 훈련진행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중소기업 훈련컨설팅 실시 후 훈련진행
 (중소기업학습조직화) 학습조직 운영 등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후 학습조 운영
 (미래유망산업맞춤형훈련) 직무분석, 인프라 구축 등 완료 후 훈련진행
 (산업계주도청년맞춤형훈련) 산업별 사업계획 수립 후 훈련진행

사 업 명						
(15) 내일배움카드(고보)(1063-3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 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3	352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내일배움카드(고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내일배움카드 (고보)	802,136	780,316	974,616	800,501	800,501	△174,115	△17.9

4. 사업목적

- ☐ (일반직종 훈련)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② 추진경위

<일반직종 훈련>

- '98년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취·창업훈련 및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취업유망분야 훈련 실시
- '08.9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도입

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공급자(정부, 훈련기관) 중심 • 고용센터 훈련상담 미실시 • 배정물량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모집·실시	⇒	• 수요자(실업자, 기업) 중심 • 고용센터 훈련상담 실시 •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 스스로 적합훈련과정 선택·수강

- '11년 계좌제 훈련 전면 실시(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폐지)
-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사업 간 통·폐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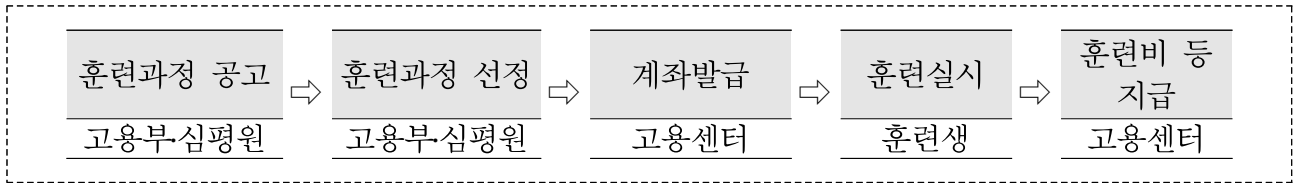
- '84년 신체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실시
- '97년 실업대책 및 인력부족직종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환
- '11년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과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 통합 및 명칭 변경(→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운영방식 및 실시규정 등 통합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 수혜자 : 15세 이상의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064-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4	350
명칭	고용창출 및 훈련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지원	155,500	119,114	116,714	114,325	114,325	△ 2,389	△ 2.0

4. 사업목적

-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지원)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훈련센터(기업·사업주단체 등)를 지원
- (전략분야인력양성지원)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 훈련센터(공공기관 등)를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지역단위에서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원

- **(미래유망분야 맞춤형훈련)** 협약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훈련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기업·공공기관 등)를 지원
 - * 신기술·소재·부품·장비 훈련분야 및 채용예정자 과정 우대
-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훈련)** 산업계 주도로 업종·산업별 협·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공동훈련센터 시설·장비비 등 지원
- **(K-Digital Platform)** 자체교육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신기술 분야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인프라공유 지원
- **(일반용역비)**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심사, 훈련과정 인정, 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 사업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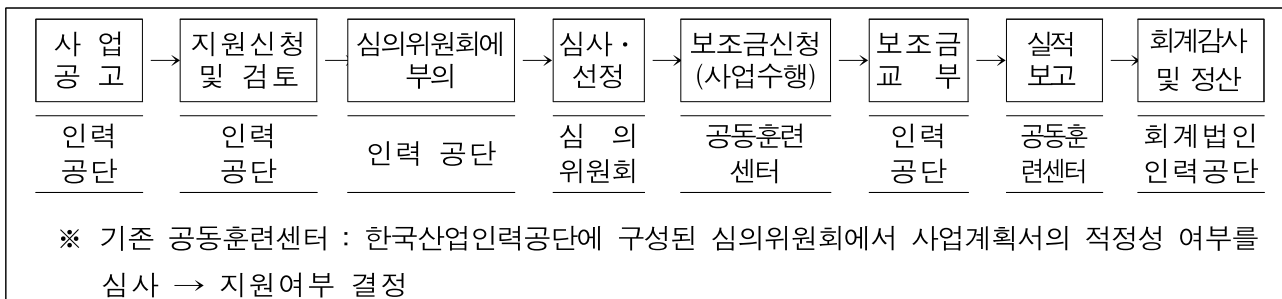
- 2001.2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계획” 수립 및 시범훈련기관 선정('01.6월)
- 2010.11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으로 확대·개편
 - ※ 수요자 중심 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 산재되어 수행하는 인력양성사업을 '11년부터 인력양성 전문부처인 고용노동부로 통합·운영
- 2013.10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추진
 - ※ '20년말 기준 서울·경기 등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축·운영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년~ 계속
- 사업규모 : 119,114백만원('20년 본예산 기준)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수행)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포스코 등 212개소('20.12월말 기준)	· 훈련시설·장비비 및 인건비(80%) · 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10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고시) 별표1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7)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1066-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6	35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지원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	12,377	10,644	7,300	11,523	11,523	4,223	57.8%

4. 사업목적

- 기업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기준 제시를 통하여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전수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5호: ①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0.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
 - 1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직무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 내의 직무 지식을 원활하게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1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훈련 지원 사업
 - 1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① 법 제11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훈련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를 발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산업현장교수 지원
 - '10년 국가고용전략 수립 시 반영
 - '11년 「산업현장교수 pool제」 도입 방안 마련
 - '12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선정
- 기업인적자원개발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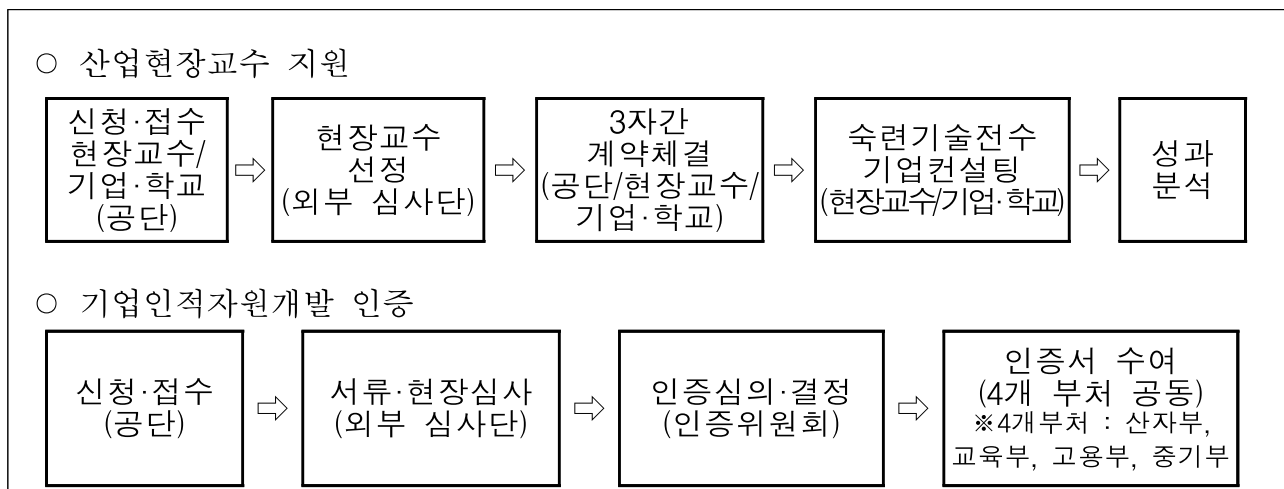
- '99년 신노사문화 구축 방안으로 인증제 도입 검토
- '03년 『중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시(국무회의 보고, 10월)
'06년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확정
- '05년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 시(VIP보고, 4월) '06년 인증제 도입 및
중소기업 HRD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보고
- '05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부문 인증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
- '19년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1월)에 따라 '선취업-후학습'인증제
도입 확정

6.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기업 및 근로자, 예비 입직자 등 일반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인력공단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8) 외국인력고용지원(1066-35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6	355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지원	외국인력고용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외국인력 고용지원	2,441	2,441	2,441	2,318	2,318	△123	△5.0

4. 사업목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 지원, 사업장변경자 취업적응교육 및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을 통해 원활한 고용관계 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①고용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 고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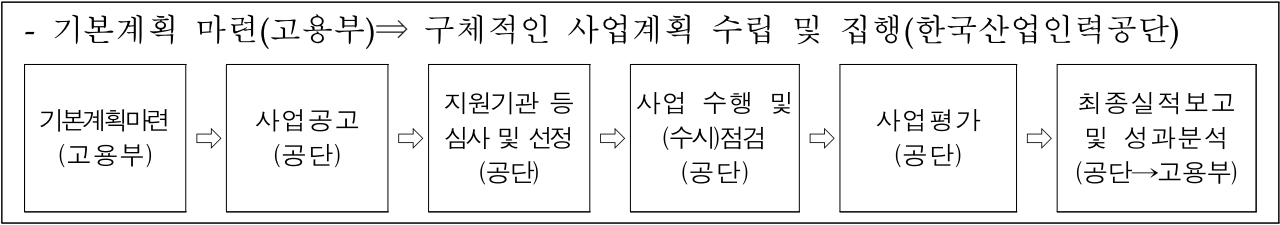
- 사업 시작년도 : 2010년
- 추진배경
 - '03. 8.1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04. 2. 9 : 공단에 “외국인고용지원국” 설치,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수행
 - '04. 3.1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 '04. 8.17 :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 '05. 3. 2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체류지원업무 공단 위탁 결정
 - '08. 1. 1 : 공단 조직개편으로 고용지원팀, 귀국지원팀 신설
 - '08. 9.25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강화 필요성 대통령께 보고

6.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외국인고용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인력공단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1066-3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6	356
명칭	고용창출 및 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지원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84,598	355,491	330,091	322,421	317,921	△ 12,170	△ 3.7

4. 사업목적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자격으로 인정하여 노동시장 통용성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20.8.28 시행)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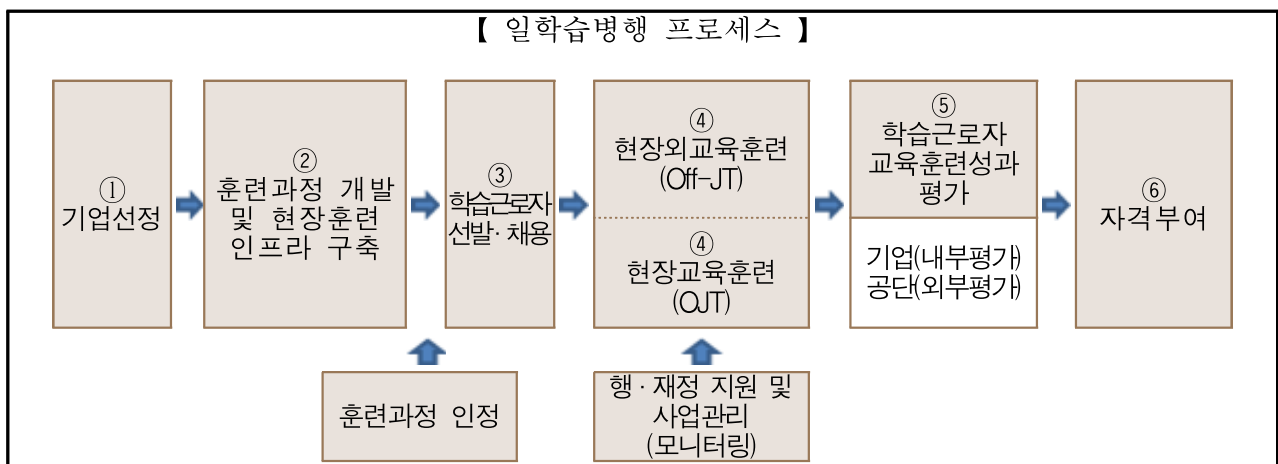
-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방안」 세부계획 확정('13.9월. 경제관계장관회의)
- 「NCS 및 일·학습 듀얼시스템 확산계획」 수립, 범정부 차원의 기업참여 및 공감대 확산 추진('13.12월. 국무회의)
- 「성과제고를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 마련('14.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확산방안」 의결('15.4월. 사회관계장관회의)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마련('15.7월. 관계부처합동)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발전 방안」 발표('16.8월)
- 「일학습병행, P-TECH 확산을 통한 재학단계 현장기반 직업교육·훈련혁신」 발표('17.9월, 국정과제 19번)
- 「청년 일자리 대책(선취업 후학습, 일학습병행제)」 마련('18.3. 관계부처합동)
- 「사람투자 10대과제」 발표('19.4.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8.27) → 시행('20.8.28.)
-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021~2023)」 마련('20.11월)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 사업규모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13,000개 ('20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등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한국산업인력공단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0)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1067-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7	350
명칭	고용 창출및훈련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사업지원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능인력양성 및장비확충 (폴리텍)	130,358	102,766	101,126	73,742	73,992	△27,134	△26.8

4. 사업목적

- 4차산업 시대에 맞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고 다양한 교육 훈련서비스 제공
- 사업규모 : 전문기술과정, 소규모사업장훈련, 베이비부머훈련, 여성재취업훈련, 하이테크과정, 신중년특화과정, 기능장과정 등 12,780명
 - (전문기술과정) 만15세이상 비진학청소년, 무기능·단순기능 실업자, 취업애로계층 대상 직업훈련
 - (신중년특화과정) 5060 신중년대상 전직, 창업을 위한 신중년 특화 기술교육훈련
 - (하이테크과정) 고학력실업자 대상 신성장 및 4차산업 분야 고급기술 교육훈련
 - (훈련장려금) 훈련생 대상 훈련장려금 지원

- (기능장과정) 기능계 최고 자격인 기능장 수준 훈련 실시
- (소규모사업장훈련)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이동훈련 실시를 통한 재직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 (베이비부머훈련) 베이비부머 세대 대상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통한 인생 이모작 지원
- (여성재취업훈련) 여성특화 직업능력개발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 (교육훈련과정) 재학생 및 졸업(수료)생 대상 취업교육 및 취업처 알선 통한 취업률 제고
- (교과개발및교재발간) 4차산업 및 산기술분야 NSI 기반 융합형 교과과정 개발 통한 직업교육훈련 질 제고
- (교육훈련직종개발) 신기술변화에 따른 학과 신설 및 개편 위한 교육훈련직종 개발
- (항공MRO글로벌과정 운영지원) 항공MRO글로벌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외교관 강사료 및 해외교육과정 사용료 지원
- (신기술장비확충) 노후부족 및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신장비 보강 통한 교육훈련 인프라 개선
- (학과신설및개편)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과 신설 및 개편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기 위하여 '98. 2. 5일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분리하여 학교법인기능대학 설립·운영
- 국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다기능기술자과정 재학생으로부터 등록금을 징수하여 예산에 편성
- 2005년 공공훈련인프라 혁신계획에 의거 '06. 3. 1자로 공공훈련기관 운영 일원화 및 기능대학 개편(24개 기능대학, 21개 직업전문학교⇒한국폴리텍 11개 대학운영)
- 2012년 특성화 대학 체제 개편(11개→8개) 및 다습학교 개교
- 2016년 분당융합기술교육원 개원
- 2020년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개원, 로봇캠퍼스(영천) 설립인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문기술과정, 신중년특화과정, 하이테크과정, 기능장과정, 소규모사업장 훈련, 베이비부머훈련, 여성재취업훈련
- 사업시행방법 :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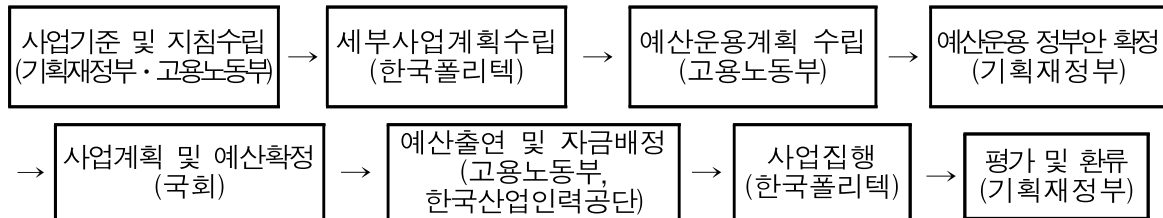
- 사업시행주체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사업 수혜자 : 재학생, 재직근로자, 미취업자, 비진학청소년 및 무기능인 등 사회 취업 취약 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 실시하고, 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사 업 명						
(21)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1083-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83	350
명칭	고용창출 및 훈련	고용보험 징수관리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5,215	14,720	14,720	15,281	15,281	561	3.8

4. 사업목적

- 고용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출연
 - 2011년도부터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징수 업무 통합
 - 국민건강보험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
 -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경비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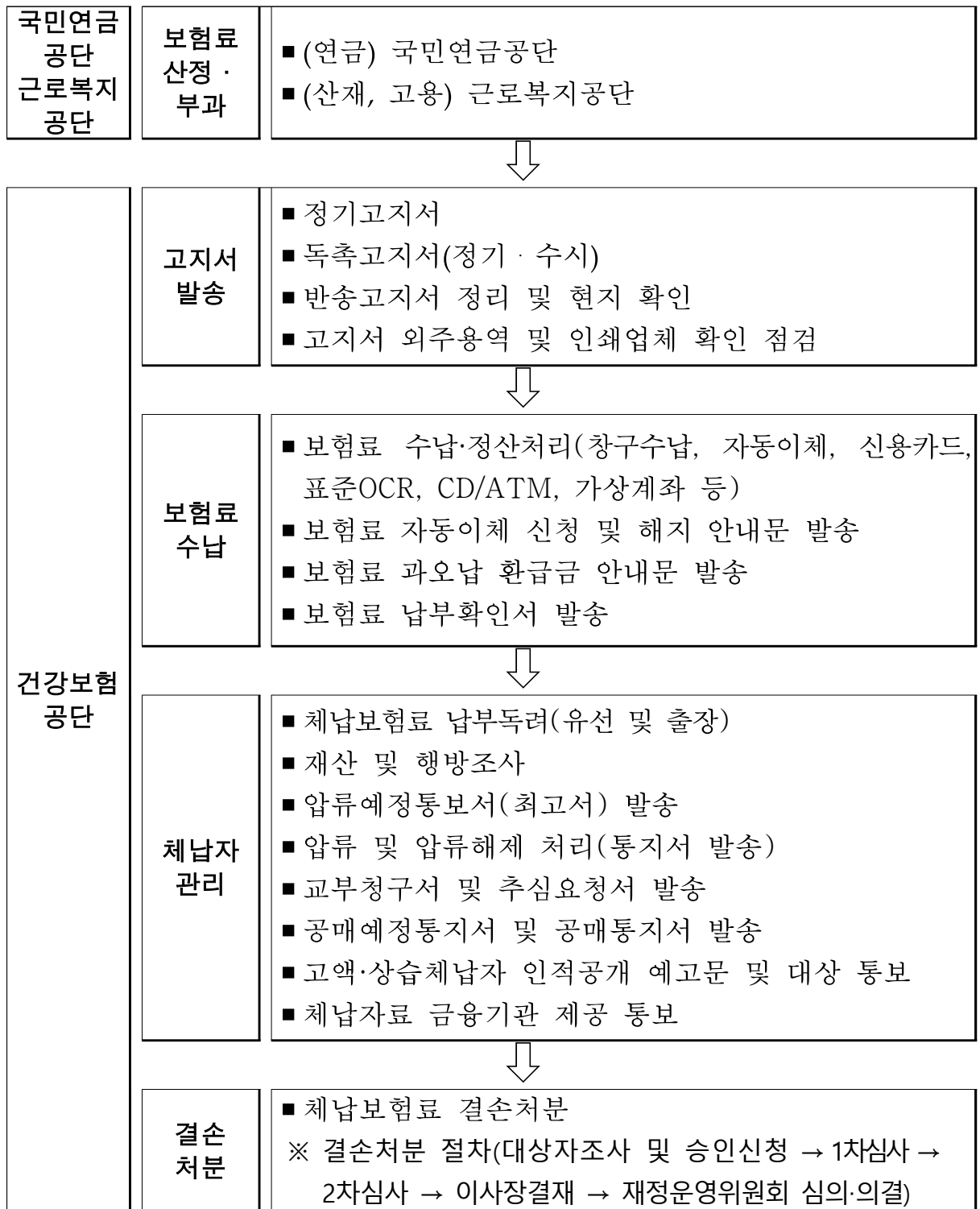
-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출범('08.7.17) :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준비위원회」 구성·운영('09.6.12) :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서 서명('09.6.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 실무추진단」 출범('09.6.1)
-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노사정실무협의회 : 정부, 공단, 노조 등 관계자
 - 정보화실무협의회 : 복지부, 노동부, 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자
- 각 공단별 징수통합 실무준비조직 구성·운영
- 전환인력 건강보험공단 징수인력 배치('11.1.1)
 - 건강(1,512명), 연금(712명), 근복공단(317명)
-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작('11.1.1)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건강보험공단	100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2)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1083-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83	35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22,662	19,780	25,107	28,337	28,337	3,230	12.9

4. 사업목적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11년부터 보험료 산정방식이 근로자 개인별 보수에 기초하여 매월 산정·부과되는 체계로 변경, 이에 따라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도(근로자 개인별 고용 및 보수정보 관리, 보험료 부과자료 구축 등)를 도입·시행
 - 고용 및 보수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입누락자 등의 방지를 통해 보험재정 건전성도모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운영)
 - 고용보험 적용·부과사업에 대한 민원(전화, 인터넷 등), 권리구제 방법 등을 신속·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수행

- 고용보험 적용·부과사업에 대한 전화·인터넷 상담, 이용고객모니터링, 증명원 발급 등 직접 처리업무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17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업무 수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
- 고용보험료 부과 기초자료면서 실업급여 적정 지급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인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 (보험사무대행지원)

-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 경감 및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예술인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2월 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신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신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 총액등의 신고) 제1항~제7항

-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

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로써 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운영)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등) 2항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7.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
 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보험사무대행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추진경위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사업시작년도 : '11년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함께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 및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
- ※ 보험료징수법 개정('09.12.30.) 및 하위법령 개정('10.9.29.)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운영)

- '11년 콜센터(광주) 개소, 위탁상담사 150명(전일제)
- '15년 콜센터(인천) 개소, 위탁상담사 92명(시간선택제)
- '16년 콜센터(울산) 개소, 위탁상담사 100명(시간선택제)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사업위탁년도 : '17년
-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17.1.1.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등) 개정('16.10.18.)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 사업시작년도 : '71년(산재보험료 징수가 곤란했던 건설업에 대해 보험료 징수를 위탁하고 징수비용 교부)
- '84년 :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무조합으로 변경
- '05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명칭 변경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 '17.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국정과제 선정
- '20.6.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 시행('20.12.1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 '17.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국정과제 선정
- '21.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 시행('21.7.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11년~계속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운영) '11년~'14년(운영비), '15년~(사업비)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17년~계속

(보험사무대행지원) '19년~계속(운영비→사업비 이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20.12월~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21년~계속

- 사업규모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사업장 177만개소, 근로자 1,900만명

(콜센터운영) 3개 센터(광주·울산·인천) 상담인력 367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고용보험 상용피보험자수 13,432천명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위탁사업장 63만개소, 근로자 352만명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사업장 3만개소, 예술인 124천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사업장 315천개소, 특수형태근로자 1,326천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고용보험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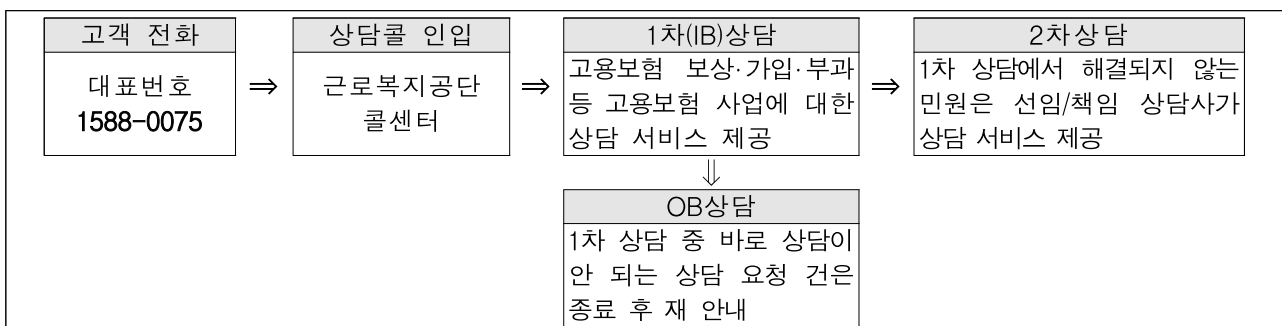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매년 3.15까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사업주)→월평균보수를 근거로 월별 보험료 산정 (근로복지공단)

구 분		신고종류	기한	관련법령
보수관리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서	매년 3.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제8항
	보수총액 착오 신고	보수총액 수정신고	변경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운영)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피보험자의 압·퇴사 신고(사업주)→신고내역 확인 및 통지(근로복지공단)→월별보험료 산정(근로복지공단)
- 퇴사 및 이직확인신고(사업주)→신고내역 확인 및 처리(근로복지공단)→실업급여 지급(고용노동부)

구 분		신고종류	기한	관련법령
피 보 험 자 관 리	입 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다음달 15일	고용보험법 제13조~제18조
	퇴 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휴 직	휴직등신고서	14일 이내	
	전근(전보)	전보신고서	〃	
	정보 변경	정보변경신고서	〃	
	일 용 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	

(보험사무대행기관지원)

절차	주체	적용 법령 등
①인가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2항
②인가결정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2항
③사무위탁서 작성	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④보험사무 대행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6조
⑤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제37조
⑥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징수법 제37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주요업무	단위업무	상세내역
피보험자격 관리	피보험자격 취득 처리	1. 취득신고서 접수 2. 취득 자격(자격여부, 취득일) 판단 3. 보수월액 결정 4. 취득신고서 전산입력 및 처리 5. 통지서 발송
	피보험자격 변경 등 처리	1. 자격 변경·취소·정정 신고서 접수 2. 변경 사유 등 검토 3. 전산입력 및 처리 4. 처리결과 통지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	1. 상실신고서 접수 2. 상실 사유 및 상실일 판단 3. 상실신고서 전산입력 및 처리 4. 통지서 발송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1. 보수총액신고서 접수 2. 전산 입력 및 처리 3. 보험료 정산 및 월평균보수 산정
	피보험자격 취소 및 보험료 반환	1.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판단 2. 피보험자격 취소 여부 안내 3. 피보험자격 취소 및 보험료 반환 심사 4. 전산 입력 및 처리 5. 처리 결과 통지

주요업무	단위업무	상세내역
	월평균보수 변경	1. 월평균변경 신청서 접수 2. 월평균보수 변경 심사 3. 전산 입력 및 처리 4. 처리 결과 통지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1. 매월 보험료 산정 및 부과 2. 매월 보험료 지원 처리 3. 건강보험공단에 부과 자료 송부 4. 보험료 상담
기타 관련 업무	고용보험 가입자 변경사항 처리	1.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 변경 2. 변경사항신고서 접수 3. 전산 입력 및 처리 4. 처리 결과 통지
	고용보험 소멸신고 처리	1. 소멸신고서 접수 및 전산 입력 2. 보험료 정산(징수금대장 정리), 반환 3. 소멸통지서 및 정산내역 출력, 발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①보험관계성립 신고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근로자 등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
②피보험 자격취득신고	○ 입·퇴사시 :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 전근·휴직, 정보 변경 시 : 피보험자 전근신고, 휴직 등 신고,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③월별보험료산정 부과·고지·납부	○ 월별보험료 산정 : 월평균보수×보험료율(실업급여요율만 적용) ○ 고 지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도착 ○ 납 부 : 다음달 10일까지
④자격상실신고에 의한 퇴직정산	○ 근로자 등 퇴사 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자격상실신고 시 작성 ○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반영월의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등분하여 반영월과 그 다음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환·충당)
⑤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연도정산	○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3월 15일까지 ○ 정산결과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4월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분할하여 4월과 5월분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환·충당)

사 업 명						
(23)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083-35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83	355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7,974	4,187	4,187	5,118	5,118	931	22.2

4. 사업목적

-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부과고지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기초자료인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1999년
- '99. 10월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징수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전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등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자금 교부 신청 → 자금교부 → 집행

사 업 명						
(24)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1092-3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92	352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37,956	31,735	139,152	43,443	43,443	△95,709	△68.8

4. 사업목적

-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 몰입도 제고를 통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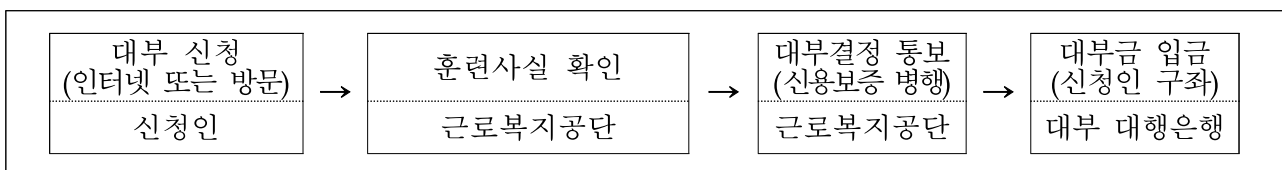
-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 ② 추진경위
 - '09년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시행
 - '09.3월 대부요건 완화 (실업자 대부요건 삭제, 훈련기간 단축(3개월 → 1개월)
 - '10.2월 대부이자율 하향 조정(2.4%→ 1%),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

- '17.4월 대부한도 인상(월 100만원→200만원), 대부요건 완화(배우자합산 연간소득 금액 8천만원 이하로 확대)
- '19.1월 생계비대부 소득요건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조정
- '19.12월 생계비대부 소득요건을 가구합산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조정
- '20.4월 생계비대부 소득요건을 가구합산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
- '20.7월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폐업한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소득요건 완화(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50% 이하), 대부한도 인상(월 200만 →300만원, 1인당 총 1천만원→2천만원), 대부기간 연장(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추가 지원)
- '20.12월 '20.7월 시행한 한시적 제도개편(~'20.12)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요건 및 지원수준, 지원기간 등을 정비하고, 1인당 총 대부한도를 조정(1인당 총 1천만원→2천만원)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3주 이상의 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휴폐업한 자영업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5) 구직급여(1280-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80	350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급여	구직급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구직급여	8,091,736	9,515,779	13,109,529	11,348,600	11,348,600	△1,760,929	△13.4

4. 사업목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회사 경영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 '20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30,060원~60,120원(소정근로시간 비례)

○ 예술인은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 보수의 60% 지급('20.12월 시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내지 제63조, 제77조의3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 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장의2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 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 · 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 7. 1.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186만명, 13.1조원(추경 포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비자발적 이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 <이직자> 재취업활동 및 실업인정 신청 ⇒ <고용센터>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심층상담 등 재취업활동 지원

사 업 명						
(26)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80	351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조기재취업 수당	290,062	259,416	259,416	347,392	347,392	87,976	33.9

4. 사업목적

대기기간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취업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혜자의 장기 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

- 또한, 구직급여 수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거나(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광역구직활동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한 경우(이주비) 각각 수당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혜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재취업 촉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64조 내지 제69조

-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 ②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7조(이주비) ①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 ②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 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 7. 1.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7.6만명, 2,594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수급자격자> 청구서 제출 ⇒ <고용센터> 지급요건 확인 ⇒ <고용센터> 수당 지급

사 업 명						
(27) 자영업자 실업급여(1292-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92	350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자영업자 실업급여	3,884	5,038	7,838	5,558	5,558	△2,280	△29.1

4. 사업목적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재창업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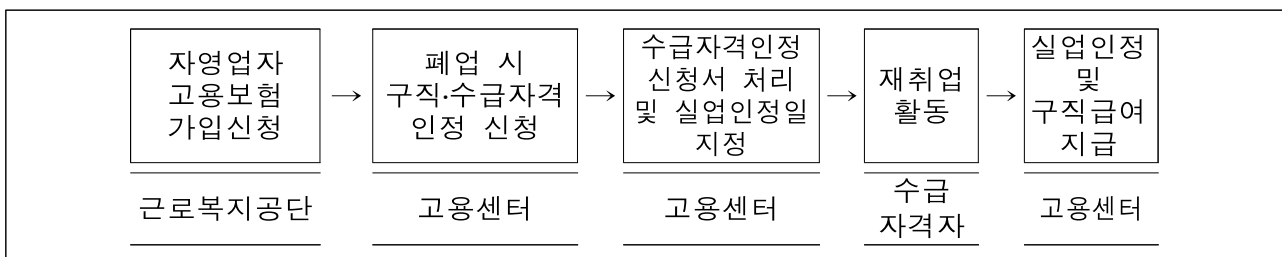
○ 추진경위

- 201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구체적 업무처리절차 마련
- 2014년: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가입요건 등 완화 방안 검토
 -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4.6~12월)
- 2015년: 기준보수 등급 신설(총 5등급 → 7등급)
- 2016년: 임의가입기간 확대(개업일로부터 6개월 → 1년 이내, '16.1.1. 시행)
- 2017년: 임의가입기간 추가 확대(개업일로부터 1년 → 5년 이내, '18.1.1. 시행)
- 2019년: 임의가입기간 폐지(개업일로부터 5년 → 폐지, '19.7.1. 시행)
 - 실업급여보장성 강화('19.10.1.시행)
 - 지급수준 10%인상(50%→60%), 지급일수 30일확대(90~180일→120~210일)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계속
- 사업규모 : '20년 5,03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8) 실업크레딧지원(고보)(1293-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93	350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크레딧지원	실업크레딧지원(고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실업크레딧 지원	21,260	27,433	27,433	32,013	32,013	4,580	16.7

4. 사업목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혜자 중 구직급여 수혜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려는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의 국민연금보험료 75%*를 지원,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각 지원, 자부담 25%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실업크레딧 도입 여·야정 합의 ('14. 4월 ~ 5월)
- 「국민연금법」 개정('14. 12. 29.), '15. 7. 1. 시행
- 「고용보험법」 개정('16. 5. 29.), '16. 8. 1.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 8. 1.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46.5만명, 274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중 실업크레딧 신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용센터>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및 신청 접수
 → <신청자> 실업크레딧 신청
 → <연금공단> 지원 여부 확인 및 결정, 보험료 부과
 → <신청자>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고용노동부> 보험료 지원 → <연금공단> 보험료 정산

사 업 명						
(29) 고용안정장려금(1345-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5	350
명칭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고용안정장려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고용안정 장려금	113,887	151,192	199,965	155,095	154,979	△44,986	△22.5

4. 사업목적

-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구 분	지원조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를 통한 근로자 지원) * 주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30시간: 월 40만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소정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인수인계기간 2개월 추가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임금증가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 지원 * (임금증가 보전금)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 한도)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 *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주 1~2회: 5만원/주, 주 3회 이상: 10만원/주) (일·생활 균형 인프라)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 정보·보안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2천만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업무효율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으로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 6개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인건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위해 출산육아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19년 폐지) * 우선지원: 월 최대 60만원, 대규모: 월 최대 30만원(임금의 80% 한도)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 우선지원: 월 최대 80만원(인수인계기간 120만원), 대규모: 월 최대 30만원(임금의 80% 한도)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 * 육아휴직: 우선지원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월 30만원, 대규모 월 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구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6호, 제37조의2(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② 정규직 전환 지원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5호, 제6호, 제37조의2(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7호, 제37조의2(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④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추진경위

① 워라벨일자리 장려금(구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일과 병행하여 근로자 필요(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일제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15년)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도입
- ('17년) 고용장려금 통합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내역으로 통합
- ('18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내역으로 통합
- ('20년)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으로 사업명칭 변경

② 정규직 전환 지원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5년
- 추진경위: 인건비 절감목적의 비정규직 사용을 자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신설('15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14.3월, 7월 발표)

☐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사용규제를 합리화

- 비정규직 종합대책('14.12월 발표)

☐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 (정규직 전환지원) 우선지원·중견기업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고용보험기금, '15)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16.3월 발표)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

-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자율적 정규직 전환 촉진

*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현행) 기간제·파견근로자 정규직 채용시 지원

→(개선) 사내하도급·특수형태종사자 지원 추가('16 상반기 고보법시행령 개정)

- 고용장려금 개편 및 지원한도 인상('17) : (임금상승분 70%<청년80%>→임금상승분 80%, 간접노무비 20만원 포함 60만원 한도)

- 지원한도 인상('18)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18.7.18.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16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따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도입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환경 조성 지원

-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중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여 우수사례 발굴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③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고용부, 행자부)

- 민간에서 수용 가능한 유연근로 모형 개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월 30만원) 신설

-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전반적 근로방식·문화 변화 선도

*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시 유연근무제 활용률 배점 상향

- ('17년)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간접노무비 지원수준 인상(주당 최대 7→10만원) 및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신설(최대 2천만원),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 ('20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신설(6개월, 월 20만원 한도)

④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 ▲ '05.12.30.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사업 도입
- ▲ '07.4.27: 임신 16주 이상으로 완화, 1년 단위 반복계약의 경우 지원 제외 조항 삭제
- ▲ '08.4.30: 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기간은 1년으로 확대
- ▲ '10년: 임신 중으로 지원요건 완화('10.2월 시행)
- ▲ '11.1.1: 재계약 시점을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로 완화 /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최초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60만원)
- ▲ '13.1.25: 재계약 시점을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로 완화
- ▲ '14.10.1: 육아휴직(생후 15개월이내 자녀)까지 대상자 확대
- ▲ '15.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지원금 상향조정(최초 6개월 40만원, 이후 6개월 80만원)
- ▲ '17.1.1: 무기계약으로 재고용시에만 지원금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최대 1년간)
- ▲ '19.1.1: 사업 폐지(수요 저조 및 사업 효율화 차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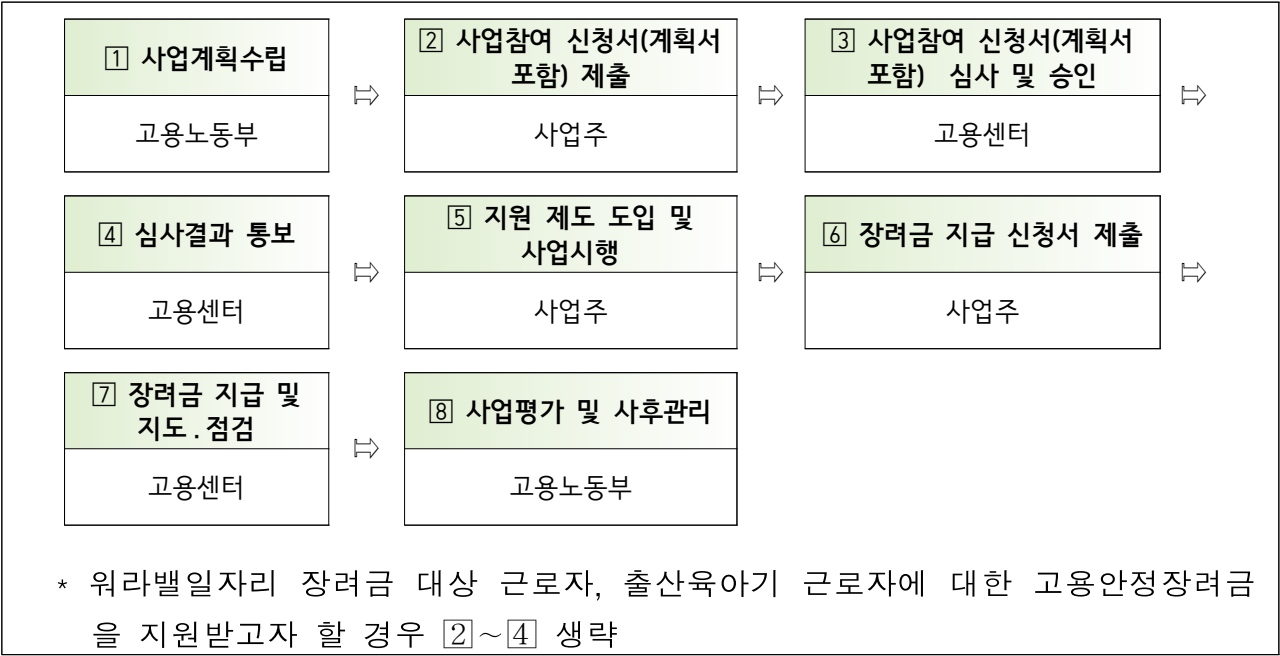
- ▲ '95.7월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도입
- ▲ '04.3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
- ▲ '06.1월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인상(15~20만원 → 20~30만원) 및 지원요건 완화
- ▲ '08.6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에도 지원
- ▲ '11.1월 육아휴직등 장려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된 이후 지급
- ▲ '13.1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상향(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40만원)
- ▲ '14.1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 수준 조정(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 ▲ '15.7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을 국가·공공기관폐지,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은 5만원, 1000인 미만은 10만원
- ▲ '17.1월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상향(월 30만원), 최초 육아휴직자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에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 ▲ '18.7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육아휴직 등 사용 후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자진퇴사 한 경우 지원
- ▲ '19.1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 등(인수인계기간 2개월/인수인계기간에 한하여 우선 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120만원)
- ▲ '20.3월 지급 방식 변경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의 기간중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 '21.1월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확대: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17년~계속
 -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5년~
 - ② 정규직 전환 지원: '15년~
 -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6년~
 - ④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95년~
- 사업규모: 장려금 55,656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450개소('21년)
 -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0,000명
 - ② 정규직 전환 지원: 5,050명
 -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장려금 14,798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450개소
 - ④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25,808명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 18,964명, 대체인력 지원: 6,803명, 비정규직 재고용 41명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한 사업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사 업 명						
(30) 직장어린이집지원(1345-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5	351
명칭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직장어린이 집지원	163,493	133,720	123,220	127,092	127,092	3,872	3.1

4. 사업목적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 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직장어린이집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확대 유도 및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보육수요조사·시설규모 결정·설치공사 자문·인력채용 지원·지원신청 안내 및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직장어린이집의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직장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 등의 임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을 위해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동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및 제145조제2항(권한의 위임),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제22조(공공 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35조(경비보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고용촉진시설의 설치)

② 추진경위

- 여성고용]확대 및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94년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노동부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탁아)사업 확충 대책('95~'97년)」 수립·시행
- '91.8월 영유아보육법 설치의무사업장 명시(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 '95.5월 설치의무사업장 범위 확대(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95년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은 고용안정사업으로 계속 시행

- '96.11월 「직장어린이집 확충대책('96.11월)」을 수립
-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취약한 지역에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 '97년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98~'02년)」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
- '00년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 지원
- '03년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03~'07년)」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 및 보육서비스 제고 추진
- '03년 직장어린이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주에 대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서비스 제공
- '05.1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확대(영유아보육법령 개정)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 '08.4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대기업 어린이집의 협력업체와의 공동 활용 등 인근사업장 근로자의 보육부담 완화
- '1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상한액을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
 - 용자 5억원→7억원, 시설전환비 1억원→2억원(공동설치시 2억원→5억원)
 - 유구비품 교체비 : 5년 단위 5천만원 → 3년 단위 3천만원
 - 취사부 인건비 :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전체 시설
- '1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확대
 - 신축시: 전액 용자지원 → 시설비 등 일부 무상지원
 - 운영비(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교재·교구비등 운영비를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12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 확대
 - 투자금액의 90% 한도 지원(기존 80% 한도)
- '13.6.10. 「일과 가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수립
- '13.7.16.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범위 확대(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규정 개정)
 - 산업단지 → 산업단지외에 관계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으로 범위 확대
- '13.12.26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교사 인건비 확대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 비용 일부 신규지원(6억원 한도)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상향(월 100만원 → 120만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상향(단독 2억, 공동 5억 → 단독 3억, 공동 6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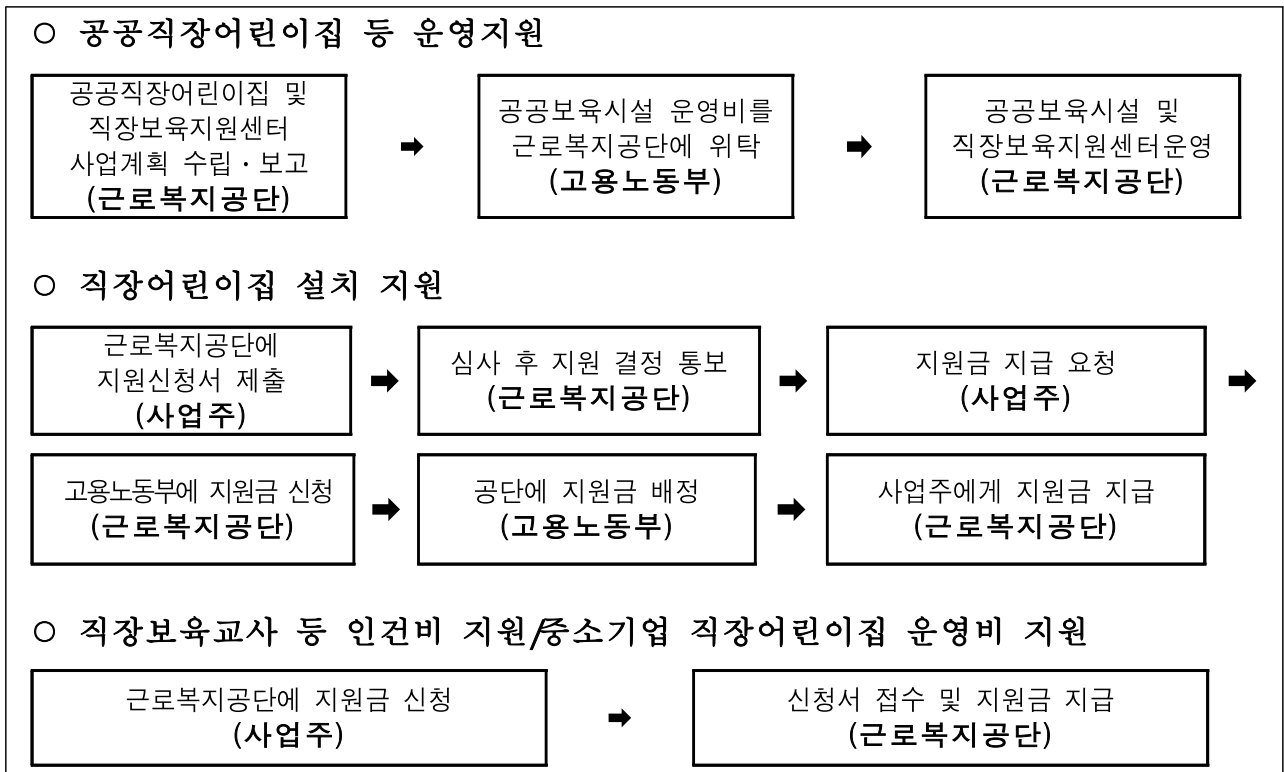
- '15.4.23 다양한 주체와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제도 개편
- * 국가·지자체·대학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주된 근로자가 아닌 주체가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사업주 단체에 참여 가능 등
- '17.4.6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상향(단독 3억→4억원, 공동 6억→8억원)
 - 중소기업 시설개보수비 신설(1억원), 교재교구비 지원 한도 상향(5천→7천만원)
 - 용자 지원 방식변경(이차보전방식→전대), 1년거치 4년상환→3년거치 5년상환
- '17.12.4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
 - 설치비 및 용자 착수금 조기 지급
 - 인건비 전월분→해당월분 지원, 운영비 전월분→해당월 포함 3개월 지원
- '18.7.4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금 산정 시 전체 보육영유아의 고용 보험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비자발적 이직근로자 자녀 비율 포함
- '18.12.31.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
 - 건립비·매입비 지원확대(컨소시엄, 산단형→全 중소기업)
 -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80→60%)
 - 설치비 선수금 지원비율 상향(70→90%)
 - 직장어린이집 설치 수요조사 매년 정기적 실시
- '20.1.1.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비 용자 신규지원 중단
- '20.7.8.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
 - 코로나19등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긴급지원
(인건비 지급요건 완화, 인건비·운영비 조기지급)
- '21.1.1.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판단요건에 자녀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모두 포함하도록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0~계속(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지원)
 - '00~계속(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 '95~계속(직장보육교사등 인건비지원)
 - '11~계속(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18~계속(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단체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5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1) 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5	358
명칭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모성보호 육아지원	1,350,031	1,543,248	1,573,015	1,591,537	1,591,537	18,522	1.2

4. 사업목적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및 모성보호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제77조의4, 제77조의9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가. 출산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 '94-'97,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의거 출산전후휴가기간 확대 계획 추진
- '00.4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결정
- '01.8월, 모성보호 관련 3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1.11월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사회보험 분담 시행
- '05.5월, 출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확대 관련 법 개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 확대(30일→90일)
 -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 '07.4.27.,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규정 개정(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17.1.1.,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35→15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18.1.1.,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50→16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19.1.1.,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60→18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20.1.1.,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80→20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20.12.10. 예술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시행('20.6월 「고용보험법」 개정)
- '21.7.1. 특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시행 예정('20.12월 「고용보험법」 개정)

나. 육아휴직급여

-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제1,2차)('94-'97, '98-'02) 및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제3차)
-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여성의 사회참여 10대 과제』로 선정
- 2000년 16대 총선 관련 새천년민주당 등 3당 공약사항
- '01.8.14., 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01.11.1부터 시행)
- '07.4월, 육아휴직급여 인상 : 40만원→50만원
- '11.1.1.,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수준으로 인상
 - *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15%는 종료후 6개월 후 지급
- '14.1.1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까지 육아휴직 사용범위 확대(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국정과제<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③ 근로자 자녀양육 여건 조성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 확대 검토·추진

- '14.2.4.,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기재부, 여가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
 - * 여성의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유아→초·중·고)로 모성보호, 보육·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
 -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확대를 위한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대상확대, 대체인력 채용지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기간 연장 및 급여상향
- ⇒ **아빠의 달** 도입·시행('14.10월)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첫 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지원

국정과제<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

㉔ 「아빠의 달」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 제도 시행방식, 지원수준, 재원마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도입 추진

- '14.10.15, 여성고용 후속 보완 대책 (기재부, 여가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
 - * 사업주지원금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자동육아휴직 확산, 육아휴직 복귀를 제고에 따른 지급방식 변경 등 여성의 고용안정 유도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비율을 변경(종전 15% →25%, '15.7월 시행)
- '16.1.1, 아빠의달 기간 확대(종전 1개월→3개월)
- '17.9.1. 공약 이행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인상
 -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소득대체율 40→80%, 상한액 150만원, 하한 70만원)
- '18.하반기. 공약 이행에 따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추진
 - * (기존) 첫째자녀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 (개선) 모든자녀 200만원
- '19.1.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인상(200→250만원)
- '20.2.28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 '20.3.31 비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 지급 및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 * 첫 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80%(상한 150만원), 7개월 이후 50%(상한 120만원)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08.6.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정('08.12.6 시행)
- '08.12~'09.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09.5~12., 여성부·노동부 공동 기본계획(안)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09.12.23.,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실무회의 개최
- '09.12.29.,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확정
- '11.9.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시작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40% × 근로시간 단축 비율
- '14.2.4.,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기재부, 여가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
 -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확대를 위한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대상확대, 대체인력 채용지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기간 연장 및 급여상향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14.10.1)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원) × 근로시간 단축 비율
- '18.1.1., 공약이행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의 60%→80%)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금감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 '10to4더불어 돌봄' 지원
- '19.10.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최대 1~2년으로 확대, 日 1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 100%)

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국정과제: 71-3-1 일·생활 균형과 육아·돌봄 지원 확대 단계별 이행목표에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방안 마련'('18.하)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단계적 확대'('19~'21)로 명시

국정과제 < 71.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3. 일·생활 균형과 육아·돌봄 지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현행 5일(유급3일)도 단계적으로 확대, 아빠의 육아참여 촉진

- '17.12.26.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일자리대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 확대'를 핵심과제로 발표

◇「여성일자리대책」

2. 경력단절예방 (4)아빠육아참여 확산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17.12월 실태조사, '22년까지 단계적 시행)

- '18.7.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저출산대책(“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핵심과제로 발표

◇「저출산대책」(“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2.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2)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확대 및 유급 사용분 정부 지원(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사용시기 유연화 등 선택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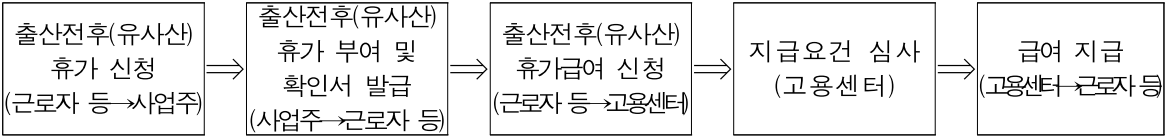
- '18.7.30. 김상희의원(저출산위 부위원장)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 '19.8.2.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9.10.1.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상한 382,770원)
- '20.1.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382,770원 고시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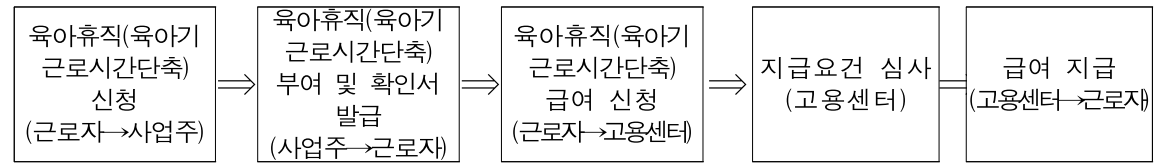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01년~계속, (유산사산휴가급여) '06년~계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1년~계속,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9.하~계속
- 사업규모 : '19년 1,455,276백만원
(출산전후휴가급여 260,394백만원, 유산사산휴가급여 842백만원, 육아휴직급여 1,138,832백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34,902백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30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 집행 절차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집행 절차



사 업 명						
(32)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1345-35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5	359
명칭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1,123	11,742	11,742	11,800	11,800	58	0.5

4. 사업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알선 취업 및 사후관리서비스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고용부와 여가부가 공동으로 새일센터를 지정·운영('09년~)

- 고용부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중심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근로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여가부는 직업훈련, 인턴연계 등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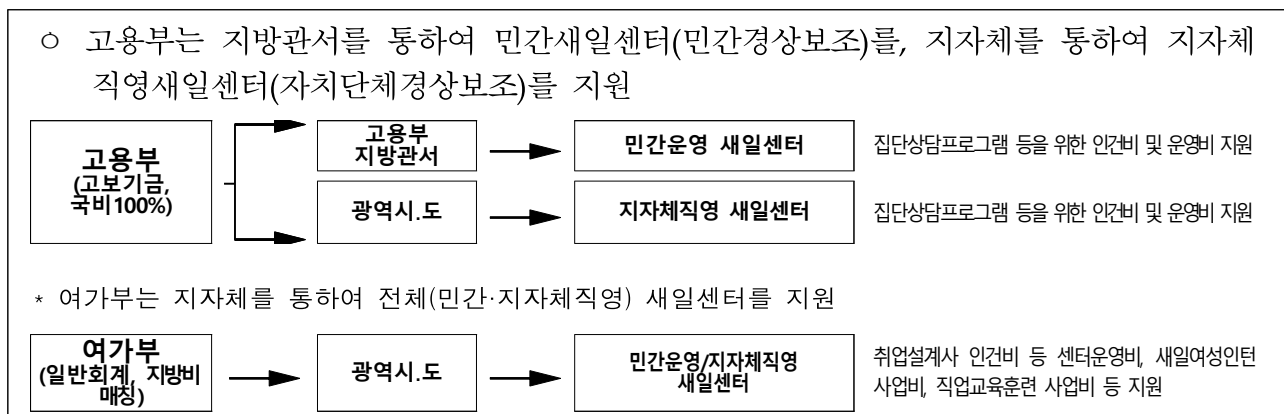
- '08년 여가부·고용부 공동추진 합의(경력단절여성 취업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 '08.6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여가부·고용부 공동 주관)
- '09년 72개 새일센터 최초 지정, '20년 전국 158개(광역센터 13개소 포함) 새일센터 운영
 - * 광역센터는 사업 지휘 총괄·감독, 유관기관 대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센터역량 제고 지원
- 국정과제에 포함 : 「18-5. 여성, 경력단절 극복 및 당당한 재출발 지원」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 자치단체)
- 사업시행주체 : (주관) 고용노동부, (참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민간,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경력을 가지지 못한 여성 구직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100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3) 장년고용안정지원금(1347-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7	350
명칭	고용평등증진	고령자고용촉진지원	장년고용안정지원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장년고용안정 지원금	118,514	91,623	63,581	53,592	53,592	△9,989	△15.7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60세 이상을 1년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폐지)·재고용 등의 조치를 하는 사업주 및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연장·퇴직자재고용)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의 폐지·연장으로 정년에 이른 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월 30만원 지원 ·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기준고용율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임금피크제)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연 1,080만원 한도) · (장년 근로시간단축) 주(週)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에게 감액된 금액의 5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씩 지원)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재고용)를 통해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고령자고용연장>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제25조의2(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28조의 3(근로시간단축지원금), 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② 추진경위

<고령자고용연장>

- '95.7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신설
- '04.2 고령자재고용장려금 폐지,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55세 → 50세)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지원기준율을 업종별(4~42%)로 조정

- '04.10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통합
- '08.1 정년연장장려금 신설
- '08.4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업종별 지원기준율 세분화(4개 → 16개)
- '11.1 다수고용장려금 폐지(기존수급권은 보장) 및 재고용정년연장지원금의 지원요건 확대(재고용기간 1년 및 정년폐지에도 지원), 명칭 변경(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장려금 → 정년연장지원금)
- '12.1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지급기간 확대(3년 이상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기간 2년까지 확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12년 ~'14년 운영)
- '13.1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지원기준 연령 만 58세로 상향
- '14.1.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지원기준 연령 각 60세, 55세로 조정, 지원대상 상시 300인 이하 사업장
- '15.1.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 지원기간 연장 ('17년말까지)
- '18.1.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 지원기간 연장 ('20년말까지) 및 단계적 지원단가 인상*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

<임금피크제, 장년 근로시간단축>

-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06년부터 시행('08년까지 한시사업)
- '06.9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키로 함
- '08.3월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발표 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08.3월 '08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 발표시 상시제도로 전환키로 함
* ▲상시제도로 전환하여 임금피크제 확산을 유도 ▲정년후 고용을 연장·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도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08.3월 노사정위원회 임금체계개선 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며,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
- '08.9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제도로 전환함
- '08.9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금감액 제외 사유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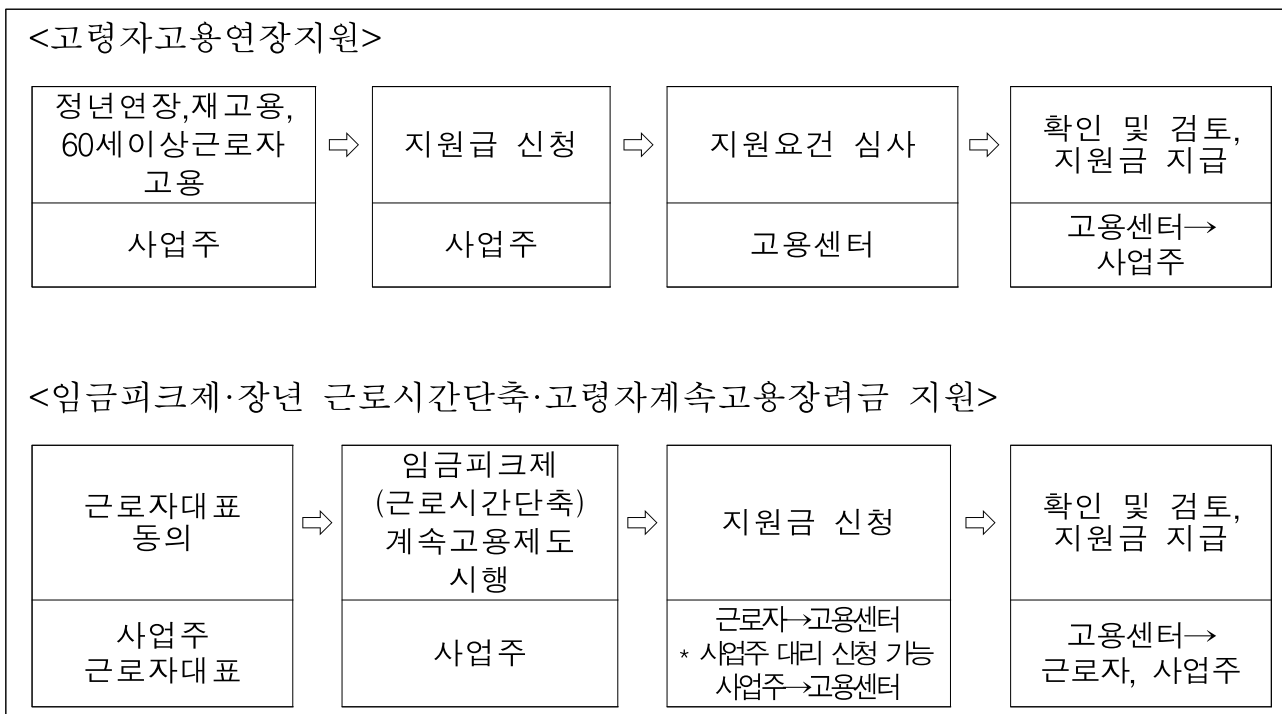
- '09.1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대책('09.1.29.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보전수당 지원확대
 - * 세부 내용: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일자리 유지('08년 5.7% → '09년 9% → '10년 10%), ▲임금조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연장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확대
- '09.7월 「50+세대 일자리 대책(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및 기업의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해 고령자 컨설팅 등 강화를 추진키로 결정주요 정책과제로 채택
- '10.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명칭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변경 및 임금피크제 유형별 지원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년보장형 지원은 폐지
- '12.1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임금감액률 요건 완화(20→10%)
- '13.1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개선
 - * (기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50% 이상 감소 → (개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및 임금 30% 이상 감소
- '13.5.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 * 시행시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 '16.1.1부터, 국가·지자체 및 300인 미만 기업 '17.1.1부터
- '13.12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60세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지원한도 상향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개편(고용보험법시행령 및 고시 개정)
 - * 지원제한 소득액(감액 후 연봉액) 상향: 5,760만원 → 6,870만원
 - * 지원한도 상향: 연간 600만원 → 720만원(정년 60세 이상 연장시 840만원)
 - * 지원요건 완화: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 → 55세 이상인 사업장(재고용시)
- '14.12월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신설
 - * 장년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액근로자와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1년) 사업주 지원
- '15.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시 개정으로 임금피크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 *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 완화(감액률 10~20% → 10%), 지원제한 소득 상향(연 6,870만원 → 7,250만원), 지원기간 연장('16년 → '18년)
 - *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요건 완화(주 소정근로 15~30시간 → 32시간), 지원 상향(연 500만원 → 1,080만원)
- '18.1월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요건 완화(고시 개정, 사업주 중심 →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단축사유로 인정)

- '19年末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고보법 시행령 28조의3 삭제), 경과규정 설정
- * '19.5.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및 효율화 방안」에 따라 위라벨일자리장려금으로 흡수·폐지
- * '19년까지 근로시간단축을 적용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하는 경과규정 설정
- '20.1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6. 주요내용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기간	'95년 ~'20년	'06년 ~ '18년	'16년 ~'19년	'20년~
사업규모	'20년 140억	'20년 90억	'20년 344억	'20년 61억
시행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시행방법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사업수혜자	60세이상 고령자고용 및 정년연장·재고용 사업주	55세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50세 이상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및 사업주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4) 일터혁신 지원(1348-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8	350
명칭	고용평등증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일터혁신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일터혁신 지원	21,913	23,590	23,590	25,720	22,054	△1,536	△6.5

4. 사업목적

- (전문컨설팅) 재정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여 노동조건 향상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
- (지역일자리컨설팅) 지역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모델 발굴 컨설팅을 지원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발굴 도모
- (총괄관리)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장 선정 및 컨설팅 품질관리 기능 수행
- (인프라) 일터혁신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지수 연구, 중소기업 CEO코칭, 우수사례 발굴 진행 및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평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의 고용, 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들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들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나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들의 고용안정·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6년) '16년부터 고성과근무체계개선, 내일희망일터혁신, 시간선택제일자리,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이 「일터혁신 컨설팅지원사업」으로 통합
- ('17년) 장년고용안정 컨설팅, 일가정양립 컨설팅 신설 통합
- 추진배경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3.5.22),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28), 비정규직 종합대책('14.12.29), 노

- 국 정 과 제
- 사정 대타협('15.9.15), 근로기준법 개정('18.2.28)
 -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성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비정규직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정임금 구축 등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 1,800시간대의 노동 시간 실현, 일·생활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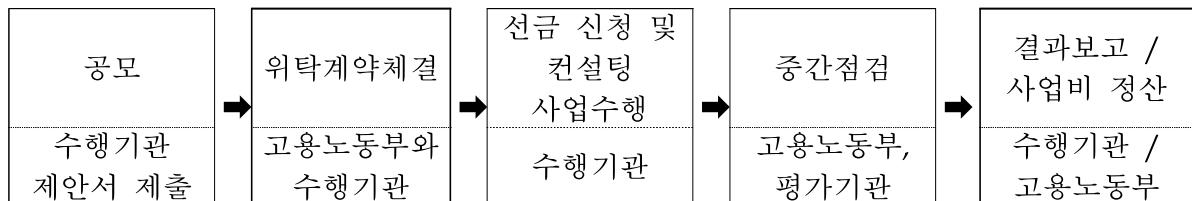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통합)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전문컨설팅 2,200건, 중소기업 CEO코칭 100개소, 일터혁신 교육 800명, 노사상생 지역일자리모델 컨설팅 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보조(총괄관리-노사발전재단)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위탁기관), 노사발전재단(보조사업)
- 사업수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지역노사민정 참여 하에 일자리모델 발굴의지가 있는 지자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노사발전재단	100	노사관계발전법 제6조 제2항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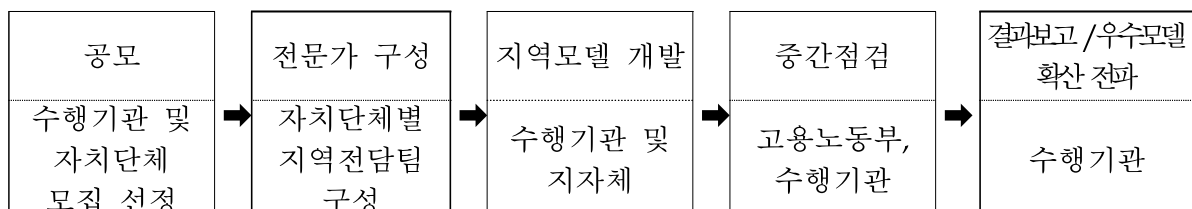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1) 전문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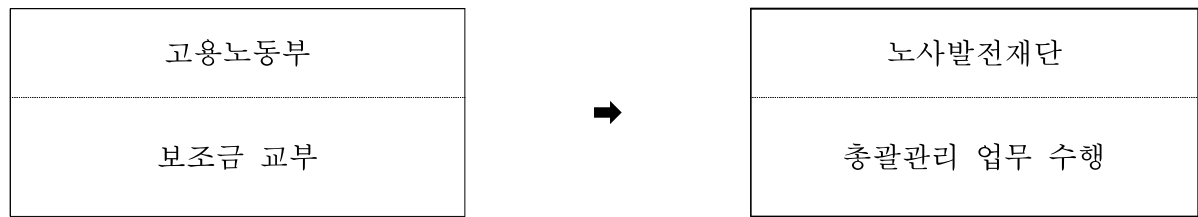


※ 컨설팅 진행절차 : 사업장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컨설팅 → 종료 및 보고 →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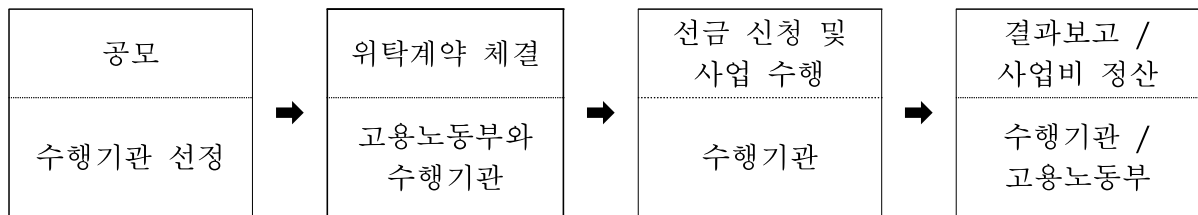
(2) 지역일자리컨설팅



(3) 총괄관리



(4) 인프라



사 업 명						
(35)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76-1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11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55,522	57,077	57,077	58,363	58,363	1,286	2.3

4. 사업목적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피보험자의 적용누락을 방지하고 고용보험료의 징수율 제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적용·부과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 ② 추진경위 :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부과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7. 사업 집행절차

- | |
|--|
|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
|--|

사 업 명						
(36) 고용보험운영 인건비(7076-1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11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용보험운영인건비	522	689	689	702	702	13	1.9

4. 사업목적

- 고용보험통계 전문요원, 고용보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자산전문위원 및 기금관리실무관 활용을 통한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사업추진배경 :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고용노동부(본부) 직접 시행 |
|-------------------|

사 업 명						
(37) 기금관리비 기타경비(7076-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51	57	57	56	56	△1	△1.8

4. 사업목적

-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등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사업추진배경 :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고용노동부(본부) 직접 시행 |
|-------------------|

사 업 명						
(38)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7076-2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1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11,998	12,050	11,809	11,670	11,670	△139	△1.2

4. 사업목적

- 고용보험 적용부과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55개소) 기관운영경비 지원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피보험자 적용누락 방지 및 고용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 ② 추진경위 :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부과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7. 사업 집행절차

- | |
|--|
|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
|--|

사 업 명						
(39)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 (7076-2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1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근로복지공 단청사임차 보증금지원	1,113	1,113	1,113	1,113	1,113	-	-

4. 사업목적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사 및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 ② 추진경위 :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부과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청사 임차보증금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무형자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임차보증금 소요발생시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
|---|

사 업 명						
(40) 고용안정사업운영(7076-2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안정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고용안정사업 운영	441	471	441	460	460	19	4.3

4. 사업목적

- 고용보험 사업인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운영비용, 업무추진비용 등 최소한의 경상경비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경위 :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고용안정 사업운영비 반영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사항없음

사 업 명						
(41)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7076-22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고용서비스 선진화지원	787	788	788	788	788	-	-

4. 사업목적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민원인 중심의 시설 설치 운영 등 고용복지+센터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홍보사업
2. 피보험자 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 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여성·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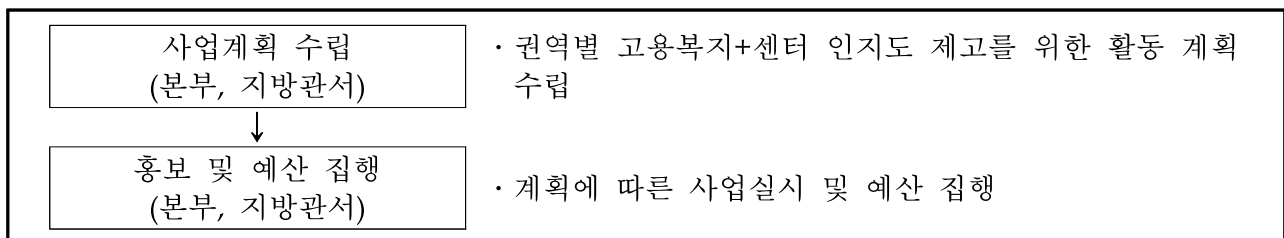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06년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사업 평가 보고회('05.12.20)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인지도 제고 활동 강화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78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 고용복지+센터 이용 구인·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2)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7076-22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1,719	1,847	1,847	1,836	1,836	△11	△0.6

4. 사업목적

실업급여 지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실업급여의 지급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 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 7. 1.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1,847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비자발적 이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 |
|--|

사 업 명						
(43) 실업급여 심사·재심사운영 기타경비(7076-22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실업급여 심사·재심사운영 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실업급여 심사·재심사운영 기타경비	48	62	62	55	55	△7	△11.3

4. 사업목적

-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직업안정기관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고용보험법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 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 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 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99조제8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자격·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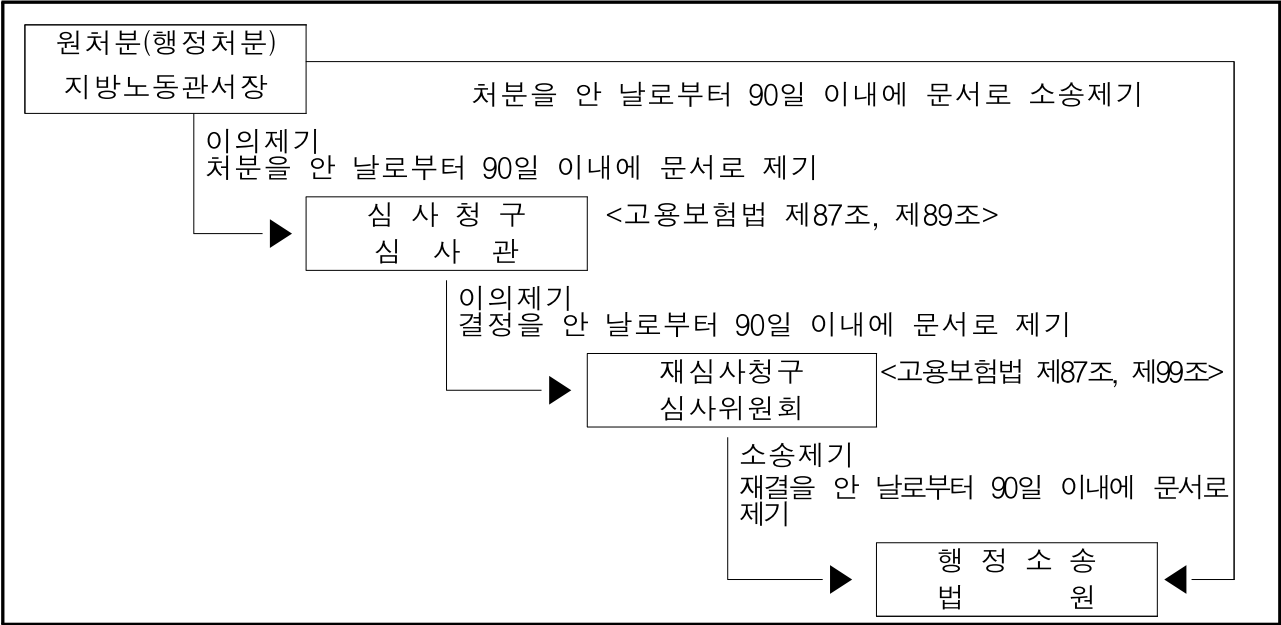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95. 7. 1. 고용보험법령이 시행되면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 등에 이의가 있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재결을 위하여 제도화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국민,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4)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7076-22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2,367	2,886	2,404	2,851	2,851	447	18.6

4. 사업목적

- 고용보험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통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여 보험사업의 활성화 및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 지원과 고용보험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 지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사업추진배경 :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국민 이해 도모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고용노동부(본부) 직접 시행 |
|-------------------|

사 업 명						
(45)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7076-22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고용센터 자체청사 관리비	15,912	16,806	16,806	16,701	16,701	△105	△0.6

4. 사업목적

- 고용복지+센터의 자체 청사 관리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기본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

정법」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드는 경비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②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은 월 단위로 출연금을 받을 자가 다음 달에 쓸 출연금의 금액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신청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피출연자"라 한다)는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출연자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피출연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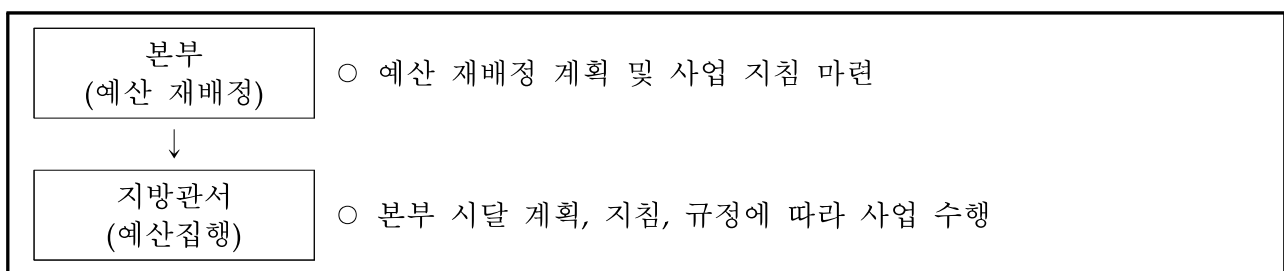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센터 임차보증금 인상요구 및 이전요구 등에 따른 빈번한 이전으로 민원인 불편 및 접근성 취약, 이전비·시설비·홍보비 등 예산낭비 문제 발생
- 이에 '03.4월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종합고용지원센터 중심 단계적 자체청사 확보사업 추진
- 고용센터의 인력부족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접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회출장센터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계속
- 사업규모: 자체청사 5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센터 이용 구인·구직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6)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7076-23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3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1,542	1,702	1,927	1,689	1,689	△238	△12.4

4. 사업목적

-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이 매년 확대되면서 부정수급도 증가하여 왔으며, 공모형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는 등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어 부정수급 예방 활동, 적발을 위한 조사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으로 건전한 보험재정 유지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고용보험법」 제109조(조사 등),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및 제116조(벌칙)

- 고용보험법 제109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이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 대행기관 및 보험사무 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08년
- 사업추진배경
 - '07.12월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계기로 부정수급 전담팀 구성
 - '08.1월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사업 개시
 - '10.12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대책 수립·시행
 - '13.12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
 - '14.1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 '15.1월 6개청 부정수급조사과(청장 직속) 설치
 - '17.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 '18.3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47개 관서 부정수급 조사 업무 일원화
 - '20.8월 부정수급 제재강화 및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수사권 도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 등 신청(사업주),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근로자) → 지원금 및 실업급여 지급(고용센터) → 사전·사후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고용보험수사관) → 부정수급액 징수(고용관리과) |
|---|

사 업 명						
(47) 지역고용정책협의회운영지원(7076-23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3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지역고용정책협의회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지원	198	200	200	193	193	△7	△3.5

4. 사업목적

-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고용촉진 대책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역고용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9조, 제9조의2,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지역고용정책의 추진

② 추진경위

-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획된 고용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지역고용정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이에 따라 지역고용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 제기
- '08.2.15.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구성
- '20.12월까지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총 39회 개최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구성》

○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

- 고용노동부장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일자리 관련 부처 차관 등

○ 지역일자리실무협의회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담당국장(주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고용정책 담당과장, 지역고용심의회 관할 지역협력과장, 본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등

* 필요시 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 관련업무 담당과장, 고용관련 전문가 등 참여 가능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역할》

- 지역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7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48)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7076-2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4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직업능력개발 사업운영	844	863	823	839	839	16	1.9

4. 사업목적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동법 시행령 제107조
- ② 추진경위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이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9)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7076-24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4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근로자능력 개발사업운영	118	130	130	130	130	-	-

4. 사업목적

-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된 능력개발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5의2 및 제6호(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법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145조(권한의 위임 등)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5의2. 제45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6.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8.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9. 제4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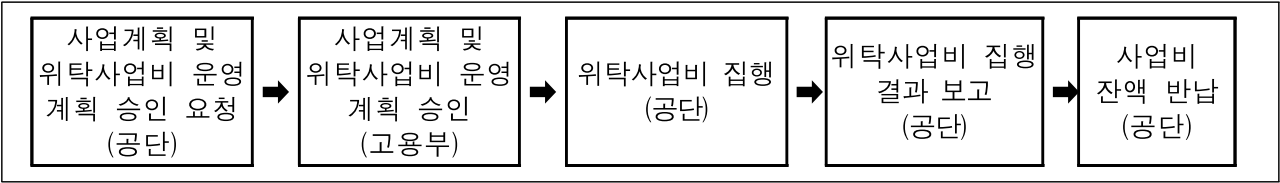
- 1995년 훈련시설장비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2006년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한국 산업인력공단 위탁
- 2008년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사내기술자격검정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2009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복지공단 위탁
- 2011년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근로복지공단 위탁
- 2012년 중소기업체계적현장훈련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2016년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훈련시설장비대부(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근로복지공단) 사업 위탁
- 2018년 훈련시설장비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근로복지공단) 사업 위탁 시행 중

* '19년부터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 사업폐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7년~ 계속
- 사업규모 : 근로복지공단 위탁 사업 운영비 13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0) 모성보호사업운영(7076-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5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모성보호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모성보호 사업운영	208	247	227	245	245	18	7.9

4. 사업목적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모성보호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동법 시행령 제107조
- ② 추진경위
 - 95.7.1.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
 - '03년부터 모성보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동 제도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사업으로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236	229	224	216	216	247

- 사업시행방법 : 제도 내용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접 집행,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여비 등 지방관서 재배정 등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본부·지방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안내 및 교육 등을 위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접 집행(본부)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정착 관련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지방관서에 재배정하여 집행(지방관서)

사 업 명						
(51) 여성고용촉진시설지원운영(7076-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5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여성고용촉진시설지원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여성고용촉진시설지원 운영	129	129	129	129	129	-	-

4. 사업목적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과 여성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등 여성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동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및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 고용노동부예규 제63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② 추진경위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에서 국고보조제도를 통해 직접 수행하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무상 지원 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위탁('00.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7~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직장어린이집 및 여성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5조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2)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7076-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5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령자고용 촉진캠페인	483	499	459	497	497	38	8.3

4. 사업목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사업 등의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여,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고령자 고용 안정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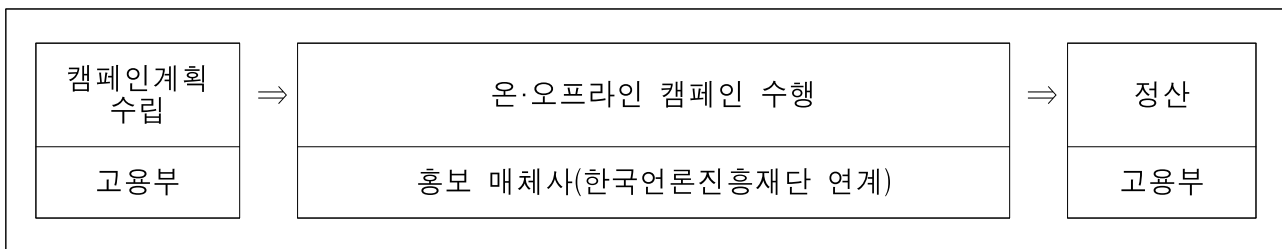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04.1월)에 Age campaign 전개 확정·발표,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07~'11)에 포함, '06년부터 사업시작
- 명칭변경 : '06년 에이지캠페인 → '12년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사업규모 : ('19년 예산기준) 고령자 고용촉진 캠페인 연중 추진 47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령/준고령 근로자·근로자가 되려는 자, 사업주,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3) 고령자고용환경개선용자사업운영(7076-2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5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령자고용환경개선용자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령자고용 환경개선용 자사업운영	18	18	18	18	18	-	-

4. 사업목적

-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고용환경개선 용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비 등 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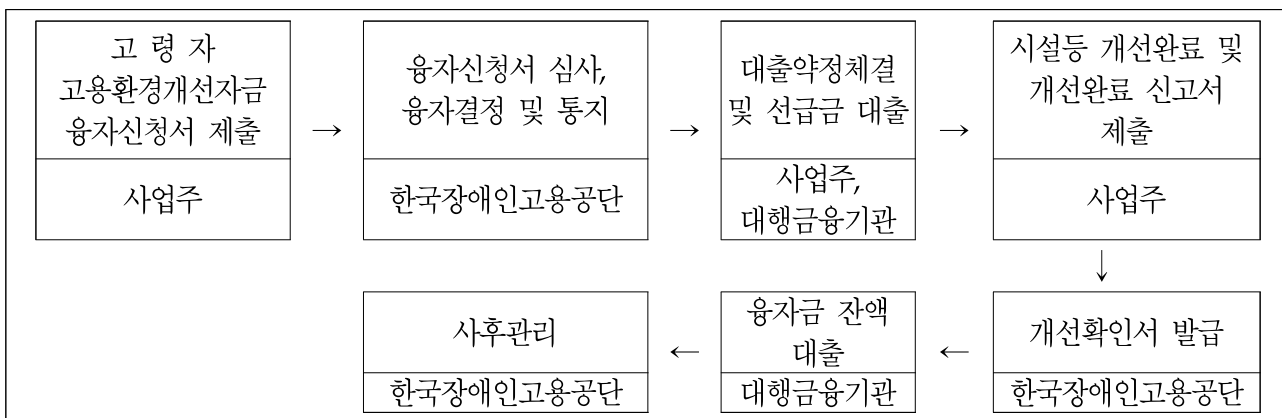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06.1월 고령자 고용촉진 시설 및 장비의 설치·개선비용 용자 시행
- '09.9월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07~'11)」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의 세부추진계획에 포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위탁)
- 사업 수혜자 : 고령자 고용촉진 시설 및 장비의 설치·개선 등을 위해 용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4)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7077-2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7	27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보험연구개발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노동시장연구 센터위탁연구	2,024	2,030	2,030	2,030	2,030	-	-

4. 사업목적

- (한국노동패널조사) 고용노동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패널조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
- (노동시장분석센터)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 노동정책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 정책대안을 제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대행)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추진경위

<한국노동패널조사>

- '95.1월 :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설립으로 고용정책 연구개발사업 수행
- '98.4월 : 제1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5,000 표본가구의 15세이상 가구원)
- '09년 :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 및 농어촌지역 1,500표본가구 추가
- '18년 : 제21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5,000 표본가구 추가)
- '19~'20년 : 제22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12,000가구)

<노동시장 분석센터>

- '13년 : 일자리 창출이 국정 핵심 과제로 부각되면서 심층적인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 노동시장 분석센터를 설립하여 노동시장 심층 분석
- '14년 ~ '20년 : 노동시장 분석회의 실시 등 노동시장 분석센터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 사업규모 : 2,030백만원(한국노동패널조사 대상: 12,000가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위탁사업)
- 사업시행주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정부, 정책 입안자, 국민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한국노동패널조사) 위탁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작성(고용노동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연구계획서 제출(위탁기관) → 계약 체결(고용노동부, 위탁기관) → 조사표 설계(위탁기관) → 조사 실사업체 선정(위탁기관) → 조사지침 수립 및 면접원 교육(위탁기관) → 조사 실시(조사실사업체) → 조사결과 확인 및 클리닝(위탁기관)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고용노동부)
- (노동시장 분석센터) 연구과제 선정 및 위탁센터 선정 → 계약 체결 → 연구상황 점검 → 연구결과물 평가 및 검수 → 연구결과물 제출 및 활용

사 업 명						
(55) 고용보험연구용역(7077-2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7	27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보험연구개발	고용보험연구용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용보험 연구용역	1,320	1,337	1,337	1,337	1,337	-	-

4. 사업목적

- 고용보험사업 발전방안 개발, 고용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 고용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연구인력 저변확대와 경쟁을 통한 연구 내실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1,33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정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연구과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제출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연구과제 선정) → 공개경쟁입찰 →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개최(연구자 선정) → 계약 체결 → 연구상황 점검 → 연구결과물 평가 및 검수 → 연구결과물 제출 및 활용

사 업 명						
(5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조사연구지원(7077-27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7	27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보험연구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연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조사연구지원	546	579	579	579	579	-	-

4. 사업목적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정책 조사 및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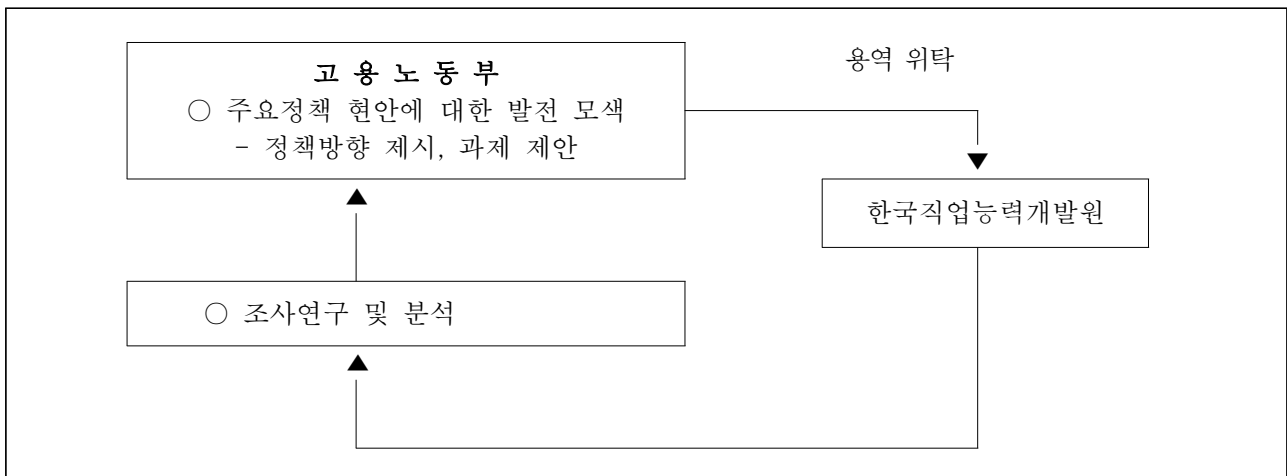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08)에 근거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이후 계속
- 사업규모 : 579백만원('21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7)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7078-2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8	28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제도 홍보	431	440	440	440	440	-	-

4.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알려,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 1항

○ 추진경위

- 201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구체적 업무처리절차 마련
- 2014년: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가입요건 등 완화 방안 검토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4.6~12월)
- 2015년: 기준보수 등급 신설(총 5등급 → 7등급)
- 2016년: 임의가입기간 확대(개업일로부터 6개월 → 1년 이내, '16.1.1. 시행)
- 2017년: 임의가입기간 추가 확대(개업일로부터 1년 → 5년 이내, '18.1.1. 시행)
- 2019년: 임의가입기간 삭제(개업일로부터 5년 → 삭제, '19.7.1. 시행)
실업급여보장성 강화('19.10.1.시행)
지급수준 10%인상(50%→60%), 지급일수 30일확대(90~180일→120~210일)

6.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수혜자 : 사업주

7. 사업 집행절차

- | |
|---|
| - 근로복지공단 출연금(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운영지원비용으로 공단에서 집행) |
|---|

사 업 명
(58)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7078-28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8	28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118	131	131	127	127	△4	△3.1

4.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 1항

○ 추진경위

- 201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구체적 업무처리절차 마련
- 2014년: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가입요건 등 완화 방안 검토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4.6~12월)
- 2015년: 기준보수 등급 신설(총 5등급 → 7등급)
- 2016년: 임의가입기간 확대(개업일로부터 6개월 → 1년 이내, '16.1.1. 시행)
- 2017년: 임의가입기간 추가 확대(개업일로부터 1년 → 5년 이내, '18.1.1. 시행)
- 2019년: 임의가입기간 삭제(개업일로부터 5년 → 삭제, '19.7.1. 시행)
실업급여보장성 강화('19.10.1.시행)
지급수준 10%인상(50%→60%), 지급일수 30일확대(90~180일→120~210일)

6.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

사 업 명						
(59) 고보기금에서 공자기금(총괄계정)으로 예수이자상환(9201-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1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고보기금에서 공자기금(총괄계정)으로 예수이자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고보기금에서 공자기금(총괄 계정)으로예수 이자상환	-	-	24,674	134,400	134,400	109,726	444.7

4. 사업목적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의 이자 상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상환을 위해 편성('20년 추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60) 한국은행예치(9710-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0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고용보험기금)	한국은행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한국은행예치	103,982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4. 사업목적

-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운용 또는 기타 지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한국은행 국고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95. 7. 고용보험기금의 설치
- 추진배경: 회계연도말 부득이 지출되지 못하고 국고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한국은행 예치금으로 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5.7월~계속
- 사업규모 : 회계연도말 한국은행 국고 계좌에 잔고로 남아 있는 금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7. 사업 집행절차

회계연도 말일 한국은행 시재 파악 → 지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통화 및 비통화 금융기관에 예치 → 이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입금되거나 시재로 미파악된 부분이 국고 잔액으로 남음

사 업 명						
(61)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0-97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0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고용보험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1,580,272	2,552,621	547,048	3,528,958	3,356,082	2,809,034	513.5

4. 사업목적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으로 예치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기금의 지출 수요에 대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95. 7. 고용보험기금의 설치
- 추진배경: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당해 연도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여유자금을 비통화 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일정비율 예치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확보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 7. ~ 계속
- 사업규모 :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수익증권 등으로 예치하는 금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자산운용계획에 따른 자산군별 투자 비중내에서 채권형·주식형 등의 수익증권 운용

V.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V.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수입

(1) 고용주부담금	
38 - 38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고용주부담금	7,538,668	8,201,178	8,201,178	8,660,577	8,660,577	459,399	5.6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조(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2. 세입 개요

- 산재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개산보험료, 월별보험료, 확정보험료, 정산보험료, 이월보험료)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6,428,825	7,346,071	7,538,668	6,602,414

(2) 피고용자분담금
38 - 382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피고용자분담금	7,144	6,879	6,879	9,023	9,023	2,144	31.2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2. 세입 개요

- 산재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월별보험료, 정산보험료, 이월보험료)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5,417	6,683	7,144	22,250

(3) 토지대여료
51 - 51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토지대여료	781	548	548	561	561	13	2.4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2. 수입 개요

- 산재기금 자산으로 보유한 토지를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료 (일반회계 부담)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887	907	781	711

(4) 건물대여료
51 - 512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건물대여료	192	149	149	125	125	△24	△16.1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2. 수입 개요

- 산재기금 자산(청사)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사 중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용할 청사에 대한임차료(일반회계 부담)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230	225	192	169

(5) 기타민간이자수입
54 - 544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민간 이자수입	6,595	6,408	6,408	5,653	5,653	△755	△11.8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4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이자율)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재예방활동지원)

2. 수입 개요

- 각종 용자사업(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용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 각 공단 장기 대여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8,604	7,592	6,595	4,284

(6)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재산수입	247,513	388,195	388,195	423,494	423,494	35,299	9.1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2. 세입 개요

-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펌뱅크계좌 이자수입(보험급여 및 반환금 등의 지급을 위한 펌뱅크계좌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569,819	373,417	247,513	754,587

(7) 벌금및과료(과징금)
56 - 565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과징금	36	23	23	23	23	0	0.0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2. 세입 개요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	-	36	-

(8) 가산금(가산금)
58 - 58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가산금	6,460	7,977	7,977	8,451	8,451	474	5.9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2. 세입 개요

-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전액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100분의 10(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5,590	6,155	6,460	4,705

(9)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경상이전 수입	94,080	179,811	179,811	188,375	188,375	8,564	4.8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채납 처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2. 세입 개요

- 연체금 :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채납된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채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3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징수하되 1000분의 90을 넘지 못함.
- 급여징수금 :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징수, 사업주가 산재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징수(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구상금 :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제3자 구상금을 징수

-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압류, 감정평가, 매각등의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
- 부당이득금 : 보험금의 부정·부당수급액의 회수(부당이득)
- 과오지급금 회수 등 : 과오지급금, 보조금 정산액등 반납 회수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06,584	95,565	94,080	81,486

(10) 기타잡수입
69 - 69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잡수입	8,214	11,396	11,396	12,316	12,316	920	8.1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2. 세입 개요

- 근로복지공단 송달료 환급분, 공매입찰보증금, 구상금지연이자, 공탁금이자, 추심계좌이자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 수행 관련 수입(수수료)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1,004	10,962	8,214	4,737

(11) 건물매각대
71 - 71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건물매각대	0	0	0	0	0	0	0.0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2. 수입 개요

- 산재기금 소유 건물에 대한 매각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741	-	-	-

(12) 토지매각대
72 - 72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토지매각대	0	0	0	0	0	0	0.0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2. 수입 개요

- 산재기금 소유 건물에 대한 매각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8,460	-	-	-

(13)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 - 754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134,496	170,997	170,997	182,120	182,120	11,123	6.5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2. 세입 개요

- 각종 융자사업(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융자,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의 융자원금 회수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20,687	123,362	134,496	142,700

(14)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
85 - 85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	47,356	26,493	26,493	23,949	23,949	-2,544	-9.6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2. 수입 개요

- 연도말 한국은행에 예치된 국고잔액 회수 금액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46,830	42,705	47,356	30,995

(1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143,024	6,941,194	6,941,194	7,210,077	7,210,077	268,883	3.9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을 만기도래 또는 사업비 지출 등을 위해 환매하여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3,357,066	2,340,623	2,143,024	4,590,078

(16)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일반회계전입금	15,500	15,500	15,500	16,300	16,300	800	5.2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수입 개요

-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
- 산재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5,500	15,500	15,500	15,500

(17) 기금예탁원금회수
92 - 923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예탁 원금회수	400,000	400,000	400,000	1,400,000	1,400,000	1,000,000	250

1.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한 금액을 만기도래에 따라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8) 기금예탁이자수입
95 - 953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예탁 이자수입	7,580	2,640	9,586	55,394	55,394	45,808	477.9

1.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7,131	8,640	7,580	7,832

2. 지출

사 업 명						
(1) 산재보험급여(4051-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정책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1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보험급여	5,529,360	5,904,634	5,996,823	6,523,565	6,523,565	526,742	8.8

4. 사업목적

-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 산재 장애급여자의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지원을 통해 사회복지 촉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애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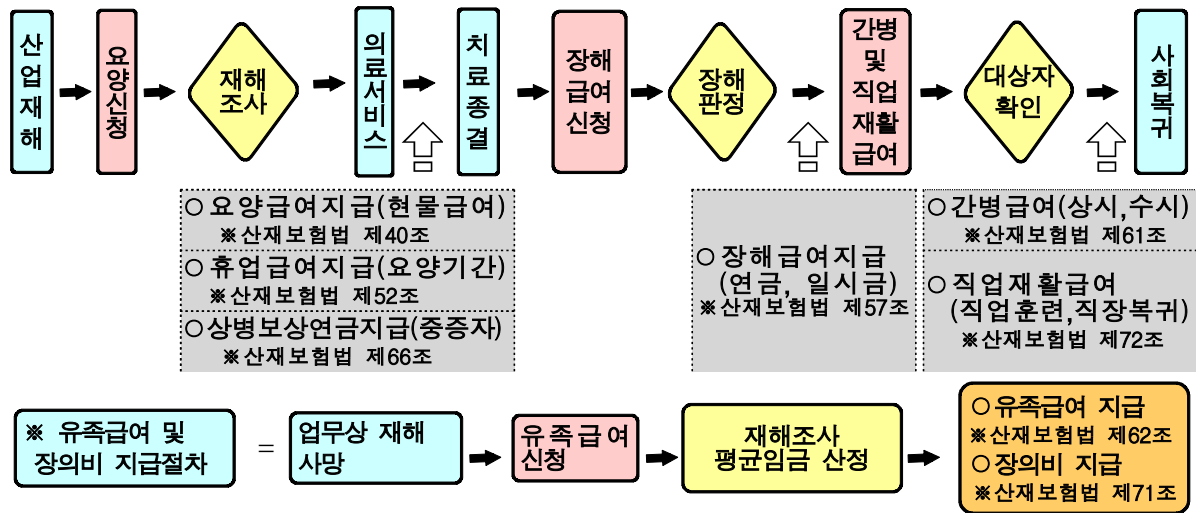
- 사업 시작년도 : '64년
- 추진배경
 - '64년 산재노동자 및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제도 도입
 - '05. 10월부터 보상업무를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혁신, 산재보험 급여지급 적정성 확보와 요양관리 합리화, 재활서비스 강화
 - '06. 12. 13 노사정합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계전면 개정 시행('08. 7. 1)
 - 진폐보상체계의 연금 단일방식으로 전환 등 진폐제도 개선 시행('10. 11. 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평등권(통근버스 등이 제공되는 대규모사업장과 영세사업장 노동자간,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공무원과 일반노동자간)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되어,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18.1.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4~계속
- 사업규모 : 수급자수 320,184명('19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산업재해발생부터 사회복귀까지 산재보험급여 지급 절차도



사 업 명						
(2)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4052-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 및 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2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81,585	76,920	76,920	76,724	76,724	△196	△0.3

4. 사업목적

☐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산재노동자에게 의료·사회심리·직업
재활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요양종결 이후 합병증 발병 등이 우려되는 44개 상병군에
대한 예방 진료비 지원과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비용을 2년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지원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 장애등급 1~12급 산재장애인이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용·훈련수당 지원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산재노동자의 성공적 직업복귀를 위해 직업복귀계획 수립 및 재활서비스 통합 제공
- (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로 인한 심리불안 해소 및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희망찾기·사회적응프로그램 등 지원으로 사회복귀 촉진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산재노동자 및 가족의 교육 기회 제공, 가족복지 프로그램 지원
- (맞춤서비스지원) 의학 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의료자문 회의체 운영 및 전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활전문가 양성
- (대체인력지원) 산재노동자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② 추진경위

- '00. 7. 1. 후유증상진료지원제도 도입
- '01. 1.11.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
- '01. 3. 1. 재활스포츠지원사업 도입
- '02. 1. 1. 산재근로자 사회적응위탁프로그램 운영 개시
- '06. 3.24. 재활사업 제1차 중기 발전계획('06-'08) 수립
- '08. 7. 1. 직업재활급여 도입
- '09. 4. 6. 제2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 수립
- '10. 4.28. 직업재활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대상 확대
- '12. 5.31. 제3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 수립
- '15. 3.31. 제4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 수립

- '16. 1. 1.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도입
- '17. 7. 1. 직업훈련기관 인증제와 NCS 성과 평가체계 도입
- '17.12.13.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수립
- '18.12.21. 산재관리의사 제도 시범운영
- '19. 3. 1. 사업주 원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시범운영
- '20. 2. 1. 지능형 재활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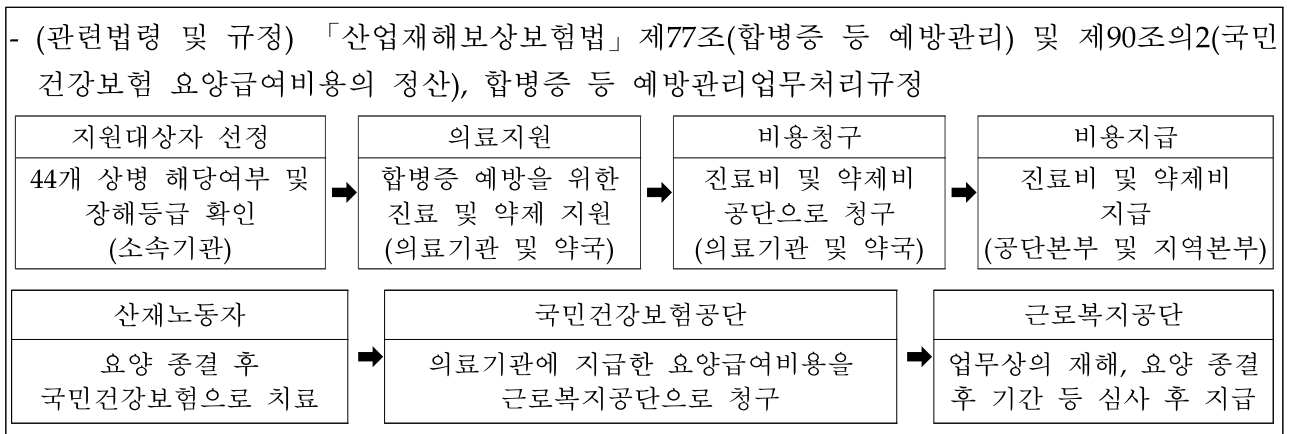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요양급여 수급자 약 22만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노동자 및 (유)가족,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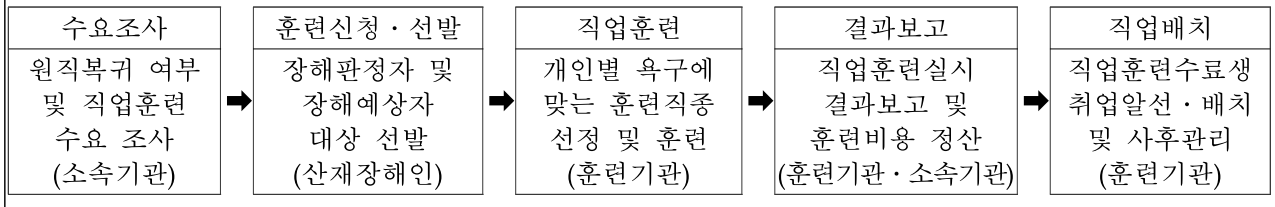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합병증 등 예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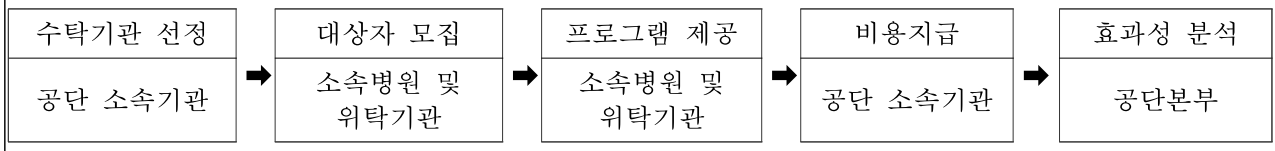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

- (관련법령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 직업재활 업무처리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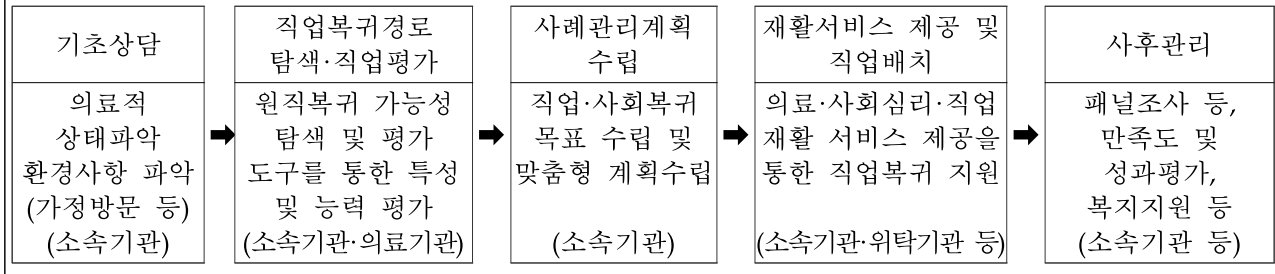
□ 사회심리재활지원

- (관련법령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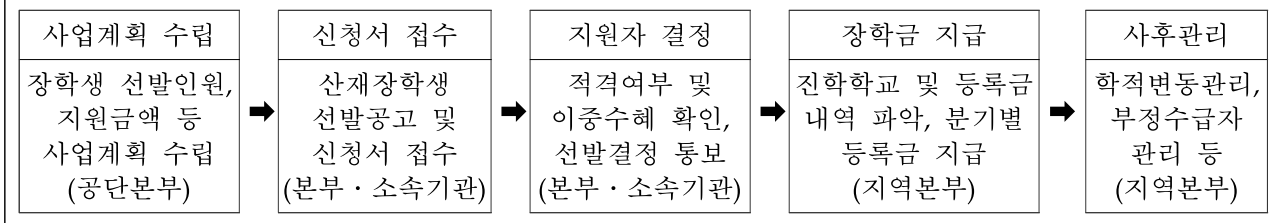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 (관련법령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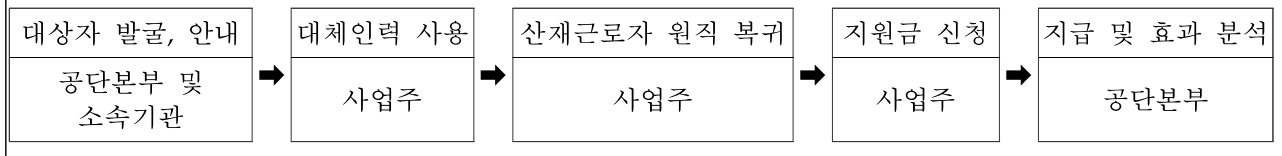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 (관련법령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 (관련법령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사업),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사 업 명						
(3)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4052-3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80	08E
명칭	및 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2	356
명칭	산재보험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8,900	9,220	9,220	10,275	10,275	1,055	11.4

4. 사업목적

- (재활공학연구소) 첨단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통해 산재장해인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판정관련 역학조사와 직업병 연구
- (케어센터) 중증·고령·무의탁 산재 장애인에게 전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간병부담 완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11조(공단의 사업), 제92조(근로복지사업)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추진경위

- (재활공학연구소)

- 산재장해근로자의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치료·훈련기법을 연구·개발·보급하여 사회복귀 촉진 목적으로 설립('94.8월)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05)」
- 고용노동부 『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산재의료관리원 역할강화 방안('06~'10년)』 ('06.3월)
- 고용노동부 『산재전문병원 역할강화 세부실행계획』 수립('07.10월)
- 고용노동부 『제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7~'21)』 ('17.11월)

- (직업환경연구원)

- 안산산재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개소('06.4월)
 - * 수도권 유일한 진폐전문기관인 여의도 성모병원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산재진폐 전문의료기관 반납
- 직업환경연구원 명칭 변경('19.1월)
- 백혈병, 피부질환 등 호흡기 외의 질환 역학조사 수행('19.5월)

- (케어센터)

- 「산재장해인 케어센터」 및 「진폐환자보호요양시설」 건립 추진('01. 6월, 노동부)
- 산재보험 케어센터 건립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한국노동연구원, '01. 12월)
-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케어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02. 11월)
- '산재보험 케어센터 건립계획' 확정('02. 11월)
- 「진폐환자 보호 요양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04. 2월)
- 경기케어센터 개소('07. 7월), 태백케어센터 개소('08. 4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재활공학연구소) '95~계속
(직업환경연구원) '06~계속

(케어센터) '07~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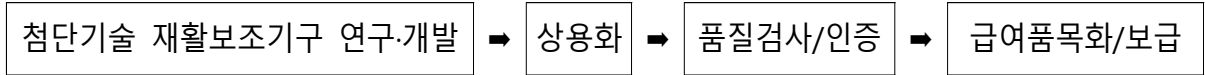
- 사업규모 : 1개 연구소, 1개 연구원, 2개 케어센터(경기, 태백)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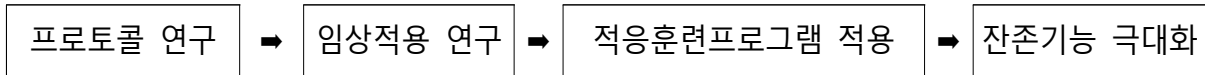
7. 사업 집행 절차

[재활공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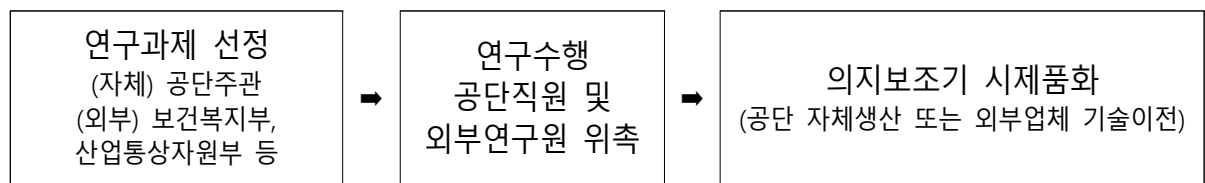
○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 선진 과학적 재활치료/훈련 기술 연구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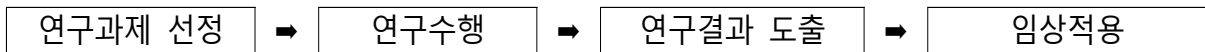


○ 외부 위탁연구용역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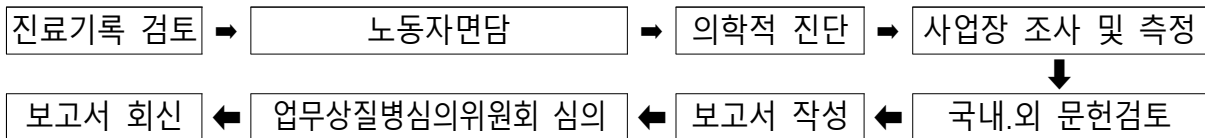


[직업환경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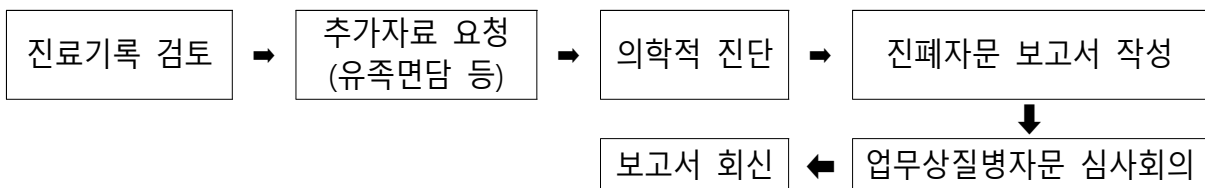
○ 연구과제 수행



○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자문



[케어센터]



사 업 명						
(4) 산재근로자 요양관리(4053-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080	08E
명칭	및 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3	351
명칭	산재보험	요양관리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10,202	9,714	9,714	9,664	9,664	△50	△0.51

4. 사업목적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 산재보험 범죄예방 및 적발을 통한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선량한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 보호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의료서비스 및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제고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 재해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및 산재 신청 지원으로 재해 노동자 산재 입증부담 완화와 업무상재해 판정의 공정성 제고

－ (출퇴근 재해 보호)

- 노동자의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조사 및 보상을 통해 노동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① 법령상 근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금의 징수),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4조(부당이득금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환경노동위원회)
 -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허위·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의 마련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국무총리실 주관의 범정부적 보험급여 분야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 「보험범죄 근절대책」('09. 6.19.)

- 「보험범죄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10. 1.26.)
-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11. 1.26.)
-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추진성과의 향후 추진방안」('12.12.21.)
- '09. 1. 1. : 임시조직“보험조사팀”운영(정원 8명)
- '10. 4. 28. : “부정수급조사부”로 정규직제화 (10명)
- '11. 1. 1. : 정원 증원(10명 → 25명)
- '12. 1. 1. : 정원 감축(25명 → 20명)
- '14. 2. 1. : 부서명칭 변경(부정수급조사부 → 보험조사부)
- '15. 1. 8. : 정원 증원(19명 → 22명)
- '15. 2. 27. : 서울보험조사팀 설치(인원 : 8명)
- '17. 1. 23. : 익산보험조사팀 설치(인원 : 4명)
- '18. 1. 1. : 직제개편으로 정원 증원(22명 → 35명) 및 6개 지역본부 부서 신설
- '18. 12. 13.: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제도 시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① 법령상 근거

- 산재보험법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② 추진경위

- '06. 12. 13.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노사정 합의
- '08. 7월.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근거조항 신설(산재보험법 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시설·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07~'08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제1·2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7년 6개, '08년 60개 의료기관 시범평가 실시

- '09년 연구용역 및 시범평가
 - 100개 병·의원 대상 실시
- '10년 산재근로자 진료실적이 높은 의원 대상 시범평가
 - 200개 의원 대상 실시
- '11년 산재근로자 진료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대상 평가
 - 487개 종합병원·병원·의원 대상 실시
- '13년 제3차 재활중기발전계획에 따라 485개소(종합병원 161개소, 병원 198개소, 의원 121개소, 요양병원 5개소) 재활중심 평가
 - * 재활중심 평가항목(8개항): ①재활치료 장비보유 여부 ②재활치료의 적정성 ③재수술율 ④치료경과 설명의 적정성 ⑤장해등급 일치율 ⑥산재환자 요양관리 규정여부 ⑦직장복귀정도 ⑧공단직원 만족도
- '15년 ~ '18년 진료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평가
 - ('15년) 488개소 → ('16년) 479개소 → ('17년) 484개소 → ('18년) 482개소
- '19년 재활인증의료기관 및 진료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평가
 - 현지평가 300개소(진료특성별로 재활인증병원(93개소)과 일반병원(207개소)으로 구분), 서면평가 900개소(진료실적에 따른 산재 기여도)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① 법령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37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삭제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0.6.4.>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업무상 재해 결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및 근로자 입증책임 부담 완화 요구 제기*

* 국회 입법발의('11.11.1, '12.7.13. 민주당 이미경 의원, '16.10.21.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산재보험 제도개선 권고('12.5.17.)

※ 업무상질병의 입증책임 관련, 공단이 업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산재보험법 개정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 사항 노사정 합의(산재보험제도개선TF팀 ('11년 12월)

* 근로자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강화, 질병판정의 전문성 강화, 전문가 참여확대 등 16개 개선사항 합의·시행

- '13.7.1.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시행(유해화학물질 35종 인정기준 추가, 직업성 암 종류 21종 추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병 추가 등)

-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상질병판정업무 종합개선 대책」 수립·추진('14년 2월~)

*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재해조사 업무 인프라 확충 등 20개 과제 선정·추진

-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 노사정 회의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17년 2월~)

* 현장조사 미참석 신청인에게 조사영상 제공, 질병확인 소위원회 도입 등

-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상질병판정업무 종합개선 대책」 수립·추진('17년 12월~)

* 현장조사 필요 대상 확대 및 현장조사 매뉴얼 마련, 직업성 암 지침 마련, 본부의 업무상질병 부서 전문성 강화 등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 개정·시행('18년 1월~)

- 직업성 암 및 임신 중인 노동자 유산·사산 또는 조산 인정기준에 포함 개정·시행('18년 12월~)
-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질환 인정기준 추가·시행('19년 7월~)
- 업무상 질병 판정 신속성 제고 및 신청인 의견진술권 강화를 위한 정신질환 분산심의 시행('19년 8월~)

(출퇴근 재해 보호)

① 법령 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추진경위

-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불인정과 관련하여 '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되어 국회 논의 ('17. 6. 22.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시('18. 1. 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10년 ~ 계속
 - (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08년 ~ 계속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15 ~ 계속
 - (출퇴근 재해 보호) '18 ~ 계속
- 사업규모 :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산재노동자 27만명(연금수급자 9만3천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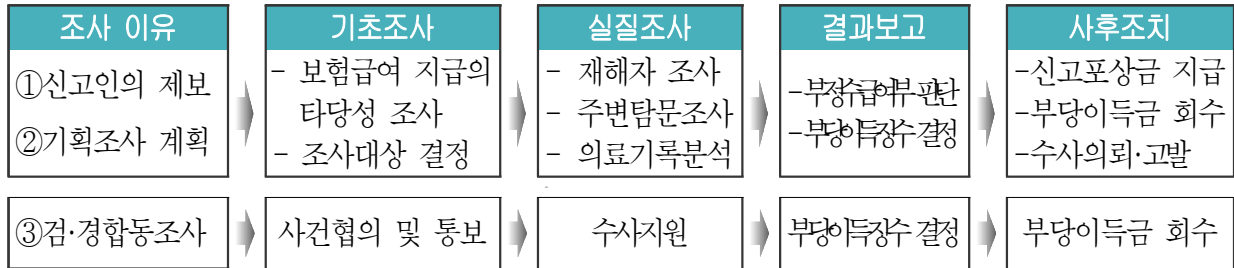
- (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산재보험 의료기관 300개소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산재노동자 124,988명
- (출퇴근 재해 보호) 출퇴근 재해노동자 83,739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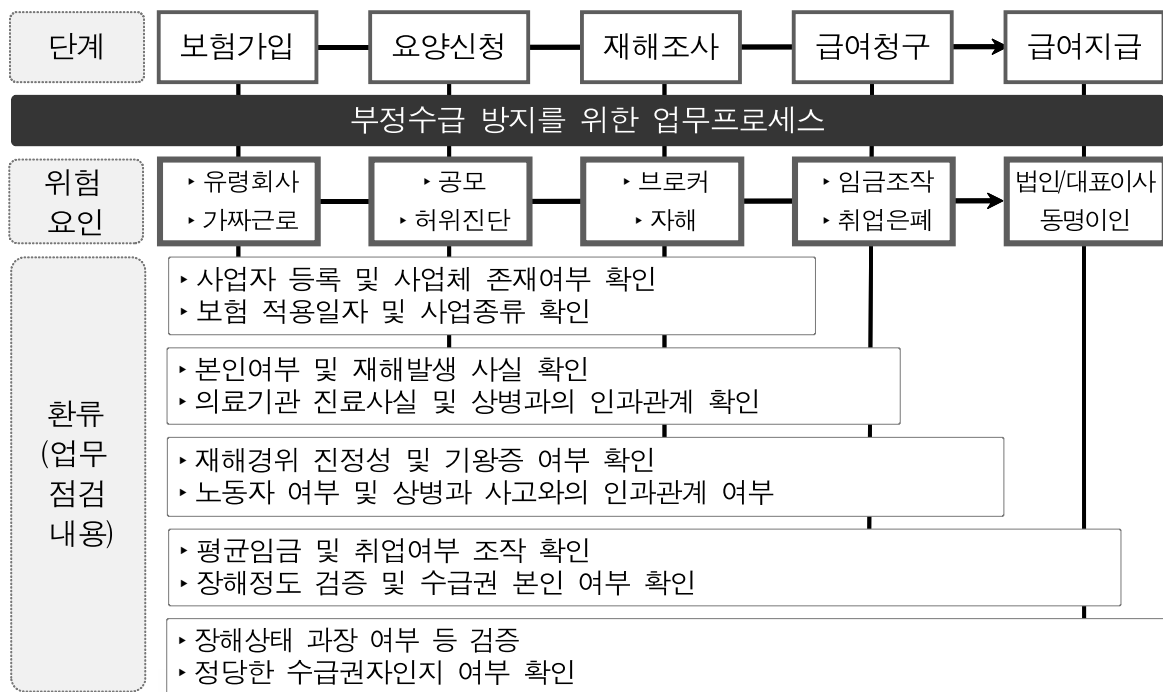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17조(사업장등에 대한 조사),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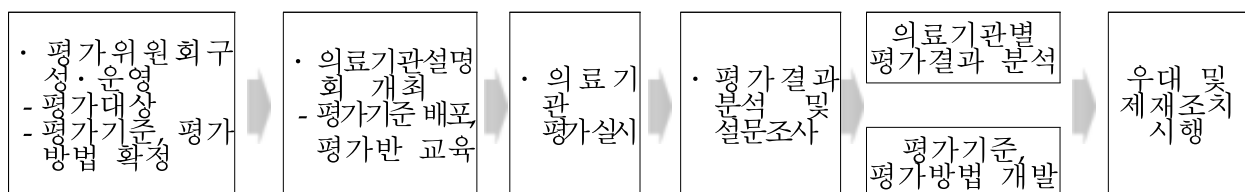


< 보험급여 지급 단계별 위험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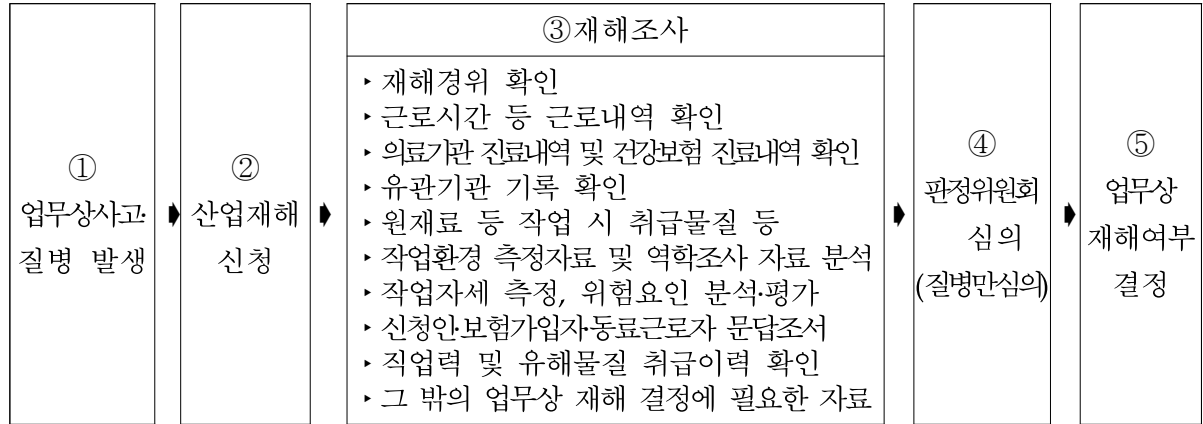


부정수급 요소 발견 및 모험분석을 통하여 필요 시 기획조사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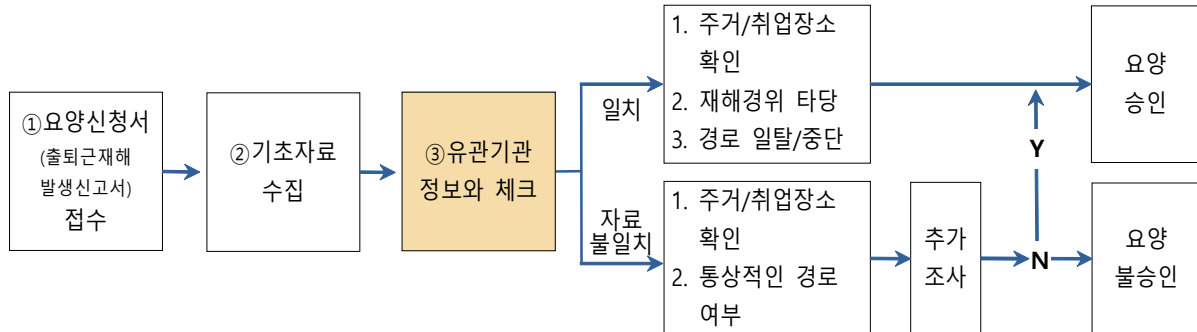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업무상 재해 조사·판정>



<출퇴근재해 보호지원>



사 업 명						
(5) 산재병원지원(4054-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4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의료사업지원	산재병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병원지원	16,004	28,769	28,769	36,492	29,982	1,213	4.2

4. 사업목적

- (시설·장비 지원)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산재병원 노후시설 개보수로 안전한
요양환경 구축
 - 산재병원의 건물 대다수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고, 시설 준공이후 정부로 기부채납
하고 있어 정부가 건물의 개·보수 예산 지원
 -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 교체를 통해 정확한 진단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
 - * 산재노동자의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의료장비에 대해 내구연한 순으로 예산 지원
- (운영비 지원) 산재병원 운영재원은 자체 진료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민간이
기피하는 저수익 구조의 7개 재활전문센터 운영 및 산재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본부

(비수익기관)의 운영비 지원

- 산재재근로자 재활치료 골든타임에 집중재활프로그램 제공, 신체기능 손실 최소화를 통한 조기 직업복귀 지원
- 대형병원은 저수익 이유로 기피, 중소병원은 단순 물리치료만 제공하여 국가에서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할 필요가 있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② 추진경위

- 고용노동부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계획』('04.7월)
- 고용노동부 『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산재의료관리원 역할강화 방안('06~'10년)』('06.3월)
- 고용노동부 『대구재활전문병원 건립추진계획안』('06.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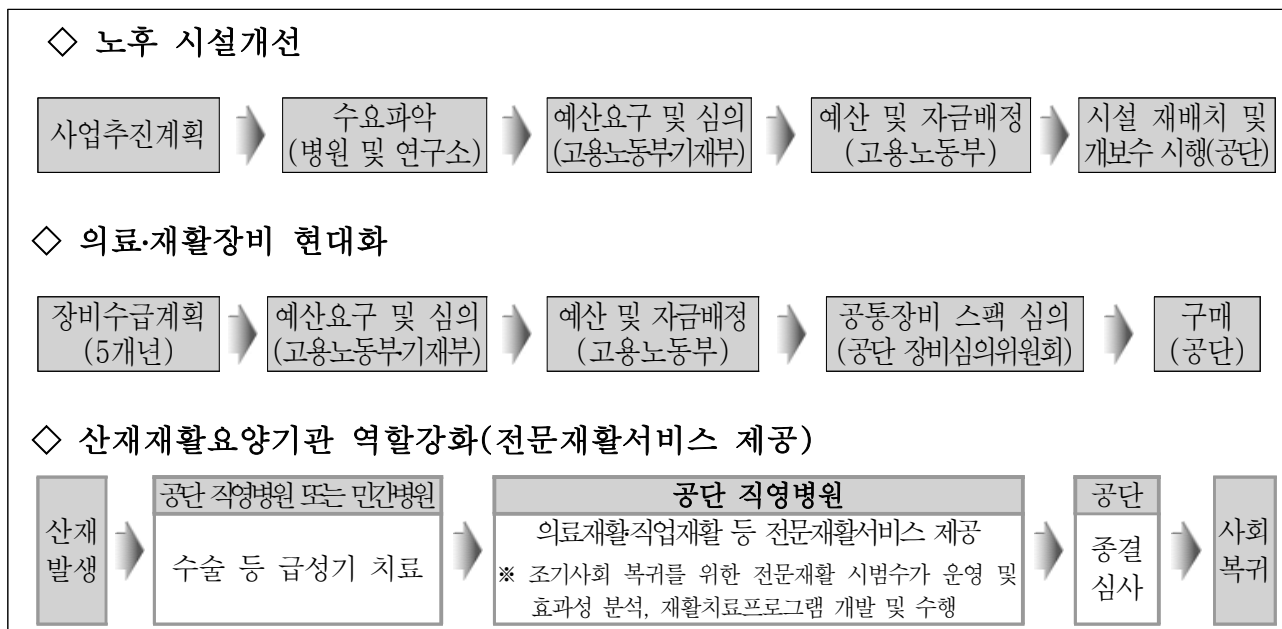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11.12월)
- 고용노동부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 ('12.4월)
-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13.9월)
-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세부실행계획』 ('15.7월)
- 고용노동부 『제1~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06~'22)
-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중장기('18~'22) 발전방안』 ('18.4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5년~계속
- 사업규모 : 전국 10개 산재병원(종합병원 6, 병원 3, 요양병원 1)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산재노동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 산재보험시설건립(4055-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근로복지공단)		080	08E
명칭	및 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5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보험시설	산재보험시설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보험 시설건립	2,446	4,144	4,144	2,313	2,313	△1,831	△44.2

4. 사업목적

- (산재보험시설건립)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을 설치(신축, 증축)하여 업무수행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받기 위한 물리적 공간 마련 지원
- (자체청사 개·보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 내 상주 임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보수, 장비 교체 등 시설장비 보강 지원
 - 개정·강화되는 관련법령(환경, 에너지 등)에 즉각 대응하여 정부 정책 이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제1항 5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② 추진경위

- 고용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00. 12.)
- 고용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05. 0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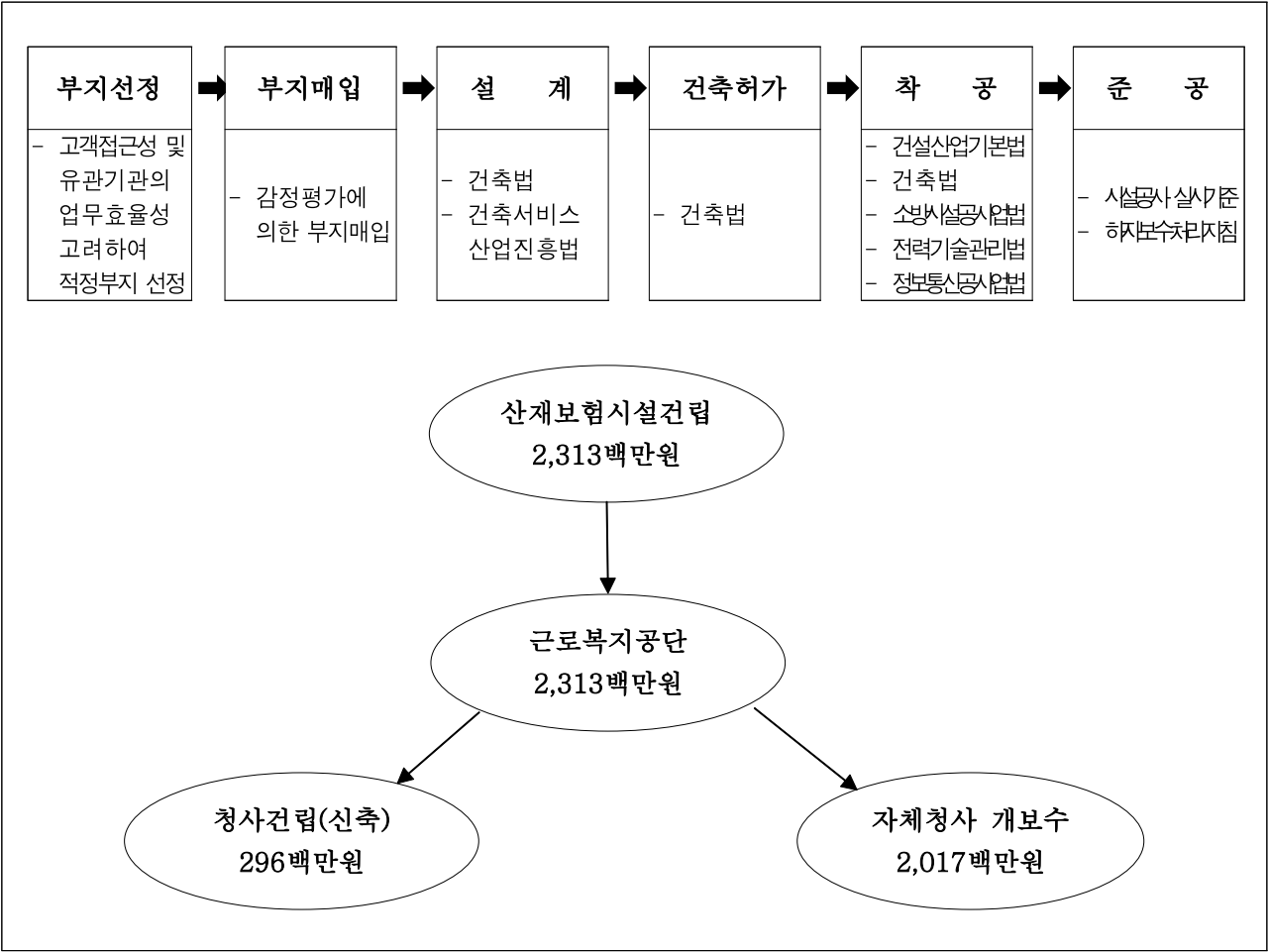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8,974	6,636	757	2,446	4,144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산업재해노동자, 산재보험가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3호(공단에의 출연)

7. 사업 집행 절차



사 업 명						
(7)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4057-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보상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 및 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7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보험 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16,194	15,344	15,344	14,145	14,145	△1,199	△7.8

4. 사업목적

- 산재보험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 제공
- 산재보험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소속병원 의료정보 시스템 선진화 및 공공성 강화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3). 공단에의 출연
-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0년

- 추진배경

- '09.4월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법 통과 및 '10.1월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11.1월부터 산재보험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 '10.4월부터 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 기관 통합 및 '11년부터 산재보험 부과고지 · 근로자고용정보관리 시행

- 추진경위

- '10년 한국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10개 소속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 '10년 차세대 노동보험시스템, 인재개발원 정보시스템, 통합 홈페이지 구축 · 운영
- '11년 고용 · 산재보험 부과고지 및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 '12년 통합 경영지원시스템(공단 · 의료원 통합), 산재보험 종합위험관리시스템
- '12년 고용 · 산재보험 Web EDI시스템, 전사적 아키텍처시스템 구축 · 운영
- '13년 산재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재구축 1차(인천·안산)
- '13년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 망분리 구축
- '14년 공단본부 울산이전에 따른 전산센터 지방이전 구축
- '14년 소속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연차별 재구축 2차(창원·대전·순천)
- '15년 소속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연차별 재구축 3차(태백·동해·정선·경기요양)
- '15년 개인정보 암호화 SW 도입 및 설치(6개 주요 정보시스템)

- '16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16년 노후 IT 장비 및 정보보안 장비 교체, IT 인프라 개선 사업
- '16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업무이관 관련 정보시스템 증설 사업
- '17년 노후 IT 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장비 증설 등 정보인프라 개선 사업
- '17년 소속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연차별 재구축 완료(대구병원)
- '18년 고용·산재보험 재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연구용역 추진
- '18년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 '19년 고용·산재보험료 통합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배정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재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화 업무 지원
→ 매월 고용노동부에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매월 경비 등 지급

사 업 명						
(8)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4058-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재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8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징수관리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	15,344	16,774	16,774	17,418	17,418	644	3.8

4. 사업목적

- 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출연
 - 2011년도부터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징수 업무 통합
 - 국민건강보험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
 -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경비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 3(출연금의 용도 등)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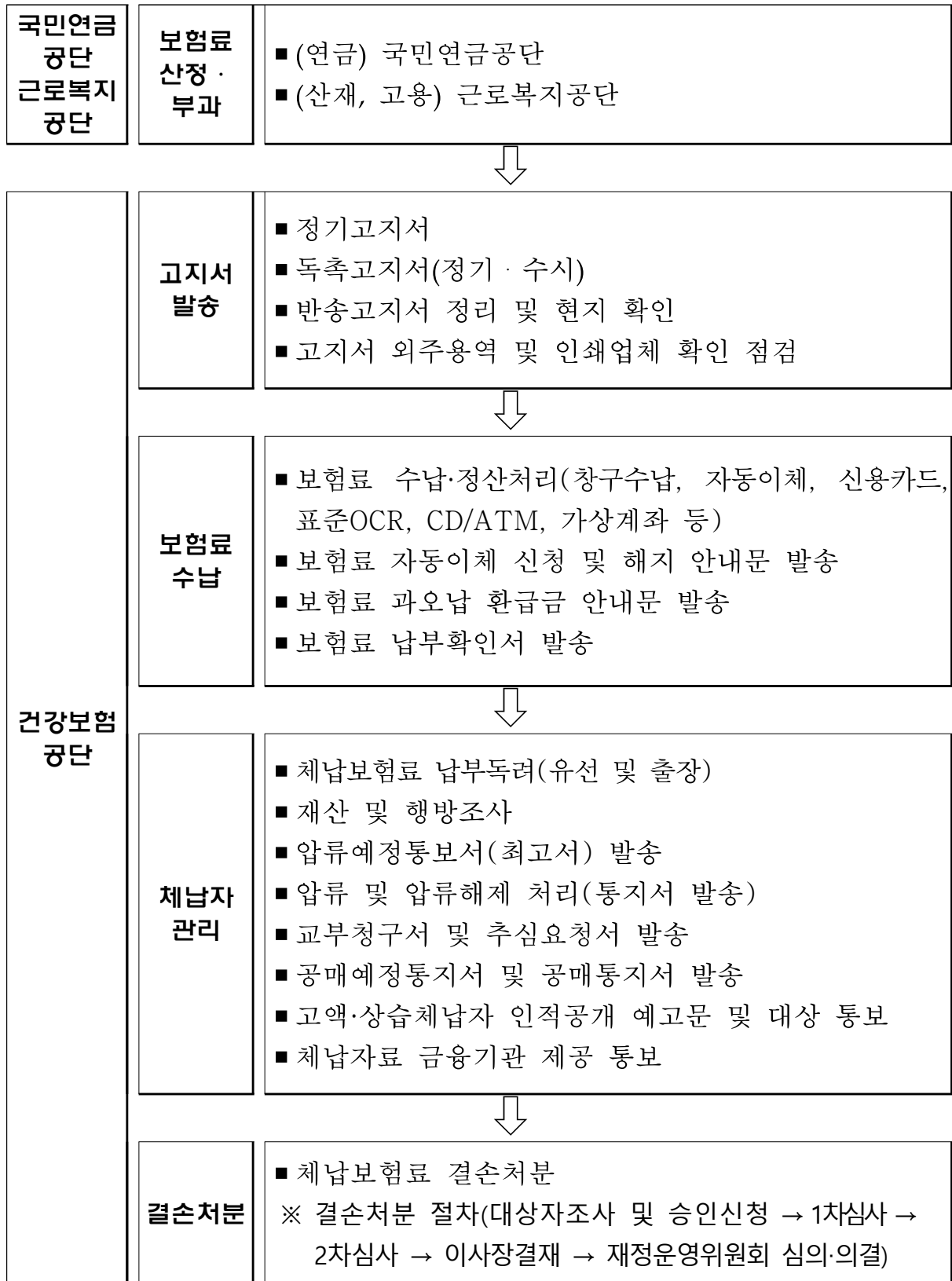
-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출범('08.7.17) :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준비위원회」 구성·운영('09.6.12) :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서 서명('09.6.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 실무추진단」 출범('09.6.1)
-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노사정실무협의회 : 정부, 공단, 노조 등 관계자
 - 정보화실무협의회 : 복지부, 노동부, 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자
- 각 공단별 징수통합 실무준비조직 구성·운영
- 전환인력 건강보험공단 징수인력 배치('11.1.1)
 - 건강(1,512명), 연금(712명), 근복공단(317명)
-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작('11.1.1)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건강보험공단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9)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4058-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8	351
명칭	산재보험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산재보험적용부과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18,991	17,839	17,839	24,675	24,675	6,836	38.3

4. 사업목적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 '11년부터 보험료 산정방식이 근로자 개인별 보수에 기초하여 매월 산정·부과 되는 체계로 변경, 이에 따라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도(근로자 개인별 고용 및 보수정보 관리, 보험료 부과자료 구축 등)를 도입·시행
- 고용 및 보수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입누락자 등의 방지를 통해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운영)

- 산재보험 적용·부과·보상에 대한 민원(전화, 인터넷 등), 권리구제 방법 등을

- 신속·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수행
- 산재보험 적용·보상·재활사업에 대한 전화·인터넷 상담, 이용고객모니터링, 증명원 발급 등 직접 처리업무

- (산재기금 전담자산운용체계 지원)

- 여유자금 운용의 전문성·안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담자산운용체계 성과평가 등 지원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이관)

-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 경감 및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확대)

- '20.7월부터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29만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등의 신고) 제1항~제7항

-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 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로써 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운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및 제96조(기금의 용도)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② 추진경위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 사업시작년도 : '11년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함께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 및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
* 보험료징수법 개정('09.12.30.) 및 하위법령 개정('10.9.29.)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운영)

- '11년 콜센터(광주) 개소, 위탁상담사 150명(전일제)
- '15년 콜센터(인천) 개소, 위탁상담사 92명(시간선택제)
- '16년 콜센터(울산) 개소, 위탁상담사 100명(시간선택제)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 사업시작년도 : '71년(산재보험료 징수가 곤란했던 건설업에 대해 보험료 징수를 위탁하고 징수비용 교부)
- '84년 :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무조합으로 변경
- '05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명칭 변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확대)

- '08년 보험설계사를 시작으로 현재 9개 직종의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20.7월 부터 5개 직종이 추가 적용

<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 경과 >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11년~계속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운영) '11년~'14년(운영비), '15년~(사업비)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이관) '71년~'18년(운영비), '19년~(사업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확대) '20년~계속(신규)
- 사업규모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사업장 177만개소, 근로자 1,900만명
(콜센터운영) 3개 센터(광주, 울산, 인천), 상담인력 367명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8,709백만원('18년, 운영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직종 29만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확대
(민간경상보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및 제96조 (기금의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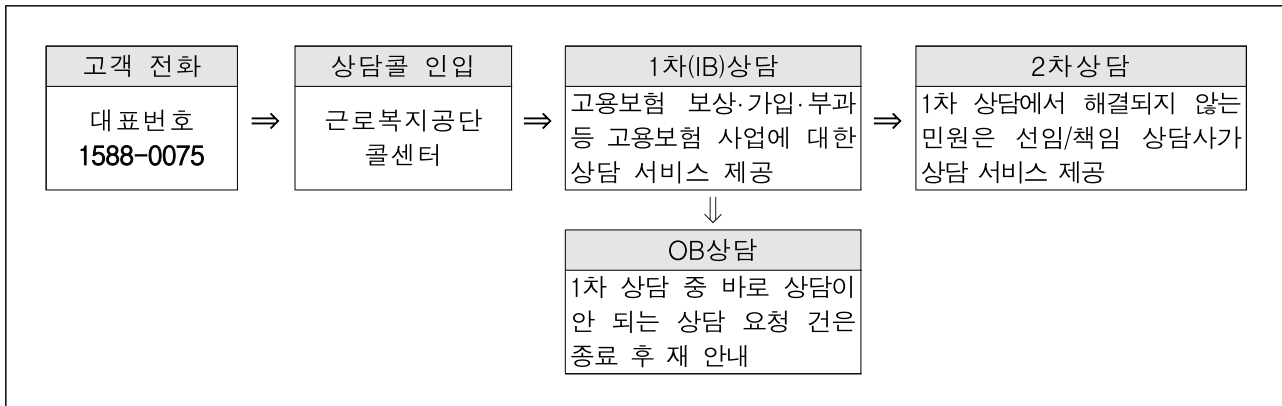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 매년 3.15까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사업주)→월평균보수를 근거로 월별 보험료 산정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입·퇴사 및 전근 등 고용정보와 보수신고(사업주)→근로자 고용정보 확인 및 내역 통지(근로복지공단)→월별보험료 산정(근로복지공단)

구 분		신고종류	기한	관련법령
고용정보관리	입 사	고용신고서	다음달 15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제8항
	퇴 사	고용종료신고서	"	
	휴 직	휴직등신고서	14일 이내	
	전근(전보)	전보신고서	"	
	정보 변경	정보변경신고서	"	
	일 용 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	
보수관리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서	매년 3. 15	
	보수총액 착오신고	보수총액 수정신고	변경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운영)



(보험사무대행기관지원)

절차	주체	적용 법령 등
①인가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2항
②인가결정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2항
③사무위탁서 작성	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④보험사무 대행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6조
⑤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제37조
⑥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징수법 제37조

사 업 명						
(1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4060-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 및 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60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근로자복지(용자)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용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13,451	15,655	13,855	15,655	15,655	1,800	13.0

4.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산재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 산재사망노동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의료·혼례·장례·사업자금) 및 필요자금(차량구입·주택이전)을 적기에 신속한 용자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임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원직장 복귀 또는 재취업이 곤란한 산재노동자의 자립기반 구축 및 다양한 직업복귀 경로 제공을 위해 창업점포를 임대·지원하는 것임('19년부터 창업점포 신규지원 중단하고, 기존지원자의 이전 등만 지원)
- * (신규지원 중단사유) 창업지원 감소에 따른 예산 불용 및 '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미흡)에 따른 구조 조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87년
- 추진배경
 -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에게 생활정착금을 융자해주어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기여, 복지증진 도모하고자 저리의 자금을 융자
 -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수료 이후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장해인 자립기반 구축 및 사회복귀 촉진 도모

《생활안정자금 융자》

- '87년 : 산재근로자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개시
- '97년 :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 '01년 : 융자이자율을 3%로 인하
- '02년 : 산재장해 제9급까지 대상 확대 및 대부한도 30백만원으로 확대
- '04년 : 담보대부 약정해지로 신용대부만 시행(5백만원)
- '06년 : 1인당 대부한도 상향조정(5백만원 → 10백만원)
- '10년 : 대학학자금 융자대상자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
- '12년 : 1인당 융자한도 상향조정(1,000만원 → 1,500만원)
- '13년 : 1인당 융자한도 상향조정(1,500만원 → 2,000만원), 대상확대(요양 중 저임금

근로자 포함), 취업안정자금 신설

- '15년 : 이자율 인하 (3% → 2%)
- '17년 : 생활안정 용자대상 소득기준(중위소득 이하) 도입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용자이율 한시 인하(2%→1.5%, 6월~11월)
- '19년 : 생활안정 용자조건 다양화(2년거치 3년상환에서 1년거치4년, 3년거치 2년상환으로 확대)
- '20년 : 생활안정 용자이율 인하(2%→1.25%, 4월 시행)

《창업점포지원》

- 산재장해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을 수료한 이후 취업이 곤란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발생
-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장해인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00. 1월 창업점포 지원사업 도입
- 산재장해인 재취업을 제고를 위하여 산재장해인을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점포지원 확대('13년)
- '15년 : 이자율 인하(3% → 2%), 창업지원한도 상향조정(1억원 →1.5억원)
- '19년 :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및 창업지원인원감소에 따른 불용으로 신규지원 중단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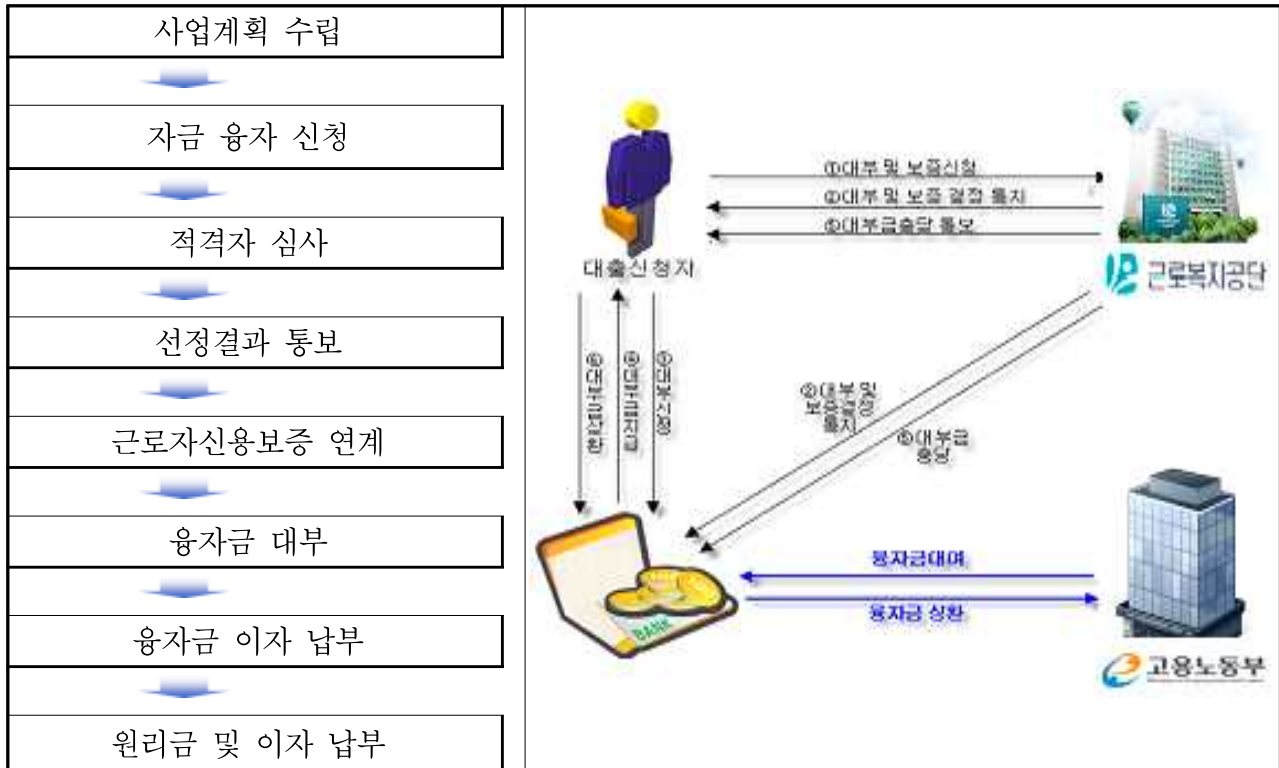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7년 ~ 계속(생활안정자금), '00년 ~ '18년(창업점포지원, '19년부터 신규지원중단)
- 사업규모 : 1,668명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산재노동자
 - (생활안정자금 용자)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 제1급~제9급자, 창업지원 사업 지원결정자, 5년이상 장기 요양중인 이환화탄소질병판정자, 3개월이상 요양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창업점포지원) 산재노동자(요양 종결 후 직업이 없는 산재노동자로서 직업훈련 수료자, 진폐장해인, 자격증 소지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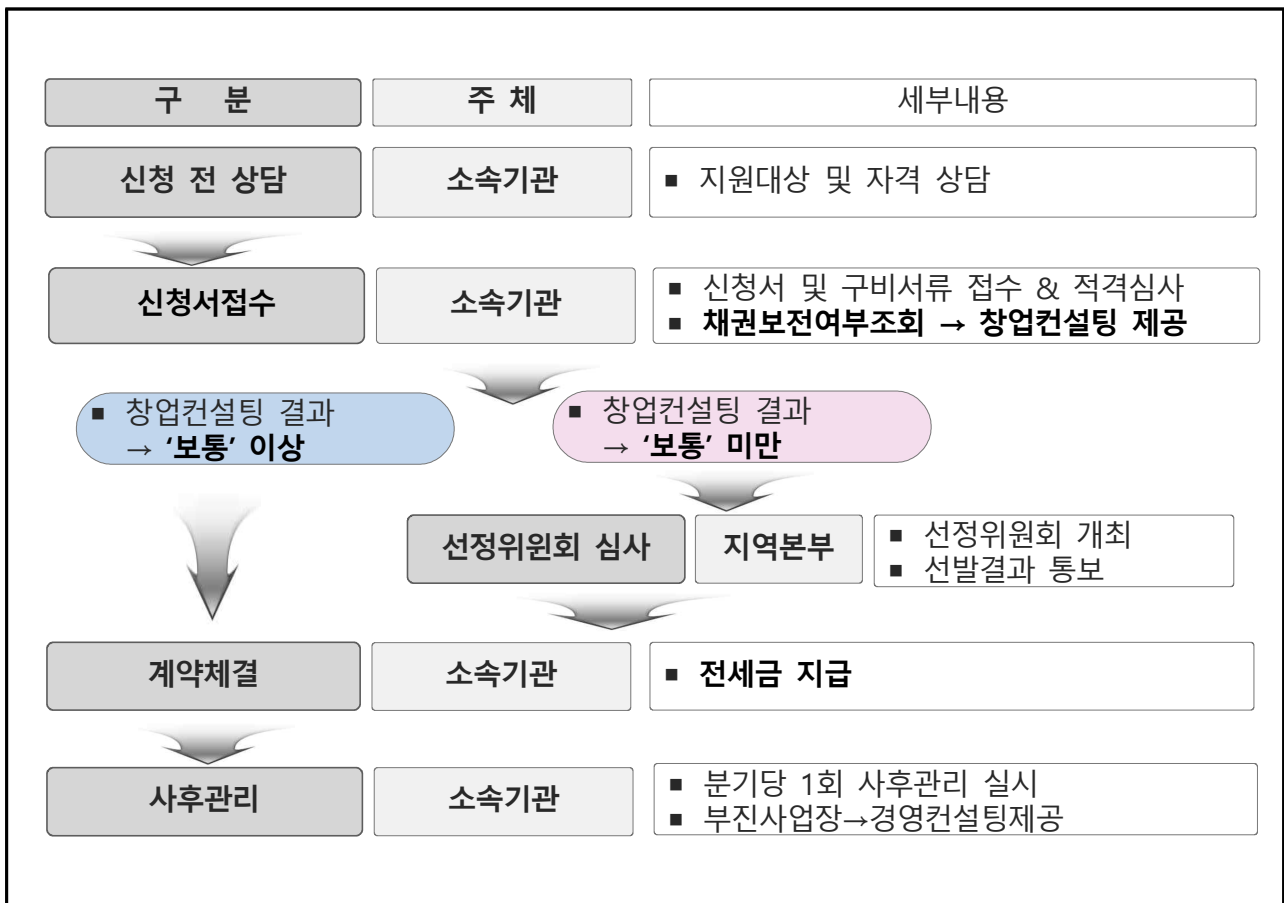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기금의 용도)

7. 사업 집행절차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창업점포지원



사 업 명						
(1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4151-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1	350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재정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70	

3. 지출계획 총괄표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75,140	100,192	171,432	463,592	427,292	255,860	149.2

4. 사업목적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 (안전투자 혁신사업) 중소기업(50인 미만)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위험기계의 교체, 위험공정·장비 교체·개선비용 지원(지원율 50%)
-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패트롤카 운영을 통한 기술지원 현장작동성 강화 및 클린사업·사후관리 수행을 위한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1. 2월 : 노동부 업무보고
- 2001. 3월 : 제12회 국무회의시 대책수립 지시(대통령 보고)
- 2001. 8월 : 국무회의시 산업재해 및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클린사업 추진 계획 보고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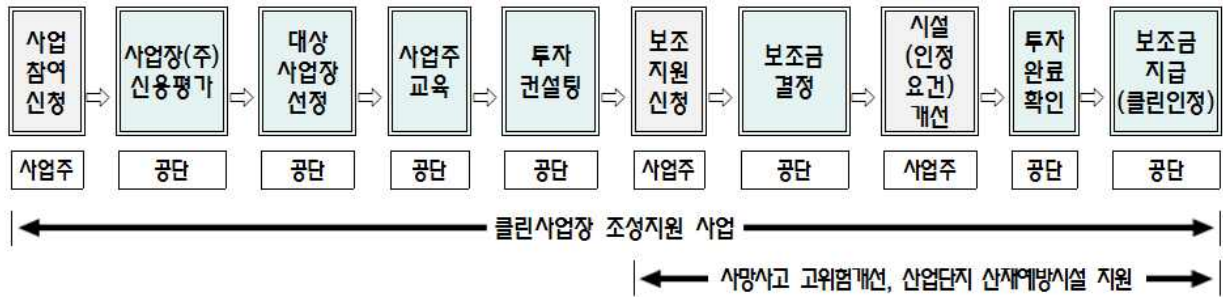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1년~계속
- 사업규모 :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위탁)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0~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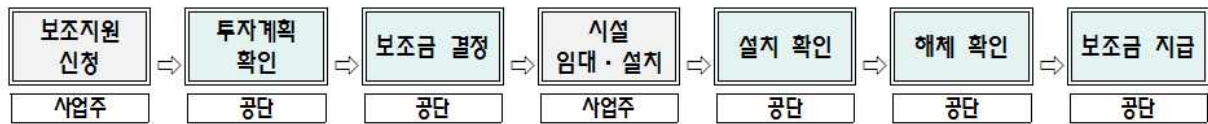
7. 사업 집행 절차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제조·서비스업)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일부개선)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신규)



사 업 명						
(12) 산재예방시설 용자(4151-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1	351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재정지원	산재예방시설 용자(용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B-A)	(B-A)/A
산재예방시설 용자(용자)	106,654	122,758	102,758	322,758	322,758	220,000	214.1

4. 사업목적

-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기저리로 용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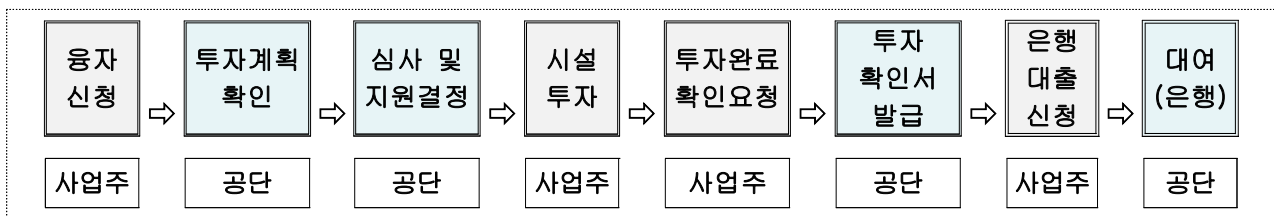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5년~계속

- 사업규모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3) 업종별 재해예방(4152-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2	350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업종별 재해예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업종별재해예방	46,958	54,745	92,094	66,167	69,571	-22,523	-24.5

4. 사업목적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공단)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제조·서비스업 50인 미만, 건설 120억 미만)을 대상으로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한 공단 기술지도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위탁) 분야별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성재해예방을 위한 위탁 기술지원 및 위탁관리수수료 지원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화학공장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 기술지도 등 기술지원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법적 위탁 사업 및 위험성평가 기반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체계 구축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 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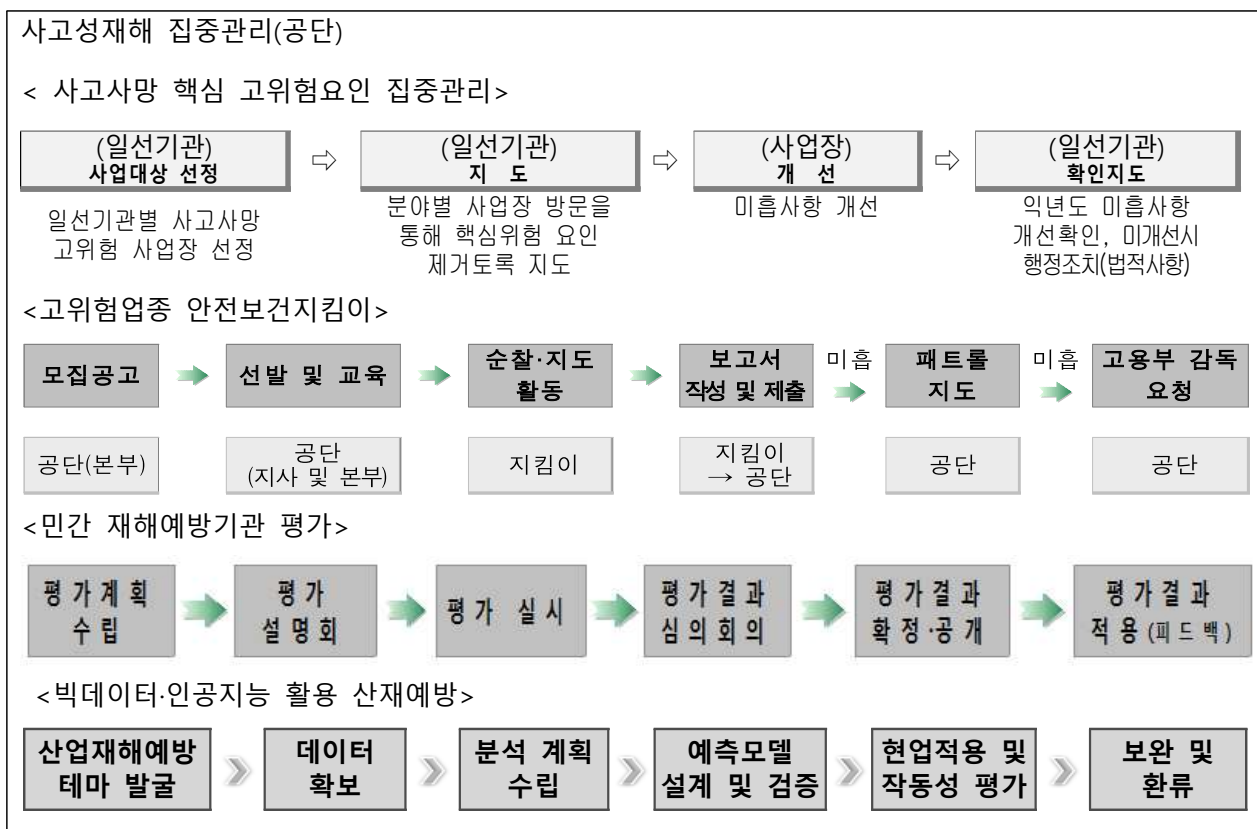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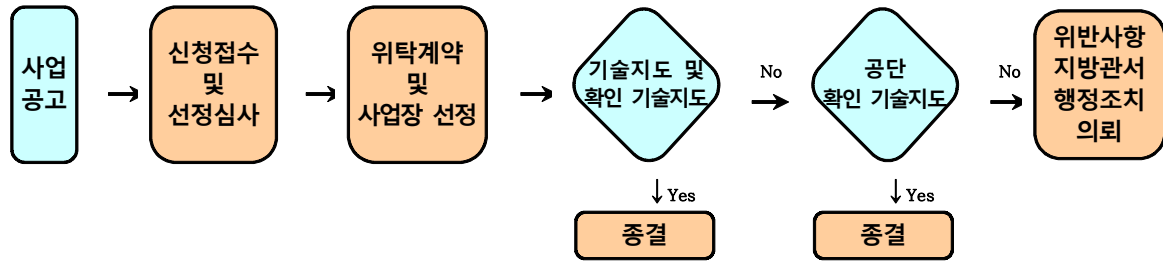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사업규모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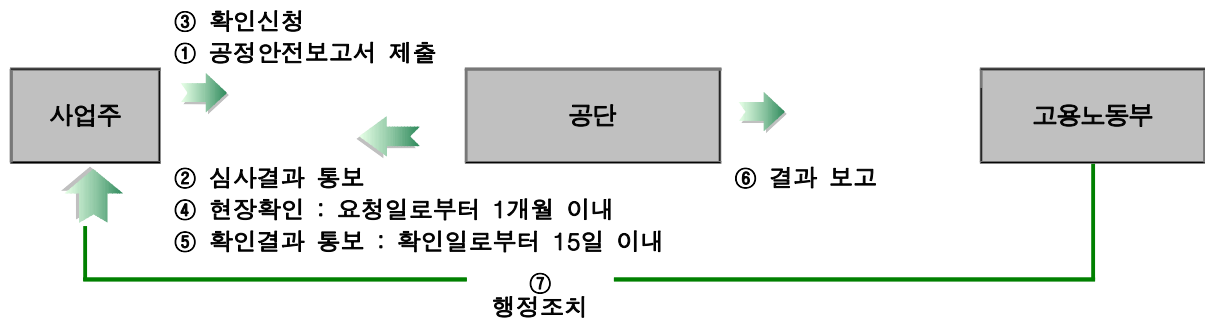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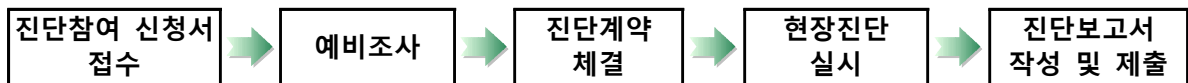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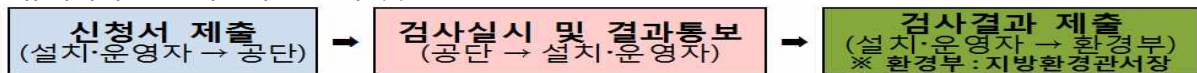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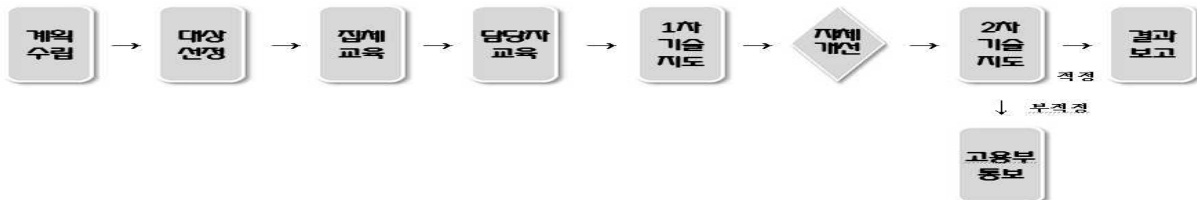
<안전보건종합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노후 화학설비 위험관리>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사 업 명						
(1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4152-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2	351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5,787	6,736	6,736	6,763	6,763	27	0.4

4. 사업목적

-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 및 인증하고 주기적 검사를 통해 제품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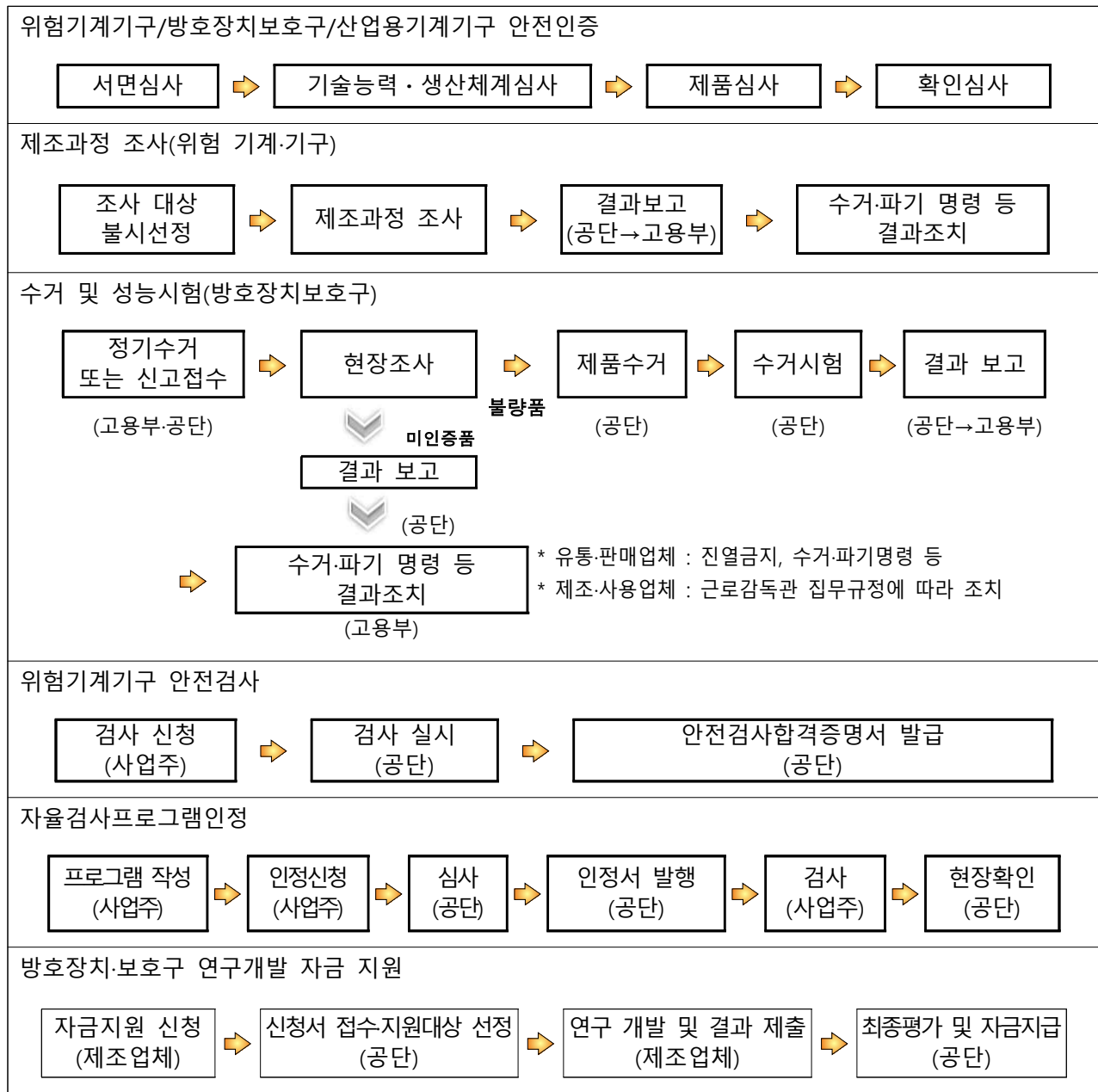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사업규모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5) 유해작업환경개선(4152-3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2	352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유해작업환경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유해작업환경 개선	54,493	51,095	51,095	50,375	61,592	10,497	20.5

4. 사업목적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2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
 - 20인 미만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강관리수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 (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평가)
 - 석면해체·제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평가, 교육, 컨설팅 지원 및 소규모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현장모니터링 지원
 - 영세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지의 화학물질 종류 및 노출수준을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고독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전자산업 사업장 화학물질 노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산업 전체를 감시(surveillance)·적시대응 체계 구축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 위탁) 50인 미만 업무상질병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을 통한 보건관리 기술지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

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 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설비소유주등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기관석면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 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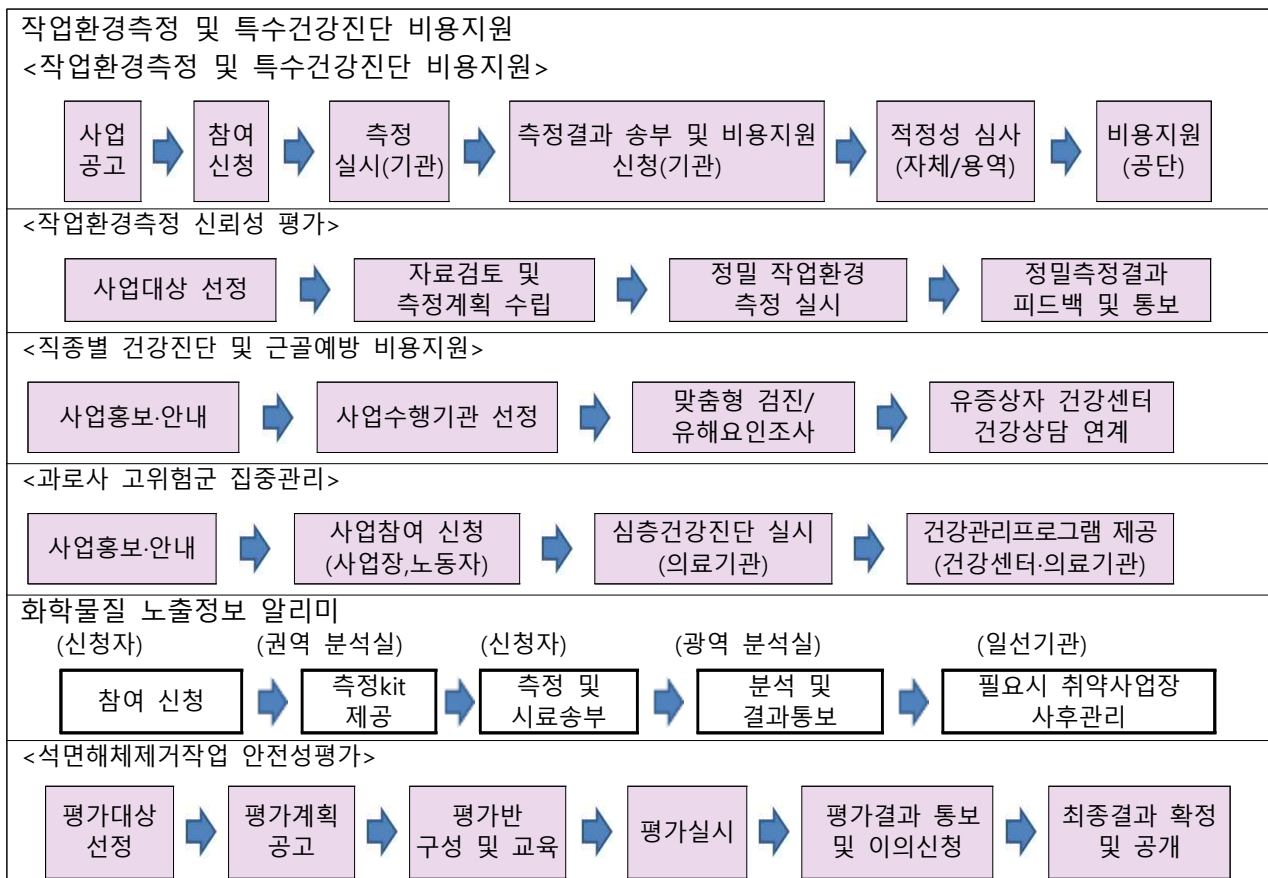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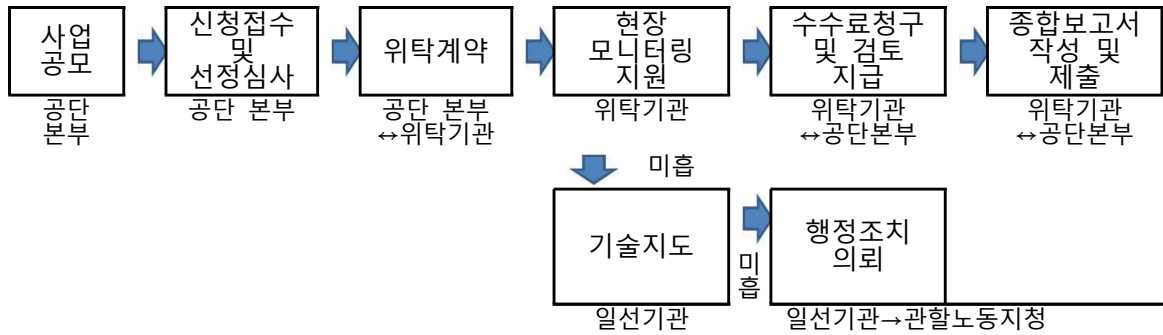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사업규모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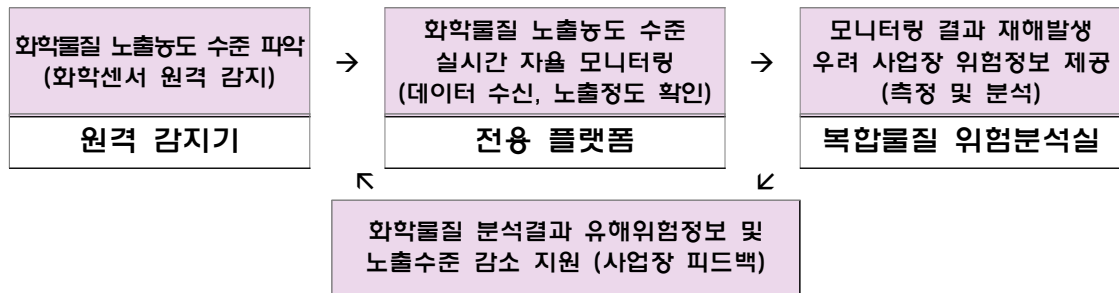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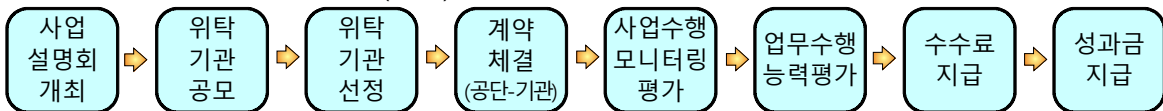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전자산업 e-SAMS 운영>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사 업 명						
(16) 근로자 건강보호(4152-3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2	353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근로자 건강보호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근로자 건강보호	26,082	33,541	38,641	37,570	36,531	-2,110	-5.5

4. 사업목적

- (근로자건강센터)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직업병 예방 상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및 기초 직업건강 서비스 제공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산업보건 유해·위험요인 집중관리가 필요한 취약분야 개입(대응) 및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관리체계 조기 안착 유도
-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직업병발생 또는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 제시

-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조사기관 분석능력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평가 실시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MSDS 정보구축 및 제공,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평가 등
-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보호의무 안착과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원
-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법 시행(19.2.15)에 따라 미세먼지 노출이 심한 옥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마스크 보급) 실시
- (MSDS 제출 및 비공개정보 심사) MSDS 제출 의무화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정보 일부 비공개 승인제도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제품 정보관리 및 심사업무 위탁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

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3. 산업보건의

4. 근로자대표

5. 제165조제2항제38호에 따라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疫學調査)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 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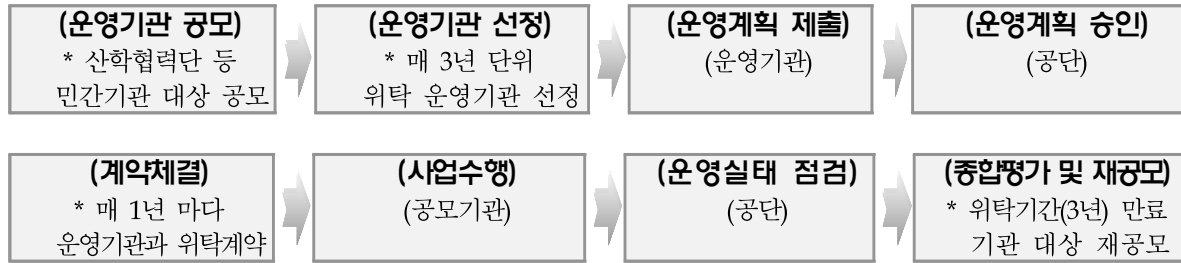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사업규모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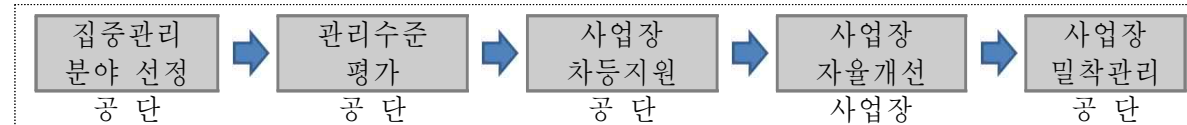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7. 사업 집행 절차

근로자건강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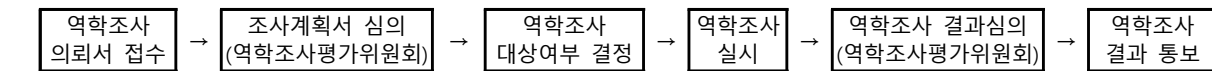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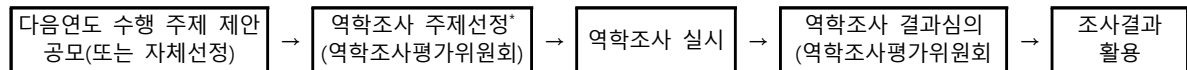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직업병 역학조사>



<사전예방 및 중장기 역학조사>



* 사전예방적 역학조사는 주제 공모 후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주제 선정

<민간기관 정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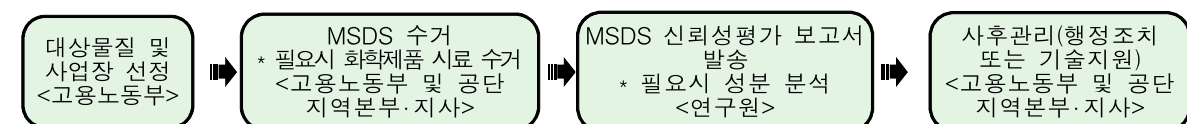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MSDS 추가제공 및 최신성유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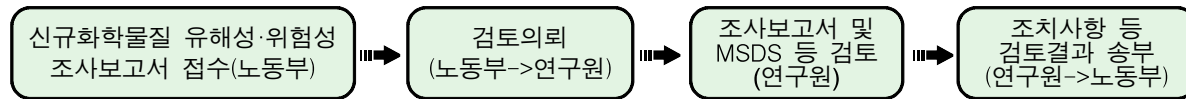
< MSDS 적정성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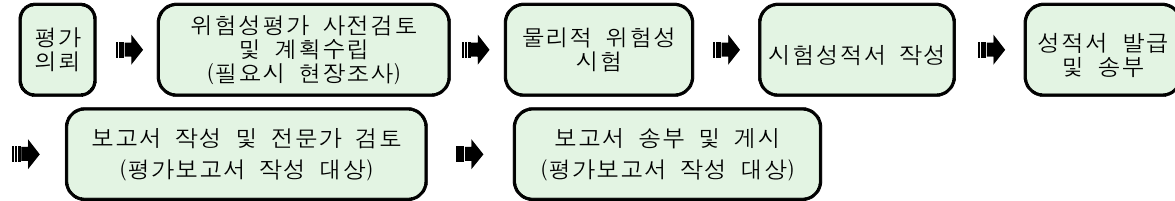
<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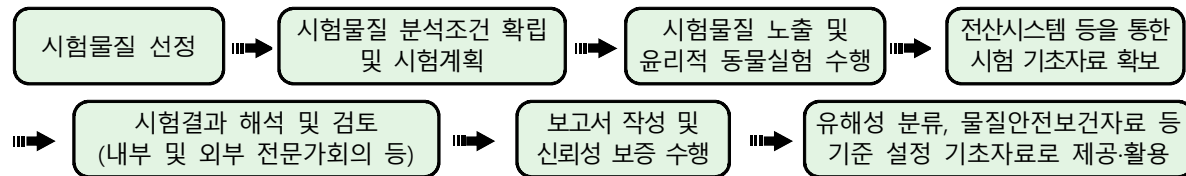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확인 >



<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 위험성 시험·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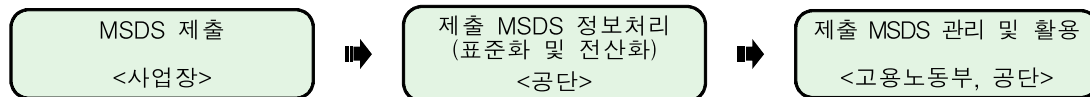


< 흡입독성시험 및 평가 >



MSDS 제출 및 비공개정보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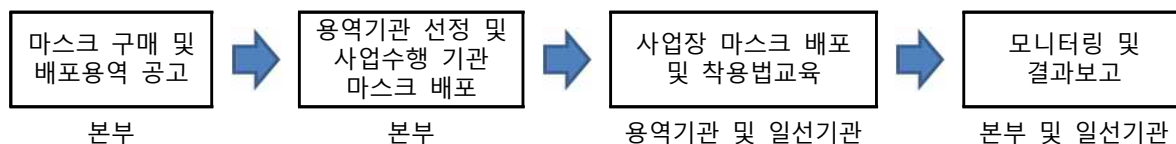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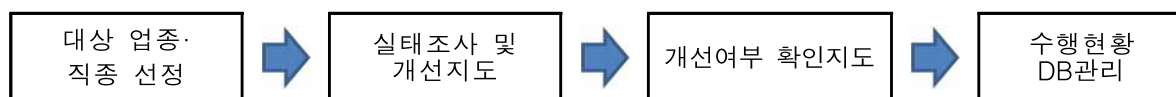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정보 심사 >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사 업 명						
(17)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4152-35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2	355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예산(B)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166	169	169	405	405	236	139.6

4. 사업목적

- 원청과 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를 통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를 복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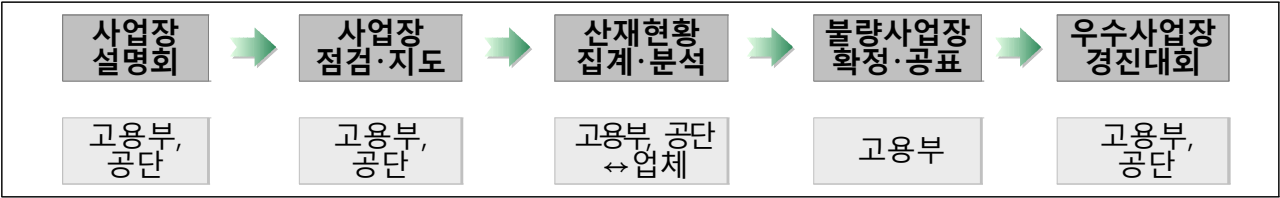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사 업 명						
(18) 안전보건문화 정착(4154-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50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문화기반조성	안전보건문화정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B-A)	(B-A)/A
안전보건문화 정착	28,560	30,557	30,509	29,808	28,672	-1,837	-6.0

4. 사업목적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계층별로 수준에 맞는 다양한 집체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와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기여
- 산재예방 교육 및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종별, 직종별, 대상별 안전보건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오프라인 보급
- (전문교육과정 운영)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법정 직무교육 등 실시
-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방송·언론매체 등을 통한 산재예방 알림사업 추진

- (민간재해예방 활동지원) 노·사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지원을 통한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부분 재해예방 활동 공모를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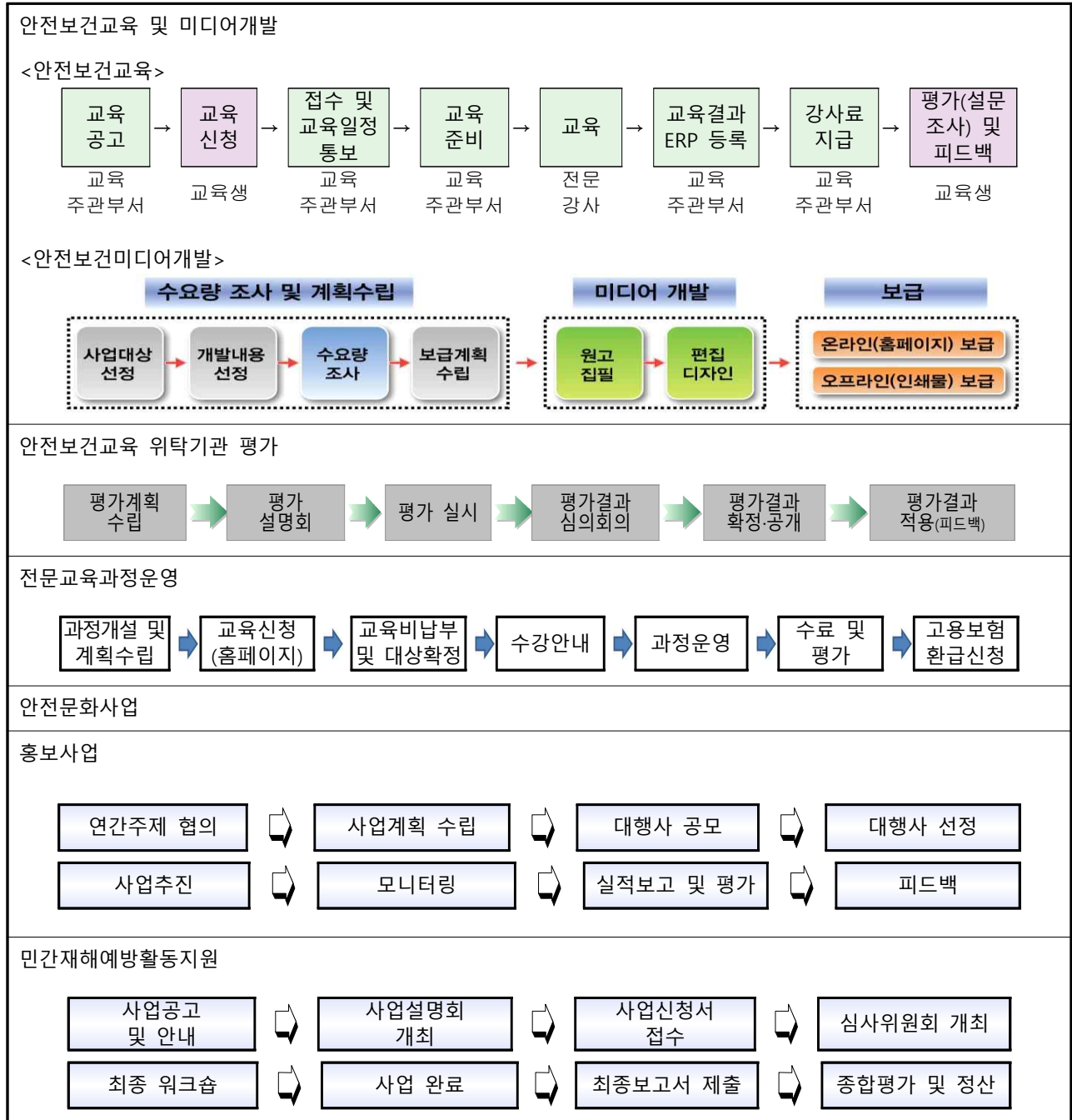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사업규모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9) 산재예방시설 건립(4154-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51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문화기반조성	산재예방시설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산재예방시설 건립	8,791	6,134	6,134	13,241	11,173	5,039	82.1

4. 사업목적

-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업종에 특화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중서부(전북)권에 미래 산업환경에 대응한 IoT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노후 안전체험교육장의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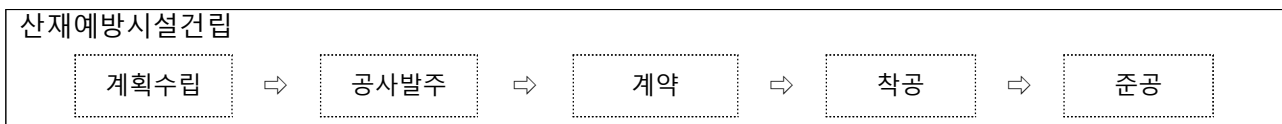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0)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4154-3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52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문화기반조성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B-A)	(B-A)/A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4,993	6,397	6,397	5,860	5,860	-537	-8.4

4. 사업목적

-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최신 안전보건정보를 사업장 및 안전보건관계자 등에게 제공하여 산재예방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자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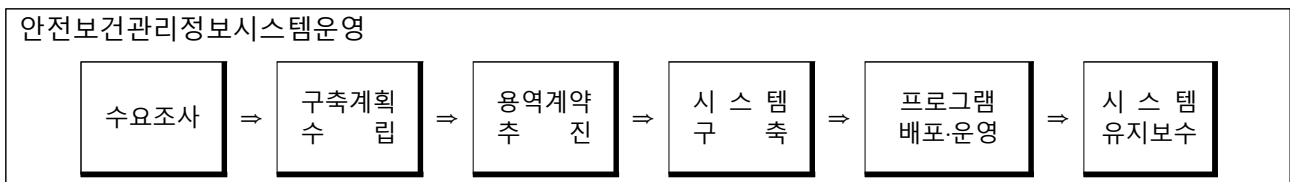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1)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4155-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5	350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연구개발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5,898	7,432	7,432	6,406	6,406	△1,026	△13.8

4. 사업목적

- (안전보건연구사업) 안전경영정책연구, 산업안전연구, 직업건강연구, 화학물질연구 등 안전보건 분야별 자체·위탁연구 수행 등
- (국제협력사업) 국외 안전보건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선진 안전보건정보 교류 및 보급
- (산업재해통계) 산재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산재통계자료를 생산·가공·보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사업규모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2) 기금관리비 인건비(7084-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정책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1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영비	기금관리비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관리비 인건비	113	123	123	127	125	2	1.6

4. 사업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관리 보조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9조(기금관리 보조요원)

2)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기금관리원 채용하여 기금의 효율적·전문적 관리 지원
- 정책변화 및 정책적 중요성 :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원 채용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금관리원 3명의 보수, 법정수당,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지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기금관리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금관리원 고용 계속 → 근로제공 → 예산 및 자금 배정 → 임금 등 지급

사 업 명
(23) 산재보험운영 인건비(7084-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1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영비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137	149	149	153	152	3	2.0

4. 사업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리 등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의 인건비를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제7호

2)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타직 채용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계속
- 사업규모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명의 보수, 법정수당,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지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 정리요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재결서 및 결정서 정리요원 고용 계속 → 근로제공 → 예산 및 자금배정 → 임금 등 지급

사 업 명						
(24) 산재예방운영 인건비(7084-1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10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1,649	1,699	1,699	1,750	1,733	34	2.0

4. 사업목적

-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조사·연구위원 3명)과 지방관서 사무원(48명)의 보수(법정수당), 사회 보험료, 퇴직금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 (재해 예방의 재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 예방 관련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 예방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및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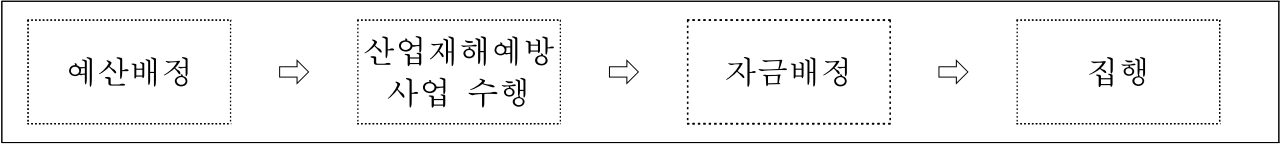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5년
- 추진배경 : 산업재해예방 업무 지원을 위한 본부 전문위원(조사·연구위원) 및 지방관서 사무원의 인건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5)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84-1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정책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10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근로복지공 단인건비	179,761	185,967	186,440	190,614	190,614	4,174	2.2

4. 사업목적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부과 및 보상, 재활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공단 직원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96조(기금의용도)
- ② 추진경위 : '95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징수 및 보상, 재활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 | |
|--|
|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
|--|

사 업 명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7084-1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정책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10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출연금	119,863	129,037	129,956	134,266	134,266	4,310	3.3

4. 사업목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이후 지속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공단 임·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7) 기금운영관리(7084-1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10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기금운영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기금운영관리	-	-	-	-	2,700	2,700	순증

4. 사업목적

- 산재보험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10조(공단의 설립), 제11조(공단의 사업), 제96조(기금의용도)
- ② 추진경위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 | |
|--|
|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
|--|

사 업 명						
(28) 기금관리비 기타경비(7084-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영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58	588	588	588	386	△202	△34.4

4. 사업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지원을 위한 관서운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2)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09.5.1. 산재보험기금의 설치에 따라 기금집행 및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서운영경비 지원

- 정책변화 및 정책적 중요성 :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 주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경비 지원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산재기금 자산으로 지방노동관서가 유상사용하고 있는 청사(10개소)에 대한 시설유지 및 시설비, 산재기금 총괄관리부서의 운용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배정, 지출, 결산, 평가 등 업무수행(근무지내 출장,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심의위원회 등 회의 개최, 관련 책자 유인 등) → 관련 비용 지출
- 지방노동관서 시설비 수요 파악 → 우선순위 선정(시급성 및 필요성) → 자금배정 → 지방노동관서 용역 계약 체결 → 공사시행 → 지출

사 업 명						
(29)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7084-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영비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620	679	679	679	760	81	11.3

4. 사업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운영비 지원
- 보험급여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 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9조

2)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산재기금의 주요사업인 산재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운영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산재보험 제도개선 및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배정, 지출, 결산, 평가 등 업무수행(근무지내 출장,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심의위원회 등 회의 개최, 관련 책자 유인 등) → 관련 비용 지출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수행(근무지내 출장,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심의위원회 등 회의 개최, 관련 책자 유인 등) → 관련 비용 지출

사 업 명
(30)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7084-2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2,870	2,909	2,909	2,909	2,900	△9	△3.0

4. 사업목적

- 본부 산업재해예방 업무 담당 4개 부서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48개 부서(43개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태백·영주·안동 근로개선지도과, 영월 출장소, 광주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운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 예방 관련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 예방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및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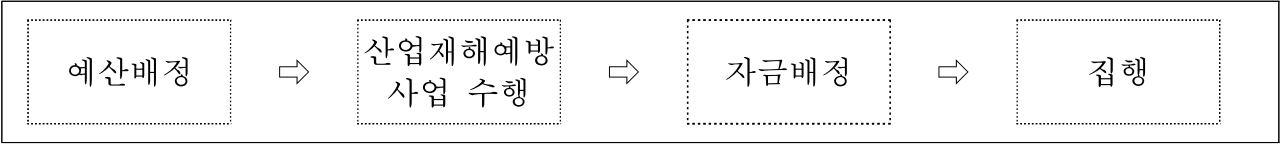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5년
- 추진배경 : 본부 및 지방관서의 산업재해예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1)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정책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6,168	36,179	36,089	34,576	34,576	△1,513	△4.2

4. 사업목적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96조(기금의용도)
- ② 추진경위 : '95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징수 및 보상, 재활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수행 및 기관운영 비용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 | |
|--|
|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
|--|

사 업 명						
(3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정책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계획(B)	(B-A)	(B-A)/A
출연금	12,757	12,941	13,132	14,569	14,341	1,400	10.8

4. 사업목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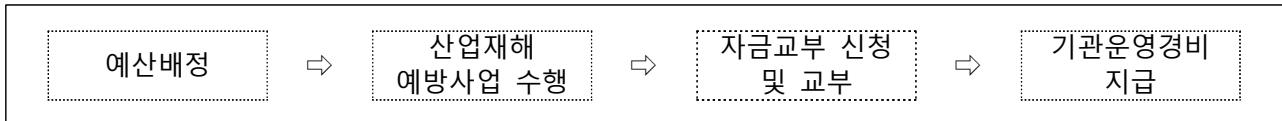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3)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7084-2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정책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3,996	3,596	3,596	2,347	2,347	△1,249	△34.7

4. 사업목적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사 및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96조(기금의용도)
- ② 추진경위 : '95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징수 및 보상, 재활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청사 임차보증금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임차보증금 소요발생시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
|---|

사 업 명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7084-2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정책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출연금	937	-	-	1,252	1,252	1,252	순증

4. 사업목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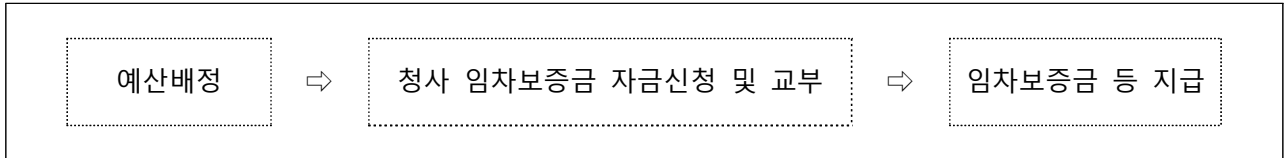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무형자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5)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7084-2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정책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10,612	11,239	11,014	10,836	10,836	△178	△1.6

4. 사업목적

- 산업재해 가입대상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보험료 징수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업무 등에 소요되는 수행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96조(기금의용도)
- ② 추진경위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재활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경상운영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 | |
|--|
|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
|--|

사 업 명						
(36) 유해화학물질 체계적관리(7084-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정책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1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출연금	1,628	1,628	1,625	-	-	-1,625	-100.0

4. 사업목적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평가 및 작업장 노출기준의 주기적 개정 등을 통한 유해화학 물질관리 체계 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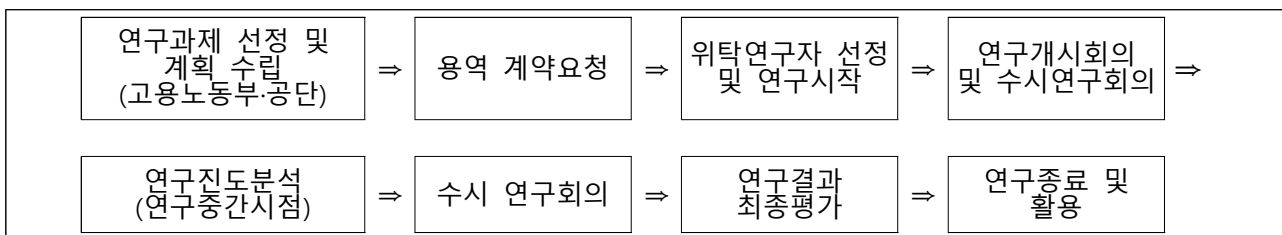
- 1992년 : 노동부 직업병 종합예방대책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
- 2003년 : 유해·위험성평가 및 노출기준 주기적 개정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 확립(대통령 보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정책입안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7)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7085-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5	20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산재보험및예방 연구개발	561	600	600	600	600	0	0

4. 사업목적

- 산재보험제도 및 산재예방 관련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립 시 반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및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통하여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의 평가 결과 및 개선안을 마련 정책 및 예산에 반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부터 ~ 계속
- 사업규모 :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연구용역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구용역 추진 과제 선정(고용노동부연구용역심의위원회)→ 연구용역 수행자(기관) 선정(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 연구용역 계약 및 시행→ 연구결과물 제출 → 정책 수립 및 평가 등 반영

사 업 명						
(38) 산재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9005-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5	840
명칭	기금간거래	산재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산재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	400,000	400,000	1,723,100	400,000	2,500,000	776,900	45.0

4. 사업목적

-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산재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예의 예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국가재정 안정화에 기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부터 ~ 계속
- 사업규모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금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공공자금관리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자금관리기금 집행 계획 수립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사 업 명						
(39)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5-97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080	08B
명칭	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5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산재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3,777,017	9,029,336	7,525,127	7,551,467	7,573,462	48,335	0.6

4. 사업목적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으로 예치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기금의 지출 수요에 대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일정비율 예치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확보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부터 ~ 계속
- 사업규모 :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으로 예치하는 금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자산운용계획에 따른 자산군별 투자 비중내에서 채권형·주식형 등의 수익증권 운용

V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V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수입

(1)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재산수입	12,271	14,598	14,598	13,555	13,555	△1,043	△7.1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자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세입 개요

-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탁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2,204	14,716	12,271	21,970

(2) 가산금
58 - 58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가산금	813	905	905	903	903	△2	△0.2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및 제69조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제69조(기금의 자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772	765	813	646

(3) 법정부담금

59 - 59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법정부담금	619,090	718,596	718,596	807,045	807,045	88,449	12.3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및 제69조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

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기금의 자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453,236	552,121	619,090	756,717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경상이전 수입	6,858	9,073	9,073	9,002	9,002	△71	△0.8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제62조, 제69조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6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액,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금 회수액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7,355	10,385	6,858	12,922

(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 - 75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	-	-	100	100	100	순증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및 제69조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용자에 대한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67	-	-	878

(6)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 - 85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한국은행예치 금회수	480	300	300	300	300	-	-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자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세입 개요

- 한국은행에 예치된 국고잔액 회수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836	504	480	-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535,392	448,501	448,501	482,690	482,690	34,189	7.6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자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세입 개요

-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된 여유자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358,660	668,808	535,392	450,665

(8) 기금예탁원금회수

92 - 92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예탁원금 회수	-	50,000	50,000	353,890	353,890	303,890	607.8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2. 세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	-	-	50,000

(9) 기금예탁이자수입

95 - 95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예탁이자 수입	7,260	9,165	9,448	9,719	9,719	271	2.9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2. 세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689	3,695	7,260	4,312

2. 지출

사 업 명						
(1) 장애인고용장려금(145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03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장애인고용 장려금	210,560	229,655	229,655	252,191	252,191	22,536	9.8

4. 사업목적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도모 및 고용촉진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1. 장려금등제도 신설: 손실비용 보전제도로 장려금·지원금 지원
 - * 고용의무 적용업체(300인 이상) 지원금(부담기초액 50%, 2~3년) 지원 / 의무고용 미적용 업체(300인 미만) 장려금(지원금의 50%, 1년) 지원
- '95. 장려금·지원금 지급금액 부담기초액의 80%로 통일
- '96. 장려금·지원금 지급기준 부담기초액의 100%로 상향
- '00.7월 법 개정을 통해 장려금·지원금을 '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지급단가를 장애의 경중에 따라 최저임금에 연계(100~175%, 1년)
- '02.9월 장려금 지급단가를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정액화
- '03.12월 지급단가 조정: 월30만원~60만원
- '10.1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10) 2.3%, ('12) 2.5%, ('14) 2.7%
- '10.4월 지급단가 조정: 월15만원~50만원(경증장애인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 6급 장애인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 지원('11.1.1부터 시행)
- '15.1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17) 2.9%, ('19) 3.1%
- '16.1월 지급단가 조정: 월15만원~60만원(중증여성장애인 단가 10만원 인상)
- '18.1월 지급단가 조정: 월30만원~60만원(중증남성장애인 단가 10만원 인상)
 - * 6급 장애인 4년 한시지원 및 경증장애인 근속기간별 감액제도 폐지
- '20.1월 지급단가 조정: 월30만원~80만원(경증여성 5만원, 중증남성 10만원, 중증여성 20만원 단가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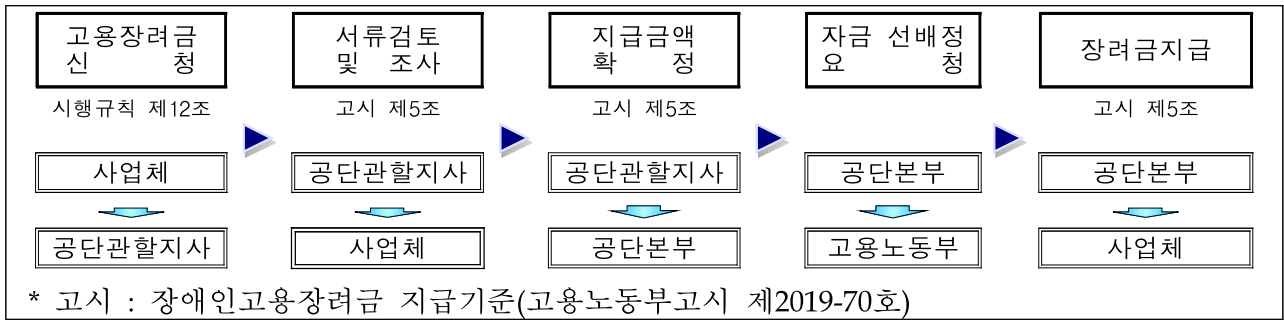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1~계속
- 사업규모 : 지급연인원 565,860명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 장애인고용관리지원(1452-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06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장애인고용 관리지원	58,977	98,837	98,837	161,192	161,192	62,355	63.1

4.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 완화 및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원
- 고용관리를 위하여 일정자격 및 요건을 구비한 작업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월 14만원, 최대 3년간 지원(작업지도원 1명당 최대 5명까지 지도)
-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제약하는 신체적 장애요인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등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개선
- 장애인근로자에게 전문고충상담 지원하여 직업생활유지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21조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사람(이하 이종에서“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9>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또는 수화 통역사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② 추진경위

<고용관리비용>

- 1997. 최초 사업시작
- 2008. 작업지도원 비용 지원 금액 조정(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작업지도 시 월 14만원)
- 2010. 직업생활상담비용 지원 폐지
- 2011. 수화통역비용 지원 폐지

<근로지원인 지원>

- 2007.~2008.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실시
- 2010.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시행
- 2011. 03. 09.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법률 근거 마련
- 2013. 03. 장애인 본인부담금 인하(시간당 500원(수화통역 700원)→시간당 300원)
- 2013. 06. 근로지원인 지원 시간 확대(월 100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 2015. 12. 근로지원인 임금 인상(시간당 6,000원→6,300원)
- 2016. 12. 근로지원인 임금 인상(시간당 6,300원→6,520원)
- 2017. 12. 근로지원인 임금 인상(시간당 6,520원→7,580원)
- 2018. 12. 근로지원인 임금 인상(시간당 7,580원→8,350원)
- 2019. 12. 근로지원인 임금 인상(시간당 8,350원→8,590원)
- 2020. 12. 근로지원인 임금 인상(시간당 8,590원→8,720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199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융자사업 실시
- 1995. 융자사업을 보완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사업주에게 무상지원
- 2007.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전환
- 20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으로 전환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2020. 최초 사업시작(서울·부산·광주지역 3개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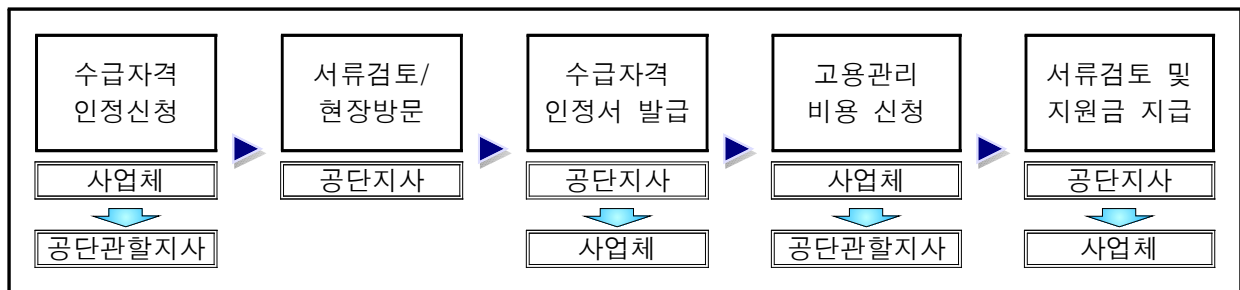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5~계속
- 사업규모 : 장애인고용관리자 533명, 근로지원인 8,000명, 시설장비지원 19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고용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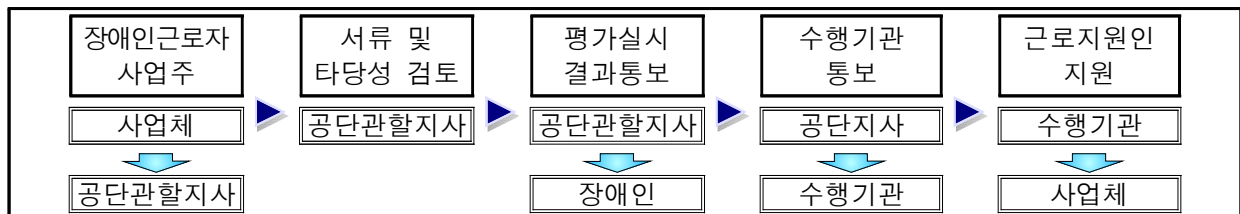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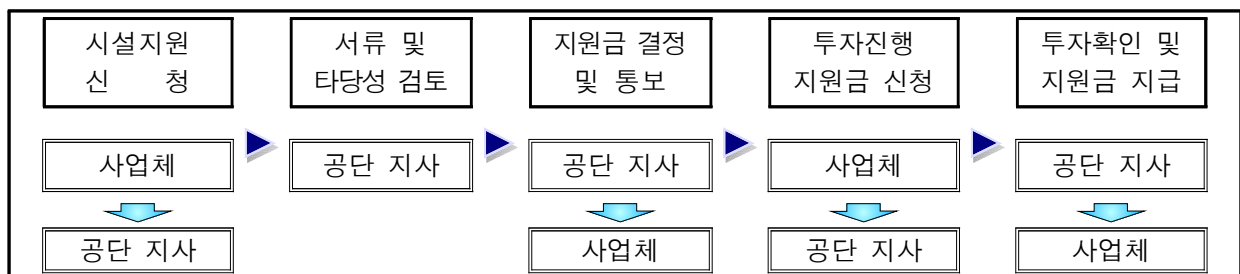
○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



○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사 업 명						
(3) 장애인취업지원(1452-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11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취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장애인취업 지원	16,876	22,725	22,725	26,166	26,166	3,441	15.1

4. 사업목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효과적인 고용의무 이행 지원
- 전문적인 구직상담과 직업능력평가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과 잠재 능력 발굴, 개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무 제시
-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기회를 보다 확대함과 동시에 고용의 질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 제 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 13조(지원고용)**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 15조(취업알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 제 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 19조(취업 후 적응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 24조(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제 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제 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91. 최초 사업 시작
- 1994. 중증장애인 직업영역 확대사업(지원고용 전신)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실시
- 1998. 중증장애인 직업영역 확대사업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으로 명칭 변경 및 전(全) 장애유형으로 확대
- 1999.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접수 업무 수탁
- 200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민간위탁 확대 및 시험고용(청년) 시행

- 200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일반회계로 전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 2011. 희망코디프로그램(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201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탁 수행
장애학생 취업지원(워크투게더 센터) 사업 시범 실시(2개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기한 단축(90일 이내→1월31일까지) 및 보고 횟수 확대(연1회→연2회)
- 2013. 장애학생 취업지원(워크투게더 센터) 사업 본격 시행(6개 거점 센터 운영)
- 2014.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탁 종료 및 지원고용 훈련수당 상향 조정
(일 12천원→일 17천원)
- 2015.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시행 및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추경) 재수탁
장애학생 취업지원(워크투게더 센터) 사업 확대 시행(8개 거점 센터 운영)
- 2016. 장애학생 취업지원(워크투게더 센터) 사업 확대 시행(13개 거점 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 장애유형 확대(11개 유형)
- 2017. 장애학생 취업지원(워크투게더 센터) 사업 확대 시행(18개 전 지사로 확대)
- 2018. 장애학생 취업지원(워크투게더 센터) 사업 확대 시행(20개 전 지사로 확대)
- 2020. 장애인 인턴제 지원대상 확대(중증장애인→경증고령장애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1~계속
- 사업규모 : 고용의무이행지도, 알선취업 15,905명, 직업능력평가 13,000명, 지원고용 5,000명, 장애인 인턴제 400명, 장애학생 취업지원 5,000명, 직업생활상담원 양성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구직장애인, 구인사업주, 장애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 절차



사 업 명						
(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1452-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15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지원	13,761	14,921	13,855	16,985	16,985	3,130	22.6

4. 사업목적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 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 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 15조(취업알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제 19조(취업 후 적응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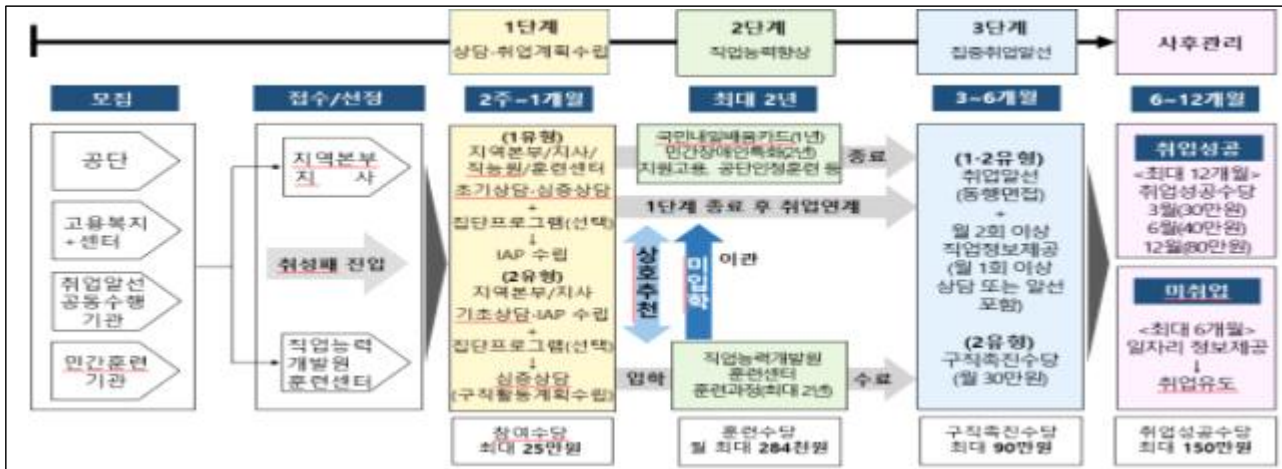
- 2012.~2015. 취업성공패키지 I의 장애인 유형에 해당하는 물량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 물량 : ('12년) 3,500명→('13년) 3,500명→('14년) 1,500명→('15년) 1,000명
- 2017.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 I의 취약계층(장애인 유형)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공단에서 출연사업으로 직접 수행
* 물량 : ('17년~19년) 8,000명
- 2020. 저소득층 참여자를 위한 유형 별도 신설
* 물량 : ('20년) 9,000명(저소득층 유형 1,000명 포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계속
- 사업규모 : 참여자 10,000명(저소득층 2,000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구직장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 절차



사 업 명						
(5)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1452-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16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5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1,253	2,951	2,951	2,951	2,914	△37	△1.3

4.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 (동료지원가)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시간은 월 최소 60시간,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5조(취업알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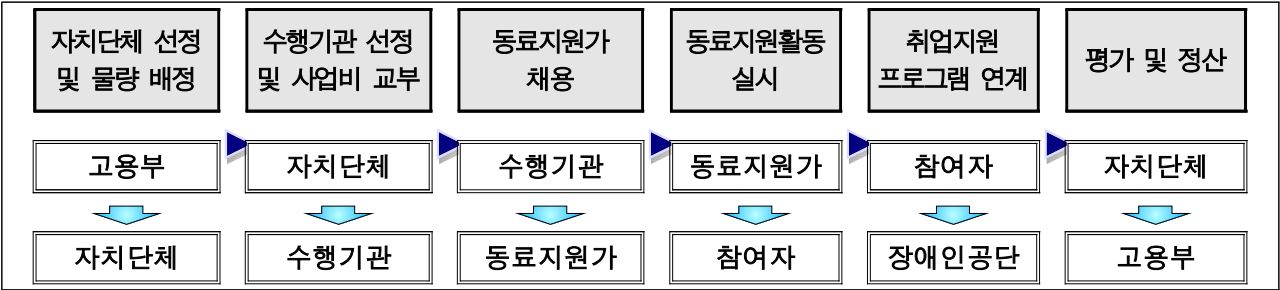
- 국정과제 17(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대) 관련하여 지원
 - * 해당과제 목표: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018. 4.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18~’22) 과제(3-1-1 맞춤형 취업지원)
- 2018. 5.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 과제 반영(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2019. 1. 시범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계속
- 사업규모 : 참여자 10,000명(동료지원가 50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자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일할 의사가 있는 중증장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및 71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71조

7. 사업 집행 절차



사 업 명						
(6)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1452-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17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3,960	3,960	3,405	3,405	△555	△14.0

4. 사업목적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일반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위하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 및 저임금 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요구가 국회·장애계*를 중심으로 제기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부모연대 등 장애계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 및 공공일자리 1만개를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17.11~'18.2)
- 2018. 2 ~ 2019.7 민관합동 최저임금 적용제외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
- 2019. 12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발표(고용부, 복지부 합동)
 -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전환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2020.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추진('20년 참여인원:1,000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계속
- 사업규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 장애인근로자 800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소속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일반노동시장 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수행 주체	단계별 프로그램	
직재시설 및 공단	1단계 : 전환준비단계 (직업재활시설)	
	(역량제고) 강화된 훈련 프로그램 (역량고도화) 우수 사업장 탐방, 공단 직능원 및 훈련센터 견학	
	경제적지원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월 30만원, 최대 2년
공단	2단계 : 전환지원단계 (일반노동시장)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공단 수행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최대 6개월 현장훈련 (장애인 인턴제) 최대 6개월 인턴 기회 제공	
공단	3단계 : 고용안정단계 (일반노동시장)	
	(고용유지지원)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경제적지원	취업성공수당(장애인) :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채용사업주보조금 : 최대 80만원, 3년간
* 전환 이후 고용유지에 실패한 고용전환훈련생이 직업재활시설 재입소를 희망할 경우 복귀 가능 (프로그램 재참여는 최대 3회까지 가능)		

사 업 명						
(7)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1452-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18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	-	3,065	3,065	3,065	순증

4.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

2.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 2-1. 장애인노동자 직접지원(중증장애인 노동자 비용지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 강구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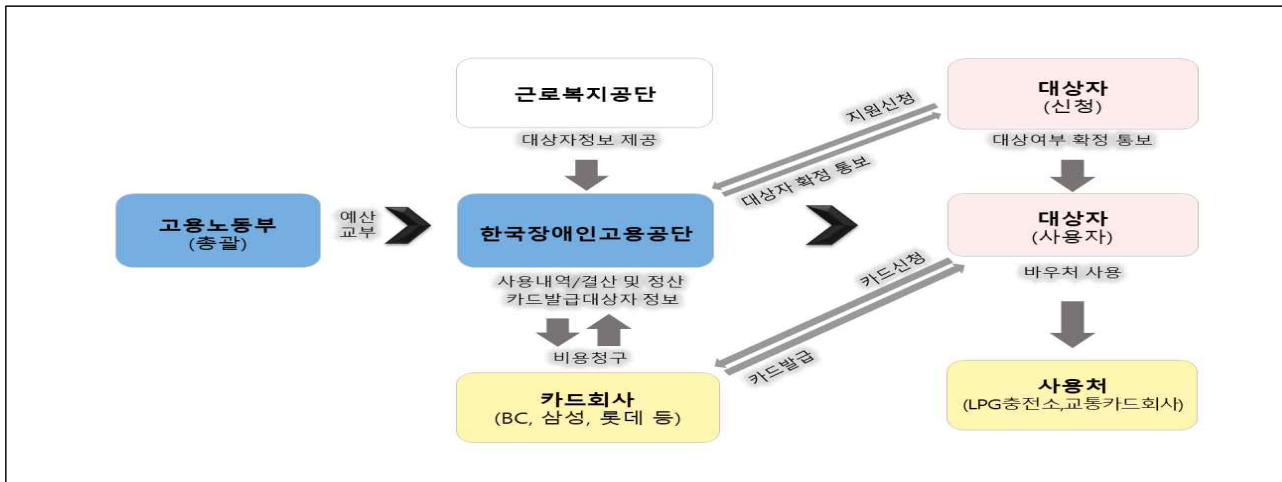
- 2018. 04.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반영
- 2019. 11.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방안 연구(고려대학교)
- 2020. 07.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 2021. 시범사업 시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1~22년(신규 시범사업)
- 사업규모 : 6,300명*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 중증장애인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증장애인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8)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145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3	304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17,104	27,434	27,434	28,472	28,472	1,038	3.8

4.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린다)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제3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② 추진경위

-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포함
- 2007. 4. 4. 「수요자 관점의 장애인정책」 대통령 업무보고 시 새로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방안으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도입 제시
- 2007. 7. 13.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도입(2008. 1. 14. 시행)
- 2010. 1. 18. 2010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정책 자료(고용정책협의회)
- 2011. 2. 18.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공동출자 설립 가능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2011. 3. 9. 시행)
- 2013. 5. 28. 18대 국정과제(50-9)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확대

<추진과제>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충
 -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및 대기업 「1그룹 1자회사 운동」 추진 등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확산
-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 장려금 지급기준 개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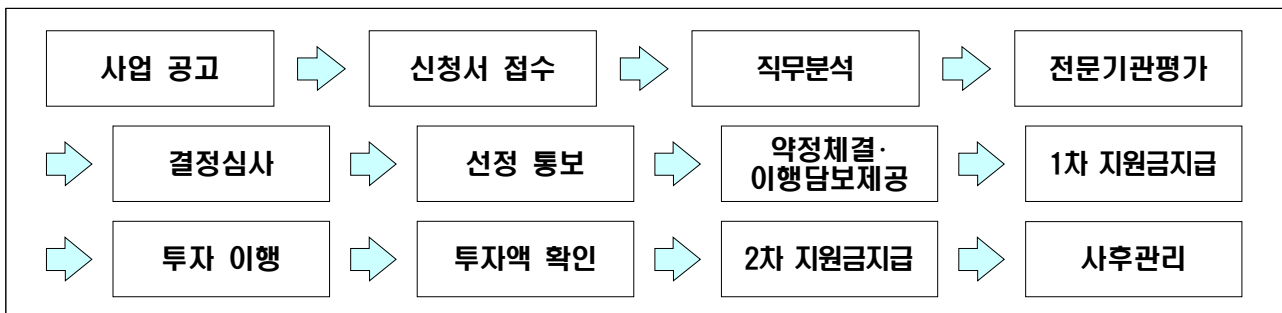
- 2018. 12. 31. 사회적 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 절차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2~계속
- 사업규모 : 장애인표준사업장 90개소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9) 보조공학기기지원(1453-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3	305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보조공학 기기지원	11,531	12,585	12,585	14,437	14,437	1,852	14.7

4.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보조공학기기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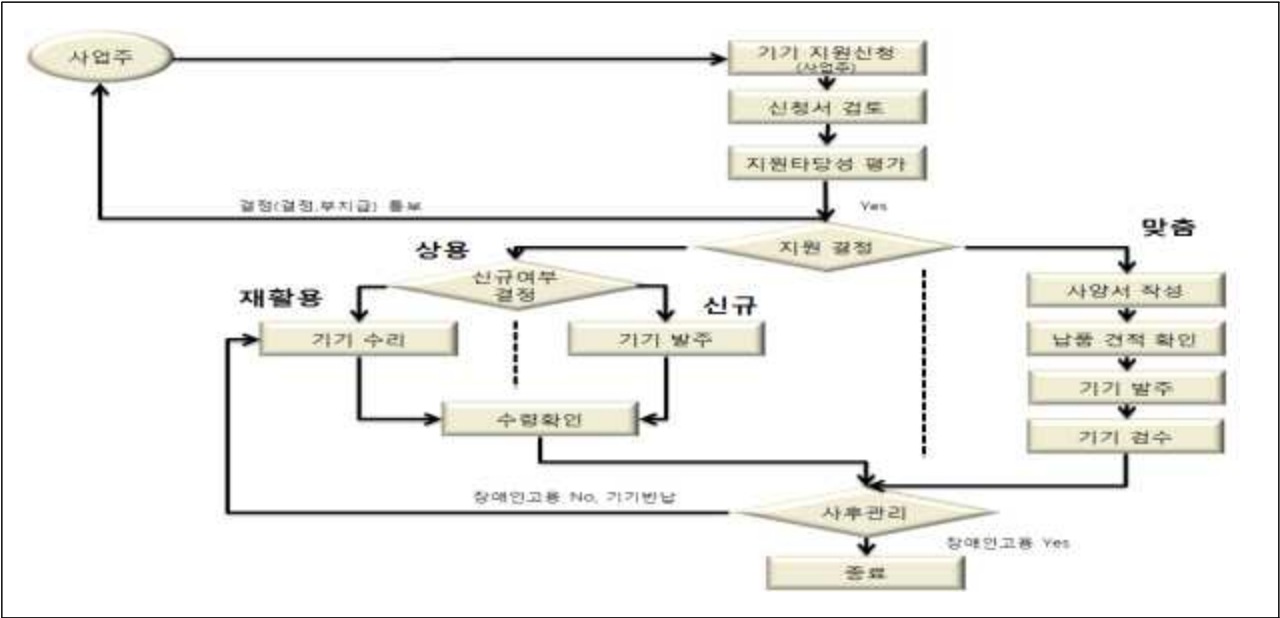
- 2004. 02. 복권위원회에 보조공학센터 설립 신규사업 제안
- 2004. 05. 복권위원회에 사업 심의 통과
- 2004. 12.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개시
- 2006. 07. 공단 14개 지사로 상용기기 전달체계 확대
- 2007. 11. 전국 권역별로 해피스페이스 6개소 설치
- 2009. 03. 공단 5개 직업능력개발원으로 맞춤기기 전달체계 확대
- 2012. 03. 공단 18개 지사로 보조공학 전달체계 일원화
- 2014. 03.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시행(장애인근로자)
- 2018. 01.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 확대(장애인근로자→사업주, 장애인근로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12,000점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고용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 장애인직업능력개발(1457-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7	314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직업능력제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장애인직업 능력개발	65,700	86,289	84,789	67,254	67,254	△17,535	△20.7

4. 사업목적

-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형훈련센터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산업·기업의 훈련수요와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여 본인의 희망·능력·적성에 맞는 일자리 취업을 지원
- 공공·민간훈련기관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이동불편, 가사 등의 제약이 있는 여성 및 고령 장애인 등이 거주지 인근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제 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운영>

- 1992. 일산직업전문학교 인수·운영
 * '00.3. 대전, '00.9. 부산, '02.9. 전남, 대구 직업전문학교 개원
- 1997. 12.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98~'02)에 5개 권역별 공공장애인
 직업훈련기관 확충 계획 발표(12월)
- 2005.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실시
- 2008.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 확대(전 센터 2개 유형 실시)
- 2010. '직업능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 2011. '양성훈련지원프로그램' 운영
- 2012.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운영
- 2014. 09. 서울맞춤훈련센터 설립
- 2016. 청각장애인훈련센터 및 서울,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2개소) 설립
- 2017. 천안·아산, 창원맞춤훈련센터(2개소) 및 광주, 대구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 설립
- 2018. 인천, 전주, 제주맞춤훈련센터(3개소) 및 대전, 경기, 전북발달장애인
 훈련센터(3개소) 설립
- 2019. 경기맞춤훈련센터 및 부산,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발달장애인
 훈련센터(6개소) 설립
- 2020. 서울남부, 세종, 경기북부, 충남, 전남,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6개소) 설립

<장애인훈련기관 지원>

- 1995. 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원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지원 시작
공공훈련기관(22개소), 특수학교 전공과(8개교), 민간훈련기관(15개교) 지원
- 1997. 15개 공공훈련기관을 5%이상 장애인의무선발기관으로 선정
- 1999. 훈련수강료 지원 시작
- 2003. 전체 공공훈련기관(52개교)을 5% 장애인의무선발기관으로 선정
- 2004. 학원에서 실시하는 과정까지 훈련수강료 지원 대상 확대
- 2007. 09. 학교법인 기능대학과 장애인 훈련 확대를 위한 MOU 체결
- 2007. 여성 및 중증장애인 우대 명문화(고시 개정)
- 2011. 공공훈련기관(34개소), 민간훈련기관(32개소) 지원
- 2017. 민간훈련, 개별적 훈련 지원을 고용보험 실업자 계좌적합훈련으로 통합
재원 이관(장고기금 → 고용보험기금)
공공훈련기관(24개소), 민간훈련기관(32개소) 지원
- 2018. 민간훈련기관 지원 사업 재원 이관(고용보험기금 → 장고기금)
공공훈련기관(23개소), 민간훈련기관(32개소) 지원
- 2019. 보건복지부 민간직업훈련 업무 이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2018~2022, 정원 300명 규모)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17까지 기투자액	2018	2019	2020	2021(안)	2021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8~2022	-	10	170	339	148	468	1,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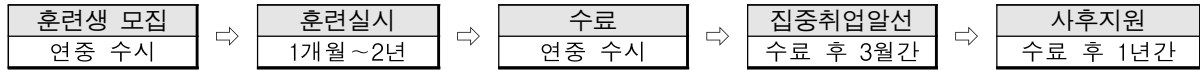
- 사업기간 : '92~계속
- 사업규모 : 취업과정 직업훈련 4,315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희망 또는 필요로 하는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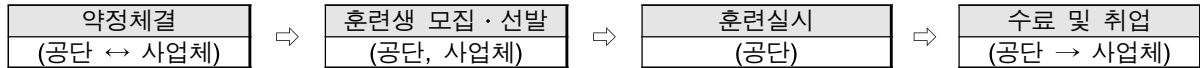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운영>

1) 정규훈련(융복합·특화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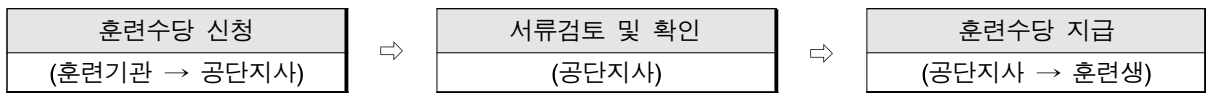
* '17년부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연계, 1단계 집중상담·진로설계 후 훈련실시

2) 맞춤형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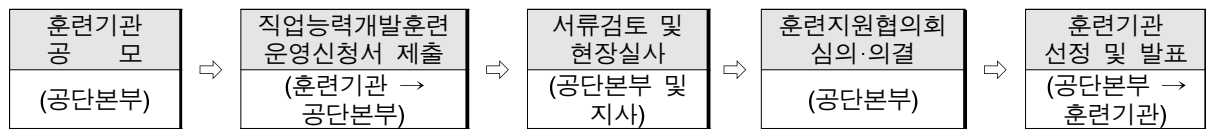


<장애인훈련기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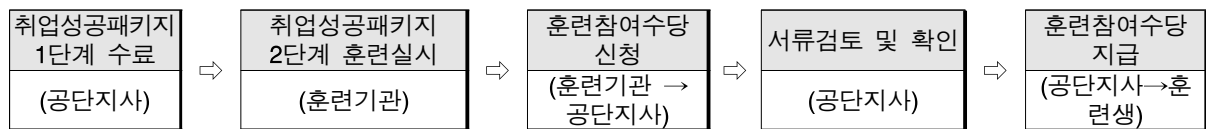
1) 공공훈련기관 훈련수당 지급



2) 민간훈련기관 선정(공모)



3) 민간훈련기관 훈련참여수당 지급



사 업 명						
(11) 장애인기능경기대회(1457-3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7	319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직업능력제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장애인기능 경기대회	3,819	3,970	3,940	6,907	6,907	2,967	75.3

4. 사업목적

- 장애인 기능개발 장려 및 기능향상을 촉진하고,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이 참가하는 기능경기대회를 개최
- 국제대회 개최와 참가를 통해 장애인의 기능향상 및, 인식 개선, 정보교류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대회 입상선수에게 기능장려금 지급을 통한 기능향상 촉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참가자격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 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인·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 1996. 7개 시·도를 시작으로 최초 실시
- 1997. 11개 시·도 개최
- 1998. 15개 시·도 개최
- 1999. 16개 시·도 확대 개최, 민간 위탁 실시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 1999. 최초 개최(인천)
- 2001. 3개 지역 개최
- 2002. 4개 권역별 개최
- 2008. 민간위탁 개최, 전국대회 연계(기본직종 입상자 전국대회 출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1981.~1991. 공단 설립 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이 주관하여 개최
- 1992. 제9회 대회부터 공단이 주관하여 개최
- 2005. 서울광장 개최식 개최 등 최초로 공단 외부시설에서 대회 실시
- 2006.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 실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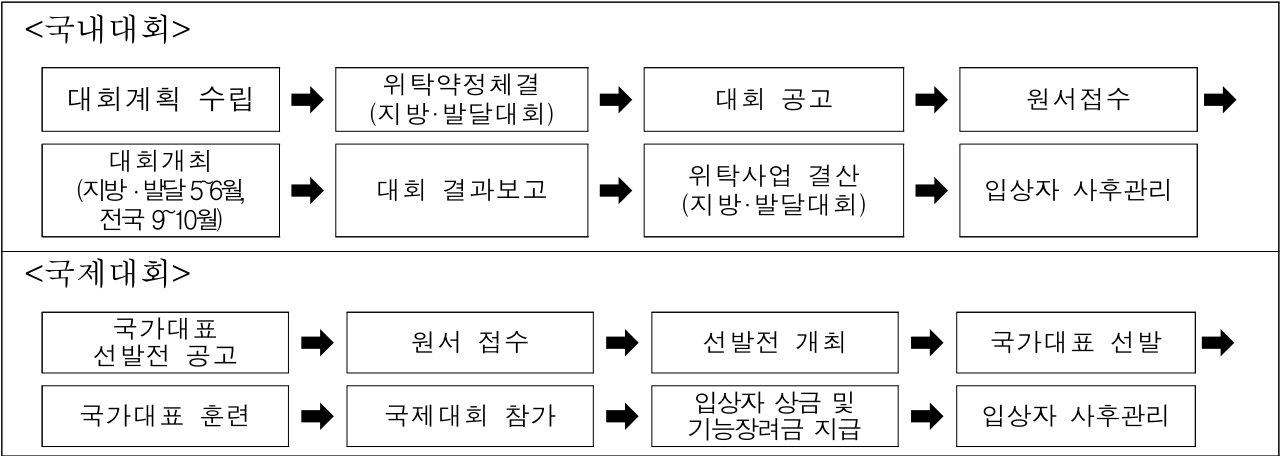
- 1981. 제1회 대회 참가(공단 설립 전으로 민간에서 주관)
- 1995. 제4회 대회부터 공단 주관으로 참가
- 1996. 입상자 기능장려금 지급 시작
- 2005. 03. 2011년 제8회 대회 서울 개최 결정
- 2007. 제7회 대회(일본 시즈오카) 참가, 종합우승 4연패 달성
- 2011. 제8회 대회 서울 개최, 종합우승 5연패 달성
- 2016. 제9회 대회(프랑스 보르도) 참가, 종합우승 6연패 달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2~계속
- 사업규모
 - 지방대회 : 17개 시·도, 34개 직종, 2,900명
 - 발달대회 : 4개 권역, 6개 직종, 600명
 - 전국대회 : 42개 직종, 420명(지방대회, 발달대회 1위 입상자)
 - 국제대회 : 기능장려금(113명) 지급,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연합(IAF) 회의 참석,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참가(4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및 입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2) 장애인고용연구(1459-32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9	324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장애인고용연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장애인고용 연구	2,722	3,569	3,569	3,362	4,385	816	22.9

4. 사업목적

-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전문 통계자료 생산, 직업영역개발, 장애인고용 전문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중점적 수행
- 단기적으로 현안과제에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및 공단 사업의 단기 정책방향 검토에 필요한 전문 통계데이터를 생산·보급,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모델 제작, 확산
-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집행 지원 및 체계적인 교육진행을 통한 장애인 고용 실무자의 전문성 및 핵심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26조

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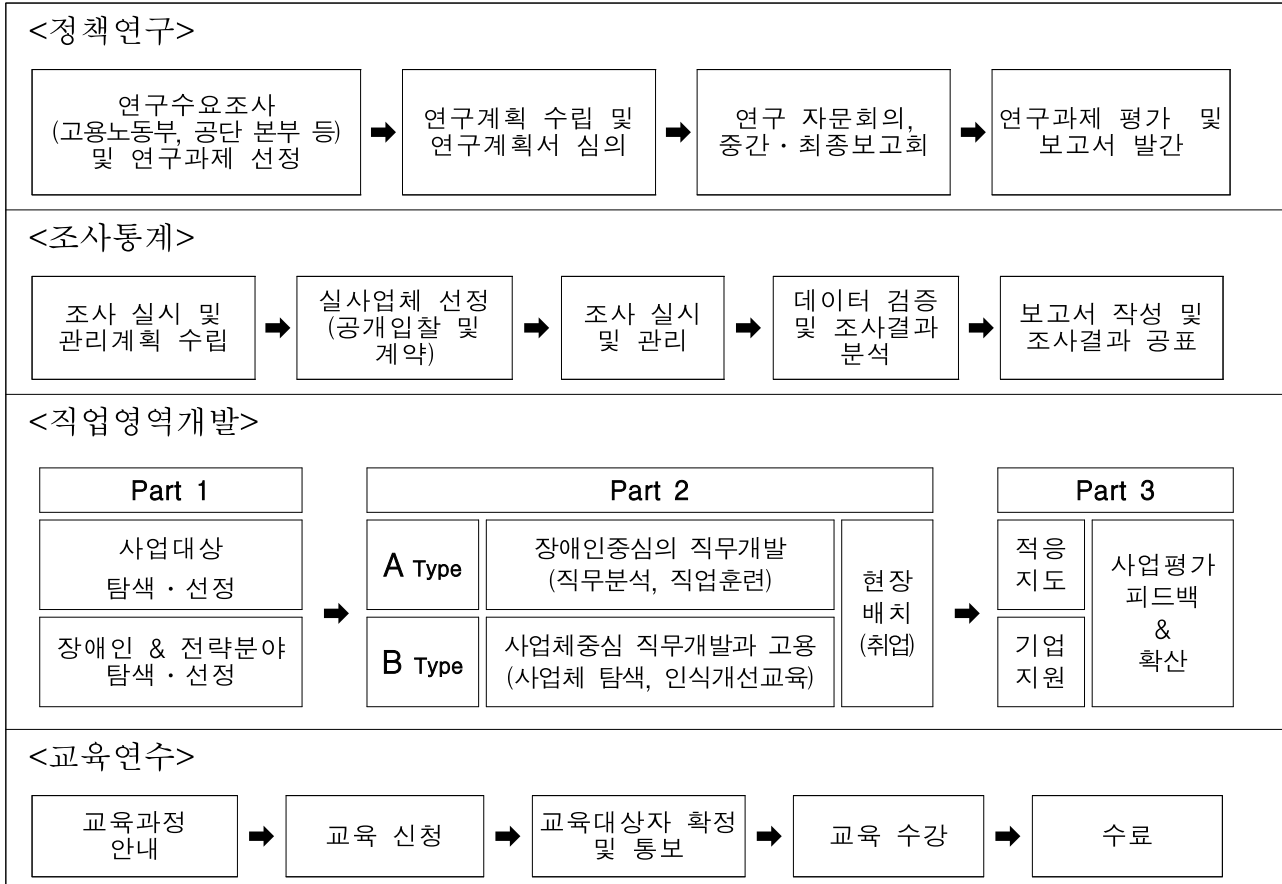
- 1991. 최초 사업시작
- 1994. 직업영역개발사업 실시
- 2000. 연구개발 전담조직 고용개발원 개원
- 2003. 사이버 교육 과정 도입
- 2004. 직업훈련업무 이관(직업능력개발원) 및 보조공학센터 개소
- 2005. 정부부처 직업영역개발사업 실시 및 대기업고용 중심의 장애인고용 및 맞춤형 지원 연구보고서 발간·보급
- 2008.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및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실시, EDI 행동 프로그램* 개발
 - * 미국 윈드밀즈 프로그램(Windmills Program) 기반 장애인인식개선 프로그램
- 2009. 「장애와 고용」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및 보조공학 업무 이관(본부)
- 201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 2012.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집중 양성 지원(1,691명)
- 2015.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15년) 중점 추진과제 이행 정책 지원 연구보고서 발간·보급
- 2017. 2017 국제장애고용포럼(IDEF) 개최
 - 「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2018. 2018 국제장애고용포럼(IDEF) 개최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5개년 기본계획」 시행과 관련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 등 주요쟁점 논의를 통한 전략과 대한 공유
- 2019.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도구 개발
 - 기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사회경제적 환경,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판정도구 개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1~계속
- 사업규모 : 고용개발연구과제(29과제) 수행, 국가승인통계조사 3종(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및 발달장애인의 삶과 일자리 실태조사 실시, 정책토론회(3회), 학술대회(1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등 정부 및 지자체, 국회 등 입법기관의 장애인 고용정책 입안자 및 사업담당자, 장애인,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및 연구자,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3) 장애인인식개선지원(1459-32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9	327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장애인인식개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장애인인식 개선지원	3,222	5,372	5,372	4,145	4,145	△1,227	△22.8

4. 사업목적

-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도입('18.5.29.)에 따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인프라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② 추진경위

- 2000.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편견 제거를 통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
- 2007.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 등 법 조항 신설
- 2008. 사업주,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2015.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해소 필수 요건으로 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
-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사업으로 전환(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사업 수탁 수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교육 의무 법률 근거 마련
- 2018.05.2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시행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9.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감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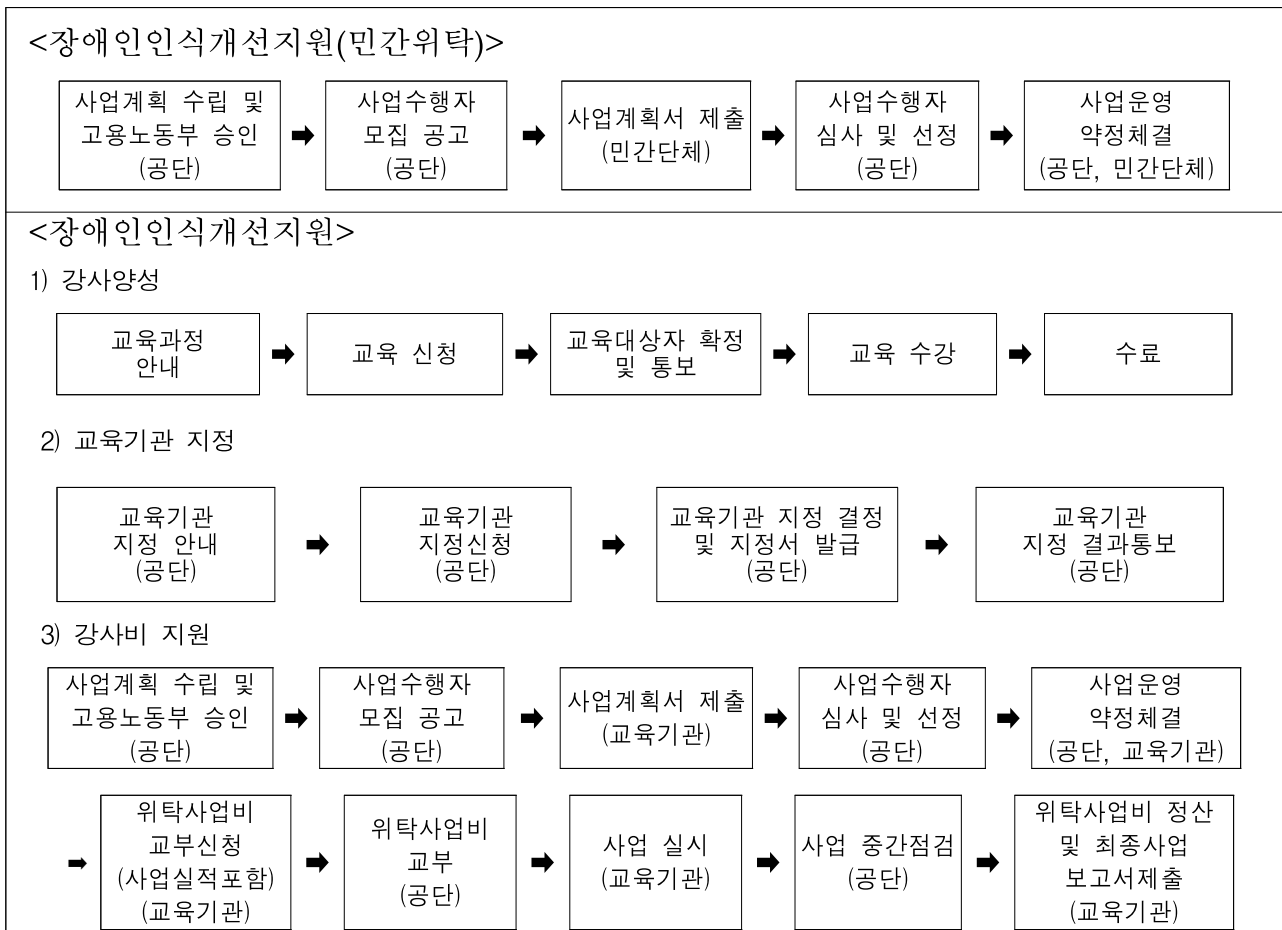
-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위해 「교육 강사 지원 사업」 시작
- 2020.06.09.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가가 실시하도록 법률 근거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계속
- 사업규모 : 민간위탁형 장애인인식개선지원, 강사양성 1,000명, 강사 지원 12,00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4) 장애인고용증진용자(용자)(1462-33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법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62	330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증진용자(용자)	장애인고용증진용자(용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장애인고용 증진용자(용자)	11,919	9,500	8,500	9,025	9,025	525	6.2

* '19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장애인기금으로 재원 이관

4. 사업목적

-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에 대한 용자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의지를 높임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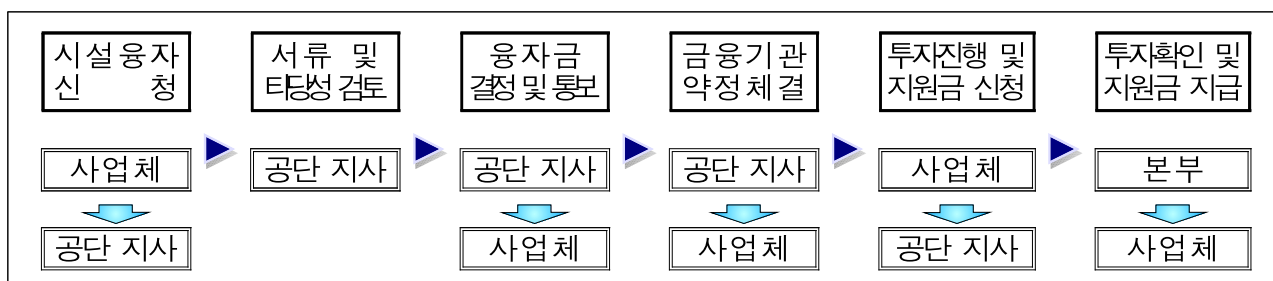
- 1992.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사업 실시
- 2005.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7년부터 장애인기금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 이관
- 2014. 융자방식을 대하방식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
 - * 4% 이차보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2017. 융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에서 대하방식으로 변경
 - * 대출금리 1%,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2019. 고용보험기금에서 장애인기금으로 재원 이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2~계속
- 사업규모 : 43개소 융자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 수행)
- 사업 수혜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5) 장애인고용정보화(1466-2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정책고용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66	240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정보화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장애인고용 정보화(정보화)	2,935	3,413	3,413	3,358	3,358	△55	△1.6

4. 사업목적

- 장애인고용전산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고용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애인 및 사업주 등 대국민 업무편의 증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 제43조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② 추진경위

- 1993. 취업알선관리시스템(text) 구축·운영
- 1998.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운영,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999. 전산실 개선(신규전산장비 도입 및 LAN구축) 운영
- 2000. 취업알선(C/S), 기금관리시스템(Web)구축·운영
- 2001. 학사관리시스템(Web), 그룹웨어 구축·운영
- 2002.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등 4종 시스템 Web 구축·운영
- 2003.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004.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 등 8종 전산시스템 운영
- 2005.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 189개 유관기관과 정보연계
- 2006.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등 8종 전산시스템 운영
- 2007. 원스톱 업무통합시스템(EP) 운영
- 2011. 장애인고용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운영
- 2012. 재무예산시스템 Web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구축
- 2013. 정보보호 강화(APT 공격대응),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014. 전산인프라 개선사업(DB서버 교체 등)
- 2015. 정보보안 강화사업(본부·고용개발원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 2016. 전사포털 구축 및 보안장비 고도화 사업
- 2017. 정보보안 인프라 개선, 노후 서버 교체 및 백업시스템 개선
- 2018. 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 2019. 정보보안 강화 및 운영환경 개선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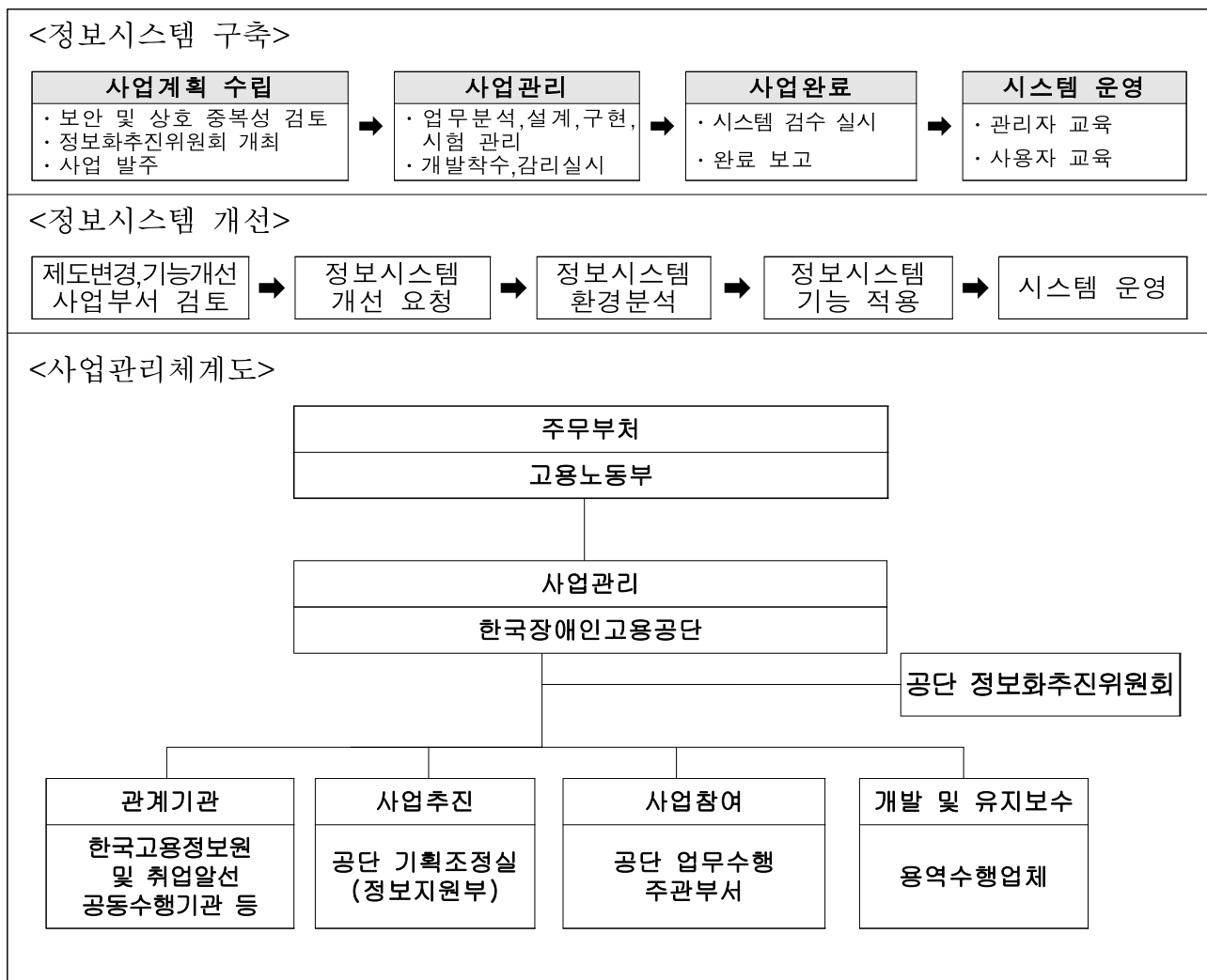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1~계속

- 사업규모 : 온라인사이트 및 공단 장애인고용전산망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사업주, 공단 및 유관기관 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6) 기금관리비(인건비)(7079-1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9	11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관리비 (인건비)	69	84	84	86	86	2	2.4

4. 사업목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금관리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② 추진경위

-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지출 관리원이 필요하여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1~계속
- 사업규모 : 기금관리원 2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관리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매월 급여 지급일에 급여 및 초과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
|----------------------------------|

사 업 명						
(17)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7079-1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9	12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장애인고용 공단 인건비	52,810	59,482	59,482	63,225	63,225	3,743	6.3

4. 사업목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을 위한 임직원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② 추진경위

- 1990.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0~계속
- 사업규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974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출연금 교부신청(공단) → 출연금 지급(고용노동부) → 인건비 지급(공단)

사 업 명						
(18)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79-2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9	21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144	195	195	146	146	△49	△25.1

4. 사업목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② 추진경위

-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1~계속
- 사업규모 : 14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비용정산 → 집행

사 업 명						
(19)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7079-2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9	22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9,895	10,721	10,461	10,031	10,031	△430	△4.1

4. 사업목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② 추진경위

- 1990.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 1992~2002.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 설치
- 1993~2012. 지사 18개소 설치
- 2000. 1. 고용개발원 설치
- 2001. 1.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 수탁
- 2010.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기관명 변경
- 2015~2017. 훈련센터 8개소(맞춤훈련센터(3)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4), 청각센터(1)) 설치
- 2018. 지사 2개소(서울동부, 경기동부지사) 설치 및 훈련센터 6개소(인천, 전주, 제주 맞춤, 대전, 경기, 전북 발달) 설치
- 2019. 지역본부제 도입(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및 훈련센터 7개소(경기 맞춤, 부산,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발달) 설치
- 2020. 훈련센터 6개소(서울남부, 세종, 경기북부, 충남, 전남, 제주 발달) 설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0~계속
- 사업규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출연금 교부신청(공단) → 출연금 지급(고용노동부) → 사업운영비 지급(공단)

사 업 명						
(20)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7079-23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9	23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500	500	500	500	500	-	-

4. 사업목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 및 무연고 직원 사택 임차보증금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② 추진경위

- 199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 및 무연고 직원 사택 임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0~계속
- 사업규모 : 5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급 건 별 무형자산 사용 신청(공단) → 승인 및 보증금 지급(고용노동부)

사 업 명						
(21)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7079-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9	25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1,100	1,334	1,300	1,045	1,045	△255	△19.6

4. 사업목적

- 일반국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업이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관련 정부 정책 및 국제기구 정책과 균형 유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추진경위

<대내협력>

- 1990.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TV·라디오 광고, 물품 제작 등 추진
- 199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 1992.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작품현상공모전 개최
- 1995. 월간 '장애인과 일터' 발간
- 2011. 공단 SNS 채널 개설 및 운영
- 2020. 공단 30년사 편찬

<국제협력>

- 1991.~2005. 전문가양성 및 장애유형별 교육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
- 1994.~1999. UNDP 사업수행
- 1995. SRH(하이델베르그재활재단)과 자매결연 협약
- 1998. RI(세계재활협회) 가입
- 2005.~2008. 한/ILO 협력사업 초청연수 실시
- 2007.~2010. 한/ILO 협력사업 후속조치의 자매결연 추진
- 2011. 외부재원(한국국제협력단)을 활용한 자매결연기관 지원 확대 노력, RI 총회 등 국제회의 참가, 개발도상국 직업능력개발기법 전수 지원
- 2020. 국제협력팀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0~계속
- 사업규모 : 1,04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7. 사업 집행절차

- 공익광고
 - 효과조사 → 매체전략 수립 → 광고 제작 → 매체 계약 → 광고 송출
- 언론보도
 - 사례발굴, 자료 작성 → 보도자료 배포, 취재 지원 → 결과평가(오보·왜곡보도 대응) → 사후관리
- 개발도상국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 개발도상국 자매결연기관과 교류협력 내용 협의 → 사업계획 수립 → 초청연수, 기술자문 사업실시 →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이행
- 국제회의 참가
 - 참가계획 수립 → 회의 참가 →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사 업 명						
(2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6-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6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장애인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탁	200,000	150,000	203,890	300,000	300,000	96,110	47.1

4. 사업목적

-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에 예탁하여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추진경위

- 201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7~계속
- 사업규모 : 300,0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사 업 명						
(23) 한국은행예치(9702-9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702	971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여유자금운용(장애인기금)	한국은행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한국은행예치	734	300	300	300	300	-	-

4. 사업목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국고 계좌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추진경위

-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설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1~계속
- 사업규모 : 3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회계연도 말 국고 잔액 한국은행 예치

사 업 명						
(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2-97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702	973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여유자금운용(장애인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496,405	503,341	453,624	698,993	697,970	244,346	53.9

4. 사업목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예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추진경위

-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설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1~계속
- 사업규모 : 697,97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문기관(연기금투자폴) 위탁 운용

VII. 임금채권보장기금

VII. 임금채권보장기금

1. 수입

(1) 기타민간이자수입	
54 - 544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민간이자수입	460	418	418	537	537	119	28.5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채불임금등의 사업주 용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채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용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 채불 임금등 비용 용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 채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 사업주 용자(적용금리: 신용 3.7%, 담보 2.2%)
 - 근로자 용자(적용금리: 1.5%)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274	348	460	501

(2)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재산수입	16,486	13,399	13,399	13,157	13,157	△242	△1.8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 운용 이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3,816	9,586	16,486	37,582

(3) 징계부과금
56 - 564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징계부과금	-	3,305	3,305	3,965	0	△3,305	△100.0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19.2.11. 발의) 제8조의 7(부과금 부과·징수), 안 제16조(준용), 안 제26조(소멸시효)

2. 수입 개요

- 반복적으로 체당금으로 체불을 해결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체당금 지급을 한도로 행정상 제재금(부과금) 부과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	-	-	-

(4) 가산금
58 - 581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가산금	119	144	144	153	153	9	6.3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및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概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 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2. 수입 개요

- 부담금 미신고·허위 신고시 납부하여야할 보험료의 10%(수정신고를 제출할 경우 5%) 가산금 징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03	125	119	83

(5) 법정부담금

59 - 593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법정부담금	337,988	359,437	359,437	381,864	381,864	22,427	6.2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채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및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概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2. 수입 개요

-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수입
- 보수총액의 0.2% 범위내에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율을 사업주로부터 징수
※ 사업주부담금 비율 : 0.8/1,000(2010~2015), 0.6/1,000(2016~)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300,660	322,002	337,988	309,704

(6)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23,850	136,950	136,950	144,874	144,874	7,924	5.8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급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 공탁법원)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 수입 개요

- 사업주변제금 회수: 해당금 지급 후 당해 사업주로부터 대위변제금 회수
- 공탁금 회수: 해당금 지급 후 당해 사업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고 공탁금 납부사유 종료(집행권원 확보)시 회수
- 연체금 회수: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매일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하고(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함),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매일 체납된 부담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함)
- 무료법률구조사업 소송비용 회수금: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여 투입된 사업예산 중, 소송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법원 등으로부터 회수된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06,214	107,551	123,850	119,028

(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 - 754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5,333	6,338	6,338	7,652	7,652	1,314	20.7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채불임금등의 사업주 용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채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용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 채불 임금등 비용 용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채불사업주 용자금 원금 회수(1년거치 2년 분할상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2,660	3,737	5,333	4,426

(8)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 - 851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한국은행예치금회수	3,428	2,645	2,645	2,993	2,993	348	13.2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채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2. 수입 개요

- 전년 결산 국고잔액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2,790	2,905	3,428	-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35,310	159,849	159,849	253,983	253,983	94,134	58.9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채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2. 수입 개요

- 전년도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202,747	102,679	135,310	315,607

(10)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일반회계전입금	82	82	82	82	82	0	0.0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채당금 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등 임금채권 보장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82	82	82	82

(11) 기금예탁원금회수

92 - 923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기금예탁원금 회수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0	0.0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예탁기간 만료로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260,000	260,000	200,000	150,000

(12) 기금예탁이자수입
95 - 953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기금예탁이자수입	4,074	2,725	2,725	2,989	2,989	264	9.7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채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6,785	4,727	4,074	1,818

2. 지출

사 업 명						
(1) 체당금 지급(305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1	300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체당금 지급	체당금 지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체당금 지급	459,880	433,460	595,406	669,831	669,831	74,425	12.5

4. 사업목적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체당금)함으로써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

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중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채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채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채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채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채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당금을 지급한다.

④ 채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채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채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채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정부입법 추진 중(입법예고: '20.7.22.~8.10.)
 - 개정안 제7조(채불 임금등의 지급) ①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채불 임금등과 채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채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개정안 제7조(채불 임금등의 지급)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및 소득수준이나 그 밖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임금채불이 발생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한다)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제38조)은 일정범위의 임금채권(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우선변제)이 여타 채권(담보채권, 조세·공과금)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기에 임금채권 확보가 곤란
 - 이에 1980년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 오다가 '98. 1.15 발족한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계약』을 제정하면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논의되었음
 -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도산한 기업이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98. 2.20 법률을 제정하여, '98. 7. 1 부터 시행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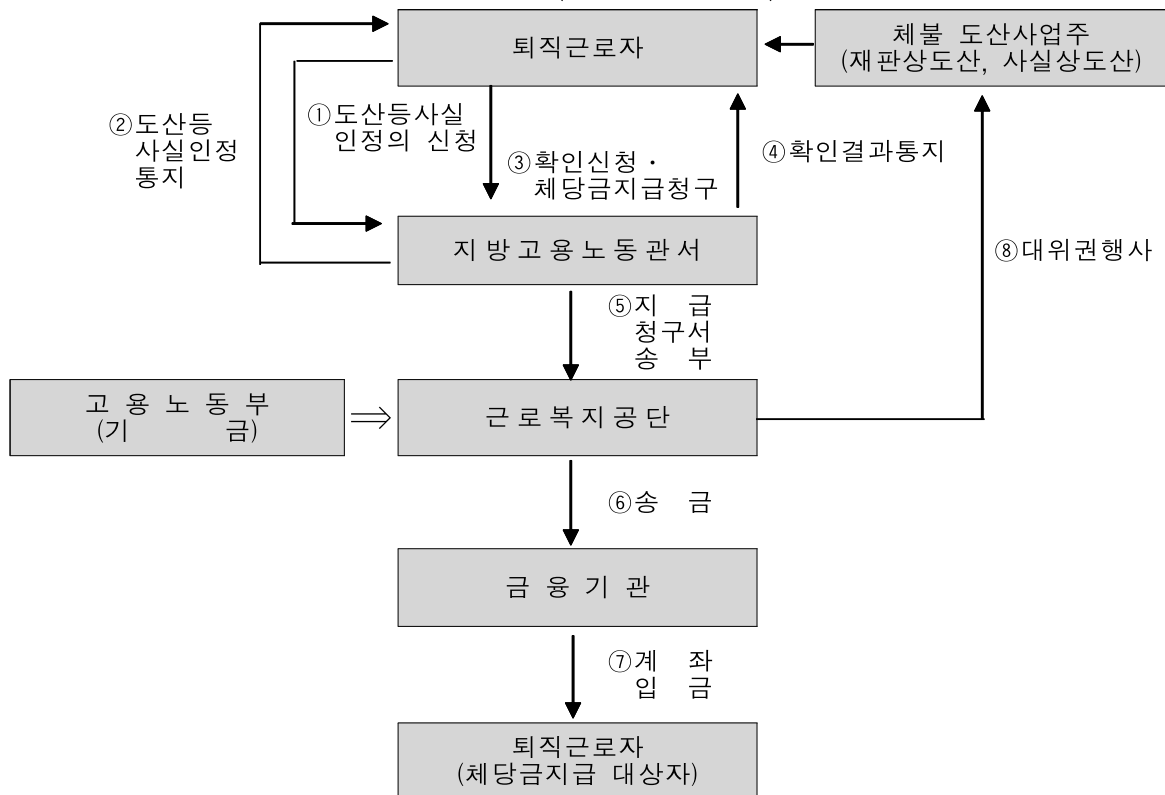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2020년 예산 443,46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채불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 당 없 음		

7. 사업 집행절차

<일반체당금>

○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 청구서 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당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의뢰(요건 충족시) →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소액체당금>

소송제기 (근로자)	체당금 신청 (근로자)	체당금지급 (근로복지공단)	대위권행사 (근로복지공단)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 제기	⇒ 근로복지공단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체당금 신청	⇒ 요건 및 지급금액 확인 후 지급	⇒ 사업주를 상대로 변제금 회수 절차 진행

사 업 명						
(2) 무료법률구조지원(305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2	302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체불근로자조력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무료법률구조 지원	28,204	24,114	28,204	22,908	22,908	△5,296	△18.8

4. 사업목적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체당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용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영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2004. 3. 4 대통령 업무보고시 체불행정 혁신 지시
 - 2004. 12.15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거쳐 2단계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 ※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실시 포함
 - 2005. 3. 2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무료법률구조사업재원 지원근거 마련
 - 2005. 7. 1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2020년 예산 24,11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수혜자 : 임금체불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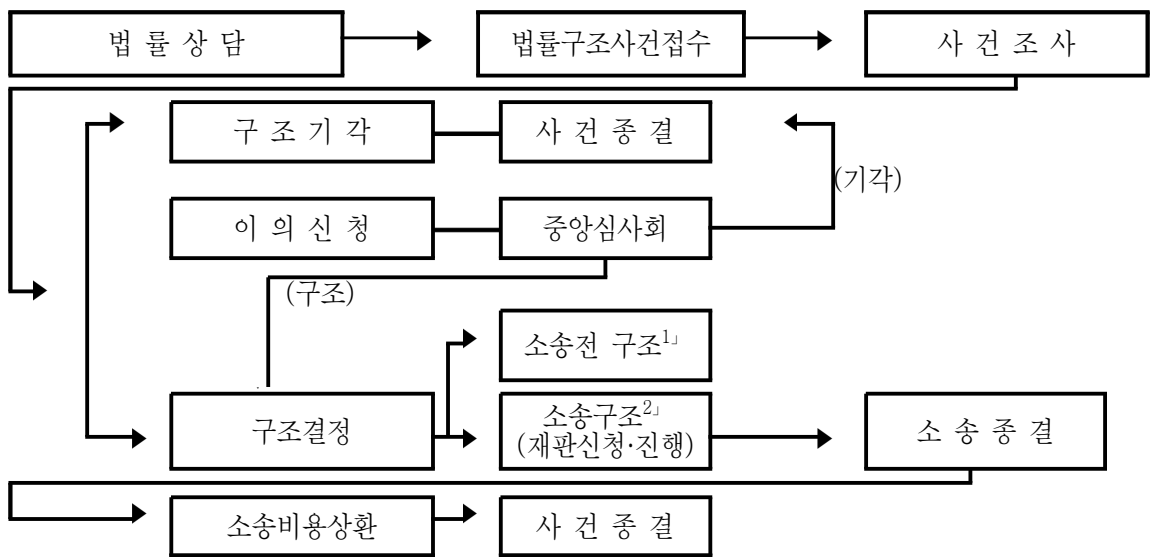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법률구조공단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7호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노동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채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여 채불금품을 확정→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해당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원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토록 안내→해당 근로자가 직접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요청→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1」 소송전 구조 : 소송 제기 전 화해 또는 조정 성립 사건

2」 소송구조 :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민사소송대리

사 업 명						
(3) 체당금 조력지원(305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2	303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체불근로자조력지원	체당금조력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체당금 조력지원	121	150	81	135	135	54	66.7

4. 사업목적

- 일정규모(10인) 미만이면서 전체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중국판결
 -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채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채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채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채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채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당금을 지급한다.
- ④ 채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채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채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⑦ 그 밖에 채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채당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용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2년
- 추진배경
 - '09.5.1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이화수 의원 발의)
 - '10.5.25 국회의결
 - '12. 1. 1.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2020년 예산 15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일정규모(10인) 미만이면서 전체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장 소속 퇴직근로자로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 당 없 음		

7. 사업 집행절차

- (조력지원자)지방관서 방문 → (지방관서)조력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 (지정노무사)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지방관서)신청서 접수 및 확인조사 후 도산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공인노무사)사실확인 및 체당금 신청 → (지방관서)사실확인 및 지급결정 통보 → (공인노무사)비용신청 → (지방관서)확인 및 비용지급

사 업 명						
(4)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3054-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4	304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체불청산지원 용자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	18,046	15,645	19,250	24,010	24,010	4,760	24.7

4. 사업목적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하여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비 용자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용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

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체불 임금등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20. 7. 8.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제7조2(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추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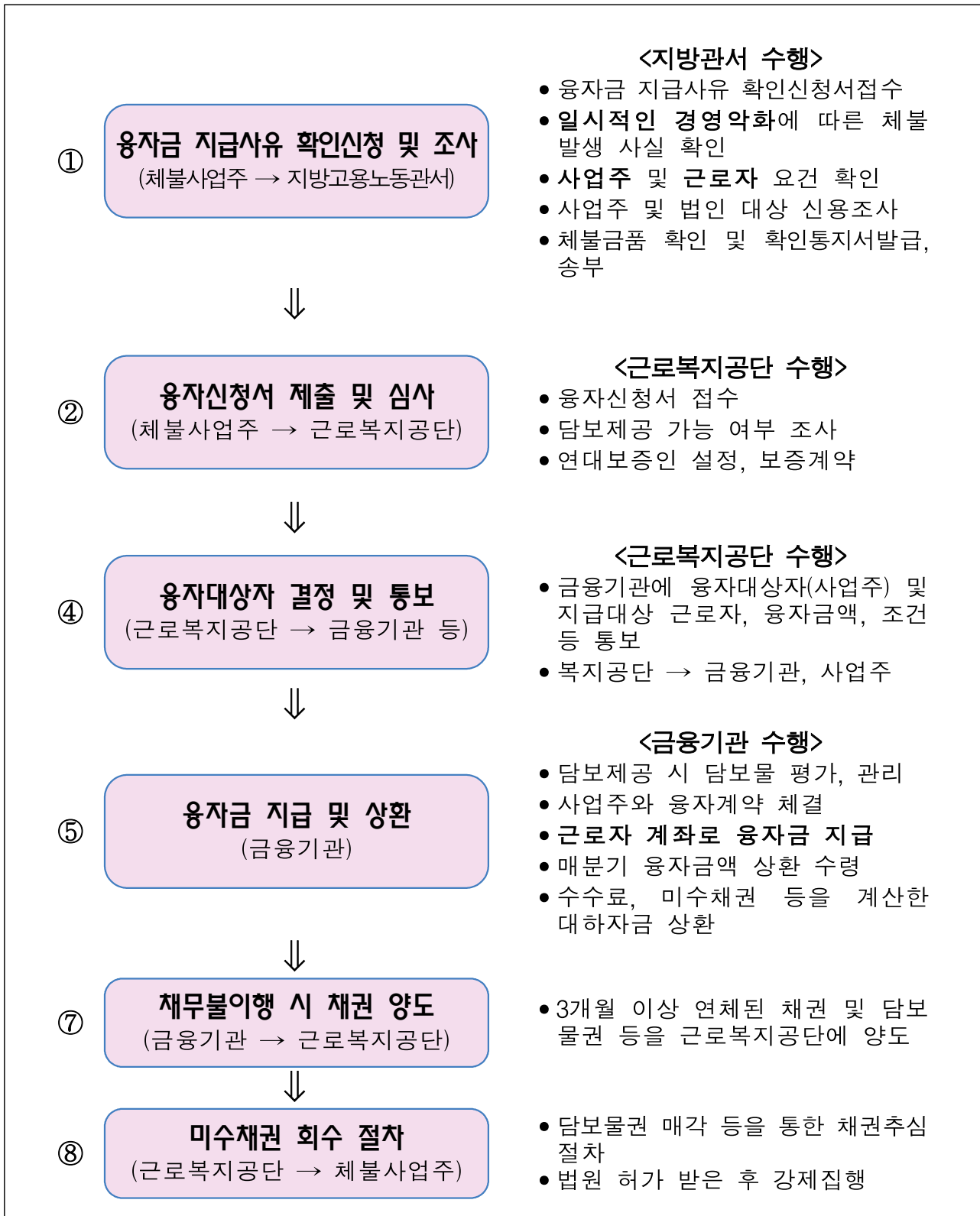
- 사업 시작년도 : 2012. 8. 2
- 추진배경
 -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의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필요
 - ‘10.12.14. 대통령 업무보고시 “선의를 체불사업주 융자제도(‘11년 법개정)”를 마련키로 보고
 -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안) 마련, 의견수렴 간담회 실시(‘11.4월)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공포(‘12.2.1, 8.2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2020년 예산 15,64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융자) 경제적 사정으로 임금 지불여력이 부족하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되,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근로자 융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 당 없 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 기금관리비(인건비)(7082-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1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관리비 (인건비)	77	83	83	85	85	2	2.4

4. 사업목적

- 임금채권보장기금관리 보조요원의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3 (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1
- 추진배경 : 기금관리요원 채용하여 기금의 효율적·전문적 관리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1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2020년 예산 8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기금관리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 당 없 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급여지급일에 급여,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사 업 명						
(6)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7082-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1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사업운영비 (제도운영인건비)	645	636	636	649	649	13	2.0

4. 사업목적

- 임금채권보장제도 전담요원의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3 (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5
- 추진배경 : 임금채권보장업무 전담 조사요원을 채용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업무 효율적 관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2020년 예산 63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임금채권보장제도 조사요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 당 없 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 매월 급여지급일에 급여,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
|----------------------------------|

사 업 명						
(7)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7082-1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10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사업운영비 (공단인건비)	9,380	9,529	9,529	9,708	9,708	179	1.9

4. 사업목적

- 해당금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 임금채권보장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해당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
- 추진배경 : 해당금 지급, 변제금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인건비를 기금에서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2020년 예산 9,529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4호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건비 청구 → 고용노동부에서 출연

사 업 명						
(8)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82-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2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15	15	15	15	15	0	0.0

4. 사업목적

-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체당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2020년 예산 1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 당 없 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및 자금 배정 → 임채기금(위원회 개최 등) 관련 업무 수행 → 비용정산

사 업 명						
(9)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7082-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2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사업운영비 (제도운영기타 경비)	436	496	496	498	498	2	0.4

4. 사업목적

-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여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해당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
- 추진배경 : 임금채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2020년 예산 49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 당 없 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및 자금 배정 → 임채기금 관련 업무 수행 → 비용정산

사 업 명						
(10)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7082-2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20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사업운영비 (공단기타경비)	2,008	2,363	2,245	2,247	2,247	2	0.1

4. 사업목적

- 해당금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 임금채권보장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기타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해당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
- 추진배경 : 체당금 지급, 변제금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를 기금에서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2020년 예산 2,36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4호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기타경비 청구 → 고용노동부에서 출연

사 업 명						
(11)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7082-2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20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임금채권 정보화경비 (정보화)	341	341	338	341	341	3	0.9

4. 사업목적

- 해당금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 임금채권보장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보화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해당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용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8
- 추진배경 : 체당금 지급, 변제금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정보화경비를 기금에서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2020년 예산 341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4호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보화경비 청구 → 고용노동부에서 출연

사 업 명						
(1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4-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4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임채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200,000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

4. 사업목적

- 여유자금 운용금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6조

② 추진경위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6. 주요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7. 사업 집행절차

-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만기도래한 공자기금 예탁금 재예탁 또는 신규예탁

사 업 명						
(13) 한국은행예치(9704-9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4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임금채권보장기금)	한국은행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한국은행예치	5,609	2,993	2,993	4,010	4,010	1,017	34.0

4. 사업목적

- 연도말 한국은행에 예치된 국고잔액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추진경위 :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은행 예치금의 연도말 국고잔액

6. 주요내용 : 연도말 한국은행에 예치된 국고잔액

7. 사업 집행절차

- 회계연도 말일 한국은행 시재 파악 → 지출자금으로 사용 또는 여유자금은 통화 및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 이후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입금되거나 시재 미파악 부분이 한국은행에 예치됨

사 업 명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4-97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4	973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임금채권보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102,368	195,467	26,016	177,812	173,847	147,831	568.2

4. 사업목적

- 여유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 ② 추진경위 : 체당금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준비금을 포함한 여유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확보

6. 주요내용 : 여유자금 운용금액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7. 사업 집행절차

- 자산운용계획에 따라 비통화금융기관 예탁금 운용규모 결정 → 연기금투자월에 예탁

VIII. 근로복지진흥기금

VIII. 근로복지진흥기금

1. 수입

(1) 기타민간이자수입
54 - 544

< 근로복지진흥기금 - 중소기업계정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민간이자 수입	4,222	4,137	4,137	4,261	4,261	124	3.0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제7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용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자금의 범위, 용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7조(용자금리) ① 용자금리는 직전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용자사업 대출 금리의 평균치에 1.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수입 개요

- 용자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채불생계비 용자 이자에서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한 금액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4,447	4,199	4,222	3,978

(2) 기타재산수입
54 - 545

< 근로복지진흥기금 - 중소기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재산수입	1,050	3,027	3,027	2,909	2,909	△118	△3.9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계정 여유자금의 통화·비통화금융기관 예치에 대한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135	1,986	1,050	4,489

(3) 기타잡수입
69 - 691

< 근로복지진흥기금 - 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잡수익	1,992	3,843	3,843	4,301	4,301	458	11.9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퇴직연금 수수료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2,182	2,027	1,992	2,181

(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 - 754

< 근로복지진흥기금 - 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민간융자원 금회수	96,554	98,518	98,518	98,518	98,518	-	-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제13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3조(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융자종류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 수입 개요

- 융자 원금 회수
 -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신규실업자) 융자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86,211	95,484	96,554	96,826

(5)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근로복지진흥기금 - 중소기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359	1,137	1,137	1,000	1,000	△137	△12.0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124	810	1,359	2,858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근로복지진흥기금 - 중소기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77,163	113,711	113,711	203,742	203,742	90,031	79.2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01,494	107,947	77,163	111,463

(7) 기금전입금
91 - 913

< 근로복지진흥기금 - 중소기업제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전입금	45,560	46,441	46,441	53,227	53,227	6,786	14.6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 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2. 수입 개요

-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수익금 중 법정 배분금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복권수익금 35% 중 5.310% 배분, 전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0%내에서 가감조정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36,821	40,881	45,560	46,441

(8) 기금예탁원금회수
92 - 923

< 근로복지진흥기금 - 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예탁 원금회수	50,000	26,000	26,000	26,000	26,000	-	-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기금 예탁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	-	50,000	26,000

(9)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 근로복지진흥기금 - 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예탁 이자수입	523	419	419	369	369	△50	△11.9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제7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	972	523	342

(10) 기타재산수입
54-545

< 근로복지진흥기금 - 신용보증사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재산수입	100	26	26	136	136	110	423.1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기타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12	192	100	13

(11)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근로복지진흥기금 - 신용보증사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경상이전수입	7,309	8,230	8,230	7,725	7,725	△505	△6.1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 제88조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용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2. 수입 개요

- 신용보증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6,866	7,030	7,309	7,295

(12) 면허료및수수료
65 - 651

< 근로복지진흥기금 - 신용보증사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면허료 및 수수료	4,667	4,356	4,356	4,831	4,831	475	10.9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 제88조

제24조(보증료)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2. 수입 개요

-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4,780	5,132	4,667	8,430

(13) 계정간전입금
91-915

< 근로복지진흥기금 - 신용보증사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계정간전입금	11,871	8,163	8,163	10,623	10,623	2,460	30.1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5,821	5,150	11,871	4,000

(14) 기타재산수입
54-545

< 근로복지진흥기금-실업대책사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타재산수입	2,085	55	55	204	204	149	270.9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여유자금 통화·비통화금융기관 예치에 대한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19	12	2,085	4

(15) 민간출연금
59 - 594

< 근로복지진흥기금-실업대책사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민간출연금	-	-	1,892	-	55,000	53,108	2807.0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의 실업대책 사업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수입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	-	-	8,139

(1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근로복지진흥기금-실업대책사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	2	2	2	2	-	-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2	6	2	2

(1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근로복지진흥기금-실업대책사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비통화금융기 관 예치금회수	33,647	2,651	2,651	13,173	13,173	10,522	396.9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33,567	33,614	33,647	2,187

(18) 기금예탁원금회수

92 - 923

< 근로복지진흥기금 - 실업대책사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예탁 원금회수	-	34,000	34,000	24,000	24,000	△10,000	△29.4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기금 예탁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	-	-	34,000

(19) 기금예탁 이자수입

95 - 953

< 근로복지진흥기금 - 실업대책사업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예탁 이자수입	435	467	467	341	341	△126	△27.0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제7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수납액	-	-	435	342

2. 지출

사 업 명						
(1) 근로자복지지원(30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계정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1	301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복지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근로자 복지지원	1,954	1,691	1,691	1,646	1,646	△45	△2.7

4. 사업목적

○ 문화예술제

- 노동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여가활동 유도과 근로의욕 증대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입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제공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② 추진경위

○ 문화예술제

- '80. 11. 제1회 『노동문화제』 (미술분야) 개최(주최 : 노동부)
- '81. 5. 문학분야 신설, 국무총리상 신설(제2회)
- '85. 5. 음악분야 신설(제6회)
- '86. 9. 노동문화제 사업이관[노동부→근로복지공사]
- '88. 10. 연극분야 신설(제9회)
- '92. 4. 명칭변경[노동문화제→근로자문화예술제](제13회)
- '95. 1. 기금사업 편입(일반회계→근로복지진흥기금)
- '96. 6. 대통령상 신설
- '20. 제41회 근로자가요제 및 연극제 개최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 '08. 5. '09. 2월 고용노동부장관 업무보고
 - *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확산, 우리사주제 등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 주력
- '09. 3.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정책 추진방향 보고
 -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근로복지 추진
- '09. 11.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 시 선택적복지·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규정 신설
- '10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사업 시행
 - * 기업복지컨설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제공
- '15.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신설

- '16. 사업명칭 변경(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 지원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 '20. 기업복지활성화지원 개편(EAP, 퇴직연금, 선택적 복지, 사내공동기금 →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컨설팅에 집중)

6. 주요내용

○ 문화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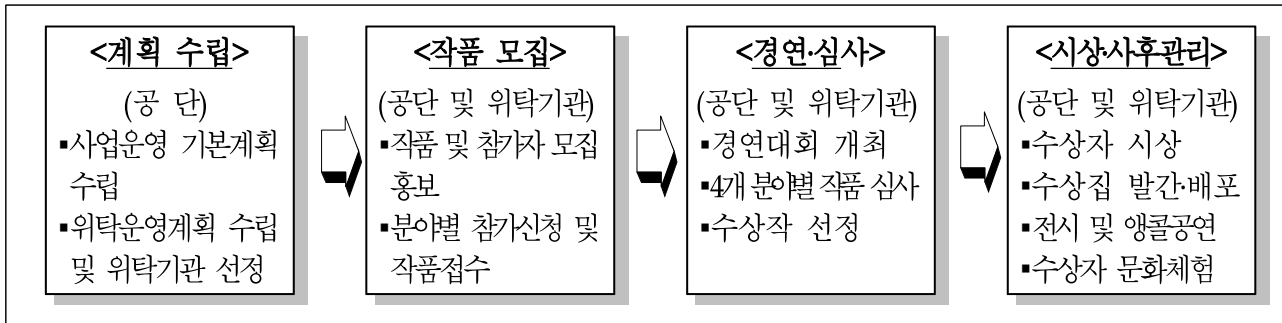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80년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45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행사운영은 전문기관 위탁)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재직노동자(산재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여성노동자, 중소기업 및 소속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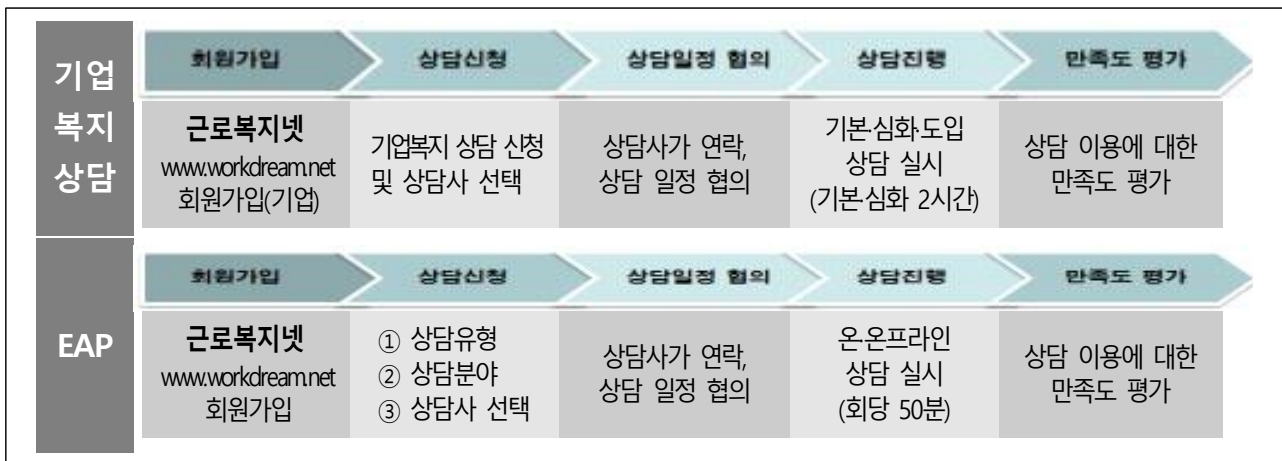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0년~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1,239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EAP 제공은 전문기관 위탁)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및 소속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문화예술제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사 업 명						
(2)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 정책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1	318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퇴직연금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퇴직연금 사업운영	3,023	2,794	2,794	2,754	2,754	△40	△1.4

4. 사업목적

-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한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동 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16.9월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17.6월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19.6월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되었으나 여·야간 공감대 형성
- 21대 국회 입법발의(안호영 의원, '20.7.23.)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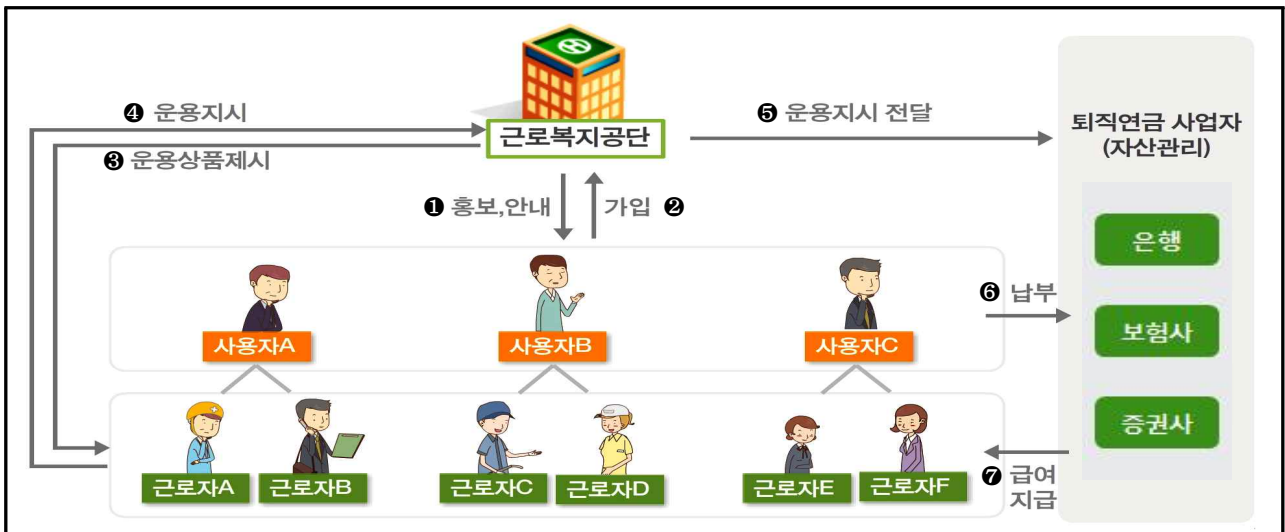
- 사업 시작년도
'10. 12월 4인 이하 사업장을 사업대상으로 시행('12.7.26. 30인 이하로 확대)
* 사업시행 초기 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
- 추진배경
 - 퇴직연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수익성만을 추구로 대기업위주 영업활동
 - 또한, 생계형 영세사업주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가입저조로 노동자 퇴직급여 체불가능성 내재 및 안정적인 노후 생활 저해
 - *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기피 이유 중 관심·인식부족이 30.5% 차지('10.03 서울경제 게재)
 - 따라서, 영세 중소기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촉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인프라가 구축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국정과제(19번)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19-2-2 공적퇴직연금 도입)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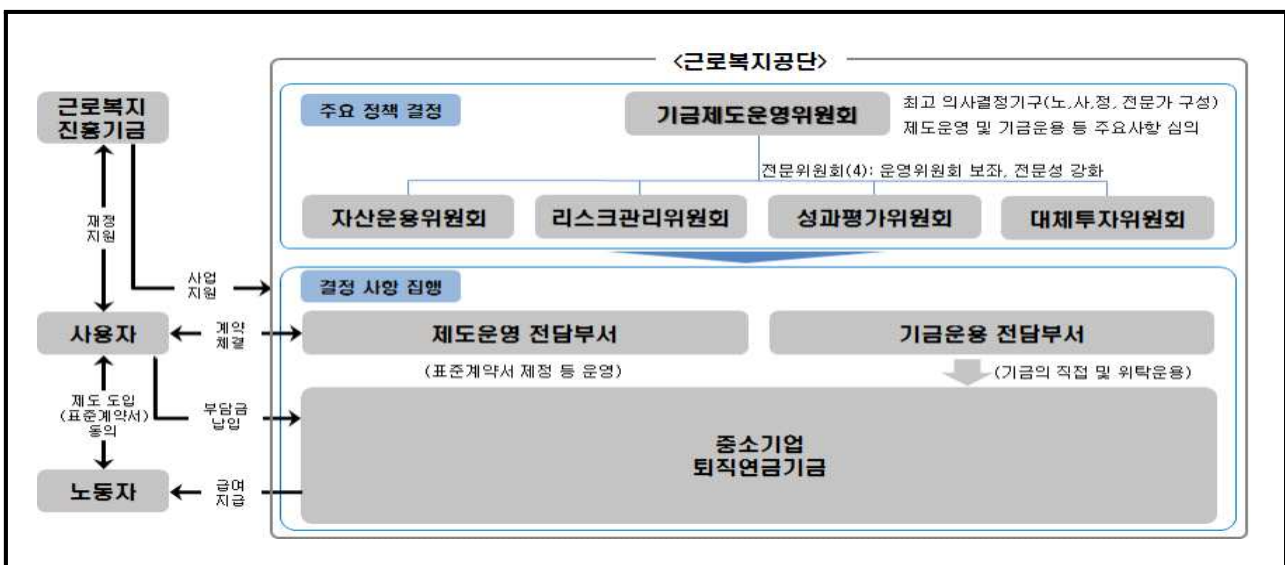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2,79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사 업 명						
(3) 근로복지기금지원(3061-32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계정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1	322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근로복지 기금지원	3,879	17,180	17,180	17,180	17,180	-	-

4. 사업목적

-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노동자 복지지원을 촉진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기금 규모확대 및 안정화를 통해 중소기업 저소득 노동자 복지향상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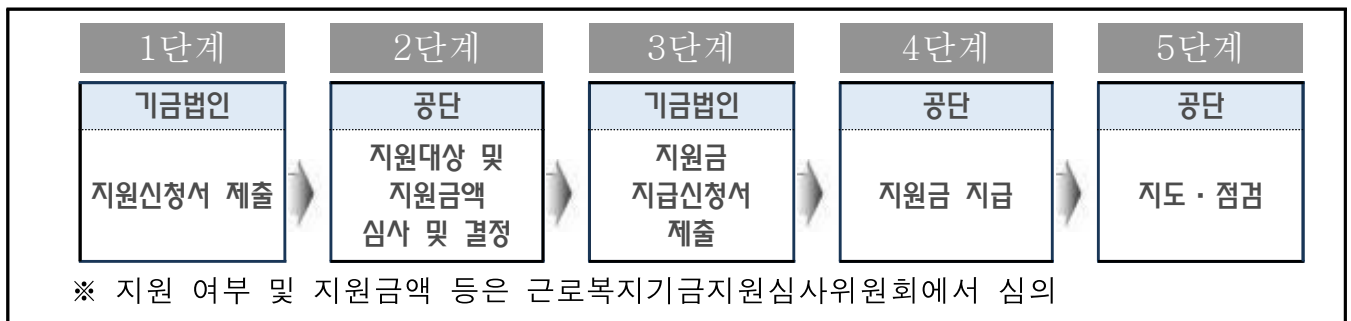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172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복지공단	최대 100%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제7호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306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1	500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근로복지정보 시스템(정보화)	3,520	3,344	3,344	3,344	3,344	-	-

4. 사업목적

- 근로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복지정보제공 및 신청시스템 운영
-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 공적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및 제91조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08년 ~ 계속
- 근로복지포털사이트 운영
 -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1차: '02~06년, 2차: '07~'11년)
 - '09년 근로복지포털(희망드림 근로복지넷) 구축
 - '10년 자산운용,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 '11년 모바일 웹 서비스 개시
 - '14년 중소기업청과 시스템 연계
 - '16년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 2018년 근로복지통합시스템구축 정보전략계획 추진('18.5~10.)
 - 근로복지포털시스템 오픈 이후 '19년 말까지 2,185만명 방문
- 퇴직연금정보시스템 구축
 - '10.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공포
 - '10. 11.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위한 금감원 실사 및 등록 완료
 - '10. 12.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 개시
 - '12. 7.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사업대상 확대
 - '15. 12. 자체 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및 시스템 적용
 - '16. 12. 자체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통계)
 - '17.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대상자 확대 적용
 - '18. 4. 퇴직연금 현장업무지원용 모바일 서비스 개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3,34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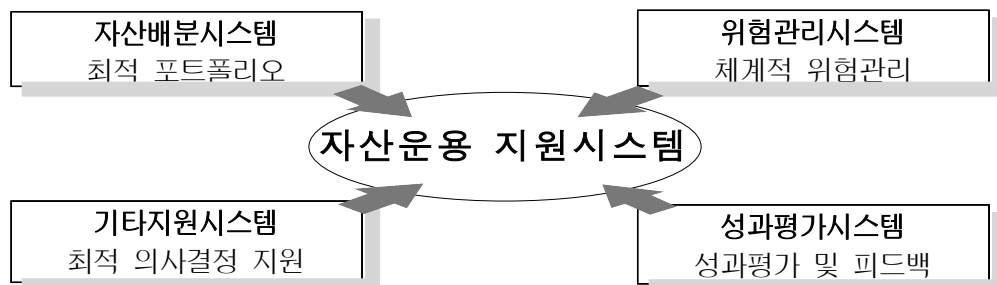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영세 중소기업 및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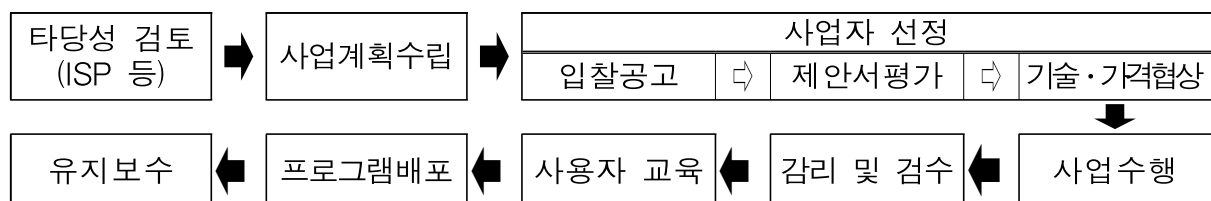
<근로복지포털사이트 운영>



<자산운용전산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사 업 명						
(5) 생활안정자금(융자)(3062-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2	306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생활안정자금 (융자)	99,051	88,546	210,300	99,051	99,051	△111,249	△52.9

4. 사업목적

- 저소득노동자에 대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 임금채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 장기 저리 생계비 융자로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에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용자)

- 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 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용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자금의 범위, 용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추진경위

- '96년 중소기업체 생산직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용자시행
- '98년 혼례·장례비 용자 추가
- '99. 1. 3개월 이상 체불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생계비대부 시작
- '99. 2. 2개월 이상 체불노동자로 사업대상 변경(체불생계비)
- '02년 기업규모 및 업종 제한 폐지, 용자대상을 저소득노동자로 전면 확대
- '03년 노부모 요양비 추가
- '08. 1. 용자종류 간 우선순위 부여(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
- '08. 9. 1개월 이상 체불노동자로 사업대상 변경(체불생계비)
- '10. 1. 체불생계비대부사업과 통합운영
- '11. 9. 자녀학자금·긴급생활유지비 추가
- '13. 1. 용자 종목 명칭 변경(긴급생활유지비→임금감소생계비)
- '14. 5. 소액용자제도 신설(소액임금감소생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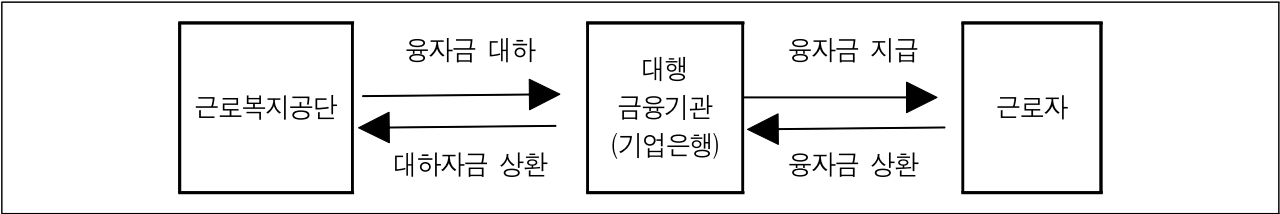
- '15. 1. 신청자 1인당 융자한도 증액(1인당 1천만원 → 2천만원) 및 금리 인하(3.0% → 2.5%), 자녀학자금 자녀 수 제한 폐지, 생활안정자금 비정규직 소득요건 폐지
- '16. 1. 소득기준 인용근거 일원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대상자 추가
* 소득기준 인용근거 :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상 중위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7. 3. 건설일용노동자 융자요건 완화(45일 이상 일용근로내역/7.5일분 이상 체불 → 3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5일분 이상 체불)
- '17. 10. 융자 대상자 확대(부당해고 후 복직 전 노동자 융자대상자 포함)
- '18.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노동자 대상 융자 요건 완화(소득요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500만원 한도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대상 700만원 한도, 임금채불생계비: 1,000만원 한도 → 2,000만원 한도)
- '18. 7. 임금채불생계비 융자 소득요건 완화(3인가구 중위소득 → 4인가구 중위소득)
- '19. 4. 거치 상환기간 다양화(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 '19. 9. 임금채불생계비 대상자 확대: 재직근로자 → 재직 및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19. 11. 융자금리 인하: 연 2.5% → 1.5%
- '20.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융자) 소득요건 완화(3.9~12.31.)
*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년 기준 월 259만원) 이하 → 3인가구 중위소득('20년 기준 월 388만원) 이하
- '20.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금채불생계비·소액생계비 융자한도 한시 인상(5.1~12.31.)
* (임금채불생계비) 1→2천만원, (소액생계비) 2→5백만원
- '20.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인당 융자 총 한도 한시 확대(7.1~12.31.)
* 2 → 3천만원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96년~
- 사업규모 : '20년 예산 210,3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및 임금채불(감소)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등)

7. 사업 집행 절차



사 업 명						
(6) 기금관리비(인건비)(7081-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1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관리비 (인건비)	7,664	8,082	8,082	8,154	8,154	72	0.9

4. 사업목적

- 중소기업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 1993년
- 추진배경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 · 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98. 2.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12.09.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3년~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8,08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복지사업 수행 인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 없음

사 업 명						
(7)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81-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2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210	1,813	1,813	1,189	1,189	△624	△34.4

4. 사업목적

-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비용 집행으로 원활한 근로복지 사업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 1993년
- 추진배경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98. 2.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12.09.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3년~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1,81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8) 기금관리비(법인세)(7081-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2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법인세)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기금관리비 (법인세)	160	536	536	25,716	25,716	25,180	4697.8

4. 사업목적

-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비용 집행으로 원활한 근로복지사업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 1993년

- 추진배경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 · 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98. 2.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12.09.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3년~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53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9) 사업운영비(근로자생활안정대부)(7081-2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20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 (근로자생활안정대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사업운영비 (근로자생활 안정대부)	120	120	531	114	114	△417	△78.5

4. 사업목적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용자)

- 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 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용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자금의 범위, 용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추진경위

- '96년 중소제조업체 생산직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용자시행
- '98년 혼례·장례비 용자 추가
- '99. 1. 3개월 이상 체불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생계비대부 시작
- '99. 2. 2개월 이상 체불노동자로 사업대상 변경(체불생계비)
- '02년 기업규모 및 업종 제한 폐지, 용자대상을 저소득노동자로 전면 확대
- '03년 노부모 요양비 추가
- '08. 1. 용자종류 간 우선순위 부여(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
- '08. 9. 1개월 이상 체불노동자로 사업대상 변경(체불생계비)
- '10. 1. 체불생계비대부사업과 통합운영
- '11. 9. 자녀학자금·긴급생활유지비 추가
- '13. 1. 용자 종목 명칭 변경(긴급생활유지비→임금감소생계비)
- '14. 5. 소액용자제도 신설(소액임금감소생계비)
- '15. 1. 신청자 1인당 용자한도 증액(1인당 1천만원 → 2천만원) 및 금리 인하(3.0% → 2.5%),

자녀학자금 자녀 수 제한 폐지, 생활안정자금 비정규직 소득요건 폐지

- '16. 1. 소득기준 인용근거 일원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자대상자 추가
* 소득기준 인용근거 :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상 중위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7. 3. 건설일용노동자 용자요건 완화(45일 이상 일용근로내역/7.5일분 이상 체불 → 30일이상 일용근로내역/5일분 이상 체불)
- '17. 10. 용자 대상자 확대(부당해고 후 복직 전 노동자 용자대상자 포함)
- '18.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노동자 대상 용자 요건 완화(소득요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500만원 한도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대상 700만원 한도, 임금채불생계비: 1,000만원 한도 → 2,000만원 한도)
- '18. 7. 임금채불생계비 용자 소득요건 완화(3인가구 중위소득 → 4인가구 중위소득)
- '19. 4. 거치 상환기간 다양화(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 '19. 9. 임금채불생계비 대상자 확대: 재직근로자 → 재직 및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19. 11. 용자금리 인하: 연 2.5% → 1.5%
- '20.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용자) 소득요건 완화(3.9.~12.31.)
*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년 기준 월 259만원) 이하 → 3인가구 중위소득('20년 기준 월 388만원) 이하
- '20.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금채불생계비·소액생계비 용자한도 한시 인상(5.1.~12.31.)
* (임금채불생계비) 1→2천만원, (소액생계비) 2→5백만원
- '20.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인당 용자 총 한도 한시 확대(7.1.~12.31.)
* 2 → 3천만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3년~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12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7081-2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20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 (근로자휴양시설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사업운영비 (근로자휴양 시설지원)	22	122	122	21	21	△101	△82.8

4. 사업목적

- 저임금노동자에게 휴양 콘도의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② 추진경위

- '93. 12.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복지진흥기금 설치
 - '95. 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 '97. 5. 50인 미만 제조업체 1년 이상 재직 생산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개시
 - '01. 중소기업 전업종으로 확대
 - '04. 11. 고령자와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선정 우선순위 변경
 - '07. 8. 근로자복지통합전산망 실시로 업무 편의성 향상
 - '08. 5. 근로자휴양콘도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13. 9. 근로자휴양콘도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 '20. 3. 근로자휴양콘도 지원사업 제도개선 추진
- * (이용대상 확대) 저소득 노동자 → 300미만 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저소득 노동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7년~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12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모든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워크숍, 교육목적에 한함), 단, 주말, 성수기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251만원이하 노동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11) 근로복지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7081-2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20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근로복지금(중소복지) 정보화경비(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근로복지금(중소 계정)정보화 경비(정보화)	334	334	334	334	334	-	-

4. 사업목적

- 안정적인 근로복지공단 정보시스템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및 제91조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8년
- 추진배경
 - 기존 : 고용보험회계와 산재보험회계에서 50%씩 부담
 - '08년부터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분담
(근로복지진흥기금 2.1% 분담. 단, 자산취득비는 4.2% 분담)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33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노동자, 근로복지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5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근복지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 예탁)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	-

4. 사업목적

- 근로복지진흥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제1조,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

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2018년도 기금존치평가 시 중기가용자산 과다 보유로 공자기금 예탁 권고하여 2018년부터 예탁실시

6. 주요내용

- 중소복지계정 여유자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총괄계정)에 예탁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3)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9301-86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300	9301	860
명칭	계정간거래(전출금)	중소계정에서 신용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신용보증사업 계정전출	11,871	8,163	8,163	10,623	10,623	2,460	30.1

4. 사업목적

-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자금 전출을 통하여 신용보증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 수행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 ① 제8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규정에 의한 자금은 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8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안에서 구분 계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03년
 - 추진배경 : 신용보증사업계정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중소기업계정의 자금 전용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 ~계속
- 사업규모 : '20년 예산 8,16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4) 통화금융기관예치(중소복지)(9713-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3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근복지금)	통화금융기관예치(중소복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중소복지)	2,858	1,438	1,438	1,000	1,000	△438	△30.5

4. 사업목적

- 근로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15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② 추진경위

- 최초사업시작년도 : 1993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 사업규모 : 통화금융기관 예치한 여유자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행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5) 비통화금융기관예치(중소복지)(9713-97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3	977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근복지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중소복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중소복지)	111,463	136,984	14,819	197,201	197,201	182,382	1230.7

4. 사업목적

- 근로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15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② 추진경위

- 최초사업시작년도 : 1993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 사업규모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한 여유자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행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6) 신용보증대위변제(3064-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신용보증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4	308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신용보증대위변제	신용보증대위변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신용보증 대위변제	19,597	16,031	16,031	19,156	19,156	3,125	19.5

4. 사업목적

- 보증·담보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한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 및 제26조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 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용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용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0년 “노동자 보증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추진” 대통령 보고 (노동부문 국정개혁 과제)
 - '01.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 공포(법률 제6510호)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 12.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 '14. 12. 보증한도 상향(1,000만원→2,000만원)
 - '15. 5. 채무조정제도(지연이자 감면제도) 도입
 - '16. 1. 보증대상 확대(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9. 4. 지연이자 인하 및 채무조정제도 개선
 - '20.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증한도 한시 상향(2,000만원→3,000만원*)
- * '20. 7. 1.이후 용자신청서 접수하여 '20년 용자마감일까지 용자실행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2년 ~계속
- 사업규모 : 160억원('20년 예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자금 용자대상자 중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자(저소득노동자, 산재근로자, 구직등록한 실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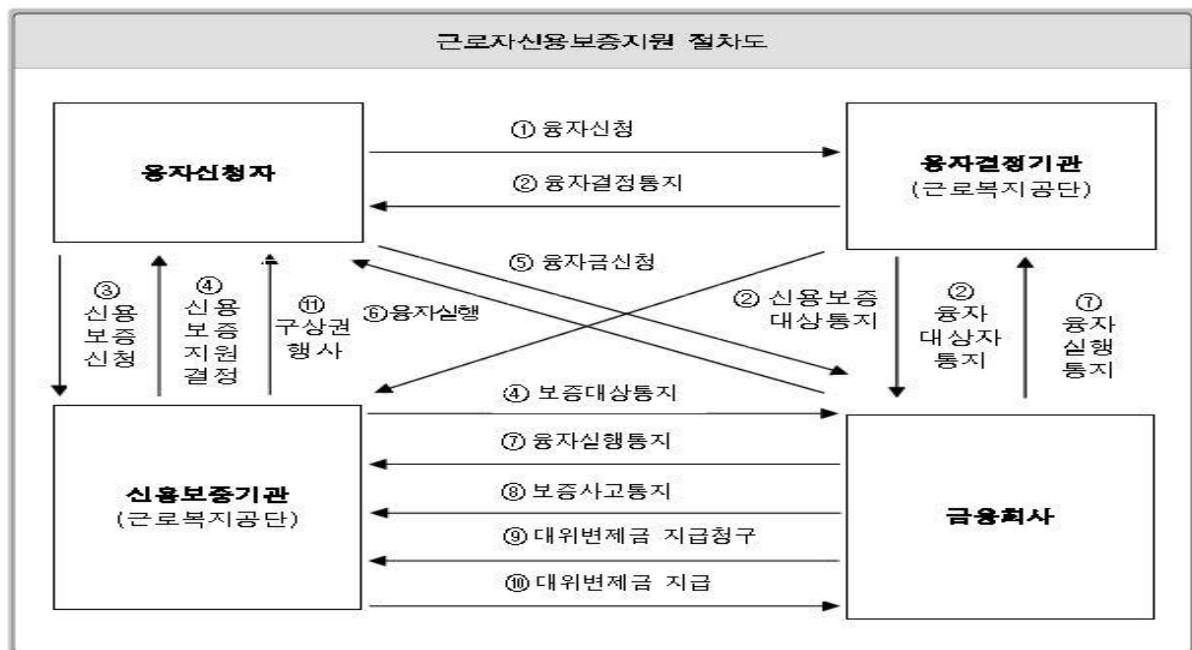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 근로복지공단 시행

○ 적용 법령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27조, 제92조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 「근로자 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 업무프로세스



사 업 명						
(17) 사업운영비(신용보증인건비)(7081-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신용보증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1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신용보증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사업운영비 (신용보증인건비)	2,986	3,080	3,080	3,108	3,108	28	0.9

4. 사업목적

- 신용보증지원사업 수행인력(52명) 인건비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01.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공포(법률 제6510호)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 12.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2년 ~계속
- 사업규모 : 3,080백만원('20년 예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8) 사업운영비(신용보증기타경비)(7081-2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신용보증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20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신용보증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사업운영비 (신용보증기타경비)	978	980	980	903	903	△77	△7.9

4. 사업목적

- 신용보증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비용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01.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공포(법률 제6510호)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 12.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사업규모 : 980백만원('20년 예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9) 근로복지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7081-2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신용보증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21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근로복지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근로복지금 (신용계정) 정보화경비 (정보화)	148	148	148	148	148	-	-

4. 사업목적

- 안정적인 근로복지공단 정보시스템 운영비용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기존 : 고용보험회계와 산재보험회계에서 50%씩 부담
- '08년부터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분담
(근로복지진흥기금 2.1% 분담, 단, 자산취득비는 4.2% 분담)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계속
- 사업규모 : 148백만원('20년 예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20)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3068-32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실업대책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8	324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	-	-	46,000	순증	순증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낮은 처우,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재가돌봄서비스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에 기여
- (내용)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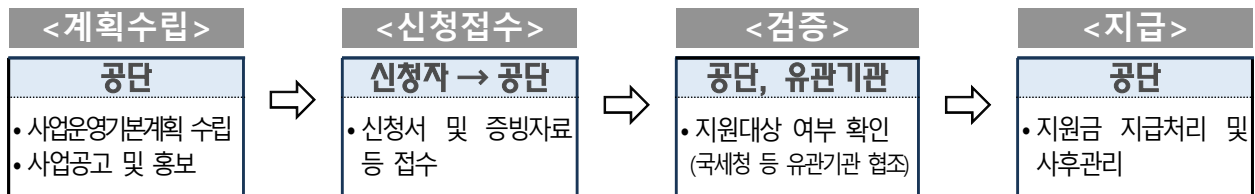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관계부서합동, '20.12.)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1년 한시
- 사업규모 : 460억원('21년 예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실업대책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5	841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근복지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근복실업)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공공자금관리 기금 (총괄계정 예탁)	34,000	24,000	24,000	24,000	24,000	-	-

4. 사업목적

- 근로복지진흥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제1조,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

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2018년도 기금존치평가 시 중기가용자산 과다 보유로 공자기금 예탁 권고하여 2019년부터 예탁실시

6. 주요내용

- 실업대책사업계정 여유자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총괄계정)에 예탁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22) 통화금융기관예치(점포지원)(9713-9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실업대책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3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근복지금)	통화금융기관예치(점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점포지원)	2	2	2	2	2	-	-

4. 사업목적

- 근로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15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② 추진경위

- 최초사업시작년도 : 199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사업규모 : 통화금융기관 예치한 여유자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행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23) 비통화금융기관예치(점포지원)(9713-97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실업대책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3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근복지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점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정부안	계획(B)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점포지원)	1,386	13,173	11,565	13,718	22,718	11,153	96.4

4. 사업목적

- 근로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15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② 추진경위

- 최초사업시작년도 : 199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사업규모 : 통화금융기관 예치한 여유자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행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